



東北亞歷史論叢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논총

48호 2015. 6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차례

논문

오병수 | 아시아재단과 홍콩의 냉전(1952~1961)

– 냉전시기 미국의 문화정책 7

최말순 | 1950, 1960년대 타이완문학의 경향과 미국원조문화와의 상관성 53

다나카 마사타카 |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연구의 과제와 전망

– 일본에서의 연구를 중심으로 89

김광열 | 1923년 일본 관동대지진 시 학살된 한인과 중국인에 대한 사후조치 119

성주현 | 식민지 조선에서 관동대지진의 기억과 전승 159

윤휘탁 | 중국의 ‘백두산의 중국화’ 전략 197

정안기 | 1930년대 재만조선인, 이등국민론의 비판적 성찰

– 교육정치사의 관점과 사례를 중심으로 255

장박진 | 한일 청구권협정 제2조의 형성 과정(1965. 3~6) 분석

– 개인청구권 문제를 중심으로 297

서평

이재석 | 『일본서기』 연구의 새로운 도약

– 연민수 외, 『역주 일본서기』 1~3권(동북아역사재단, 2013) 349

동북아역사논총 규정 및 규칙 361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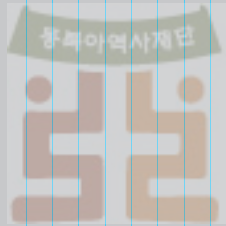
Articles

- Oh Byungsoo ▮ The Asia Foundation and the Cold War in Hong Kong (1952~1961): United States Cultural Policy in the Cold War Era 7
- Choi Malsoon ▮ The Correlation between the Inclinations of Taiwanese Literature and United States Aid Culture in the 1950s and the 1960s 53
- Tanaka Masataka ▮ Problems and Images for the Future of the Korean Genocide following the Great Kanto Earthquake: Focusing on Research in Japan 89
- Kim Gwangyol ▮ Management for Koreans and Chinese Massacred after the Great Kanto Earthquake in 1923 119
- Sung Joohyun ▮ The Trends and the Transmission to Korea of the Great Kanto Earthquake in 1923 159
- Yoon Hwytak ▮ The Strategy of Baekdu Mountain in China 197
- Joung Anki ▮ A Critical Introspection of the Argument of Second-Class Citizens toward Korean Residents in Manchuria in the 1930s: Focusing on Educational and Political History 255
- Chang Bakjin ▮ An Analysis of the Drafting Process(March 1965 ~ June 1965) of Article 2 of the Agreement on Claims: Focusing on the Compensation Problem for Korean People 297

Book Review

- Lee Jaeseok ▮ A New Leap Forward for Research on Nihon shoki: Annotated Translations of Nihon shoki, vols. 1-3, translated by Yeon Min-soo et al. (Seoul: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2013) 349

논문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아시아재단과 홍콩의 냉전(1952~1961)

- 냉전시기 미국의 문화정책 -

오병수 |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동북아역사재단

I. 머리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전후 미국의 세계적 패권이 단순한 경제력과 군사력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역사상의 '제국(帝國)'이 그러했듯이, 그것은 오히려 고도의 외교적 목표하에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한 문화, 이념적 지배권 구축 작업의 결과였다. 여기에는 20세기 초 미국의 부상과 함께 등장한 각종 'Foundation(이하 재단)'의 대외 문화 원조가 큰 역할을 했다. 2차 대전 이후, 미국이 각종 기금과 '프로젝트'를 포함한 이른바 마셜 플랜(Marshall plan)을 통해 유럽의 기초 과학 및 지식인에 대한 지배력을 확립한 것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¹⁾ 중남미, 동남아,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의료 및 농업 원조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²⁾

※ 투고: 2015년 2월 11일, 심사 완료: 2015년 5월 12일, 게재 확정: 2015년 5월 18일

1) John Krig, 2006, *American Hegemony and the Postwar Reconstruction of Science in Europe*, MIT Pr.

2) Marcos Cueto, 1994, *Missionaries of Science: The Rockefeller Foundation and*

이 때문에 포드, 록펠러, 카네기 등 대형 재단의 해외 사업과 그것이 수행한 ‘문화제국주의’적 기능은 일찍부터 주목을 받았다.³⁾ 재단의 해외 사업은 애초부터 미국 외교 정책에 부응하여, 미국의 가치관과 규범, 이데올로기의 확산을 목표로 기획된 것이고, 실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제3세계의 엘리트 및 민중들을 미국과 연결하고, 그들이 미국과 동일한 가치관을 공유하도록 추동했다는 것이다.

20세기 초반부터 이루어진 중국에 대한 교육 문화원조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물론 의화단 운동 배상금 반환 기금[退還庚款] 이래 미국의 교육 문화원조가 중국의 근대화에 대단한 영향을 미쳤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특히 중국이 자연과학, 사회과학, 인문학 등 근대국가에 조응하는 학문 발전을 추동하고, 나아가 항전과 같은 극한 상황에서도 국가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학문 활동을 지원하고, 전쟁 수행에 필요한 국민 의식 및 정체성 형성을 모색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미국의 교육 문화원조의 힘이 컸다.⁴⁾ 그러나 이러한 과정 역시 미국식 이념과 학술 방법의 이식, 그리고 친미 엘리트의 영향력 확대를 수반했

Latin America, Indiana UP.

- 3) ‘재단’ 또는 ‘基金(會)’으로 번역되는 Foundation은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민간기구(NGO)로서, 국가권력 및 기업과는 구별되는 보다 보편적인 공적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본령이다. ‘자선’과 ‘구제’ 등 재단의 통상 활동은 현대 국가 사회의 기능을 보완하는 필수적인 기능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재단은 애초부터 미국 자본주의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국내외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탄생했다는 기원적인 한계 때문에 그 실제 기능에 대해서는 늘 논란이 있었다. 국내 활동과 관련하여서는 자본과 사회 엘리트, 즉 ‘파워엘리트’의 결합을 통해 사회적 불평등을 조장한다는 점,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패권 형성에 기여하는 문화제국주의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비판 등이 그것이다[Robert F. Arnove, 1982, *Philanthropy and Cultural Imperialism: the Foundations at Home and Abroad*, Indiana UP; Edward H. Berman, 1983, *The Influence of the Carnegie, Ford, and Rockefeller Foundations on American Foreign Policy: The Ideology of Philanthrop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
- 4) Peter Buck, 1980, *American Science and Modern China, 1876~36*, Cambridge UP; Yung Chenchiang, 2001, *Social Engineering and the Social Sciences in China, 1919~1949*; Fan Shuhua, 2014, *The Harvard - Yenching Institute and Cultural Engineering: Remaking the Humanities in China, 1924~1951*, Lexington Books.

고, 또 역으로 미국의 중국학 역시 이를 통해 성장했음을 고려하면 이 또한 미국의 패권 구축 과정의 일부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⁵⁾

그런데 문제는 정치, 사회, 문화 환경의 변화가 극심했던 냉전시대, 이러한 재단의 역할 문제다. 미국의 문화원조는 원래부터 자국의 외교적 목표에 조응하여 이루어진 것이었지만, 2차 대전을 거치면서 직접 대중을 상대로 이루어진 심리전, 사상전, 정보전 활동과 구분이 모호해졌을 뿐 아니라 냉전 자체가 극단적인 정치·군사·이념 경쟁을 속성으로 하였던 만큼, 재단의 기능 역시 조정이 불가피했다. 실제 미국은 2차 대전 당시인 1940년대부터 적극적으로 정보, 심리전을 전개하는 한편, 전후 중국에 대한 영향력 확보와 친미 지식엘리트 형성을 겨냥하여 각종 중국 기금을 통합하는 등 재단의 역할 조정을 계획했고,⁶⁾ 또 국공 내전을 거치면서 반공을 위한 문화 교육 원조에 집중했다.⁷⁾ 따라서 이처럼 재단이 냉전 체제에 어떻게 조응하여 운영되었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냉전의 실상을 밝히는 중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나아가 이를 미국의 지역 정책의 맥락에서 이해한다면, 냉전을 매개로 연동되어 있는 동아시아를 구조적으로 파악하는 데 유용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에서는 우선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미국의 냉전정책

5) 미국의 교육 문화원조가 미국의 외교정책과 조응하고, 미국식 가치 이념을 전파하는 데 기여했다는 비판은 일찍부터 있었다. 특히 주목할 것은 미국 유학생들이 중국의 사회 과학, 농학, 의료 체계, 나아가 인문학의 형성 과정에 지배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도 경자배관(庚子賠款) 이래 미국의 재단에 힘입은 바가 컸으며, 또 1930년대 이래 미국의 기금으로 이루어진 각종 사회 조사 및 연구 역시 미국식 연구 방법과 가치관의 이식 및 학술 패권 형성의 일환이었다는 점이다[Wilma Fairbank, 1976, *America's Cultural Experiment in China*, Washington, D.C. Government Printing Office; Frank Ninkovich, 1984, "The Rockefeller Foundation, China, and Cultural Change," *The Journal of American History*, 70-4; Frank Ninkovich, 1980, "Cultural Relations and American China Policy, 1942~45," *The Pacific Historical Review* 49-3; Yung Chenchiang, 2001].

6) Fan Shuhua, 2014, pp. 86~87.

7) Grace Ai-Ling Chou, 2011, *Confucianism, Colonialism, and the Cold War: Chinese Cultural Education at Hong Kong's New Asia College, 1949~76*. Boston: Brill, pp. 60~61.

이 형성되는 1950년대, 홍콩에서 전개된 아시아재단(Asia Foundation)의 설립 배경과 조직 활동을 분석하고자 한다. 홍콩 자체가 동아시아 냉전의 중심이자 최전선이었고, 또 아시아재단 역시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설립·운영되었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냉전시기 홍콩과 관련하여서는, 이미 접근 방법과 시각을 달리하며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홍콩의 '귀속 및 처리'와 관련한 영·미간의 협력과 갈등,⁸⁾ 홍콩 내 미국의 정보, 군사 활동⁹⁾, 그리고 소위 제3세계이라 할 수 있는 자유주의 지식인 운동과¹⁰⁾ 홍콩에서의 공산주의 운동¹¹⁾, 그리고 미국의 원조하에 이루어진 문학, 영화 등 이른바 문화사에 대한 연구와 함께 재단 등 NGO의 역할에 주목한 연구도 부분적으로 진행되었다.¹²⁾ 이 같은 다양한 연구 경향은 냉전시기 홍콩이라는 공간 자체가 세계(Global), 지역(Region), 그리고 국가(Nation 또는 Local)적 맥락과 중첩·연동되어 있고, 따라서 다층적인 접근을 통해서만 이해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실제 냉전시기 홍콩의 정치 지형은, 국공내전을 기점으로 냉전이 가시화되는 동아시아 지역 질서 변동과 그에 대응하는 미·소의 정치·경제·군사·문화 차원의 지역 전략의 사정(射程) 속에서 진행된 것이었다.¹³⁾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홍콩의 냉전을 동아시아의

8) Chi-kwan Mark, 2004, *Hong Kong and the Cold War: Anglo-American Relations 1949-1957*, Oxford UP; James T. H. Tang, 1994, "From Empire Defence to Imperial Retreat: Britain's Postwar China Policy and the Decolonization of Hong Kong," *Modern Asian Studies* 28-2; Ya Feng Xia, 2008, "The Study of 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in China," *Journal of Cold War Studies*, 10-1.

9) Nicholas J. Cull, 2008, *The Cold War and the United States Information Agency: American Propaganda and Public Diplomacy, 1945-1989*, Cambridge UP; Johannes R. Lambardo, 1999, "A Mission of Espionage, Intelligence and Psychological Operations: The American Consulate in Hong Kong, 1949-64", *Intelligence and National Security*, 14-4.

10) 萬麗鵬, 2001, 『1950年代的中國第三勢力運動』, 國立政治大學博士學位論文.

11) 陸恭惠, 2011, 『地下陣線: 中共在香港的歷史』, 香港大學出版社.

12) 趙綺娜, 1997, 「冷戰與難民協助: 美國“援助中國知識人士協會”, 1952-9」, 『歐美研究』 27-2; Grace Ai-Ling Chou, 2011.

13) 예컨대 1957년의 좌우 충돌 사건만 하더라도, 전후 홍콩의 급격한 인구 팽창 및 그

지역사적인 맥락에서 살피거나 또는 당시 지역 전략 차원에서 이루어진 미국의 문화정책을 분석하는 작업은 매우 미진한 실정이다. 아시아재단에 대한 연구 역시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홍콩의 냉전을 동아시아라는 지역 차원에서 조망하는 작업은 그다지 진척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은 이러한 문제에 접근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1954년 설립된 아시아재단 홍콩 지부의 활동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우선 아시아재단의 자체 문서¹⁴⁾를 통해 재단의 설립 배경과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계기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동아시아 냉전의 맥락에서 검토하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일차적으로 홍콩의 냉전 양상을 지역적인 맥락에서 이해하고, 더 나아가 냉전을 매개로 지역질서가 구축되는 과정을 통해 동아시아사의 새로운 구성을 전망할 수 있는 단서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II. 아시아재단의 설립 배경

아시아재단은 1954년 정식 창립된 미국의 대표적인 아시아 관련 재단이다. 당초에는 “아시아에 관심이 있는 미국 사회의 시민 지도자들이 발기하고 캘리포니아 주의 법률에 따라 성립된 비영리 민간 조직”으로서 “미국의 민간자원으로

에 상응하는 교육, 주거, 의료, 복지 등이 수반되지 않는 식민도시로서의 지역성 (Locality)과 미·소 및 중·소 간의 갈등을 배경으로 홍콩이 미국의 핵우산에 편입되는 지구 차원의 냉전 맥락이 함께 작동하여 나타난 것이었다[Chi-Kwan Mark, 2005, Defence or Decolonisation? Britain, the United States, and the Hong Kong Question in 1957, *The Journal of Imperial Commonwealth History*, Vol. 33-1].

- 14) 아시아재단 문서는 샌프란시스코의 재단 본부와 스탠퍼드대학교 후버연구소에 소장되어 있고, 기타 공문서 및 초대 총재였던 블룸(Robert M. Blum) 자료 등은 미국 국립문서보관서(NARA)와 예일대학교 등에 보관되어 있다. 이 글은 후버연구소의 소장 자료에 크게 의존했다.

아시아의 교육, 문화, 시민활동을 촉진할 것”을 표방했다. “평화와 독립의 유지, 개인 자유의 신장, 그리고 사회의 변형을 도모하는 아시아의 개인과 단체를 지원하며, 또 이러한 이상을 공유하는 아시아인, 미국인 그리고 국제적인 민간 조직 간의 협조를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특히 재단의 기금은 개인과 단체의 자발적 기부금으로 조성된 것이고, 이사진은 모두 미국의 대표적인 학자와 기업가, 정치가로 구성했다고 홍보했다. 또 재단의 모든 활동은 아시아인에 의해 발기되고, 지휘·추진된다는 등 순수한 민간 자율 조직임을 강조했다.¹⁵⁾ 그렇지만 1966년, 아시아재단은 CIA의 주도하에 탄생되었고, 그 기금으로 운영되는 ‘위장 문화 단체’임이 폭로되었으며, ‘CIAsia(Foundation)’라는 별칭처럼 미국의 냉전정책을 본보기로 수행한 조직임이 드러났다.¹⁶⁾ 따라서 이러한 아시아재단의 설립 배경과 운영 실상을 밝히는 일은 그 자체가 냉전시기 미국의 아시아 정책을 이해할 수 있는 열쇠라고 할 수 있겠다.

사실 아시아재단의 기원은 1949년 중국 공산화 당시, 캘리포니아 주의 반공 의원들과 사업가들이 미국 의회에서 대책을 논의하면서, 조직한 자유 아시아 위원회(The Committee for Free Asia: CFA, 이하 ‘위원회’)였다. 표면적으로는 (공산) 중국의 인민과의 교류를 위한 민간조직을 표방했지만, 실제로는 오스트리아에 본부를 둔 자유유럽위원회(The National Committee for Free Europe)를 본떠 만든 것으로, 국가안전위원회(National Security Council)의 승인하에 CIA의 자금 지원을 받아 심리전을 수행하는 일종의 반공 조직이었다.¹⁷⁾ 미국 정부가 냉전이라는 특별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만든 특별한 조직

15) *The Asia Foundation in Hong Kong, 1966, Purpose and Activities*, Hong Kong Office(Asia Foundation).

16) “Memorandum From the Central Intelligence Agency to the 303 Committee,” <http://www.state.gov/r/pa/ho/frus/johnsonlb/x/9062.htm>; <http://www.allgov.com/departments/departments-of-state/asia-foundation?agencyid=7199>. 이 사건은 미국 내외에서 정부 기금 출연 재단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야기했고, 아시아재단 역시 순수 민간 재단으로 개조되었다. 개조 이후 아시아재단의 활동에 대해서는 동 기관 본부 및 한국 지부 홈페이지에 잘 소개되어 있다.

17) Andrew Defty, 2013, *Britain, America and Anti-Communist Propaganda 1945~53: The Information Research Department*, Routledge, p. 208.

이었던 셈이다. 위원회는 샌프란시스코에 본부를 두고 홍콩, 필리핀, 베트남 등 동남아 각국에 지부를 설치했다. 블룸¹⁸⁾이 총재였고, 스투어트(James L. Stewart)¹⁹⁾가 프로그램 운영 책임자였다. 모두 2차 대전 당시 OSS 등에서 정보 업무에 종사했고, 특히 후자는 전후에도 USIS 한국 지국장을 지낼 만큼 정보전, 심리전 경험이 풍부한 인물들이었다. 샌프란시스코 역시 2차 대전 당시 중국 및 동아시아에 대한 선전 및 심리전의 본부였던 점을 고려하면 아시아재단의 설립 배경과 실제 활동방향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²⁰⁾

위원회는 중공의 팽창을 저지하기 위해 필리핀, 타이완, 베트남, 라오스, 태국 등을 중심으로 반공 불력을 형성하고, 역내 각국의 자유주의 세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샌프란시스코와 필리핀에 자유아시아(Free Asia)방송을 설립하여 선무 방송을 시작한 것을 비롯하여, 타이완과 미국의 학자 간 교류와 학생 방문 연수, 그리고 각국의 자유주의 운동 지도자의 훈련, 각종 청소년 운동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했다. 중전

- 18) 블룸은 예일대학교 졸업 후 같은 대학에서 강의를 하다가 종군했다(1942~1946). 캄보디아, 라오스 등지에서 OSS 대원으로 활약했으며, 전후는 베트남에서 근무했다. 아시아재단의 총재(1953~1962)를 지낸 뒤에는 주로 카네기재단, 유네스코 등지에서 아시아 관련 업무에 관여했고, 국가안전위원회 자문위원을 지냈다.
- 19) 스투어트는 일본 고베[神戸]에서 태어나, 히로시마[廣島]에서 자란 일본통으로, 듀크대학 졸업 후, 1937년 미국의 대표적인 방송사인 CBS의 충칭[重慶] 통신원을 거쳐 중국 방면의 정보 장교 및 심리전 책임자로 복무했다. 전후에는 주한 유엔대사관 공보처장, USIS 한국 지국장을 지냈다. 1951년부터 위원회 프로그램 책임자를 시작으로 이후 오랫동안 아시아재단 총부의 실무를 총괄했다. 만년에는 재단 일본 지부 대표를 지냈다[http://www.sfgate.com/bayarea/article/James-L-Stewart-longtime-liaison-to-Asia-2523343.php].
- 20) 잘 알려진 대로 미국은 2차 대전 당시 OSS 외에도 미국전쟁정보국(The US Office of War Information: OWI) 산하의 해외사무국 및 중국분국, 태평양 분국 등을 통해 일본 및 중국의 대중들을 대상으로 라디오, 영화, 도서 및 전단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한 정보전과 심리전을 전개했다. 총 책임자는 전구사령관이지만, 대사관은 물론 United Press 등 언론 기구 등이 조직적으로 동원되었다.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샌프란시스코의 본부에서 제작하여 충칭, 청두[成都], 쿤밍[昆明] 등 중국 거점으로 전송하는 방식이었다[Matthew D. Johnson, 2011, "Propaganda and Sovereignty in Wartime China: Morale Operation and Psychological Warfare under the Office of War Information," *Modern Asian Studies* 45-2].

의 심리전 프로그램과 문화 활동을 접합한 것이었다.

그런데 보다 주목할 부분은 역시 냉전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홍콩에서의 활동이었다. 홍콩은 ‘대륙에 부속된 영국의 식민지’이자 ‘복합 네트워크 공간’²¹⁾이라는 지정학적 조건 때문에 처음부터 정보전, 심리전 등 냉전 수행의 핵심 공간으로 등장했다. 영국과 미국은 물론이고 타이완의 국민 정부와 중공 역시 홍콩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심리전을 전개했다. 홍콩의 이러한 기능은 이후 대륙의 정치 요소와 함께 한국전쟁(1950~1953), 금문도(金門島) 사건(1954~1955, 1958) 등 국제적인 냉전과 연동되면서 더욱 두드러졌다.

미국은 1949년 베이징 소개(疏開)이후 모든 외교관원을 홍콩으로 철수시키면서 홍콩을 대륙 정책의 전초 기지로 활용했다. 전후 베이징, 상하이에서 수행하던 영사업무는 물론 정보 업무도 홍콩으로 이전되었다. 특히 미국은 단교(斷交) 이후에도 중국에 대한 후속 정보가 필요했기 때문에 정보 수집은 매우 중요한 과제였다. 홍콩의 미국 대사관은 업무를 정치, 경제 등 민간 영역, 군사 영역, 그리고 CIA 등 정보 영역으로 나누어 운영하면서, 대사관이 수용할 수 없는 600여 명의 정보 요원은 별도로 타이완에 상주시킬 만큼 정보 및 심리전에 몰두했다.²²⁾ 당장 공산 중국과의 외교 관계 개설 가능성, 또 중공의 한국

21) “대륙에 부속된 영국의 식민지”는 전후 인도, 미얀마,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의 영국의 구식민지 국가들의 탈식민 과정과 다른 홍콩의 정치 상황을 상징하는 언어이고, ‘복합 네트워크’ 공간이라는 개념은 원래 화교 교역 및 정보 네트워크의 중심으로서 홍콩의 지정학적 위상을 표현한 말이다. 전후 홍콩의 이러한 성격은 냉전을 배경으로 재해석되었다[하마시타 다케시, 1997, 『홍콩』, 신서원; 차태근, 2005, 『19세기 전반 동아시아 담론과 지식망』, 『中國現代文學』 32].

22) 당시 정보업무에 종사했던 메카시(Richard M. Mccarthy)에 따르면, 그는 중공의 베이징 해방 이후에도 7명의 대사관 직원과 함께 베이징에서 활동했다. 1950년 4월 베이징을 떠나 한국을 거쳐 귀국했다가 한국전쟁 발발과 함께 홍콩에 부임하여 1958년 까지 6년 동안 정보 및 심리전 활동을 전개했다. 대학 영어강사로 위장한 메카시의 임무는 학생들에 대한 관찰과 중국 관련 각종 정보를 수집하여 영문으로 세계 각국에 알리는 일이고, 둘째는 『今日中國』 등 중국어 잡지, 서적 및 반공 영화를 중국, 타이완 및 동남아 지역에 배포하는 일이었다[*The Association for Diplomatic Studies and Training Foreign Affairs Oral History Project, Information Series* 중 Richard M. Mccarthy의 회고].

전 개입 여부 등 미국의 냉전정책에 수립에 필요한 기초적인 정보가 모두 수집 대상이었다. 당시 홍콩은 정치 난민이 넘쳐났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 중공 및 대륙 사정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²³⁾ 미국은 영국 식민정부의 목인과 협조하에 난민을 직접 인터뷰하거나 국민당 정보 요원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했다. 또 미국은 주룽[九龍]에 설치한 청취대를 통해 대륙의 방송을 수신하거나 중공이 간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를 수집·분석했다. 이러한 정보는 일차적으로 미국대사관에 수집·정리되어 워싱턴 및 주요 기관에 보고됨으로써 미국의 지역 정책 수립의 기초이자, 각종 선전 및 심리전 자료로 활용되었다.²⁴⁾

다른 한편으로 미국은 USIS(해외정보국)의 주도 아래 국민당의 정보원 및 다수의 지식 난민을 활용하여²⁵⁾ 직접 대륙과 홍콩의 공산주의 조직 활동을 와해시키고, 대륙 내의 반공 민주운동을 지원하는 등 심리전 활동을 전개했다. 2차 대전 시기처럼 대륙의 대중과 동남아 화교를 대상으로 한 각종 팸플릿, 정기간행물, 라디오 방송, 영화, 도서관 등 각종 미디어를 활용한 선무 활동이 중심이었다.

물론 심리전의 전개과정에서는 홍콩 내 자유주의 세력을 육성하는 것도 중

23) 홍콩 인구는 일제 시기 60만 정도였으나 내전 전후 대륙에서 인구 유입에 따라 1946년 160만, 1950년 236만, 1956년 250만, 그리고 1967년에는 380만으로 폭증했다. 미국 등의 구제에도 불구하고 난민문제는 홍콩 사회의 큰 부담이었고, 1957년부터 정치 문제로 폭발하기 시작했다[Chi Kwan Mark, 2007, "The 'Problem of People': British Colonials, Cold War Powers, and the Chinese Refugees in Hong Kong, 1949~62," *Modern Asian Studies*, Vol. 41, No. 6].

24) Nicholas J. Cull, 2008, *The Cold War and the United States Information Agency: American Propaganda and Public Diplomacy, 1945~1989*, Cambridge UP.

25) 미국은 1949년부터 홍콩의 난민 중에는 최소한 5만 이상의 과학자, 의사, 공정사, 교사 등 고등 직업인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추산하고 그 활용 가치에 주목했다. 1952년 난민법(Escape Program) 및 중국 학술인 원로계획에 따라 43만 달러 이상을 원조했고, 그 외 록펠러, 카네기 재단의 지원으로 별도의 민간조직인 '원로중국 지식인사협회'를 조직하고, 이들을 심리전 등 반공 활동에 투입했다[趙綺娜, 1997, 앞의 글].

요한 과제였다. 당시 홍콩에서는 1949년 부터 건국절마다 홍기(紅旗) 게양 문제 등을 둘러싸고 크고 작은 충돌이 일어나는 등 중공의 영향을 받은 대중들의 정치적 진출이 확대되고 있었다.²⁶⁾ 미국은 우선 반공반장(反共反蔣)을 표방한 정치 난민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좌파가 주도하고 있던 홍콩의 문화, 여론 영역을 주목했다. “홍콩의 도서 시장은 공산주의 서적으로 넘쳐나고 있다. …… 홍콩의 80%의 출판업자가 공산주의자였고, 5%만 반공적이었다”고 할 만큼 홍콩의 사회, 문화 환경은 친공적이기 때문이었다. 교사, 출판, 문화 영역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던 미국으로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다.²⁷⁾

26) 사실 중공은 1940년부터 이미 홍콩에 지하당을 운영하면서 언론과 문예 활동, 그리고 청년 조직 등을 통해 선전 활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1946년 중앙에서 직접 지하당 조직을 정비하고, 체계적인 활동을 전개했다. 1947년 6월에는 광둥, 광서, 복건, 호남, 운남, 귀주 등 6성의 업무를 관할하는 중공홍콩분국[中共香港分局]을 정식 조직하고, 도시공작위원회[港粵城市工作委員會], 농촌공작위원회[農村工作委員會] 등 몇 개의 기구를 두어, 각 도시(都市)활동과 교무(僑務), 통전(統戰), 문화(文化), 금융(金融), 경제(經濟) 등의 활동을 관리했다. 홍콩 분국의 일차적인 업무는 내전에 필요한 당 간부를 훈련·배출하고, 국내외적으로 반장반미(反蔣反美)의 통일전선을 선전·조직하는 일이었다. 여기에는 복간한 『正報』, 『華商報』나 『經濟導報』 등 신문, 잡지, 출판, 인쇄매체와, 학교 및 청년 조직이 동원되었다. 국민당 지역의 일반 대중 및 장제스[蔣介石]에 반대하는 민주인사, 그리고 서구 열강과 동남아 화교가 그 대상이었다. 중공은 특히 ‘남양 화교’를 매우 중시해서 이미 전쟁 중에 동남아 각지에 통전공작원(統戰工作員)을 파견하고, 또 『華商報』 등을 통해 항전 지원 모금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화교 대중을 조직화했다. 또 국민당 내외의 저명인사, 민주인사와 접촉하여 국민당혁명위원회나 민주당파가 주도한 민주동맹 홍콩위원회의 조직 활동을 추동하거나 또 대중들에게 영향이 큰 영화, 언론 문예 활동을 통해 대중을 조직화하기 시작했다.

전후 좌파 세력은 3만 명의 노동자를 용유한 항구공회연합회(港九工會聯合會)와 40, 50여 소의 부속 학교 그리고 연청가영단(聯靑歌詠團)과 같은 대중문화단체 등이었다. 홍콩 당국은 『49年社團條例』, 『反罷工法』, 『出境條例』 등을 통해 좌우를 막론하고 대중의 정치활동을 통제했다[周奕, 2009, 『香港左派鬭爭史』, 香港: 利迅出版社, 11, 30, 41쪽; 葉漢明·蔡寶瓊, 2001, 『植民地與文化霸權: 香港四十年代後期的中國共產主義運動』, 『中國文化研究所學報』 41; 陸恭惠, 2011, 앞의 책, 79~83쪽].

27) 당시 서점에는 친공 서적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대중적일 뿐 아니라 내전 승리에 따른 중공에 대한 관심 때문이었다. 『毛澤東全集』만 100만부가 팔릴 정도였다. 그 중에는 중공의 관점에서 시사 및 역사 문제를 해설한 것이 많았다. 한국전쟁에서 미군이 세균전을 사용했다든가, 미국 내 흑인문제, 노동자에 대한 착취 문제가 심

이에 따라 미국은 홍콩 주민을 경제 활동가, 상인, 학생과 교사, 주요 산업 노동자등 영역별로 나누어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여기에는 USIS가 직접 편집한 『今日世界』²⁸⁾ 외에도 『中國之聲』 등 중국어 잡지나 서적, 방송(Voice of America)이 활용되었다. 또 민간재단을 통한 지역 학자와 교육자의 지원, 초중등학교에서는 시청각 프로그램이나 잡지 등을 통한 접근이 이루어졌다.

물론 미국의 이러한 활동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1951~1952년間に 이미 반공출판물이 우후죽순으로 등장했으며, 충분치는 않지만 문화영역에서 어느 정도 독립적인 영역을 확보하기 시작했다. 상대적으로 좌파의 영향력은 축소되는 추세였다. 중공의 한국전쟁 개입에 따라 지원이 줄어든 탓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문화활동가'에 대한 미국의 공세적인 원조와 지원의 효과였다.

위원회 홍콩지부는 USIS 등이 주도하는 이러한 활동에 보조적으로 개입했다. 난민 학생을 수용하기 위해 학교 시설을 지원하고, 반공 문학과 영화를 보급했다.²⁹⁾ 또 『祖國週刊』, 『人生』 등 잡지와 함께 학생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각하다는 등의 반미의식을 고취하는 것도 많았기 때문에 미국은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했다. 중미편역사(Free Chinese Literary Inst.)를 세워 미국의 고전을 번역·보급한 것은 그러한 사례 가운데 하나였다[趙崎娜, 1997, 앞의 글].

28) 원래 1949년 12월 미국영사관신문처에서는 미국대사관의 선전물로서 『今日美國』을 발행하여 일반 신문판매처, 가판에서 무료로 배급했다. 별로 선전효과가 없다고 판단하고, 1952년부터 격주간으로 『今日世界』를 발행하기 시작했다. 1973년 5월부터 월간으로 바꾸어 1980년 12월까지 총 596기가 간행되었다. 또 동시에 미국의 고전을 번역한 『今日世界叢書』를 간행했다. 전자는 미국대사관신문처 출판조, 후자는 문화조에서 작업했다.

『今日世界』는 인쇄 질량에 비해 값은 매우 싼 편이어서 대중의 관심을 받았다. 1965년 최고 17만 5,000부까지 간행되어 당시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Life*, *Look*s 등과 쌍벽을 이룰 정도였다. 물론 배포범위는 매우 광범위해서 1956년의 경우 총 13만 1,500부를 간행하여 홍콩(1만 3,525부), 타이완(4만 2,000부), 쿠알라룸푸르(4,500부), 사이공(3만 부), 랑군(4,000부), 마닐라(6,000부) 등지에 보급했다[陳大敦, 2014, 12, 22, 「《今日世界》與我」, <http://www.freewebs.com/chentatun/works/career/todaysworld.html>].

29) Hong Kong Project Special Account - Expenditures, 1953. 3., Asia Foundation Records.

주요 업무였다. 또 심리전에 필요한 기본 정보를 파악하는 등 고급 지식인을 상대로 한 문화 작업도 수행했다. 1952년부터 홍콩 및 해외 고급 지식인의 정치적 배경과 동향을 조사 분석하고,³⁰⁾ 중미편역사(中美編譯社)³¹⁾를 인수하면서 정밀한 화교 접근 프로그램 개발들을 추진한 것이 그 예였다.

물론 이러한 업무와 자원은 이후 아시아재단의 활동에 그대로 계승되었다. 다만 이러한 업무는 예컨대 유사시 대륙에 대한 직접적인 침투 작전을 염두에 두고 오키나와에 군사 훈련학교를 설치한 것처럼, 중공의 붕괴 등을 가정한 즉 자적인 대응 수준이고, 그것도 심리전의 보조 작업의 일환이었을 뿐이었다. 보다 장기적인 전망을 위해서는 활동을 계획적이고 체계화할 필요가 있었다.³²⁾

실제 1952년 새로 집권한 아이젠하워(1952년 12월) 정권은 이러한 심리전 프로그램을 대폭 수정했다. 스탈린의 사망 이후 소련의 평화 공세 한국전쟁 종결 및 제네바회의, 반동회의 등 국제적인 정치 환경의 변화에 따라 중공과 공존을 전제로 한 장기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상 무력 해결이 무망(無望)해지면서, 문화를 매개로 한 심리전, 선전전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었다. 미국은 1만 5,000명 이상의 지식 난민들을 동남아에 배치하여 심리전에 투입하기 시작했지만³³⁾ 중공의 문화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심리전을 전개할 필요가 있었다.

30) HK-482, "Letter to Mr. Robert Blum," 1953, 12, 8; HK-313, "Letter to the President of CFA," 1953, 6, 13; HK-418, "Letter to the President of CFA," 1953, 10, 30, AFR 등.

31) 중미편역사는 친공 서적에 대항하기 위해, 미국의 지원하에 반공 서적을 번역 출판할 것을 목표로 결성된 것이었다. 丁文淵, 左舜生, 易君佐, 王聿修 등이 주도했다 [Memorandum Agreement, Free Chinese Literature Campaign of ARCI, Aug. 14, 1953, ARCI Papers, Box 170, Folder: ARCI Meeting Minutes and Agenda, 1952-3; Ting Wen-yuan to Judd, Sept. 10, 1953, ARCI Papers, Box 166, Folder: 166.4, ARCI Correspondence/General, 1953 July-December].

32) 1952~1953년 위원회의 활동 상황을 알 수 있는 예산서를 보면 교육(맹자재단 등), 학생(우련연구소), 문학, 소설, 영화 등으로 프로그램에 매월 3만~7만 달러를 지출했다.

33) 趙崎娜, 1997, 앞의 글.

이러한 맥락에서 위원회 홍콩 지부 역시 매년 선전의 목표와 방법을 계획하고, 워싱턴에서 승인받아 전략을 수립하는 등 업무를 체계화했다. 장기적으로 중공의 영향력을 축소하고 반공운동을 격려하며, 특히 동남아 화교들이 미국과 자유세계를 지지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에 따라 대륙, 화교, 홍콩인 등 대상에 따른 특화된 지역 계획을 수립했다. 위원회의 조직 형식 역시 아시아재단으로 개조되었다. 홍콩 지부장으로는 새로 브라운(Delmer M. Brown)³⁴⁾이 임명되면서, 재단은 기왕의 위원회의 활동을 바탕으로, 보다 전문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III. 프로그램 내용과 추이

1_ 초기 현실인식과 프로그램

아시아재단은 냉전의 진전에 대응하여 반공정책 강화를 목적으로 탄생했다. 특히 1954년과 1955년 제네바회담, 반동회의를 계기로, 중공의 국제적 위상이 제고되고, 동남아 지역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 확대되고 있다는 현실 인식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중국은 수년간의 내외적 위기와 한국전쟁 및 그에 따른 대중(對中) 금수(禁輸)조치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중국의 저항을 억지하는 데 실패했

34) 브라운(1925~2011)은 스탠퍼드대학교를 졸업했고, 일본에서 유학(1932~1938)했다. 2차 대전 당시 해군(하와이)에서 정보장교를 근무했다. 1946년 스탠퍼드대학교에서 박사학위(일본사)를 받고 버클리대학에서 일본사를 강의했다. 2011년 사망하기까지, *Cambridge History of Japan* 시리즈 총편집자로 활동했다. 1953~1955년 아시아재단 홍콩, 도쿄 대표를 지냈다. 저서는 *Nationalism in Japan*(1955) 등이 있다.

다. 국민 정부의 교란이 있었지만, 베이징 정부에 대항하는 어떤 지하 운동의 확산에도 실패했다. 다시 말해서, 오늘 공산 중국은 제네바회담을 주도하고, 아프로-아시안(Afro-Asian)회의(1955년 반동회의)³⁵⁾에서 두드러진 지위로 상징되듯이 세계의 주요 역량으로 우뚝 섰다는 것이다.

…… (그 결과는) 첫째, 중공은 과거 일제의 ‘대동아공영권’ 구호를 대신 하여 외국인 혐오증을 부추기면서 조직적으로 반서구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둘째, 중공은 반식민·반봉건사회론 따위를 들어 세계혁명사에서 소련과 함께 베이징(정권)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태국 등에 대한 지도자임을 선전할 가능성이 있다. 셋째, 화교사회에 대한 장악이 가시화될 것이다.³⁶⁾

동북아역사재단 이러한 인식에 따라 아시아재단은 홍콩을 중심으로 반공 선전 역량을 강화하고, 홍콩 및 동남아 지역에 대한 중공의 영향력을 저지하기 위한 사업을 설계했다. 이를 위해 먼저 두 가지 사전 조사를 실시했다. 첫째는 홍콩의 학생과 대중의 독서 성향, 주요 문화인의 정치 성향, 잡지 및 신문, 그리고 각 서점 및 인쇄, 출판, 도서 공급 체계와 정치 성향, 좌파 및 국민정부의 활동 동향을 조사했다. 간략하지만 기왕의 80여 종의 잡지 성향과 편집자, 발행부수 등에 대한 조사를 전제로, 좌우 역량을 비교한 사례는 작업의 성격을 잘 보여준다.

35) 반동회의는 1955년 봄에 21개국이 참여해 조직한 회의로, 제3세계 국가들이 미국의 반중 냉전조치를 포함하여 동맹국인 서유럽의 식민주의를 비판하고, 중국의 지역적 영향력을 확산했다는 점에서 중국 외교의 승리였다. 미국은 이를 국가안전사안으로 간주하고, 국내외 정보 관련 업무를 통합 조정 업무로 강화하기 위해 실무협력국(OCB)을 구성하는 등 해외 선전을 대폭 강화했다.

36) “Provisional Budget Estimate 1956/57,”(HK-1084, 3, 14, 1955) Administration, P-55, AFR.

〈표 1〉 친공(親共)·비공(非共) 잡지 비교(1956. 11)

영역 / 성향	친공	비공(Non Communist)	
		반공	상업성
화보	新中華書報(中華書局, 3,000), 幸福書報(10,000), 世界書報	亞洲書報(20,000 / HK 3,000), 良友(15,000), 小書報(12,000/HK 3,500), 中外書報(14,000)	東風書報, 新書報 (7,000)
아동	小朋友(中華書局, 4,000), 世界兒童(世界出版社, 4,000)	兒童樂園(38,000/HK 12,000)	兒童報
청소년	世界少年(6,000/HK 500), 青年樂園(6,000)	少年週刊, 中國學生週報(25,000/HK 8,700) 青年文友(5,000), 學友, 文學生活, 新青年	
영화	長城書報(長城影業, 20,000), 新電影(10,000), 中聯書報, 電影圈(10,000/HK 1,000)	國際電影(22,000), 亞洲書報	大觀書報, 影風 (10,000/HK 1,000)
경제	經濟導報	工商觀察	
교육	教師月刊(1,000)		
뉴스	週末報(25,000/HK 2,000)	新聞天地(2,500~3,000/HK 500)	
일반	海光(10,000), 知識(25,000)		
가정	家(2,000)	家庭良友(4,000/HK 1000), 家庭生活(2,000), 家庭週刊(2,500), 新家庭(5,000), 好家庭	
기타		人生(2,500/HK 500), 今日世界, 天文臺(6,000), 星島週報(7,000), 小說報(98,300/HK 6000/TW 18,000/사이공 15,000/싱가포르 4,000부 등), 勞工報, ³⁷⁾ 再生(200), 自由陣線, ³⁸⁾ 自由人(8000/HK 1,400/TW 4,000), 民主評論(1000/HK 500)	

* 조사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임.

* 국민당 직영지는 제외함.

* ()는 발행부수, HK는 총발행부수 중 홍콩에서의 유통량, TW는 타이완에서의 유통량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³⁷⁾ 아시아재단은 홍콩에서 간행되고 있던 영역별

37) 국민당계 잡지로, 총 2,500부를 간행하여 홍콩(500부)과 타이완(2,000부)에 보급했다.

유력 잡지들의 정치 배경과 성향을 친공과 비공(반공)으로 나누어³⁸⁾ 영향력을 비교했다. 특히 『小說報』, 『勞工報』, 『再生』, 『自由陣線』, 『自由人』 등은 각각 국민당, 민사당(民社黨), 중국청년당계 등의 정치 배경과 발행 부수, 유포 지역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조사했다. 중공의 문화선전에 대응하려는 기초작업이었다. 조사 결과 『兒童樂園』, 『中國學生週報』, 『青年文友』 등 아시아재단이 지원하는 몇 가지 잡지를 제외하면, 친공계 잡지의 우세가 두드러졌다. 교사 대상 잡지는 친공계인 『教師月刊』이 독주할 정도였다. 또 최근 13개월 동안 간행물 존폐 상황에 대한 조사는 더욱 그러했다. 친공 간행물은 폐간 또는 정간된 경우가 없지만 반공 잡지는 수종이 폐간되었다. 아시아재단은 이러한 상황을 중공의 조직적 개입의 결과로 해석했다.³⁹⁾ 따라서 아직 충분한 기초를 갖지 못한 비공 잡지를 지원, 부식하기 위한 계획이 필요했다.⁴⁰⁾

둘째는 동남아 화교사회에 대한 분석이었다. 아시아재단은 동남아의 화교사회가 중공의 직접적 영향하에 있으며, 그 핵심 매개는 곧 화교학교라고 파악했다. 또 전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지에서 전개된 화교들의 대중 운동 역시 중공의 조직적 영향에 따른 것으로 보았다. 예컨대 1954년 말레이시아에서 수천의 화교 학생들이 정부의 화교정책에 항의하여, 조직적으로 공산주의의 구호와 노래를 부르며 대륙으로 귀환한 사건이나, 1954년 5월 13일 싱가포르 당국의 의무복무제 시행에 중국 학생과 버스 노동자들이 격렬하게 항의한 사건 등은 모두 중공이 배후 조종한 결과라는 것이었다. 물론 그 핵심인 화교학교는 교사의 70% 이상이 친공 성향이며, 대부분이 대륙판 교과서를 사용하고

38) 자유출판사(自由出版社), 발행인은 謝澄平, 편집인은 柳惠, 羅明이다. 1,500부를 간행하지만 홍콩에 유통되는 양은 500이다. 주로 일본과 동남아에 유통되고 있다. 중국청년당 기관지로 당이 운영하는 남하철공창(南華鐵工廠), 서남중학(西南中學)의 후원을 받고 있다. 기타 평안서점(平安書店), 전풍인쇄창(田風印刷廠)도 당 기관이다.

39) “Memorandum: L.Z.’s Comments on “United Front” Activites”(SX-HK-198, 1956, 6. 28, AFR).

40) 물론 이 점은 아시아재단만이 아니었다. 예컨대 신아서원을 후원한 미국 NGO (Yale-China Association, Harvard-Yenching Institute, Ford Foundation)의 공통적인 생각이었다[Grace Ai-Ling Chou, 2011, pp. 59~60].

있는 상황이었다.⁴¹⁾ 그리고 이 역시 화교학교와 대륙의 전통적인 유대 탓도 있지만 중공의 적극적인 개입 결과로 해석했다.

이러한 인식에서는 화교학교 교사 및 학생에 대한 새로운 접근, 즉 그들을 대륙과 연계를 차단하고 자유주의로 포섭화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했다. 후술할 아시아재단의 모든 프로그램은 이처럼 지역 차원의 반공정책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었다.

1958년까지 아시아재단 홍콩 지부의 사업내역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아시아재단 홍콩 지부(AF HongKong) 각 연도 사업예산

구분	사업 번호	사업명	지원 액수(달러)				비고
			1954~1955	1955~1956	1956~1957	1957~1958	
청소년	101	맹자 장학금 ⁴²⁾	17,200	17,200	27,300	16,700	A
	102	맹자 학생 숙소 ⁴³⁾	6,200	6,700	7,800	7,800	A
	107	『中國學生週報』 ⁴⁴⁾	20,000	90,000	90,000	70,000	B
		편집위원회	5,600				A
		『大學生活』 ⁴⁵⁾	15,500				B
		108 『兒童樂園』 ⁴⁶⁾	16,600	16,000	5,000		B
		109 『青年文友』 ⁴⁷⁾		15,500	7,750	5,000	
		110 『少年週刊』	15,000	12,000	15,000	5,000	
		『兒童週刊』			9,000 ⁴⁸⁾		
		蕉風社			5,000		
		화교 장학금 등	15,000	12,000	15,000	15,000	
		청소년 훈련 등	12,800	12,800	8,500	11,000	
		소계	112,100	170,200	175,350	130,500	
교육자	201	맹자 교수 지원	15,500	25,500	29,500		A
	202	맹자 연합도서관 ⁴⁹⁾	13,300	10,000	10,000	10,000	A

41) "Quartely Activity Report," 7~9월, 1956, Budget, P55, AFR.

구분	사업 번호	사업명	지원 액수(달러)				비고		
			1954~1955	1955~1956	1956~1957	1957~1958			
청소년	교육자	203	교재 출판 기획 ⁵⁰⁾	2,700	15,000	5,000		A	
		205	신아서원 ⁵¹⁾	21,500	15,000	20,000	20,000	A	
			맹자교육재단 ⁵²⁾	3,200	7,000	8,700	8,700	A	
			맹자 대학교재 총서		25,800	10,000	15,000	A	
		212	교사 훈련, 협회 운영 ⁵³⁾	12,800			12,000		
		209	국제학교 등			9,000			
		소계		65,800	98,300	92,200	65,700	A	
			연합대학			350,000	30,000		
		소계				350,000	30,000		
사회 경제계	경제계	401	『工商觀察』		2,100	1,750	5,000		
		402	노동자 교육		4,500		8,000		
			『공상계』	3,000					
		소계		3,000	6,600	1,750	13,000		
	시민사회	501	청년회의소	3,400	3,000		2,500		
		502	유엔 프로그램	900	1,800				
		소계		4,300	4,800		2,500		
		문화계	603	우련연구소 ⁵⁴⁾	31,900	25,000	35,000	40,500	B
			604	『祖國週刊』 ⁵⁵⁾	15,900	15,000	18,500	12,000	B
			605	『人生』	4,200	4,200	4,000	4,000	
609	경제연구소(홍콩) 등				10,000	7,000			
607	우련 지역조직센터			52,000	82,500	10,000	B		
608	지역 간 교환 ⁵⁶⁾			12,000	8,000 ⁵⁷⁾	3,000	(b)		
	문예 전시회 등		500	3,500					
소계		52,500	111,700	155,900	76,500				

구분	사업 번호	사업명	자원 액수(달러)				비고	
			1954~1955	1955~1956	1956~1957	1957~1958		
Com- muni- cation Group	작가, 출판, 도서 유통업자	703	아주출판사 ⁵⁸⁾	99,000	80,000	61,200 ⁵⁹⁾	92,250	C
			자유작가연맹, Pan-Asia Proj. 등	114,200 ⁶⁰⁾	2,100	6,300	14,000	
		704	Aisa book com. 등	3,200		9,000	10,000	C
		704	교육 출판 기획		10,000	10,000		
		706	지역 간행물 배급	19,000	25,000	10,000		B
		707	『中國問題』		15,000	12,000 ⁶¹⁾		B
		710	China News Letter		8,000	5,000 ⁶²⁾		B
		711	PANA		22,000	8,000	28,500	B
		714	중국 렌센터				6,450	
		715	『自由人』			2,100	2,000	
		716	중화출판협회 / 홍콩 출 판 및 공급협회		15,000	15,000	65,000	
			중화출판사		20,000	15,000 ⁶³⁾		
			Chin. Newspaper for S/M			160,000		
			Asia News Agency			8,250		
			소계		235,400	197,100	332,200	218,200
	영화	801	아주촬영유한공사	69,000	68,300	18,000	45,000	C
			배급, 저널, 제작			63,000	22,000	C
		소계		69,000	68,300	82,000	67,000	
프로그램 개발		PD-1		21,000	5,600	40,000		
		소계		21,000	5,600	174,000		
총계				529,300	678,000	1,195,000	534,400	

출처: AF 각 연도 예산.

* 비고의 A는 연합대학(이후 중문대학), B는 우련연구소, C는 아주출판사.

우선 아시아재단의 사업 프로그램은 ‘반공’이라는 이념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련의 문화 사업을 기획했다. ‘구호를 외치고 투쟁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민들이 스스로 (자유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확신하도록 설득하는’ 것이었다. 화교 대상 사업 역시, 중공의 영향력 차단이 일차적인 목표였지만, 화교들을 프로그램 주체로 편입하고, 나아가 해당 국가의 다수 사람들과 화해시킴으로써 자유진영의 통합을 강화하려는 데 궁극적인 목표를 두었다.

- 42) 지도력과 학술적 자질을 갖춘 학생들에게 대학생활에 필요한 장학금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홍콩 내의 고등교육에 대한 잠재적 수요와 함께 아시아재단의 지역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보다 많은 화교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이 목표였다. 특히 1954년부터는 홍콩의 난민보다는 화교 학생들에게 지원을 집중했다. 화교 학생들에게 대륙에 대한 대안적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 것이다. 장학금의 운용은 9개 학원 교수로 구성되는 맹자재단에 의해 운영되었으며, 자체 기준에 따라 매년 200명 내외의 학생들을 선발하여 차등적으로 지급했다.
- 43) 대학생 다수가 난민임을 감안하여, 염가로 좋은 숙소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젝트였다. 1955년에는 6층 건물을 구입하여 수용 인원을 늘렸다. 특히 숙소에는 별도의 지도력 훈련 프로그램 및 맹자도서관을 함께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활동 중심을 형성하고자 했다.
- 44) 매기 1만 3,000부를 간행하여 3분의 2를 동남아 등 해외에서 소비했다.
- 45) 7,000부를 간행하지만, 4만 명의 독자를 가진 것으로 추산했다.
- 46) “아동의 마음에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초등학생용 잡지였다. 중국의 전통문화 가치와 인간 자유의 원칙에 따라 내용을 편성했다. 발행량은 1만 6,000부에서 시작하여 2만 5,000부, 3만 1,000부로 증가하는 추세였다. 1957년 이후 흑자를 낼 만큼 독점적인 점유율을 과시했다.
- 47) 격주간, 중학생용 잡지로서 홍콩 예수회사가 매기 1,000부씩 발행했다.
- 48) 초등 고학년과 중학교용으로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에 제공했다.
- 49) 근대 교육 이론에 따른 최신 교과서를 구비함으로써 교육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이었다. 교과서는 좋은 교육의 기본 전제인데, 당시 교재 부족은 심각한 상황이었다. 저명한 학자들로 교재개발 위원회를 구성하여 저술을 기획하거나 외국의 중요 교재와 참고서를 번역했다. 그리고 저술과 번역을 결합하여 당장의 수요에 맞춘 교재를 개발했다.
- 50) 화교학교용 교재개발 프로그램이다. 많은 화교학교에서는 좌파 조직이 생산 배급한 교재를 쓰고 있고, 또 교육 자료 및 보조 자료가 대륙의 노선에 따라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자유주의 원칙과 전통적인 중국인의 생활(물론 현지화된 형태이긴 하지만)을 반영한 교재를 생산하여 화교사회에 공급하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20명의 교사들에 의뢰해 44종의 교과서를 편찬하여, 태국과 인도네시아에 공급했다. 화교지역의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한 적합한 교재 개발이 목표였다.
- 51) 신아 인문총서 지원비.

사업은 청소년, 사회경제계, 그리고 사회소통 영역 등 접근 대상에 따라 설계되었다. 특히 학교와 학생, 문화계, 작가 그리고 영화계 등에 집중되었다.⁶⁴⁾ 그렇지만 거의 모든 사업은 연합대학(중문대학의 전신), 우련연구소 및 출판사, 아주출판사 등 세 기관을 통해 이루어졌다.

- 52) 1952년에 처음 조직되었다. 중국 고등교육의 수준과 질량을 제고하고, 학자와 학생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홍콩의 중국인 대학에서 활동과 교육 프로그램 조정. 12명의 저명학자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프로그램과 활동을 결정한다.
- 53) 해외 학교의 교사 부족 해소를 위한 교사 훈련 프로그램과 미국인 교사를 대학에 초청하여 영어교육(매월 400달러+여비)을 하려는 것이었다. 영어교육은 중국 젊은이가 미국의 지식인과 교류, 토론하는 과정에서 공산주의의 약점을 간파하고 자유주의 원칙 타당성을 강화하는 작용을 할 것이라는 것이 프로그램의 취지였다.
- 54) 우련연구소는 중국의 내부 정보 수집을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민간 사실 발견 그룹(non official fact finding group)이자 홍콩에서 가장 왕성하게 반공 독물(讀物)을 생산하는 중심이었다.
- 55) 2,000부 정도 발행했으나 매우 영향력이 커서 많은 기사들이 미국영사관이 자체 제작한 *Press Digest*나 *Hong Kong Standard*에 번역되어 게재될 정도였다.
- 56) 홍콩의 시민사회의 지도자에게 보다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홍콩 사회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 57) 홍콩 지역의 지도자를 해외 지역과 교환하는 프로그램이다.
- 58) 미국이 통제하는 '자유 중국 지역'에서 새로운 작가들을 지원하여, 중국 인민들을 위해 자유문학을 창작하고, 그를 통해 자유세계의 삶을 개발, 강화하려는 것이 목표였다. 아주출판사에는 저작 보험 체계를 구축하여 당시 이미 987명이 원고를 제출하여 200명이 저작료 보험에서 출판하기로 했고, 160종 이상이 출판 배급중이다. 아시아에서 비공산 출판물로서는 가장 수준이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매년 문학작품대회를 지원하고, 별도로 Asia News Agency 및 서점을 운영하는 등 공산주의자에 대항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다.
- 59) 4만 달러는 배급망 개선 비용이다.
- 60) 장국도(張國濤) 회고록 작성 비용이다. 자유의 소리 버턴(Robert Burton)에게는 매월 별도 보조비를 주었다.
- 61) 홍콩에서 정보를 수집하여 해외의 독자에 전달하고 있다.
- 62) 미국식 기준에 맞는 뉴스 제공 잡지다.
- 63) 출판협회와 협조하여 신문, 책, 잡지로 나누어 저널리즘학, 인쇄기술, 출판기획 및 경영으로 나누어 출판사업을 키울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출판계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고 자유주의 세계의 출판업을 강화하고자 했다.
- 64) 상대적으로 공상계, 노동계 등 조직화된 대중세력에 대한 접근은 미흡했다. 이는 애초의 의도라기보다는 해당영역에서는 좌파가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접근이 쉽지 않은 까닭이었다. 실제 아시아재단은 홍콩 당국의 엄호하에 교사나 노동자, 그리고 공상계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도모했으나 여의치 못했다. 다만 유일한 독서층이었

첫째, 연합대학 관련 프로그램은 홍콩에 수준 높은 고등교육기관을 구축하여, 홍콩의 난민뿐 아니라, 고등교육을 받기 위해 대륙으로 귀환하는 동남아 화교 학생들을 흡입하려는 것이 취지였다. 이를 위해 우선 홍콩의 9개 고등교육기관을 통폐합하여 종합대학으로 재편하고자 했다. 먼저 승기서원(崇基書院), 신아서원(新亞書院), 연합서원(聯合書院)의 대표들로 준비위를 구성하고 학사운영, 교육과정 등의 표준화 등 통합 논의를 진행하도록 운영비와 대학 시설, 교수 충원 비용 등을 지원했다. 또 학교의 질을 높이고, 난민 및 해외 화교 학생들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장학금, 숙소, 교원 연수, 교재 개발을 추진하고 도서관을 확충했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미국식 대학 체제와 교육과정, 교재의 이식이 수반되었다. 또 아시아재단은 연합대학의 교수들로 별도의 교재개발위원회를 구성하고, 중국의 전통과 지역성을 고려한 화교학공용 교재를 편찬하여 보급했다. 그 외 인문학 중심의 신아연구소, 신아서원에 대해서는 문화강좌를 통한 지식사회의 조직화를 꾀하는 한편, 홍콩 및 화교학교 교사양성 프로그램⁶⁵⁾을 진행했다.

둘째, 1951년부터 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창립된 우련출판사는 공산중국의 실상을 정확하게 정리하여 보급함으로써 자유세계의 반공 의식을 강화하려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우련은 아시아재단의 지원을 받아 활동한 문화단체로서⁶⁶⁾ 대

던 학생층에 대한 접근만 쉽게 성공한 셈이었다[何振亞 등, 2014, 『香港文化衆聲道』, 香港: 三聯書店, 24~25쪽].

65) 新亞書院, 1956, 『新亞書院發展計劃』.

66) 우련출판사는 1951년 후위예[胡越], 천쭈어성[陳濯生], 쉬동빈[徐東濱] 등이 창설했다. 표면상 문화출판기구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정치기구로서, '중국청년민주동맹'이라는 비밀 정치조직이 그 실체였다. 주석은 후위예, 비서장은 쉬동빈이었다. 내부에 상무위원회를 두고 조직, 선전, 문교, 재정부 등을 설치했다. 매일 정례회의를 갖고 활동방향을 논의했다. 주목할 점은 조직원의 대부분을 신아서원의 학생으로 충원했다는 점이다. 산하의 우련연구소는 이후 포드재단의 지원을 받았지만 거의 전적으로 아시아재단의 지원에 의존하여 운영되었다. 이는 신아서원이 상대적으로 Yale-China Association, Harvard-Yenching Institute, 그리고 포드재단과 장제스의 지원 등 다양한 재원의 지원을 받았던 것과 대조된다[司法行政調查統計局第六條, 『中國黨派資料輯要』(臺北: 불상), 中冊, 266, 273쪽; 區志堅·候勵英, 2001, 「香港浸會大學圖書館友聯資料介紹」, 『近代中國研究通訊』 32].

록 관련 정보를 수집·정리하고, 다양한 잡지를 간행하여 홍콩 및 화교사회에 보급했다.⁶⁷⁾ 활동 방향은 크게 두 가지였다. 하나는 우련연구소와 『祖國』 잡지를 중심으로, 대륙 및 동남아, 타이완, 홍콩에 대한 정보를 수집, 정리, 분석하고, 보도하는 일이었다. 특히 대륙 사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중공의 위해성을 사실적으로 설명함으로써 반공 구국의 결심을 갖게 하는 것이 목표였다. 특히 대륙의 각종 신문과 방송에서 절발(切拔)한 자료 및 그에 기초한 분석기사로 구성된 『祖國』 잡지는 중공에 관한 정보로서는 독보적인 가치를 인정받았다. 이 때문에 미국 각 대학도서관은 물론 서방사회에 대륙에 대한 보도의 주요 뉴스원으로 인용될 정도였다. 두 번째는 『中國學生週報』를 통한 학생의 조직화였다. 『주보』는 애초 학생문예물로 출발한 것이지만, 중학생들에게 독보적인 영향력을 확보했다. 그것은 『주보』가 단순한 독서물을 제공하는 데 그친 것이

67) 아시아재단의 출판 지원 간행물

잡지명	출판사	발행량
祖國週刊	友聯出版社	5,000
兒童樂園	友聯出版社	35,000
中國學生週報	友聯出版社	30,000
蕉風(격주간)	友聯出版社	미상
大學生活(월간)	友聯出版社	1,500
中共叢書	友聯研究所	-
自由兒童	高原出版社	5,000
少年週刊	高原出版社	미상
工商觀察	工商觀察社	3,000
自由人	自由人社	3,000
亞洲叢報	亞洲出版社	25,000
青年文友	青年文友社	4,000
孟子圖書館季刊	-	-
新亞季刊	新亞研究所	-
China News A	Father LaDarney	-
Free China Fortnightly	-	5,000
觀察	말레이시아	-

아니라, 학교별 지역별 통신원제도, 연극, 문예대회 등 학생 문화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조직 사업을 꾀했기 때문이었다.⁶⁸⁾ 우련은 이러한 과정에서 다양한 청년 지도자를 육성하고, 화교지역까지 조직적 영향력을 확대했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에까지 분사(分社)를 두고 도서 보급 및 청소년 조직센터를 운영했으며, 화교사회를 겨냥한 지도자 교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물론 미래 세대의 지도자 자격을 갖춘 활동가들은 다시 총부인 샌프란시스코에 소집해 지도자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했다.⁶⁹⁾ 또 1955년에는 아시아재단 도쿄지부의 요청으로, 일본 지식계의 친중공 분위기 쇠퇴를 위해 대표 3인을 파견했다. 지식계와의 교류는 큰 성과를 보지는 못했지만, 신아서원과 일본의 아세아대학을 연결하는 학술문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했다.⁷⁰⁾ 홍콩에서의 문화운동과 동남아의 화교 및 일본을 긴밀하게 결합했으니 아시아재단의 프로그램 중 가장 성과가 두드러진 것이었다.

셋째, 아주출판사에 대한 지원이었다. 아주출판사는 작문, 출판, 공급, 서

- 68) 중국학생주보사(中國學生週報社)에 대한 지원은 1955년부터 대폭 증대되었는데, 여기에는 단순한 잡지 간행만이 아니라 홍콩 및 화교사회의 학생조직활동이 포함 된 것이었다. 중국학생주보사는 에세이 테스트, 연극, 크리스마스 파티, 우표수집 대회, 사진 전시, 학생-작가 토론회, 농구대항전, 또 우표 수집회, 연극회, 사진클럽, 학생대출도서관 등 각종 활동과 각 학교에 통신원을 두는 방식으로 조직을 확대했다. 또 같은 방식으로 해외 화교 학생의 활동 조직에도 핵심적인 작용을 했다. 잡지는 홍콩·마카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마얀마판 등 4종을 출판했다.
- 69) 씨회의장[奚會璋]의 회고처럼 여름에 말레이시아에서 1개월 정도씩 생활영(生活營)을 마련하고 지도자 훈련과정을 운영했다. 또 그 대표들은 다시 미국 국무부의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하여 아시아 각국의 청년 활동가로 구성되는 3개월 정도의 국제청년리더회의에 참가하는 방식이었다. 회의는 활동 경험을 서로 교환하는 것이 중점이었지만 부대일정으로 미국의 각지를 시찰하고, 부통령 닉슨 등 요인을 면담했다. 홍콩으로 돌아올 때에는 미국총영사 매카시(Richard M. McCarthy)까지 공항에 나와 영접했고, 활동 전문가로 대우했다[何振亞 등, 2014, 앞의 책, 57~59쪽].
- 70) 일본 아세아대학은 전전의 아시아주의자들이 세운 흥아전문학교를 계승한 대학이란 점에서 홍콩 신아서원과 교류는 냉전시기 미국의 문화원조정책의 성격의 일단을 보여준다[李培德, 2011, 11, 「亞洲主義在冷戰時代的香港和日本: 以錢穆創辦新亞書院和太田耕造創辦亞細亞大學比較」, 『東亞歷史上區域間的認識與互動國際學術研討會』 발표 요지].

적소매, 제한된 뉴스 서비스와 정기간행물 발간 등을 수행하는 문화 복합체였다. 본래는 자유출판사에서 시작하여, 1952년 장귀썩(張國興)이 역시 미국의 포드기금의 지원을 받아 독립한 출판사였다. 아주출판사에 대한 지원사업은 기본적으로 동남아를 포함한 중화권의 대중들에게 반공 자유주의 독서물을 제공하는 데 있었다. 초기 미국 고전을 번역하는 수준을 넘어 장아이링(張愛玲) 등 월남한 인기 작가나 다양한 작가를 발굴하여 창작, 번역활동 및 출판을 지원했다. 독자적으로 『문학세계』를 출판하고 문학상도 제정했다.⁷¹⁾ 지원 대상은 순수한 문학작품 형식도 있지만 재단과 공동 제작하거나 미국대사관 신문처의 의뢰를 받아 출판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렇지만 당시 좌파가 우세한 문학계 상황에서, 높은 원고료를 동원한 아시아재단의 지원은 그 자체로 문학계를 재편할 만큼 큰 영향을 미쳤다.

그 외 아주촬영유한공사(亞洲影業有限公社)를 통한 영화의 제작 및 보급 역시 아시아재단의 중요한 문화 프로그램이었다. 영화 매체의 문화적 영향력은 새삼 논할 필요가 없겠지만, 아시아재단은 미국 대사관의 신문처와 함께 독자적인 스튜디오와 영상기를 보급하고, 보통화로 된 반공영화와 순수 문예영화를 제작함으로써 역시 좌파가 지배적인 영화계의 판도를 변화시켰다. 또 이를 바탕으로 아시아재단은 한국, 일본, 타이완, 홍콩,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아시아 9개국에 참가하는 아시아 영화제(제1회는 도쿄, 2회는 홍콩)의 창설과 개최를 지원했다. 이후 홍콩이 아시아의 영화 중심지로 부상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

아시아재단은 이상의 사업을 위해 매년 50만 달러 이상의 거액을 투입했다. 냉전시기 지역전략의 또 다른 중심이었던 일본 지부에 대한 지원액과 맞먹는 액수로 한국이나 타이완 지부의 연 평균 지원액이 20만 달러 내외였고, 또 타이완의 지원 대상 역시 중앙연구원 등 연구기관에 집중했던 경우와는 여러

71) 王梅香, 2005, 「不爲認知的張愛玲：美國新聞處譯書計畫下的『秧歌』與『赤地之戀』」, 『歐美研究季刊』 45-1.

가지 점에서 대조되는 측면이 있다.⁷²⁾ 그것은 먼저 반공의 주체로서 국민 정부와 같은 정치조직이 존재하지 않는 홍콩의 사정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홍콩에 대한 각종 지원 프로그램이 시종 홍콩만이 아니라 미국이 지역전략으로 구상한 동남아 지역과의 연계 속에서 진행되었다는 점은 기억할 필요가 있다.

2_ 프로그램의 전환

1960년부터 아시아재단 홍콩 지부는 상당한 정도의 프로그램 전환을 시도했다. 중소분쟁 등 냉전 국면의 전환, 1957년 홍콩 내의 좌우 충돌 이후 홍콩 군사적 방어에 대한 미국의 주도권 확보, 그리고 홍콩의 경제적 성장과 그에 따른 사회적 안정 등이 배경이었을 것이다. 특히 대약진 실패 이후 대량의 난민이 발생하는 중공의 현실은 이러한 판단을 강화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시아재단은 홍콩에서 시민들의 정체성이 강화되고 중공 및 좌파의 위협이 줄어들고 있다고 판단했다.

자유도시로서 홍콩의 최근 활발한 경제 동향과 산업 발전은 영국 정부 뿐 아니라, 주변 공산주의 국가를 당황하게 하고 있다. 이를 통해 홍콩은 기초적인 상업공간을 통해 화교들의 상상력을 사로잡기 시작했다. 홍콩의 점증하는 중화 공동체로서의 자각과 함께, 이 빠르고 인상적인 경제 성장은 새로운 다른 최근의 발전을 수반했다.⁷³⁾

72) 불완전한 통계지만, 1957년 아시아재단 홍콩 지부가 작성한 메모는 그해 사업비로 홍콩 59만 달러, 일본 63만 4,000 달러, 한국 24만 5,000달러, 류큐 20만 달러, 타이완 20만 달러 수준이었다. 물론 미국의 원조 총액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단 NGO의 지원 총액과 경제, 군사원조의 총액을 함께 비교해야 할 것이다.[James Ivy, 1957. 3. 15, "Proposed Contry Budget" attached in "The Letter to Asia Fourtation Representative"(SX-HK-77, P55, AFR); 官有垣, 2004, 『半世紀 耕耘: 美國亞洲基金會與臺灣社會發展』, 臺灣亞洲基金會, 32~33쪽, 41쪽; 王世榕, 1997, 『第三部門: 美國亞洲基金會與臺灣』, 高雄: 亞太綜合研究院, 62~63쪽].

73) "Hong Kong Program Budget 1961," 1962, AFR.

아시아재단은 또한 '한두 명의 비공산 그룹과 대표성 없는 개인' 영국의 식민통치에 대해서 자치를 요구하는 수준에 불과하고, 중공 역시 경제위기 속에서 공연, 예술 등 문화수출을 통한 문화공세에 치중하는 정도여서, 홍콩에서 좌파의 위협은 현저히 감소했다고 진단했다. 또 상대적으로 대륙과 구별되는 자유주의 체제로서 홍콩의 시민의식도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화교사회보다는 직접적으로 홍콩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특히 사업방식 역시 연구기능 및 공동체 의식을 심화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증강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이러한 배경에는 홍콩과 화교사회의 관계 변화도 직접 작용했다. 그것은 1950년대 말부터 동남아 국가들의 국민주의가 강화되면서 사업을 매개로 한 홍콩과 화교권과의 연계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싱가포르, 인도네시아는 물론 베트남 역시 타이완과 외교 갈등을 불사하면서까지 화교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고, 특히 화교학교를 국민교육체제로 편입하고 적극적인 국민화 정책을 실행했다. 같은 맥락에서 홍콩 아시아재단의 화교 업무를 조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미 총부에서 제기된 바 있었다. 화교교육 등을 매개로 홍콩과 동남아를 연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편한 상황이 되었던 셈이다.

이에 따라 홍콩은 더 이상 동남아에 대한 반공 활동의 중심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우위를 상징하는 전시적 공간으로 재인식되었다. 홍콩은 자유주의 진영의 발전을 상징하는 역할로 제한되었다. 또 이처럼 동남아와 연계성보다는 홍콩의 독립성이 강조되면서 홍콩 시민을 형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었다. 아시아재단이 정리한 사업의 취지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베이징의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홍콩의 교육, 시민, 경제기구 건설을 통해 안정과 번영에 기여한다.
2. 홍콩의 난민들에게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3. 건설적인 청년과 학생 지도력을 창출하고, 청년과 학생을 포함한 사회문제를 충족할 수 있는 지역조직과 기구를 지원한다.
4. 아시아, 국제적인 문화, 학술, 전문적인 활동을 도와서 홍콩이 식민지와 해외에서 홍콩의 기여가 인식될 수 있도록 추동한다.
5. 홍콩 밖의 화교들에 대해서는 아시아재단은 조직과 학교, 정간물을

통해, 자유사회의 전통과 실재를 강화하여, 중공의 영향력에 저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해외 화교는 현지의 조건 변화에 적응하여 국가에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변화된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표 3> 같다.⁷⁴⁾ <표 3>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전체적인 지원액은 다소 줄었지만 큰 변화가 없다. 그렇지만 프로그램의 틀을 교육, 연구, 경제, 과학, 시민사회 등 프로그램의 내용 중심으로 재편했다. 화교사회에 대한 사업을 없애고, 대신 홍콩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강화했다. 입안된 사업내역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교육 영역이다. 크게 두 가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문대학 주비처 및 맹자재단 지원을 통한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이고, 다른 하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홍콩 교육의 지속적인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 프로그램이다. 중문대학은 홍콩이 전시적 성격을 감안해서도 필요한 일이었다. 주비처 운영비와 교수 초빙비용을 지원하고, 맹자재단을 통해 학자 및 학생교류, 기숙사, 도서관, 교육 프로그램 및 교과서 개발 등을 추진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 외 교수와 교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활동, 시민 양성을 위한 영어교육을 지원했다. 『人生』, 『民主評論』 등 신아서원의 교수 중심의 잡지 간행을 장려하고, ‘베이징’의 대안이 될 수 있도록 홍콩의 교육 수준을 제고하고자 했다.

74) “Hong Kong Program Budget 1961,” 1962, AFR.

75) 부두노동자, 여행가이드, 백화점, 판매원 등 영어 지식이 없어서 자신의 생활을 개선할 수 없는 많은 노동자들에게 염가로 영어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홍콩의 젊은 중국인들에게 높은 수준의 훈련기회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고용을 찾도록 도와서 결과적으로 홍콩 사회의 안정에 기여할 것을 목표로 했다.

76) 주비처 대표 3인이 홍콩 정부의 승인을 받는 연합대학을 건설하기로 합의했다. 연합 학원은 상과대학을 중점 육성할 계획에 따라 미국에서 활동하는 중국인 교수의 초빙 비용을 지원하고, 신아서원에 대해서는 연구활동을 통한 교사의 질 향상 프로그램과 마이크로필름 등 장비 구입과 미국 대학의 교류비 지원 내용이다.

77) 교사 협회 성원은 5,671명으로 홍콩의 모든 교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다. 의료장비구입 및 교사들의 국제회의 참가비를 지원했다.

78) 1960년 하버드 경영자 프로그램을 이어서 스탠퍼드 경영 프로그램을 교육했다.

〈표 3〉 아시아재단 사업계획서(1960~1961)

구분	기관	지원액(달러)	내용
교육	맹자재단	94,000	학자 및 학생 교류, 기숙사, 도서관, 교육 프로그램 및 교과서 개발 등
	홍콩대학	3,000	소년 노동자를 위한 저가 영어교실 운영 ⁷⁵⁾
	중문대학 주비처 ⁷⁶⁾ 등	35,500	
	『人生』	4,000	2,700부
	『民主評論』	4,000	문화사상과 교육이론, 학술 논평 및 시사평론을 통해 교사들의 자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목적에 따라 3,600부씩 간행
	홍콩교육연구위원회	6,500	베이징의 대안으로서 홍콩의 교육 수준 제고 방안 연구
	홍콩교사협회 ⁷⁷⁾ 등	14,000	
합계		61,000달러	
경제	홍콩 경영자협회 ⁷⁸⁾	4,000	기관운영비 및 홍콩 소산업 경영자를 위한 선진경영 프로그램 교육
	홍콩대학	6,000	경영자 프로그램 운영(미국교수 초빙비용 포함)
	홍콩경제연합회	4,000	경제 간행물 발간
	홍콩산업연맹	20,000	
	기타 예비비	6,000	
합계		400,000달러	
연구	우련연구소	30,000	재단의 주문연구 수행
	맹자연구 서비스센터	5,000	연구 및 방문학자 프로그램 운영비
	근대중국연구소	13,000	당대 중국에 대한 연구 및 총서 간행
	예비비	6,000	
합계		54,000달러	
시민사회	승기학원	4,500	사회운동자 육성(해외 방문 등)
	중국학생사	63,000	홍콩과 지우둥지역 학생의 활동
	기독교학생센터	6,000	중등학교 졸업생들의 진로지도
	보이스카우트 등	10,000	
	학생주간	48,000	청년잡지의 영업 확장 촉구
	『青年文友』	4,000	출판비

구분	기관	지원액(달러)	내용
시민사회	중국펜센터	3,000	『도서세계』 출판비
	홍콩문예협회	4,000	
		3,000	시민사회 및 학생운동 지도자의 연수 등 여비
	『祖國週刊』	5,000	월 6,000부
	亞洲出版社	20,000	반공 서적 출판비
	예비비	6,000	
합계		141,000달러	
과학	홍콩과학발전연구소	17,000	홍콩의 과학 발전 활동 및 과학영화, 세미나, 팸플릿, 도서출판, 과학대회, 과학저널, 과학교육 등 과학 대중화 프로그램
	홍콩전문학원	8,000	연구와 교육을 위한 장비 구입
	여비	3,000	과학자의 해외 연구
	예비비	6,000	
합계		34,000달러	
총액	430,000		

둘째는 경제 영역이었다. 이는 홍콩 경제 자체를 개발하기보다는 홍콩 경제가 공산주의자의 위협 등 여러 원인으로 인해 불황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였다. 이를 위해 자유기업체제의 강화 및 확장, 선진적인 경영기법을 소개하고 홍콩 경제의 약점 등을 연구했다. 특히 하버드, 스탠퍼드 등의 경영자 프로그램을 직수입한 것은 홍콩의 자본가 및 공상업자를 미국식 자유기업체제로 통합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셋째는 연구 기능의 강화 프로그램이다. 냉전이 본격화될수록 중공에 대한 연구는 더욱 필요했다. 아시아재단은 기왕의 우련연구소를 통한 중공 연구를 크게 변경했다. 우련연구소는 전문적인 자료 제공 역할로 한정하고, 새로 홍콩 대학에 근대중국연구소를 개설하여 당대 중국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연구총서를 출판하게 했다. 우련연구소는 아시아재단의 지원하에 계속해서 대륙 출

판의 신문잡지의 색인화 및 마이크로필름화 작업을 진행했다.⁷⁹⁾ 그러나 우련 연구소의 입장에서는 해외사업이 축소되고, 특히 중국학생주보 역시 홍콩으로 활동영역이 제한되면서 기구 축소가 불가피했다.

기타 시민사회와 과학 영역은 미래세대 홍콩의 시민 형성과 홍콩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과학의 대중화 프로그램이었다. 특히 과학프로그램은 별도의 연구소를 세워 “교류 등을 통해 대륙의 학술 간행물과 문서들을 습득하여, 홍콩에서 가능한 한 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영어로 번역하여 제공할 것, 또 이 연구기구는 학술지 간행과 청소년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통해 과학 활동을 제고하고, 대중화하는 활동을 할” 계획이었다.

이상을 종합하면, 1960년대 아시아재단 홍콩 지부의 사업 목표는 자유주의 진영의 상징적인 도시로서 성장을 꾀했고, 그를 위한 지속적인 성장과 미래 사회의 주체로서 시민의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이 기획되었다. 미국의 지역 인식 역시 반중국의 블록이 아니라 개별 국가 단위로서의 동아시아가 모색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IV. 전망: 아시아에서 홍콩의 위치

아시아재단이 이러한 목적과 프로그램을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동아시아 세계는 어떤 것이었을까? 그리고 그 속에서 홍콩은 어떤 위상을 차지할 수 있을까? 이를 해명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이 작동하는 방식, 특히 아시아재단과 대항체인 우련 또는 아주출판사와의 관계를 먼저 해명할 필요가 있겠다. 우선 가장

79) 이는 미국의 지원하에 세계적인 중국학 연구 및 훈련기관으로 재편된 타이완 중앙연구원 근대사연구소의 사례와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 미국 학술 패권 구축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문제일 것이다.

많은 사업을 대항한 우련과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알다시피 아시아재단의 모든 프로그램은 원칙적으로 홍콩 지부에서 연간 사업 및 예산 계획을 세워 샌프란시스코 총부의 승인을 얻어야 운용될 수 있는 구조였다. 당연히 홍콩 지부는 샌프란시스코 본부의 지휘와 감독을 받았다. 홍콩 지부는 예산계획 외에도 주요 사업의 진행 상황을 수시로 본부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했다.⁸⁰⁾ 특히 지원한 결과물은 출판 즉시 본부에 보내 평가를 받아야 했다.⁸¹⁾ 당연히 양자가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지부에 대한 본부의 지휘와 감독권은 절대적이었다.

한편 지부의 프로그램은 우련연구소 대항기관의 건의와 계약에 따라 이루어졌다.⁸²⁾ 특히 우련 역시 연초 사업 및 예산 계획을 세워 지부의 승인을 얻어야 했다. 후자의 감독과 지휘가 수반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더욱이 후자의 운영이 전적으로 아시아재단의 후원에 의존하는 한 당연한 일이었다. 우련 대표와 아시아재단 대표간의 사업 계약서는 이러한 관계를 잘 상징하고 있다. 대개 계약의 내용은 우련출판사의 활동에 대해 아시아재단이 재정 지원을 약속하는 것이지만, 이 경우 재단은 소정의 경비 지급 의무 대신, 사업의 목적이나 예상한 성적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반면 우련 측은 사업 이행과 함께, 예컨대 간행물의 내용과 질, 연구소의 건전한 운용 및 매월 정기적인 사업 경과의 보고 등 5종 이상의 의무가 부가 되었다.⁸³⁾

80) 「Memorandum: Effect of Communist “United Front” Activites on Free World Publication」(HK540, 1956. 11. 28); 「Memorandum: L.Z.’s Comments on “United Front” Activites」(SX-HK-198, 1956. 6. 28).

81) “To The President The Asia Foundation”(HK896, 1954. 11. 30).

82) 何振亞 등, 앞의 책, 66~67쪽.

83) “Agerment”(1957. 10. 14) 『조국』 주간 대표 胡永祥, 아시아재단 홍콩 대표 아이비(James T. Ivy) 간의 계약, 陳思明(『조국』 주간사 대표)와 아이비간의 계약서도 같은 내용이다. 『조국』 주간 대표 胡永祥, 아시아재단 홍콩 대표 James T Ivy간의 계약을 요약하면, B(재단)가 매월 보조금을 지불하고 A(『조국』 주간)는 그에 따라 매월 영수증과 함께 사업경과와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B는 언제라도 보조금 지급 취지에 어긋나거나 『조국』 주간 잡지가 목표달성에 미흡하다고 생각하면, 보조금 지급을 중단할 권리가 있다. 대신 A는 『조국』 주간이 화교사회의 지식인 사회에 자유와 정의의 원칙을 강화하고 확장할 수 있는 사실, 사고, 이론, 결론들이 확산,

그나마 1955년부터는 월별 계약에서 분기별 계약으로 바뀌었으나, 우련의 재정 및 운영에 대한 아시아재단의 절대적 감독권은 부인할 수 없었다. 실제 아시아재단은 우련의 재정 상황 및 조직 운영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했으며, 그에 따라 지원액을 가감하거나 투명한 조직 운영을 요구하고 있었다.⁸⁴⁾

당연하지만 이러한 체계 속에서 우련 등의 활동은 일체 미국의 외교정책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었다. 특히 우련은 독자적인 정치 조직을 지향했고, 주도 인물 자체가 타이완 민주화 운동의 상징인 뇌이첸(雷震)과 관계가 깊었지만, 중미관계는 물론 장제스의 독재 등 현안에 대한 비판은 문제가 되었다.⁸⁵⁾ 예컨대 1957년 5월, 무고한 타이완인을 살해한 미국 상사 레이놀즈(Robert G. Reynolds)에 대한 타이완 시민들의 항의문제와 관련한 상황들은 이를 잘 대변한다. 『祖國』 주간은 이에 대해 “중국인의 항의는 정당하지만 불법적인 태두리 내에서 해야 한다”는 논지를 전제로 “레이놀즈에 대한 미국 법원의 무죄 판결은 잘못된 것으로, 최소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야” 하며, 재판을 다시 할 것을 요구했다.

“미국은 타이완에서 면책특권을 누리면서, 우방을 존중하지만 살인범을 변호할 권한은 없다. 중국인의 목숨을 초개처럼 경시하는 일은 참을 수 없다. 중국 인민이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다. …… 미국은 법치국가이며 인권을 존중하고 정의를 수호한다. 미국 정부의 맹방에 대한 태도나 미국 인민의 기타 국가 인민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는 칭찬할 만하다. 그런데 왕왕 해외에 주둔하는 인원들이 교만하고, 야만스러워서 소수 우매자가 미국의 위신을 깎아내리는 경

소통되는 데 좀 더 배전의 노력해야 하며, 멀지 않은 장래에 재정적 자립을 이룰 수 있을 만큼 독자를 늘려야 하며, A는 잡지의 효율과 질을 제고하기 위해 B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84) 예컨대 1957년 8월의 경우 우련의 수입은 정기간행물 등의 판매와 뉴스 제공에 따른 자체 수입 총 36만 3,000홍콩 달러로 재단의 지원금 10만 6,000홍콩 달러를 초과하는 액수였다[“L. Z. Yuan to the Representative of HK”(1957. 8. 22); “To The President, The AF” UP Leadership, 1957. 8. 3, HK-326, File: MIDEA Publisher/UP, Hong Kong, Program, Box 57].

85) “The Record,” 1957. 2. 27, HK-326, File: MIDEA Publisher/UP, Hong Kong, Program, Box 57.

우가 있다. 이는 자유진영의 단결을 저해하고, 법치 입국 정신에 위배된다”⁸⁶⁾는 것이었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의 총부는 홍콩 USIS와 CIA의 정보를 근거로 『조국』 주간 기사 나오기도 전에 지부에 확인을 지시했다. 특히 기사가 나온 당일 『조국』 주간 대표의 쉬동빈에 대한 해명과 『조국』의 기사는 홍콩인 대다수의 감정을 매우 정확하게 표현한 것으로, 타이완의 폭력시위 양상을 개탄하면서도 객관적 입장을 견지했고, 이미 총영사와 정보국에 통지하여 문제없이 해결되었다는 아이비(I. Ivy)의 석명(釋明)에도 불구하고⁸⁷⁾ 총부는 이를 지속적으로 문제 삼았다. 총부는 장제스에 대한 우련의 비판이 우방 간의 우의를 해치고 따라서 반공 역량의 단결에 위해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한 총부의 조치는 우련의 운영 실태에 대한 수차례의 감사⁸⁸⁾와 『조국』 주간에 대한 경비 삭감이었다.⁸⁹⁾

또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련연구소의 기능 역시 제한되었다. 이후 『祖國』은 이후에도 장제스의 연임문제나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의 선거문제 등을 비판적으로 다루었으나, 1960년 타이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의 현실정치를 비판할 수 없다는 것을 계약조건으로 제시했다.

또 우련의 기능 역시 자체의 필요에 따른 연구보다는 미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와 정보의 제공업무로 제한했다. 우련은 대륙에서 출판된 신문, 잡지

86) 「一個嚴重的考驗」, 『祖國週刊』 18-9, 1957. 5. 27.

87) “To The President, The Asia Foundation: China Weekly Editorial Comment on the Anti-American Riots in Taipei,” 1957. 6. 3, HK-217, File: Media Publication China Weekly, Program, Hong-Kong Bos 604.

88) 「본부에 보내는 서신: S. Y. Kong의 우련 관련 보고서」, 1959. 3. 18, HK-127; 「본부에 보내는 서신: Patric Judge」, 1959. 3. 4, HK-101; 전자의 내용은 우련에서는 17종의 신문과 195종의 잡지, 색인작업을 했지만 자료의 중복이 심하고, 분류가 너무 파편적이어서 문제가 많다는 것 등이었고, 후자는 “이들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타이완에 대한 비판에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또 그 비판은 적에게 이용당할 뿐 아니라 우리 정책 시행에 장애가 되는 것”이라는 것이었다.

89) 「Jack E. James, “To Ivy”, 1957. 3. 5, SX-HK-61, AFR. 실제 1959년 이후 우련에 대한 경비는 대폭 삭감되었다.

를 수집하고 방송을 청취하여 정리하는 작업만 수행하고, 분석과 해석은 미국 학계가 담당할 몫이라는 것이었다. 재단이⁹⁰⁾ 미국의 대학교수 크로퍼드(Bob Crawford), 워커(Richard L. Walker)⁹¹⁾ 등에게 의뢰하여 우련연구소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반영한 결과였다. 이들은 우련이 연구능력 및 영어 구사 능력에서 한계가 많기 때문에 저술보다는 뉴스와 자료 생산으로 한정하고, 미국 외교부 및 국무부와 학계가 이용하기에 편리한 방식으로 자료를 생산할 수 있도록 제한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⁹²⁾ 이처럼 정보제공 업무만을 인정한 것은 사실 미국이 포드재단을 통해 타이완의 중앙연구원을 지원하는 대가로 국민당 시기 획득한 중국 공산주의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거나 한국의 주요 기관에 소련 및 북한에 대한 연구를 전담시킨 것과 같은 맥락이었다.⁹³⁾ 결국 홍콩은 미국에 의해 자본주의 진영의 변영을 상징하는 전시공간이자 미국의 냉전정책에 필요한 기초 자료와 정보 수집처로 위치 지어진 것이다.

그러나 보다 주목해야 할 것은 아시아재단이 문화사업을 통해서 때번 실현하고자 했던 '자유주의 세계가 공유해하는 원칙'의 문제였다. 앞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은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미국적 외교정책의 틀 내에서 조율했다. 따라서 홍콩은 반공의 맥락에서 시종 국민 정부와 일정한 공생 및 협조

90) Robert B. Crawford, 1957. 7. 9, "To Mr. James T. Ivy," attached in "To The President, The AF": Report on UP, 1957. 7. 27, HK-308, File: MIDEA Publisher/UP, Hong Kong, Program, Box 57.

91) 워커(1922~2003)는 레이건 정부 시절 주한미국대사를 지냈던 인물이다. 2차 대전(1943~1946)에 종군했고, 맥아더 사령부의 중국어 통역으로서 한국전에도 참전했다. 이후 홍콩을 거쳐, 타이완대학에서 연구활동을 했다. 1957년까지 예일대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여러 대학에서 국제관계학을 가르쳤다.

92) Richard L. Walker, dated 9, Jan, 1955, "The Letter to the Union Research Institute" attached in "To The President, The AF": Reattached in "To The President, The AF": Report on UP, 1957. 7. 27, HK-308, File: MIDEA Publisher/UP, Hong Kong, Program, Box 57.

93) 張朋園, 1997, 『郭廷以·費正清·韋慕庭：臺灣與美國學術交流個案初探』,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정문상, 2014, 「포드재단(Ford Foundation)과 동아시아 '냉전지식': 한국과 중화민국의 중국근현대사연구 사례를 중심으로」, 『아시아문화연구』 36.

관계를 유지했다. 아시아재단이 추진한 교과서 개발 프로젝트는 그 대표적인 사례일 것이다. 재단은 화교사회를 장악하기 위해 화교학교의 좌파 성향의 교사 교체와 대안 교과서 개발을 서둘렀다. 전자는 대륙 지식 난민과 신아연구소 출신의 교사를 파견하는 것으로 대체했다. 동시에 후자와 관련하여서는 현지 사정을 반영한 중등학교 교과서를 개발하고자 했다. 부분적으로는 홍콩에서 사용하고 동남아 각국의 화교학교에서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시도는 1952년 태국에서 사용되면서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같은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던 타이완 정부와의 문제였다. 이에 따라 아시아재단은 직접 타이완에 대표를 파견하여 문제를 협의한 뒤 일단 주도권을 타이완 정부에 넘겼다.

특히 1953년 동남아를 방문한 미국 부총통 닉슨은 이 지역의 화교사회가 대륙과 문화전쟁의 전초기지라는 것을 잘 이해하고, 타이완 당국이 동남아에 세력을 확장하고, 또 그를 통해 자유민주사상을 전파하고, 공산주의의 팽창을 저지할 수 있도록 대량의 자금을 원조하기로 결정했다.⁹⁴⁾ 당장 1954~1965년 간 미국 정부는 타이완 당국에 3억 1,811만 8,638(NTD)와 1백 5만 7,444달러의 미원교무경비(美援僑務經費)를 지원하여 동남아 중문 교육을 부식하는 데 노력했다.⁹⁵⁾ 특히 타이완당국은 1953년 『남양화교학교교과서(南洋華僑學校教科書)』를 시발로 국문, 역사, 화학 등 18책의 교과서를 편찬했고, 『해외문고(海外文庫)』 11권 158종을 편집했다. 그 후 타이완의 교위회에서는 각지 화교의 서로 다른 조건을 고려하여 중소학 교과서 및 참고서를 제작하여 공급했다.

문제는 이러한 타이완 주도의 교과서는 국민 정부의 교무정책(僑務政策)⁹⁶⁾에 따라 중화민국적 정체성을 강조하는 만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탈중화를 전제로 한 국민교육의 체계와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⁹⁷⁾ 아시아재

94) 姜興山, 2011, 「臺灣當局對菲律賓華文教育的影響」, 『臺灣研究集刊』 2011-1.

95) 郁漢良, 2001, 『華僑教育發展史』, 臺北: 國立編譯館, 473쪽.

96) 손준식, 2014, 「냉전시기(1950~71) 중화민국 僑務政策의 성격과 한계: 동남아 화교 교육을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43.

97) 黃庭康, 2002, 「國家權力構形與華文學校課程改革: 戰後新加坡及香港的個案研

단은 수차례에 걸쳐, 타이완 당국에 해외 사용 교과서의 현지화를 요청하고 협의했으나, 실제로는 수정되지 않았다. 결국 재단은 독자적으로 교과서를 제작 공급했다. 그것은 중국의 문화를 내용으로 하되 가능한 한 중국적·중화민국적 정체성을 탈각하고, 현지화된 내용을 추가하는 방식이었다. 예컨대 홍콩 역사 교과서가 황제신화를 배제하고 현대사를 소거하면서 문화사를 강조한 것처럼, 중국적 정체성을 약화시키려는 것이었다. 여기에는 자체 제작한 교과서가 해당 국가의 정규 승인을 얻을 뿐 아니라, 화교사회 외에 정규학교에서 사용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현실적인 필요도 작용했다. 따라서 재단의 교육 프로그램은 화교사회의 지도자를 키우는 것이었지만, 그것은 역사적 정체성보다는 전통가치를 바탕으로 한 세계시민을 양성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는 보이스카웃 운동 등 다양한 방식의 청소년 지도자 훈련과정, 조직과정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진행되었다. 결국 미국 주도의 '자유'시민 육성을 전후 신생국가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과 같은 독립국가의 국민화 과정 속에서 실현하려는 것이 실제 원조의 목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홍콩은 이러한 자유시민사회의 상징이 되어야 했던 것이다.

V. 맺음말

냉전시기 미국은 정치·경제·군사적인 차원의 세계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세계에 대한 각종 문화 원조를 통한 이념적 해계모니 구축 작업을 진행했다. 그것은 2차 세계 대전 당시 미국이 수행했던 심리전의 연장이기도 했다. 이 글에서는 1950년대 아시아재단과 홍콩의 냉전을 미국의 지역 전략과 연계 속에서 살펴봄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파악하고자 했다. 홍콩은 지정학적 위치상 일찍부터 정보전과 심리전의 핵심공간이었고, 반공 블록의 전초기지로써 주목을 받았다. 미국은 홍콩의 이러한 정치 문화 환경을 충분히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냉전정책을 전개했다. 특히 자유아시아 위원회를 조직하여, USIA·USIS가 주도하는 심리전의 보조기관으로 삼고, 일련의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친공 성향이 강한 홍콩의 정치 문화 환경 속에서, 중공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정치 난민의 성향과 동향을 조사하며 대중들이 읽을 수 있는 반공 독물(讀物)을 생산하는 것 등이 주요한 임무였다.

1954년 심리전을 확대하려는 미국 정부의 입장에 따라 위원회는 아시아재단으로 개조되면서 업무가 체계화되었다. 한국전쟁의 종전과 제네바협정 및 반동회의 등을 거치면서 중공의 국제적 지위가 상승하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화평 공존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었다. 아시아재단은 홍콩과 동남아 화교사회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특히 연합대학(중문대학), 우련연구소, 아주출판사를 통해 대행된 프로그램은 궁극적으로 중공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고 홍콩과 동남아 반공 역량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특히 수준 높은 교육기관 등을 통해 베이징에 대한 선택적 대안을 제시하려는 측면도 있었다.

그러나 1957년 이후 홍콩의 경제적 성장, 좌파 위협의 감소, 홍콩 방어에 대한 미국의 주도권 확보 및 동남아 각국의 독립과 국민주의 확산 등을 배경으로 아시아재단의 홍콩 정책 역시 변화했다. 그것은 동남아 화교권과의 연계가

아니라 공동체로서 홍콩의 독립성을 강조하려는 것이었다. 특히 홍콩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미국의 선진적인 경영기법이 도입되었고, 영어교육 등을 통한 자유 시민의 육성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었다. 이에 따라 홍콩은 동아시아 반공정책의 핵심에서 자본주의의 변형을 상징하는 전시적 공간으로 변모했다.

이러한 변화는 미국이 주도한 지역질서로서 동아시아의 형성과 그 속에서 홍콩의 정립을 의미했다. 특히 홍콩은 타이완 국민 정부 및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반공국가의 정치 현실에 대한 비판보다는 탈정치적인 정보와 자료 제공으로 역할이 제약되었다. 공산권에 대한 주체적인 연구나 해석은 물론 현실정치에 대한 비판도 극도로 제한되었다. 세계시민 형성을 목표로 한 화교교육 프로그램 역시 같은 맥락이었다. 미국이 구상한 동아시아 지역질서와 외교정책의 틀 속에서 형식과 내용이 규정되었던 것이다. 물론 미국이 주도한 이러한 냉전정책은 당시 홍콩의 지식인들이 어떻게 수용했는지는 추후 밝혀야 할 문제다.

참고문헌

Asia Foundation Records(후버연구소)

The Asia Foundation in Hong Kong, 1996, Purpose and Activities, Hong Kong Office(Asia Foundation).

新亞書院, 1956, 『新亞書院發展計劃』.

Andrew Defty, 2013, *Britain, America and Anti-Communist Propaganda 1945~53: The Information Research Department*, Routledge.

Chi-kwan Mark, 2004, *Hong Kong and the Cold War: Anglo-American Relations 1949~1957*, Oxford UP.

Edward H. Berman, 1983, *The Influence of the Carnegie, Ford, and Rockefeller Foundations on American Foreign Policy: The Ideology of Philanthrop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

Fan Shuhua, 2014, *The Harvard-Yenching Institute and Cultural Engineering: Remaking the Humanities in China, 1924~1951*, Lexington Books.

Grace Ai-Ling Chou, 2011, *Confucianism, Colonialism, and the Cold War: Chinese Cultural Education at Hong Kong's New Asia College, 1949~76*, Boston: Brill.

John Krig, 2006, *American Hegemony and the Postwar Reconstruction of Science in Europe*, MIT Pr.

Kenneth Osgood, 2006, *Total Cold war: Eisenhower's Secret Propagand Battle at Home and Ab road*, Up of Kansas.

Marcos Cueto, 1994, *Missionaries of Science: The Rockefeller Foundation and Latin America*, Indiana UP.

Nicholas J. Cull, 2008, *The Cold War and the United States Information Agency: American Propaganda and Public Diplomacy, 1945~1989*, Cambridge UP.

Peter Buck, 1980, *American Science and Modern China, 1876~36*, Cambridge UP.

Robert F. Arnove, 1982, *Philanthropy and Cultural Imperialism: the*

- Foundations at Home and Abroad*, Indiana UP.
- Wilma Fairbank, 1976, *America's Cultural Experiment in China*, Washington, D.C. Government Printing Office.
- Tie-Han, 1997, *TheFordFoundationandChineseStudies, 1950~1979*, Uni. of Wisconsin, Madison.
- Yung Chenchiang, 2001, *Social Engineering and the Social Sciences in China, 1919~1949*.
- 官有垣, 2004, 『半世紀耕耘: 美國亞洲基金會與臺灣社會發展』, 臺灣亞洲基金會.
- 王世榕, 1997, 『第三部門: 美國亞洲基金會與臺灣』, 高雄: 亞太綜合研究院.
- 陸恭惠, 2011, 『地下陣線: 中共在香港的歷史』, 香港大學出版社.
- 張朋園, 1997, 『郭廷以·費正清·韋慕庭: 臺灣與美國學術交流個案初探』, 中央研究院 近代史研究所.
- 周奕, 2009, 『香港左派鬭爭史』, 香港: 利迅出版社.
- 何振亞 등, 2014, 『香港文化眾聲道』, 香港: 三聯書店.
- 손준식, 2014, 「냉전시기(1950~71) 중화민국 僑務政策의 성격과 한계: 동남아 화교 교육을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43.
- 정문상, 2014, 「포드재단(Ford Foundation)과 동아시아 '냉전지식': 한국과 중화민국의 중국근현대사연구 사례를 중심으로」, 『아시아문화연구』 36.
- Chi Kwan Mark, 2007, "The 'Problem of People': British Colonials, Cold War Powers, and the Chinese Refugees in Hong Kong, 1949~62," *Modern Asian Studies*, Vol. 41, No. 6.
- Chi-Kwan Mark, 2005, Defence or Decolonisation? Britain, the United States, and the Hong Kong Question in 1957, *The Journal of Imperial Commonwealth History*, Vol. 33-1.
- James T. H. Tang, 1994, "From Empire Defence to Imperial Retreat: Britain's Postwar China Policy and the Decolonization of Hong Kong," *Modern Asian Studies* 28-2.
- Johannes R. Lambardo, 1999, "A Mission of Espionage, Intelligence and Psychological Operations: The American Consulate in Hong Kong, 1949~64," *Intelligence and National Security*, 14-4.

- Matthewd D. Johnson, 2011, "Propaganda and Sovereignty in Wartime China: Morale Oppration and Psychological Warfare under the Office of War Information," *Modern Asian Studies* 45-2.
- Ya Feng Xia, 2008, "The Study of 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in China," *Journal of Cold War Studies*, 10-1.
- 姜興山, 2011, 「臺灣當局對菲律賓華文教育的影響」, 『臺灣研究集刊』 2011-1.
- 區志堅·候勵英, 2001, 「香港浸會大學圖書館友聯資料介紹」, 『近代中國研究通訊』 32.
- 李培德, 2011. 11, 「亞洲主義在冷戰時代的香港和日本: 以錢穆創辦新亞書院和太田耕造創辦亞細亞大學比較」, 『東亞歷史上區域間的認識與互動國際學術「討會」 발표 요지』.
- 葉漢明·蔡寶瓊, 2001, 「殖民地與文化霸權: 香港四十年代後期的中國共產主義運動」, 『中國文化研究所學報』 41.
- 袁小倫, 2002, 「戰後初期中共利用香港的策略運作」, 『近代史研究』 2002-6.
- 王梅香, 2005, 「不為認知的張愛玲: 美國新聞處譯書計畫下的『秧歌』與『赤地之戀』」, 『歐美研究季刊』 45-1.
- 趙綺娜, 1997, 「冷戰與難民協助: 美國“援助中國知識人士協會”, 1952~9」, 『歐美研究』 27-2.
- 黃庭康, 2002, 「國家權力形構與華文學校課程改革: 戰後新加坡及香港的個案研究」, 『教育與社會研究』 4.

[국문 초록]

아시아재단과 홍콩의 냉전(1952~1961)
-냉전시기 미국의 문화정책-

오병수

이 글의 목적은 1950년대 아시아재단 홍콩 지부의 설립 배경과 활동을 통해 홍콩의 냉전과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을 지역사의 맥락에서 이해하려는 연구다. 아시아재단은 1954년 자유아시아위원회(The Committee for Free Asia)를 개조하여 탄생한 조직이다. 냉전시기 자유 아시아 지역의 반공 불력을 형성함으로써 중공의 팽창을 저지하려는 것이 목표였다. 이를 위해 심리전, 선전전의 맥락에서 홍콩 및 동남아 화교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교육 문화사업을 전개했다. 연합서원, 우련연구소, 아주출판사 등을 통해 이루어진 이러한 사업들은 궁극적으로는 중공에 대한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홍콩 및 화교사회의 학생을 조직 및 대량의 반공 영화, 잡지 등을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미국식 대학 체제와 가치 이념이 이식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1960년대부터 아시아재단은 홍콩을 동남아를 향한 선전기지가 아니라, 자유진영을 대표하는 전시성을 강조하고, 홍콩 자체의 경제적 번영과 자유시민 형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했다. 이는 각국의 독립을 전제로 하되, 미국적 가치관에 바탕을 둔 새로운 지역 질서의 형성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 속에서 홍콩은 당대 중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미국의 학술 패권 구축에 기여할 것을 요구받았다.

주제어

냉전, 동아시아, 아시아재단, 우련연구소, 심리전

[ABSTRACT]

The Asia Foundation and the Cold War
in Hong Kong(1952~1961):
United States Cultural Policy in the Cold War Era

Oh Byungsoo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understand the Cold War in Hong Kong and the United States government's East Asian policy in the context of regional histories by analyzing the establishment and activities of the Hong Kong branch of the Asia Foundation. The Committee for Free Asia (CFA) was reorganized into the Asia Foundation in 1954, and its aim was to interrupt Chinese communist expansion by forming an anti-communist bloc, which included the Philippines, Taiwan, Vietnam, Laos, and Thailand, thus reinforcing liberalist influence in the area. Various cultural and psychological warfare projects were developed, focusing particularly on the geopolitical value of Hong Kong and using it as a propaganda base for targeting Southeast Asian Chinese immigrants and Taiwan. New Asia College (currently the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United Research Inc., and Asia Publication Company accepted Chinese immigrant students and supplied masses of anticommunist toxicant. Naturally, leadership training for the future generation based on American value was included in the program. However, since the 1960s the Asia Foundation went through a policy change, emphasizing the expositional nature of Hong Kong as a representative of the free world and seeking its economic prosperity and citizen formation. This was based on the premise of the independence of

each country, but was also in line with the formation of a new regional system based on American values. In this regional structure, Hong Kong has been defined as a contemporary Chinese information provider corresponding to American needs.

Keywords

Asia Foundation, Cold War, United Research Inc., Cultural Policy, psychological warfare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950, 1960년대 타이완문학의 경향과 미국원조문화와의 상관성

최말순 | 타이완 국립정치대학 타이완문학연구소 부교수

동북아역사재단

I. 머리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이 글은 1950, 1960년대 타이완문학의 경향과 미국원조의 관련성을 찾아 냉전의 문학적 현상을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금까지 타이완문학사에서 1950년대는 반공문학, 1960년대는 모더니즘문학을 주류적 경향으로 파악하고 후자의 출현이 전자에 대한 비판에서 비롯되었다고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타이완 모더니즘의 형성과 그 문학사적 의의를 국민당의 고압적인 정치적 압박에서 벗어나려는 노력과 반공문학의 획일성을 타개하고 복잡한 인간의 내면 심리를 드러내어 진정한 현대문학을 건립했다고 평가하는 기존 연구에서 이런 시각이 지배적이다.¹⁾ 하지만 반공문학과 모더니즘문학은 시기적으로 중첩될 뿐 아니라 반공을 이념적 기반으로 하여 형성되고 받아들여졌다는 점에서 연속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미학적 측면에서 보여지는 상당히 이질적

※ 투고: 2015년 2월 10일, 심사 완료: 2015년 4월 30일, 게재 확정: 2015년 5월 18일

1) 陳芳明, 2011, 『台灣新文學史(上)』第十四·五章, 聯經, 346~413쪽.

이고 심지어 상치되는 면모로 인해 완전히 다른 경향의 문학 또는 상호 대립되는 가치를 추구하는 문학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상반된 이해는 모두 나름의 일리가 있다. 반공문학이 중국 공산주의의 타도라는 명확한 대상과 목적을 상정하고 공산주의가 추구하는 집단성, 국제성, 계급성과 적대적 자세, 민족전통과 보편적 인간성의 파괴를 적극 비판하는 내용이라면, 모더니즘문학은 명확한 목적보다는 복잡해진 현대사회와 인간관계 속 개인의 내면과 인성의 어두운 면을 적극적으로 분석·해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두 문학의 경향은 개인과 자유의 옹호라는 측면에서 가지는 공통성 이외에 문학의 담당주체, 내용의 방향성, 창작 경향과 방법 등에 있어 판이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상이한 두 문학 경향과 반공이념이 갖는 공통성의 기초는 무엇이며 타이완문학에서 어떻게 형성된 것일까? 본문은 이에 대한 물음을 냉전심리전술의 하나인 미국의 대공산권 문화전략에서 찾고자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공산중국을 염두에 둔 미국의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문화원조에서 발단이 되었고 타이완의 정치적 상황에 따른 취사와 변용의 과정에서 생겨난 문학적 현상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논의의 초점을 미국의 원조가 타이완문학에 미친 영향에 둔다면 원조의 범위와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범위는 타이완 경내 뿐 아니라 아시아 지역에 대한 문화적 영향력, 특히 홍콩을 경유한 미국문화의 전파를 말하는 것이며, 방식은 주로 잡지의 출판과 보급, 유통을 통한 미국적 가치 및 문예의 보급을 말한다. 따라서 1950, 1960년대 문학이론과 창작을 담당했던 문단의 주역인 문학 관련 잡지를 대상으로 이들 잡지에 실린 미국과 서방국가의 문화와 문학 내용, 경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글의 구체적인 논의 대상은 반공문예잡지 『문예창작(文藝創作)』과 『반월문예(半月文藝)』, 미국의 냉전문화전략 근거지인 홍콩에서 간행된 잡지 『금일세계(今日世界)』와 『대학생활(大學生活)』, 그리고 타이완 모더니즘문학에 선도적 역할을 했던 『문학잡지(文學雜誌)』와 『현대문학(現代文學)』에서 소개된 서방문학과 문화에 대한 내용이다. 이들 잡지는 직간접적으로 미국의 아시아 지역 내지 타이완에 대한 원조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래 냉전문학의 아시아적 현상을 비교, 고찰하는 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II. 미국원조문화의 형성과 반공문예잡지 『문예창작』, 『반월문예』

냉전의 산물인 미국원조(U.S. Aid)는 미국정부가 대외원조를 위해 설립한 기구와 계획을 통해 기타 국가와 정부를 상대로 진행한 군사와 경제 원조를 지칭한다.²⁾ 중화민국에 대한 미국의 원조는 1948년부터 시작되었으나 1949년 국공내전에서 국민당의 실패와 부패로 인해 지원이 중단되었다. 그러다가 1950년 한국전쟁의 발발로 타이완이 아시아 지역의 반공보루로 인식되면서 1951년 원조가 재개되어 향후 15년간 지속되었다.³⁾ 미국의 원조는 비록 군사와 경제적인 측면에 집중되었으나 이에 그치지 않고 교육, 위생, 예술, 문화 등 기타 부분으로 확산되었다. 따라서 미국원조문화(U.S. Aid)라는 용어는 이러한 미국의 원조로 인해 타이완으로 전파된 미국문화나 그 영향하에 생겨난 문화현상을 일컫는 말로 특정한 가치관과 생활방식을 포함한 문학작품, 문화생산 등을 포함한다.⁴⁾

1945년 일본 식민지배로부터의 해방을 맞은 타이완은 전후 세계질서의 재편에 의해 중화민국으로 귀속되면서 국공내전에 휘말리게 되었다. 1949년 내

2) 高碩泰, 1981, 『美援與70年代美國外交政策之研究』, 政治大學外交研究所碩士論文.

3) 이 기간에 받은 원조금액은 14억 8,200만 달러이며 매년 평균 1억 달러에 달한다.

4) 이는 원래 홍콩문학사에서 보편적으로 쓰이던 용어인데 미국의 원조로 발행된 출판물을 주로 지칭하는 것이며 냉전의 산물로 인식되어 왔다. 이에 대해서는 王梅香, 2005, 『肅殺肅殺歲月的美麗/美力? 戰後美援文化與50, 60年代反共文學, 現代主義思潮發展之關係』, 國立成功大學台灣文學研究所碩士論文, 6~8쪽 참고.

전에서 패배한 국민당정부의 철수가 있기 전부터 228사건, 46사건,⁵⁾ 계엄령 실시를 거치면서 반공의 근거지가 되었고, 국민당정부의 전면적인 철수 이후에는 관방의 직접적인 주도하에 반공복국(反共復國)과 반공항아(反共抗俄)의 기본국책을 반영하는 반공문화체제가 형성된 공간이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미국은 원조를 재개하고 국민당정부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미국과 타이완은 반공입장과 대공산당 심리전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 입장을 같이 했고 이로써 타이완은 미국의 대공산진영 사상전의 일원으로 편입되었다.

1950년대 국민당정부는 반공을 국시로 삼아 강압적인 검열과 감시체제를 작동시키고, 내전패배의 원인 중 하나로 문학을 포함한 전반적인 문화 역량을 지목했다. 그리고 지식인에 대한 사상통제와 문학창작의 자유를 제한하고자 서적의 출판과 유통에 대한 엄격한 관제를 실시했다. 이로 인해 오사문학운동 이래 발전해 온 중국의 좌익경향 문학과 일제시기에 형성·발전해 온 타이완 신문학의 전통은 단절되었고, 이런 가운데 유일하게 미국원조문화만이 자유롭게 출판, 유통, 보급되었다. 냉전의 논리 아래 진행된 미국의 문화전략은 우선 이데올로기, 정치제도, 문화영역 등에서 민주진영이 공산집단보다 우수하다는 인식을 기타 국가에 전파하여 이들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있었다. 미국의 국무부와 중앙정보국이 막후에서 주도한 냉전문화전략은 유럽에 이어 한국전쟁 기간에 홍콩, 타이베이의 미국공보원(USIA)을 통해 진행되었는데 주로 출판사 창조설립과 그 출판물인 잡지를 통해 문화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

1945년에 설립된 타이베이 미국공보원은 타이완의 각 도시에 사무실을 두고 활동을 진행했다. 미국 공보원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미국의 대외정책을 미디어에 제공하고, 미국의 역사, 사상, 정치, 경제와 문화를 알리는 것이었다.

5) 46사건은 1948년 타이완대학 학생들의 교통법규위반으로 촉발된 학생체포사건으로 그 이전부터 있어 왔던 대학생들의 기아반대투쟁이 중국 대륙의 사회주의 세력과 합류할 것을 우려한 당국이 학생들을 대대적으로 체포하면서 학생운동으로 비화되었다.

이를 위해 신문출판조, 방송조, 영화조, 문화조, 도서관조를 두고 반공의식 고취를 위한 미국문화의 수입과 소개, 중국 공산주의의 야만성과 낙후성을 비판하고, 중국의 비문명적인 면을 부각시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문화의 현대성을 강조하는 활동을 진행했다. 특히 학생층을 겨냥한 출판물, 서적, 학술회의, 미술전람, 음악회, 영화감상, 현대무용 등 각종 문화 활동은 광복과 내전, 국민당 철수와 반공체제 성립 등 역사적 격동기를 거치며 미처 정비되지 못한 타이완의 문화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⁶⁾

문학 분야에 있어서의 가시적 영향은 흔히 자유주의 사상과 신시운동으로 불리는 현대시의 추구에서 나타났다. 전자는 『自由中國(자유중국)』이 전파한 ‘사람의 문학, 자유의 문학’이란 문학 주장과 계재 작품에서, 후자는 상징파, 초현실주의 등 프랑스 모더니즘문학의 이식을 외치며 ‘재개’⁷⁾ 여러 현대 시사(詩社)의 주장, 활동과 창작에서 드러난다. 자유주의 지식인들은 창작의 자유와 인성의 가치를 내세웠고, 현대시운동에서는 현실에 대한 새로운 감성을 내세웠지만 반공과 애국의 기초를 승인했다. 실제로 현대시 문단과 반공문단이라 불리는 반공문학잡지의 참가인원이 중복되는 등 1950년대의 타이완문단은 문학경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반공이란 공통적인 토대를 가지고 있었다. 이 부분은 필자의 앞 논문에서 이미 서술한 바가 있으므로⁸⁾ 본문에서는 반공문학 내부, 그중에서도 문학잡지에서 보이는 미국원조문화의 영향을 구미문학의 번역과 소개 현황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

반공문단은 중화문예상금위원회(中華文藝獎金委員會), 중국문예협회(中國文藝協會)와 같은 관방 주도의 조직과 기구의 활동, 민간출판사들이 발행하는 문예잡지로 구성되었는데, 1950~1956년만 보더라도 반공기치를 내건 잡지

6) 謝尙文, 2003, 4, 「帝國主義下的美國文化戰略」, 『海峽評論』第148期.

7) 1930년대 상하이에서 활동하던 상징파, 초현실주의 문학운동의 연속인 동시에 식민지 시기 타이완에서 형성되었던 심감각파 등의 현대시운동의 연속으로 파악하기 때 문에 일반적으로 ‘재개’되었다고 한다.

8) 崔末順, 2013, 「민족에서 개인으로 - 1950년대 냉전타이완의 문학풍경」, 『中央史論』 38집, 중앙대학중앙사학연구소, 339~365쪽.

가 18종 이상 발간되는 등 1950년대 초반은 반공문예잡지의 전성시대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잡지는 발행인의 문학적 지향 등에 따른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반공항아(反共抗俄), 전투문예(戰鬥文藝), 삼민주의문예(三民主義文藝) 등의 주장이 포함된 반공내용의 창작물을 게재했다. 그러나 자세히 검토해 보면 많은 잡지에서 구미문학을 소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중 우선 반공문단에서도 관방의 문예정책을 잘 반영하고 있는 잡지인 『문예창작』에는 서구 문예이론과 번역작품이 많이 실려 있다. 이 잡지는 중화문예상금위원회의 기관 잡지로 1951년 5월 4일 창간된 이래 향후 5년간 매우 안정적으로 모두 68기(期)를 발간했다. 기존 연구의 정리에 의하면 19기 이후로 외국문학에 대한 소개글이 증가했는데, 전체를 통틀어 외국문학의 번역·소개글이 110편에 달하고 특히 61기 이후부터는 번역문이 3분의 1을 차지했다.⁹⁾ 외국문학에 대한 소개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① 소설 창작에 대한 이론이 가장 많았던 문학이론 번역, ② 외국작가와 문학유파를 소개하는 글, ③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주로 자유민주진영 문단과 작가동향, 새로 나온 책을 소개하는 외국문단 동향, ④ 번역작품이다.¹⁰⁾

이들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이론 부분에서 지칭(紀乘)이 쓴 9편의 글은 소설 창작과 관련된 것으로 출처는 허셸 브릭컬(Herschel Brickell)이 편찬한 『Writers on Writing』이며 내용은 소설 창작에 관한 일반적인 수준의 것이다. 량쥙즈(梁宗之)의 글은 영미파 작가와 예술가의 이론으로 대부분 창작기교와 관련된 것인데, 예를 들어 「소설의 즐거리에 대해」(28기)는 포스터(E.M. Forster)가 원작자이고, 「소설의 구조와 형식」(42기)은 티보데(Albert Thibaudet)가, 「문예기교론(상, 하)」(51, 52기)는 앵크랩비(Lascelles Abercrombie)가 원작자로 되어 있다. 이외에도 「쥘라의 자연주의 문예」(43기), 「『시학』 이후의 문예평론 약술」(48기) 등 서구 문학사조와 문예평론의 흐

9) 黃怡菁, 2006, 『《文藝創作》(1950~1956)與自由中國文藝體制的形構與實踐』, 國立清華大學台灣文學研究所, 178쪽.

10) 위의 글의 통계에 의하면 각각의 비율은 이론문장이 35%, 작가와 문학유파의 소개가 45%, 외국문단의 동향이 17%, 번역작품이 3%를 차지한다고 한다.

름을 소개하기도 했으며, 「현대소설의 기본 동향」(31기)에서는 서구 모더니즘 문학을 소개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작품을 예로 들면서 모더니즘과 리얼리즘문학이 다루는 ‘현실’ 개념을 비교하고 있다. 모더니즘에 속하는 문학사조 소개는 그 외에도 성청[盛成]이 체계적으로 소개한 프랑스 상징파와 시인들이 있다. 발레리(Paul Valery)는 물론 랭보(Arthur Rimbaud), 베를렌(Paul-Marie Verlaine), 말라르메(Stephane Mallarme) 등 상징파 3대 시인 이외에도 이들의 영향을 받은 기타 시인을 소개하고¹¹⁾ 상징주의 유파가 추구하는 객관세계 깊은 곳에 존재하는 진실과 영원한 세계를 중국 경서인 역경(易經)으로부터 찾아내는 분석을 시도하기도 했으며,¹²⁾ 호우페이이(侯佩尹)는 모더니즘 문학 이외 바이런(Baron Byron) 등 낭만주의 시도 중국전통의 시 형식에 맞추어 번역·소개했다.¹³⁾ 또한 통쥘[童眞]과 천슨[陳森]에 의해 영미 양국의 문예 이론이 번역·소개되었는데 「캐리(Joyce Cary)의 일생과 그 작품」(22기), 「리얼리즘의 대가 심농(Georges Simeon)」(28기), 「내 기억 속의 웰스(H.G. Wells)」(32기), 「와일드(Thornton Niven Wilder)」(39기), 「그린(Graham Greene)의 일생과 그 작품」(41기) 등과 「작가와 생활」(51기), 「주인공의 선택」(53기), 「구조를 논하다」(55기), 「인물과 사건」(56기) 등 소설 창작과 관련된 문장도 번역·소개되었다. 이중에는 탐정소설, 과학 환상소설 등 비교적 대중성을 지닌 것도 적지 않다. 다음으로 문단동향에 대한 소개글로는 팡스[方思], 천슨, 성청, 스퉁이핑[施翠峰] 등이 각각 영국, 미국, 프랑스, 일본의 문단상황을 나누어 소개했다. 그 내용은 주로 당대의 중요한 작가와 문학작품, 평론의 소개, 그리고 각국의 문학활동이나 전람소식 등이다.

또한 후기로 가면서 『문예창작』에 소개되는 범주는 작가와 문학작품뿐 아니라 전반적인 서방예술까지 확대되었는데, 모차르트, 밀레, 미켈란젤로, 고

11) 소개된 작가로는 발레리(Paul Valery), 클로델(Paul Claudel), 베를렌(Paul Verlaine), 랭보(Rimbaud), 말라르메(Stephane Mallarme), 라포르그(Jules Laforgue), 로덴바흐(Georges Rodenbach), 사맹(Albert Samain) 등이 있다.

12) 盛成, 1954. 1, 「法國現代偉大詩人瓦乃理(Paul Valery)」, 『文藝創作』 33期, 55쪽.

13) 侯佩尹, 1954. 1, 「獻給愛好詩歌的人一點小禮品」, 『文藝創作』 33期, 36쪽.

호, 고갱 등의 그림소개도 실었다. 이들 번역문은 비록 소개 수준에 머물기는 했지만 반공문단에 자극이 되었음은 분명한데, 『문예창작』의 서구문학이론과 작가, 문단상황에 대한 이러한 적극적인 관심은 반공문학의 창작기풍을 쇄신하고 분위기를 진작시키는 데 목적이 있었다. 이는 주도 인물인 장따오판(張道藩)의 문학관에서 드러나는데, 그의 반공문학이론인 삼민주의문예론에서 전통적인 리얼리즘 창작방법뿐 아니라 낭만주의 등 서구사조에서 참고할 만한 것을 받아들여 리얼리즘을 보강해야 한다는 생각을 보여주고 있다.

삼민주주의의 민족주의 문예는 마땅히 리얼리즘 창작방법을 주체로 하여 일부분 낭만주의파의 표현기교 등을 종합하여야 한다. …… 삼민주주의의 민권주의 문예는 마땅히 리얼리즘 창작방법을 주체로 하고 일부분 고전주의의 표현기교를 종합해야 한다. …… 삼민주주의의 민생주의 문예는 마땅히 리얼리즘 창작방법을 주체로 하고 일부분 이상주의의 표현기교를 종합해야 한다. 삼민주주의 리얼리즘은 상술한 낭만적·고전적·이상적 세 가지 유파의 기교를 종합하고 그 이외에도 기타 유파의 기교를 현실의 수요에 맞게 제한적으로 종합, 운용해야 한다.¹⁴⁾

반공문학의 선전효과를 고려하여 민중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이론과 방법을 모색하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렇게 서구의 각 문학유파로부터 새로운 창작방법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서구문예 이론과 작품의 번역·소개가 이루어졌다. 까오밍[高明]도 ‘신인문주의’를 제기하고, 그 내용을 물질적 욕망을 극복하는 이지적인 풍격, 인성의 존엄을 회복하는 감정적 내용, 재래의 기교를 이어받는 계승적 측면, 새로운 형식을 만들어내는 창조적 면모, 추악한 현실을 폭로하는 전투적 내용, 숭고한 이상을 발휘하는 분방함, 분투하는 정서를 복돋는 열렬함, 아름다운 인생을 촉진하는 우아함을 갖춘 문예라고 정의하고¹⁵⁾ 중국과 서방문예의 장점을 융합하고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는

14) 張道藩, 1954. 3, 「三民主義文藝論」, 『文藝創作』 35期, 12~14쪽.

15) 高明, 1954. 11, 「論當前小說的創作方法」, 『文藝創作』 43期, 19쪽.

것이 신인문주의 문예의 길이라고 했다. 즉 반공문예의 전투적이고 적극적인 면모에 서구의 선진적 현대관념과 중국전통의 민족적 기교와 전아함 등을 계승하여 새로운 방향으로 반공문학의 길을 개척하고자 했던 것이다. 또 다른 반공문학이론가인 왕지충[王集叢] 역시 ‘민생 리얼리즘’을 주장했는데, 그 내용은 서방의 리얼리즘과 낭만주의의 기교를 빌려오되 작품의 중심사상은 삼민주의여야 한다는 것이다. ‘심물합일(心物合一)의 입장에서 심물합일(心物合一)의 현실을 보고 정신과 물질이 공존하는 인생’을 그리는 ‘민생 리얼리즘’을 건립하기 위해 개량적 리얼리즘과 낭만주의를 운용해야 한다¹⁶⁾는 이 주장은 반공문학이 현실의 반영 이외에 서구문예를 참고하여 삼민주의의 사회적 이상을 드러내는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들 반공문예 이론가들은 모두 중국과 서구의 창작방법에서 좋은 점을 취하여 삼민주의문예의 새로운 형식을 수립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의 주장을 간단하게 정리한다면 민족적 형식, 삼민주의 내용, 서구문예의 기교를 종합적으로 운용한 문예로 반공문단을 혁신하고자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문예창작』의 서방문학에 대한 수용은 반공문학의 선전효과와 창작기풍을 진작하기 위한 목적에서 기인한 것으로 서방문예 사조와 유파의 세계관과 창작이념보다는 실제적인 창작방법과 세부적 기교에 치중했음을 알 수 있다.

1950년 출간을 시작해 1955년까지 모두 11권을 발행한 『반월문예』는 창간사에서 문예를 사상의 전략수단으로 하여 전체 인민이 공산당 세력의 확장에 공동으로 직면해야 한다고 천명했으며¹⁷⁾ 삼민주의를 기본이념으로 하는 반공문예의 기능성을 주장하는 문장¹⁸⁾을 신고 있어 반공문예잡지로서의 면모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이 잡지 역시 상당수의 외국문예를 소개하고 있다. 이 잡지에서 소개된 외국작가로는 발자크(Balzac), 로렌스(D.H. Lawrence), 셸리(Percy Bysshe Shelley), 모파상(Maupassant), 샌드버그(Carl Sandburg),

16) 王集叢, 1954. 5, 「論創作方法」, 『文藝創作』 37期, 98~99쪽.

17) 大城, 1950. 3, 「撲滅赤色思潮—發刊詞」, 『半月文藝』 第一卷 第一期, 3쪽.

18) 任卓宣, 1950. 3, 「今後的文藝動向」, 『半月文藝』 第一卷 第一期, 4~5쪽.

헤밍웨이(Ernest Hemingway), 지드(Gide), 버나드쇼(Bernard Shaw), 투르게네프(Ivan Sergeyeovich Turgenev), 스타인벡(John Ernst Steinbeck), 롱펠로우(Henry Wadsworth Longfellow), 모리아크(François Mauriac), 엘리엇(T.S. Eliot), 포크너(William Faulkner), 헤세(Hermann Hesse), 루이스(Harry Sinclair Lewis), 예이츠(William Butler Yeats), 안데르센(Hans Christian Andersen) 등이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가장 많고 프랑스, 영국, 독일, 러시아, 아일랜드, 덴마크 순이며 소개된 작가의 활동 시기는 19~20세기 초였다. 대부분 노벨상 문학상 수상자들인데 이를 통해 특정한 사조의 문학경향보다는 문학적 가치와 국제적으로 공인된 작가와 작품에 치중했음을 알 수 있다.

외국문학평론과 관련된 문장 7편 중에는 미국문학 소개가 4편으로 가장 많고 영국, 이탈리아, 에스파냐, 프랑스가 각 1편인데 대부분 최근의 각국 문단 상황을 소개하는 데 그치고 있다. 또한 '문예소식'란을 두어 각국의 베스트셀러 내용, 출판 상황, 작가동향, 문단의 숨은 이야기, 문학상 등의 소식을 소개하고 소비에트정권하의 인민의 생활을 그린 퀴슬러(Arthur Koestler)의 반공작품인 『한낮의 어둠』이 미국에서 희극으로 만들어져 공연된 일도 소개하고 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잡지에서 소개한 작가들의 작품경향과 창작풍격을 살펴보면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환경의 관찰과 객관적 묘사에 중점을 둔 것으로 발자크, 모파상, 스타인벡의 소개에서 강조되고 있다. “이들 작가들은 인물의 품성을 묘사하고 환경과 유전에서 그 근원을 탐색하며 인성의 선과 악, 미와 절망, 공포와 즐거움 간의 오묘한 갈등에서 성패의 단서를 찾는다”¹⁹⁾고 하여 이들 작가들이 가진 과학과 관찰에 편중된 이성적인 측면과 객관적 묘사에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 두 번째는 인류의 행복과 도덕적 가치에 대한 사색인데, 지드, 모리아크, 투르게네프의 소개에서 “개성의 존엄, 인성의 발양, 이성과 이상적인 길을 좇아 진리를 추구하고 인류의 운명, 생활과 행복

19) 查理·安戈甫 著, 星克 譯, 1951, 2, 「論漢明威」, 『半月文藝』第二卷 第五六期, 3~5쪽.

에 대해 관심을 가지며”,²⁰⁾ “죄악, 유희, 심신의 고통과 범죄에 대한 심각한 조롱과 높은 영혼의 품격을 탐색하는 희망”,²¹⁾ “현실의 관찰에서 비관적이기는 하나 심령상으로는 사랑이 기초가 되는”²²⁾ 작품이라고 한 데서 작가의 인격에 대한 도덕적 평가와 작품이 전달하는 인성의 가치를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 번째는 셸리, 예이츠와 엘리엇의 예를 들어 낭만적 풍격과 신비주의 색채를 가미한 작가라고 소개하면서 이들이 아름답고 조화로우며 꿈을 꾸는 작품을 지향한다고 했다.²³⁾ 외국문단과 평단을 소개하는 내용에서도 비관적인 사상을 없애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동력을 찾으려 현실과 생활을 중시하고 개인적인 실존주의 사고방식을 배척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반월문예』의 이러한 서방작가와 문단에 대한 소개는 『문예창작』의 경우와 같이 반공문예의 새로운 형식을 찾는 데 참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민족문예는 역사발전의 필연적 주류이며 불세비키는 그 역류다. 민족문예는 개성적·자연적·객관적이며 불세비키는 무개성·기계적·주관적·독단적 정치이익에 복무하는 문학이다. 민족문예는 인성을 발양하고 인원을 제고하는 자유를 쟁취하며 해방을 지향하는 데 비해 불세비키 문예는 인성과 영성을 멸시하고 물성으로 사람의 심령활동을 통치한다.²⁴⁾

외국작가의 저작을 소개하여 독자들이 현 정세 아래서 문예사조의 발전 높이와 취향을 알게 하고 비교적 구체적인 새로운 문예전형을 수립하여 위대한 신문예운동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를 사고하는 데 도움을 얻고자 한다.²⁵⁾

즉 『반월문예』는 외국문학에서 어떻게 제재를 처리하고 내용과 이론을 결

20) 魯民, 1951, 2, 「悼念紀德」, 『半月文藝』第二卷 第五六期, 23~24쪽.

21) Maulnier 저, 天辛 역, 1953, 1, 「毛瑞克評介」, 『半月文藝』第八卷 第一期, 72~73쪽.

22) 小鳳, 1951, 3, 「屠格涅夫的憂鬱」, 『半月文藝』第三卷 第一二期, 5쪽.

23) 辛, 1953, 4, 「葉芝評介」, 『半月文藝』第八卷 第六期, 61~62쪽.

24) 孫旗, 1950, 5, 「論文藝的統一戰線」, 『半月文藝』第一卷 第三期, 3쪽.

25) 半月文藝社, 1950, 11, 「編後」, 『半月文藝』第二卷 第二期, 17쪽.

합시키는지를 고찰하고 이를 통해 당시 소극적인 추세를 보이던 반공문예를 진작하기 위한 목적에서 서방작가와 작품을 소개한 것이며, 동시에 외국작가의 작품이 드러내고 있는 풍격, 미학 내용과 수법 기교를 통해 당시의 정치적 수요에 맞는 새로운 문예의 구조를 건축해 내고자 했던 것이다. 『반월문예』가 반공, 자유와 민주, 미래지향적인 낙관전망과 민족문학, 민족정신을 주요 목표로 한 잡지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외국문학 작가와 문단의 소개에서 보이는 객관적인 현실묘사로 인성의 선량함, 인생의 정도 제시, 인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문예에 치중한 이유가 반공의 목적을 문학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였음을 알 수 있다.

『문예창작』과 『반월문예』 이외에도 『창류(暢流)』(1950), 『문단(文壇)』(1952), 『유사문예(幼獅文藝)』(1954), 『문예월보(文藝月報)』(1954), 『해풍(海風)』(1955), 『문예춘추(文藝春秋)』(1954) 등 1950년대 반공문예잡지에서 구미 문단과 외국 문학사조가 다양하게 소개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더 자세한 고찰이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인 상황이 위의 두 문예지와 크게 다르지 않다.²⁶⁾ 이 잡지들은 반공문예의 공식화되어 버린 내용과 창작방법에서의 병목현상을 개선하고 활로를 개척하기 위한 새로운 문예형식이 필요했던 것이다. 따라서 내용상으로는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작가와 작품을 선호했으며, 방법상으로는 객관적 묘사와 동시에 격정적인 풍격도 수용하여 리얼리즘 원칙에 낭만주의, 상징파 문예를 가미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즉 미국을 위시한 자유진영 국가들의 문단과 작가, 작품을 통해 경직되어 가고 있는 반공문예의 새로운 형식을 찾기 위해 노력했음을 알 수 있는데, 서방문단의 전면적인 수용보다는 내용과 형식을 막론하고 반공문예이론인 삼민주의 문예를 보충, 개선, 확장할 수 있는 작가와 작품이 소개되었다고 하겠다. 이러한 외국문학의 소개는 진보적인 중국문학과 타이완 신문학의 전통이 단절되고 미국공보원에서 행한 각종

26) 가령 이들 잡지를 통해 소개된 작가로는 로렌스, 버나드 쇼, 투르게네프, 괴테, 토마스 하디, 스탕달, 입센, 메리메, 서머셋 모음, 셰익스피어, 헤밍웨이, 모파상, 디킨슨, 휘트먼, 워즈워스, 미시마 유키오 등이며, 한국시인으로 이상, 유치환, 김현승, 조지훈, 장만영 등도 소개된 바 있다.

문화 활동과 자유진영국가와의 교류만 가능했던 시대적 상황에서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로써 반공문단에 미친 미국원조문화의 영향을 가늠해 볼 수 있다.

Ⅲ. 미국공보원 간행물 『금일세계』, 『대학생활』과 타이완 작가의 왕래

미국공보원은 각종 문예활동의 개최와 방송국을 통한 반공이념의 전파 이외에도 출판사 설립을 통해 적지 않은 간행물을 출판했는데, 이들 간행물은 대부분 홍콩에서 편집, 출판되었다. 당시 타이완에서는 계엄체제로 인해 역외로부터 들어오는 출판물의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미국공보원의 출판물은 타이완으로 진입이 가능했고 또 상당히 인기가 있었다.

이들 잡지 중 1950, 1960년대 타이완문단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은 『금일세계』와 『대학생활』이다.²⁷⁾ 전자는 미국의 문화적 냉전전략의 실체를 잘 보여주는 종합잡지로 아시아 지역에 대한 사상공세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고, 후자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현대 지식과 제도, 문화를 소개하는 종합잡지로 미국식의 현대적 가치관을 젊은 층에게 전파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냉전시기 미국의 문화적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것이 서적의 발행일 것이다. 미국공보원 서장 라이슨에 의하면 서적은 보편적이고 거대하며 지속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과 미국이 지지하는 목표와 가치를 해외로 선전하는 유효한 수단이며, 이를 통해 미국을 이해하고 인식하게 하

27) 이 두 잡지는 미국 중앙정보국 아래 아시아재단의 지원을 받아 설립된 출판사를 통해 발간되었다. 『금일세계』는 타이완 지역에서 8만부씩 팔렸고, 『대학생활』은 대학생들에게 매우 인기가 있었다.

여 그 기초에서 각 지역에 반공, 민주자유의 방위선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²⁸⁾ 이 두 잡지는 말하자면 동아시아 지역에 미국문화를 홍보하고 미국의 이른바 민주자유 이데올로기를 전파하는 전형적인 수단이었던 것이다. 미국공보원 산하의 출판센터에서 편집된 『금일세계』의 판매 지역이 한국, 타이완,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인도, 홍콩 등 거의 모든 아시아 지역을 포괄하고 있는 점이 이를 잘 말해준다.

미국 아시아재단의 지원을 받아 설립된 우련출판사(友聯出版社)의 출판물인 『대학생활』 역시 타이완과 홍콩은 물론 동남아 지역에서 정치, 문화, 사회 운동을 펼친다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출판 업무를 담당했던 우련 연구소에서 진행한 중국대륙 자료의 수집, 편집과 이에 대한 담론 생산과 전파 등과 같은 활동으로 보아 동남아 지역의 화교들에게 반공의식을 고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²⁹⁾ 특히 『대학생활』은 대학생이 알아야 할 현대사조의 소개를 창간취지로 하여 철학, 정치, 경제, 교육, 과학 등 부분에 있어서의 현대적 내용을 집중적으로 소개했는데 자유주의 사상과 민주정치, 자유진영 국가들의 경제정책과 자본주의 발전, 철학에서의 실증적·논리적 사고와 과학정신을 강조했다. 또한 대학생들에게 주로 미국과 영국의 명문대학을 소개하면서 학술동향과 인재배양, 나아가 유학에 필요한 언어준비 등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로써 『대학생활』이 표방한 현대사조와 현대관은 기본적으로 미국을 위시한 서방국가의 지식, 제도와 가치관을 일컫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 이면에는 당연히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으로 구분하여 미국의 표준을 근거로 우열을 가르는 냉전시기 이원대립적 세계관이 자리하고 있다. 이 잡지의 논설에서도 반복적으로 민주국가의 자유,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정부가 인민의 언론과 사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펼치고 있는데 민주와 인권, 자유의 유무는 민주국가와 공산국가를 구별

28) 「世界命運掌握在讀書人手中」, 『今日世界』 第124期(1957. 5. 16), 16~17쪽.

29) 黃傲雲, 1990. 2. 5, 「從難民文學到香港文學」, 『香港文學』 第62期; 王梅香, 2005, 앞의 책, 49쪽에서 재인용.

짓는 가장 중요한 지표로 간주되었다.³⁰⁾

『금일세계』와 『대학생활』이 가장 중시하는 가치는 자유와 민주인데, 두 잡지의 논설에는 특히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창작의 자유에 대한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고 이를 공산세계와의 차이로 천명하고 있다. 자유와 민주는 이들 잡지의 주요한 사상축으로 그 근거는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평등하다는 관념이다. 사람은 누구나 신체와 지혜와 정신을 가진 존재로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는 천부인권설을 강조하고 이를 파괴하는 정부와 권력은 인류의 적이라고 규정했다.³¹⁾ 미국이 강조하는 자유, 민주, 평등의 가치는 미국을 위시한 자유진영국가와 공산국가의 구별을 암시하는 것이다.

표현의 자유라 함은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 학술표현의 자유 등 각종 사상과 견해를 발표할 자유를 말하는 것이다. 개인으로 말하자면 의견 표현의 자유는 일종의 신성한 권리다. 사람이 사람이면 독립적인 인격을 가진 점에 있고 독립된 인격이라 함은 독립된 의지와 주장에 깃들어 있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자유롭게 사상과 견해를 표현할 수 있어야만 독립된 인격을 가진 인간이라 말할 수 있다. 모든 자유 중에서 의견 표현의 자유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다.³²⁾

개인의 자유와 의견 표현의 자유를 매우 중시하고 국가도 이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인데, 미국원조문화의 자유에 대한 옹호는 공산중국 뿐 아니라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국민당정부의 출판법에 대한 비판으로도 이어졌고,³³⁾ 문예 방면에서도 창작의 자유 추구로 주장되었다. “문예는 인류의 고급 정신활동의 산물로 문예가 생산되는 조건은 창작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다. 문예는 저속함을 피하고 공식적인 것을 혐오하며 교조적인 구속을 받지 않아야

30) 本社, 1957. 3. 1, 「表達意見的自由」, 『大學生活』第二卷 第十一期, 3쪽.

31) 社論, 1956. 7. 16, 「驚人的消息」, 『今日世界』第104期, 1쪽.

32) 本刊, 1957. 3. 1, 「表達意見的自由」, 『大學生活』第二卷 第十一期, 3쪽.

33) 本刊, 1958. 6. 1, 「言論自由必須存在」, 『大學生活』第四卷 第二期, 3쪽.

하며 더욱이 선전수단으로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³⁴⁾라고 하여 창작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동시에 미국과 같이 예술가가 각기 자신의 방식으로 자신의 예술을 표현할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것이 바로 개인주의가 정착된 민주사회라는 것이다. 즉 예술창작의 자유 유무가 그 사회의 민주성을 가늠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유주의 정신의 주장과 제한 없는 투고 등 잡지를 통한 실천은 반공문학체제하 획일적인 반공, 전투문예를 강요받던 타이완문단에 새로운 기류를 형성하게 되는 계기를 제공했을 것으로 보인다. 두 잡지에서 보듯이 문예의 자유주의 원칙, 즉 문예는 반드시 자유로워야 하며 정치에서 독립되어 존재해야 한다는 자유주의 문예관은 바로 미국원조문화의 영향 아래 강고해진 것이다.

이러한 현대적 가치관과 미국식 정치, 경제, 교육제도의 선전, 그리고 자유와 민주가치의 전파 이외에도 이 두 잡지는 특히 구미 현대문예의 번역·소개에 많은 경비와 지면을 할애했다. 그뿐만 아니라 당시 타이완의 주요 작가인 왕핑린[王平陵], 쑤쉐린[蘇雪林], 장슈아[張秀亞], 귀량훤[郭良蕙] 등과 이후 문단 주역이 된 왕원싱[王文興], 충쑤[叢甦], 위텐충[尉天聰], 짜오텐이[趙天儀] 등이 『대학생활』을 통해 서방문예의 번역에 참여했고 평론, 창작도 발표했다.³⁵⁾ 이들의 활동을 통해 구미 현대문학이 타이완에 대량으로 전파되었고, 그 결과 반공문단에 균열을 일으키면서 향후 문단의 주류적 경향을 모더니즘으로 향하게 하는 동력이 되었다. 『금일세계』 역시 주요 업무 중의 하나가 외국문학 명저를 번역·소개하는 것이었는데 당시로서는 매우 높은 보수를 받고 샤지안[夏濟安], 장아이링[張愛玲], 린이량[林以亮], 위광중[余光中] 등이 외국작품 번역에 참여했다고 하니 그 배후인 아시아재단을 통한 지원과도 관련이 있다 하겠다.

두 잡지를 통해 번역·소개된 서구문학의 경향을 일괄적으로 말하기는 어

34) 南木, 1954. 6. 15, 「文藝之死與死的文藝」, 『今日世界』第55期, 8쪽.

35) 秦賢次, 1985. 10, 「香港文學期刊滄桑錄」, 『文訊』第20期, 香港文學特輯, 61~62쪽.

렵지만 미국문학을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 사조와 모더니즘 경향이 주류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금일세계』에서 소개된 작가로는 스콧(Walter Scott), 웹스터(Noah Webster), 어빙(Washington Irving), 에머슨(Ralph Waldo Emerson), 호손(Nathaniel Hawthorne), 워즈워스(Henry Wadsworth), 포(Allen Poe), 소로(Henry David Thoreau), 휘트먼(Walt Whitman), 멜빌(Herman Melville), 트웨인(Mark Twain), 로빈슨(E.A. Robinson), 샌드버그, 프로스트(Robert Frost), 캐터(Willa Cather), 헤밍웨이, 포크너, 사로얀(William Saroyan) 등이고, 문학 관련 문장으로는 「미국문단의 산수인물」(42기), 「전원일기」(10기), 「롱펠로우 시선」(13기), 「미국사상의 이모저모」(28기), 「마크 트웨인 전기」(158기), 「알렌 포 단편소설」(12기), 「휘트먼 『초엽집』」(40기), 「머리 없는 기사」(68기), 「미국의 白居 : Carl Sandburg」(3, 26, 66기),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26, 69기), 「백마를 탄 여름」(3기), 「문예의 창」(16기), 「호머」(16기), 「단테의 신곡」(17기), 「성경」(19기), 「영시 번역」(1기), 「시 번역 대회 결과」(33, 34기), 「맹인작가 헬렌켈러」(73기) 등이 실렸다. 『금일세계』를 통해 소개된 미국문예는 낭만주의, 현대주의와 현실주의 등 각 시기의 문학을 모두 망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특히 미국의 향토적 분위기를 농후하게 드러내는 에머슨, 멜빌, 휘트먼 등과 세계문단에서 이름을 떨친 헤밍웨이, 포크너 등이 반복적으로 보인다. 또한 이 잡지는 문예뿐 아니라 음악, 무용, 회화회극, 건축 등 미국의 현대예술 전반에 대해서 상세히 소개하고 있어 미국원조문화가 제공하는 미국식 현대예술의 전모를 보여준다고 하겠다.

타이완문인들이 많이 참여한 『대학생활』 역시 서방문학을 대량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당시 타이완의 문예청년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창간호부터 모더니즘문예를 소개하겠다고 선언했고 학술논문, 독후감, 서평, 유기산문, 문예창작, 명저번역, 보도통신, 현대사조의 소개, 신시, 인물과 학교소개 등 다양한 내용의 원고를 모집하여 영향력을 확대했으며 문예방면에서는 타이완과 홍콩 작가, 학자들이 번역·소개한 서방문예가 대중을 이루었다. 그중에서도 특히 영국, 프랑스, 미국 세 국가의 문예 위주로 편성되었고 그 외 인도, 독일, 에스파냐 등 세계문학을 곁들여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표 1〉 「대학생활」에 실린 서방문학 관련 문장

黃思驍, 「L. 托爾斯泰」(1 : 1)
岳心, 「漫談新詩」; Hugo Gernsback 지, 頌蕪 역, 「我們微弱的感覺」; 王敬義 역, 「生命的呼喚」; 莎士比亞, 「夫人們, 別再歎息」(1 : 2)
文亞, 「畢加索的生活與作品」; 번역소설 毛罕, 「癡心女子」(1 : 3)
泰戈爾, 「芬芳」; 黃思驍, 「契訶夫與他的作品」(1 : 4)
孫多慈, 「繪畫的領域」; 泰戈爾, 「漂鳥集」(1 : 5)
泰戈爾, 「漂鳥集」; 喬治·艾比, 영국산문시 「六辨士」; 「法國雕塑家羅丹介紹」(1 : 6)
泰戈爾, 「漂鳥集」; 托爾斯泰, 「小妖與農夫的麵包」; 「大雕刻家羅丹」(1 : 7)
久生十蘭 지, 魏痴 역, 「母子」; 方琰, 「紀念近代大戲劇家卜士」; 王平陵, 「小說的藝術氣氛」(2 : 2)
泰戈爾 지, 糜文開 역, 「皈依者」; 黃崖, 「廢墟」(2 : 3)
趙雅博, 「今日世界文學的衰頹與補救之道」; 周學善 역출, 「歌德的浮士德」(2 : 5)
E.M. Forster, 「安德烈先生」; 趙雅博, 「賽爾凡提斯的生平」(2 : 6)
覃子豪, 「象徵派及其作品簡介」; 歸人, 「漂鳥集 評介」; 楊允達, 「植物詩抄」; 泰戈爾, 「第一次的茉莉花」(2 : 8)
Arnold Bennett, 「體裁與內容」(2 : 9)
楊允達, 「動物詩抄」(2 : 10)
S.V. Benet, 「猫王」(2 : 11)
楊允達, 「法國詩壇歷史的演進」; A.E. Housman, 「霍士曼詩抄」(2 : 12)
楊允達, 「法國詩壇歷史的演進」; 何藩, 「攝影歷史上的畫意派」; 趙雅博, 「黑麥愛思其人, 其詩及其影響」(3 : 1)
周學善, 「戰後的西德文學」; 佐藤朔 작·葉泥 역, 「波特萊爾的作品」; George Orwell, 「紋」; K. Gibran, 「一滴淚珠, 一朵笑靨」(3 : 2)
愛倫坡, 「青葡萄酒」; 平原, 「馬諦斯其人其畫」(3 : 3)
海明威, 「不屈服的」; 鍾期榮, 「都德和小東西」; 林文月, 「『新月集』讀後」(3 : 4)
海明威, 「不屈服的」; 于木, 「魯賓孫詩譯」(3 : 5)
海明威, 「不屈服的」; 何藩, 「純攝影派」(3 : 6)
Amy Lowell, 「花樣」; 鍾期榮, 「莫里哀」; 謝康, 「馬丹波華荔一百週年紀念」(3 : 7)
S. Spender, 「沒有詩人不行嗎?」; 鍾期榮, 「莫里哀」(3 : 8)
村野四郎 작·葉泥 역, 「論詩的內容」; 「橋本雅邦」; 哈里士, 「聖人」; 泰戈爾, 「餓石」(3 : 9)
Lafcadio Hearn, 「談寫作」; 泰戈爾, 「餓石」(3 : 10)

- 鍾期榮, 「法國詩壇歷史的補充」; Gibran, 「先知」; Martise, 「偶像」(3 : 11)
- Gibran, 「先知」; 都德, 「仙女」; 鍾期榮, 「法國詩壇演進的我見」(3 : 12)
- Gibran, 「先知」; 陳紹鵬, 「雪萊評傳」; 孫仲宏, 「從培爾金特看易卜生的得救之道」; 周學普, 「德國文學研究法之沿革」(4 : 1)
- 趙雅博, 「當代西方人文主義之流派」; 鍾期榮, Paul Valery; R.M. Rilke 작·丁貞婉 역, 「老人」(4 : 2)
- S.V. Benet, 「晚鐘鳴兮」; 王平陵, 「論文藝批評」; 鍾期榮, 「文壇巨人—吉德」(4 : 4)
- 王寒, 「英國浪漫主義的先驅—布雷克」; 裴普賢, 「中印文學關係研究」(4 : 5)
- 鍾期榮, 「今日文豪莫利亞克」; 周學普, 「德國文學的新世代」; 裴普賢, 「中印文學關係研究」(4 : 6)
- W. Somerset Maugham, 「快樂的夫婦」; 裴普賢, 「中印文學關係研究」(4 : 7)
- 陳紹鵬, 「英國前期的抒情詩」; 尉天聰, 「論新詩的發展」; 王家誠, 「現代西洋繪畫的發展及趨勢」; 蕭啟慶, 「梅里美的生平及作品」(4 : 9)
- 覃子豪, 「怎樣寫成一首詩」; E.M. Forster, 「人魚的故事」; 蘇雪林, 「中印文學關係研究跋」(4 : 10)
- Bouvier, 「獎卷夢」; 丁德, 「陷穽」; Chekov, 「賭」(4 : 11)
- William Saroyan, 「羅曼史」; 黃思騁, 「我對文學翻譯的一點意見」(4 : 12)
- 小說研究專輯(上); 蘇雪林, 「論中國舊小說」; 王平陵, 「五四以來中國小說的發展」; 謝康, 「十九世紀法國小說」; 李輝英, 「談談小說人物」; 黃思騁, 「短篇小說創作方法」; 鍾期榮, 「論當代法國小說(上)」; 岳騫, 「十年來的大陸文藝小說」; 齊桓, 「小說的佈局」; 徐速, 「長篇小說與短篇小說的分別」; 亦雲 譯, 「英國小說家毛姆—論小說題材」(5 : 1)
- 小說研究專輯(下); 彭歌, 「怎樣尋找題材—短篇寫作的一個問題」; 陸星, 「小說的對話」; 周學普, 「德國印象主義各派的小說」; 施也可, 「英國小說發展淺談」(上); 胡菊人, 「美國浪漫主義的小說」(下); 鍾期榮, 「當代法國小說」(下)(5 : 2)
- 陳紹鵬, 「論濟慈的才智」; 施也可, 「英國小說發展淺談」(下)(5 : 3)
- 新亞小慶, 「最漂亮的音樂家—李斯特」(5 : 4)
- Maureen Daly 지, 王凌九 역, 「情竇初開」; 王家誠, 「介紹五月畫展」(5 : 5)
- 王平陵, 「文藝作品的選擇與欣賞」(5 : 6)
- 小泉八雲 지, 劉念慈 譯, 「文學與生活」(5 : 9)
- Zona Gale 작·盧荻 譯, 「比爾」(5 : 10)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영미 모더니즘 사조는 물론이고 보들레르, 발레리, 베를렌, 만, 릴케 등 프랑스, 독일 문예를 소개하면서 특히 현대적인 표현 방식을 강조했다.³⁶⁾ 또한 상징파에 대한 높은 평가와 더불어³⁷⁾ 모더니즘사조의 소개는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문학 부문 뿐 아니라 회화에서 입체파인 피카소, 야수파인 마티스 등을 집중 소개하고, 개인주의의 자아표현에 치중하는 사진작가의 작품을 신는 등 촬영 부분에서도 현대인의 감성과 감각을 주로 소개했다. 현대문예의 소개 문장에서는 목적으로서의 문학을 강조하고 문학이 정치선전의 도구가 되는 것에 반대했으며 개인을 위한 문학을 내세웠다. 특히 인물의 내면세계와 감정의 변화, 언어 운용상의 기교, 비사실적인 수법과 사고를 중시하고 이를 진보적이고 현대적인 문학이라고 전파했는데 비록 냉전 논리하에서 리얼리즘을 주요 창작방법으로 하는 공산권문학에 대한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한 의식에서 나온 것이지만 모더니즘문학의 정치성 배제와 개인 자유의 중시는 계엄 시기 타이완의 밀폐된 정치 환경에서 하나의 탈출구로 여겨졌고 1950년대 중기 이후 타이완문학의 모더니즘 경향을 이끄는 시초가 되었다.

구체적인 영향관계를 살펴보면 『금일세계』와 『대학생활』에 실린 소설 『앙가(秧歌)』와 『적지지연(赤地之戀)』은 당시에 이미 매우 높은 평가를 받았고 타이완으로 소개되었으며³⁸⁾ 바이센웅[白先勇], 왕전허[王禎和], 삼삼집단(三三集團) 등 소위 장아이링파(張派) 작가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장아이링의 소설은 풍부한 이미지와 숙련된 기교로 인물 내면의 갈등과 모순을 찾아내어 매우 세밀한 심리묘사를 보여주는데 이런 경향은 이후 타이완문학에서도 발견되는 영향이다. 당시 투고를 했던 많은 타이완의 젊은 작가들이 이 잡지에 실린 작품의 영향을 받았을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고 하겠다. 그 외 네화링(聶華苓), 명야오[孟瑤], 쉬이란[徐蕙藍], 삐푸[畢樸], 린하이인[林海音] 등

36) 이는 번역자의 대부분이 프랑스 유학을 한 배경과 관련이 많다.

37) 覃子豪, 1956. 12, 「象徵派及其作品簡介」, 『大學生活』第二卷 第八期, 47쪽.

38) 夏之清的 평가가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 『금일세계』에, 통편[童眞], 귀진슈[郭晉秀], 장슈아[張秀亞] 등이 『대학생활』에 소설을 연재한 것으로 보아 이들 작가들에게 미친 미국원조문화의 영향은 자명하다 하겠다.

이렇듯 번역 혹은 평론과 작품의 기고 등 방식으로 대표적인 미국원조문화인 『금일세계』와 『대학생활』에 참여하면서 타이완 작가들은 한 가지 주의와 주장에 구속되지 않고 신사조와 현대문예를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으며 그 가운데서도 차츰 미국을 중심으로 한 모더니즘문학에 대한 이해를 넓혀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공보원을 통해 전파된 현대사조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냉전문화전략의 목적 아래 진행된 것으로 아시아 국가에 대한 현대화 주장과 독려는 과거의 식민주의 수단을 대체하는 문화적 영향력의 확장을 목표로 했다. 따라서 인성의 중시, 미학의 예술적 표현을 강조하는 모더니즘문학은 냉전의 맥락에서 본다면 공산세계와 대항하는 수단으로서 반공문예의 보이지 않는 정치의식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즉 정치와 무관하게 보이는 현대사조와 모더니즘 문예는 기실 공산세계와 구별 지으며 미국이 구축한 진보적인 이미지의 근거가 된 것이다. 잡지를 통해 번역·소개된 현대사조와 구미문학은 매우 다양해 보이지만 냉전의 사유 속에서 그 세계관은 반공으로 수렴되었고, 따라서 이를 통해 들어온 미국원조문화의 영향은 반공의 기초 아래 인성의 가치, 개인적 자유, 과학정신과 현대적 제도들에 대한 긍정과 수용을 전제로 진보적이고 현대적인 가치로써 받아들여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IV. 『문학잡지』, 『현대문학』과 미국원조문화

앞에서 반공문단에 실린 외국문학 소개와 미국공보원 발행 잡지에 실린 구미문학을 대상으로 미국원조문화와 1950, 1960년대 반공에서 모더니즘으로 주류적 경향이 옮겨간 타이완문학과의 관련성을 검토해 보았다. 흔히 1950년대

중반에 신시를 표방하며 나타난 현대파(現代派), 남성(藍星), 창세기시사(創世紀詩社) 등과 그들의 작품경향을 타이완 모더니즘문학의 재기로 간주하는데 사실 이들 중 일부는 앞서 본 두 부류의 잡지들과 일정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가령 반공잡지 『해풍』에서 튀푸[洛夫]와 지셴[紀弦]의 시와 평론을 찾을 수 있으며, 『유사문예』에도 친즈하오[覃子豪], 야셴[痲弦], 룡즈[蓉子], 튀먼[羅門] 등의 시가 보이고, 『신신문예(新新文藝)』에도 팡스와 지셴의 문예이론 소개 문장이 있다. 또한 『문예창작』에도 상관위[上官予], 야셴[痲弦], 지셴의 반공시가 실려 있는 등 현대시의 주역들이 반공문단에서도 활동했음을 알 수 있는데 그들이 반공의 이념을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친즈하오는 또한 『대학생활』에서도 프랑스 상징파 시를 소개하고 평가하는 글을 쓰기도 했다. 이러한 관계를 통해 반공, 자유주의, 모더니즘으로의 변화는 단절적이지 않고 일정 정도 공존했음을 알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공존과 변화에 미국원조문화의 영향력이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고찰하여 냉전 문학의 면모를 좀 더 구체적으로 찾아보는 데 있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타이완 모더니즘문학의 본격적 시작을 알리는 『문학잡지』와 『현대문학』의 출간 배경과 이 잡지에서 번역되고 소개된 구미문학의 경향과 내용을 통해 그 면모를 추적해 보고자 한다.

미국원조문화의 작동기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련 잡지와 서적의 도입과 소개, 각종 문화 활동 등인데 외국문학을 전공한 대학교수들과 학생 등 지식인 이³⁹⁾ 문화적 매개가 되었다. 이들은 번역 능력과 외국문학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어 앞서 본 미국공보원 출자의 『금일세계』와 『대학생활』에서도 매개자의 역할을 담당했다. 이들은 또한 미국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지식의 전수, 서적의 출판, 자매학교의 결연, 학생과 교수의 파견교환 등의 방식으로 진행한 민심수렴 전략과 타이완에서의 친미문화 환경에서 가장 많은 기회를 향유한 그룹이기도 했다.

『문학잡지』와 『현대문학』의 출간 역시 이 지식인 그룹을 통해 이루어진 것

39) 외문제사군(外文系社群)이라고 부르는데, 영문학 전공이나 서양문학에 대한 흥미와 지식으로 의기투합한 그룹을 말한다.

인데, 먼저 『문학잡지』의 발행인인 샤지안은 타이완대학 외국문학과 교수이며 영미문학 전공자로 미국공보원이 제공하는 번역 기회에 관여했고 그 이외에도 금일세계사의 번역자 명단에 있는 린이량, 우루친[吳魯芹], 량스츄[梁實秋], 스키[思果] 등이 이 잡지의 핵심인물이다. 이들을 통해 미국공보원이 선정한 텍스트가 번역, 유통되면서 미국문학에 대한 지식인의 이해는 깊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기존연구에 의하면 미국공보원 소속의 출판사에서 번역에 종사한 인원의 절반이 타이완 지식인이라고 하며 번역서의 전체 내용으로 보아 미국공보원의 번역·소개 범위는 미국의 남북전쟁시기(1776~1820), 낭만주의(1820~1860), 현실주의(1860~1914), 모더니즘(1914~1945)에 이르며 각 시기의 작가를 총체적으로 소개했다고 한다.⁴⁰⁾ 모더니즘문학을 특별히 강조하지는 않았지만 샤지안이 미국공보원과 아시아재단의 창조로 미국 인디애나 대학에서 헨리 제임스 문학과 심리소설에 대한 연구를 마치고 돌아오면서부터 미국 문학과 심리주의를 표방하는 모더니즘 경향이 그의 제자이자 이후 『현대문학』의 주역들인 바이센웅, 오우양즈[歐陽子], 천뤄시[陳若曦], 왕원싱 등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제임스(Henry James)와 포크너를 위시한 모더니즘 소설가들은 객관세계의 묘사에 그치지 않고 인물의 내면세계를 주관적으로 묘사했는데 이러한 특징과 경향은 타이완 모더니즘소설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미국공보원은 번역 인원을 동원해 미국현대문학작품집을 출판한 이외에도 『문학잡지』의 작품 번역과 창작을 지원해 주는 방식 및 실질적인 경비 지원을 통해 미국문학의 타이완 전파에 개입했다.⁴¹⁾

『현대문학』은 1960년 당시 타이완대학 외문학과 학생들이었던 바이센웅, 오우양즈 등이 창간한 문학잡지로 더욱 큰 규모로 카프카, 제임스, 조이스(James Joyce) 등 서구 모더니즘 작가들의 작품을 소개하고 이를 모방한 창작을 실기 시작했다. 『문학잡지』에 비해 더욱 모더니즘문학에 경도되었음을 보

40) 王梅香, 2005, 앞의 책, 107쪽.

41) 王梅香, 2005, 위의 책, 109~110쪽.

여주는데 이 잡지 역시 미국공보원의 상당한 찬조를 받았다고 한다.⁴²⁾ 동시에 미국공보원의 중개로 타이완 작가들의 작품도 영문으로 번역되기도 했다. 잡지의 편집과 출판에 참여한 핵심인물들의 출신 배경과 미국유학 경위 및 그들의 문학경향으로 보건대 『현대문학』을 통한 타이완 모더니즘문학의 형성과 발전은 미국의 문화적 영향 아래서 급속히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두 잡지에 실린 구미문학의 면면을 다 확인하기는 분량이 너무 많으므로 작가 소개와 작품 번역, 해설이 이루어진 문인들의 명단을 보면 <표 2>와 같다.

<표 2> 『문학잡지』를 통해 소개된 서방작가

국적	작가명
미국	Henry Wadsworth Longfellow, Nathaniel Hawthorne, Edith Wharton, Irving Babbitt, Edna St. Vincent Millay, Damon Runyon, Henry James, Sarah Orne Jewett, Edgar Allen Poe, Katherine Porter, James Thurber, Willa Cather, Robinson Jeffers
영국	Aldous Huxley, Evelyn Waugh, William Wordsworth, Shakespeare William, James M. Barrie, Isabel Mclean Mowry, Peter Taylor, T. S. Eliot
독일	Thomas Mann, Richard Dehmel, Heinrich Heine, Christian Morgenstern, Theodor Storm, Ina Seidel, Eduard Moerike, Wolfgang Von Goethe, Karoline von Günderrode
프랑스	Prosper Merime, Pierre Loti, Marie Noël, Albert Camus, Emile Zola, Charles Baudelaire, Jean Baptiste, Henry Bordeaux, Abel Beaufrière
헝가리	Josef Cardinal Mindszenty, Tamás Aczél
벨기에	Maurice Maeterlinck
이탈리아	Giovanni Verga
인도	Rabindranath Tagore

42) 馮祖貽, 2002, 『百年家族－張愛玲』, 立緒, 24쪽.

영국, 독일, 프랑스, 헝가리, 이탈리아 등의 작가도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미국작가가 매우 많고 호손(Nathaniel Hawthorne)이나 롱펠로우 등 작가는 반복적으로 소개되고 작품 번역도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하지만 20세기 작가뿐만 아니라 셰익스피어, 괴테, 보들레르 등도 포함되어 있어 광범위한 구미문학의 소개에 중점이 있었던 것 같다. 문학평론란의 내용을 보면 프랑스 현대시와 그 계보의 소개, 낭만주의와 고전주의 사조의 소개, 카뮈 소설 해석, 헨리 제임스 작품해설, 셰익스피어 연구, 미국현대소설, 엘리엇 희극연구, 스페인 현대시단 등으로 모더니즘문예에 국한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또한 중국고전문학에 대한 해설과 이해를 돕기 위한 학술적 문장을 전면에 배치하여 천 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중국문학의 위대한 전통을 계승하고 발양할 것임을 천명한 창간취지에 부합하려 한 의도를 읽을 수 있다.⁴³⁾

〈표 3〉과 같이 『현대문학』을 통해 소개된 작가는 『문학잡지』에 비해 더 모더니즘으로 경도된 것을 알 수 있다. 나열한 작가들의 작품이 대부분 심리소설 혹은 의식의 흐름 경향을 가지고 있으며 인물 내면의 갈등과 죄의식, 성욕, 곤혹, 사망, 미망 등의 상태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이 잡지는 매우 계통적이고 계획적으로 구미문학을 도입했는데 먼저 몇 편의 학술적 문장으로 작가소개와 작품경향을 분석한 후 이어 번역작품을 실었다. 카프카, 파운드(Ezra Pound), 울프(Viginia Woolf), 엘리엇, 만, 로렌스, 제임스, 사르트르(Jean Paul Sartre), 스타인벡 등의 작품해설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데, 중국전통문학에 대한 문장도 없지는 않지만 이렇게 대량의 모더니즘문학을 집중적으로 소개하는 것은 아마도 창간사에서 밝힌 것처럼 새로운 예술형식과 스타일을 찾기 위한 노력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⁴⁴⁾ 구미문학의 번역·소개뿐 아니라 『현대문학』은 많은 젊은 작가들의 창작무대였는데 왕원싱, 오우양즈, 천뤄시, 바

43) 창간사는 <http://tlm50.twl.ncku.edu.tw/sn14.html> 참고.

44) '전통을 존중하되 모방하지 않고 소위 파괴적인 건설작업을 진행하되 오사이래 신문학의 예술형식과 풍격으로는 현대인의 예술정감을 표현하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새로운 예술형식과 풍격을 찾고 창조하려 한다'[發刊詞], 『現代文學』 第1期(1960. 3. 5), 2쪽].

〈표 3〉 『현대문학』을 통해 소개된 서방작가

국적	작가명
미국	Thomas Wolfe, F. Scott Fitzgerald, John Steinbeck, Paul Engle, Alice Ginsberg, Richard Eberhart, William Saroyan, K. Anne Porter, Daniel Curley, Stephen Crane, Ernest Hemingway, Conrad Aiken, W. Carlos Williams, Sherwood Anderson, Henry James, Paul Engle, Saul Bellow, Richard Eberhart, Archibald Macleish
영국	Ezra Pound, T.S. Eliot, D.H. Lawrence, Virginia Woolf, W. Butler Yeats, Joseph Conrad, Angus Wilson, T.S. Eliot
아일랜드	James Joyce, Michael McLaverty, James Plunkett, Brian Friel, J.M. Synge, James Stephens
프랑스	Jean-Paul Sartre, Eugène Ionescò, Jules Supervielle, M. De Ghelderode, Albert Camus, Gaëtan Picon, André Malraux, A. Rimbaud, André Gide, Samuel Beckett, P. Bonitzer
독일	Franz Kafka, Thomas Mann, R.M. Rilke, Nelly Sachs
이탈리아	Luigi Pirandello
오스트리아	Sigmund Freud
러시아	Isaac Babel
스웨덴	August Strindberg
덴마크	Hans C. Andersen
일본	横光利一

이센용, 왕편허[王禎和], 천잉편[陳映眞], 치등성[七等生], 스수칭[施叔靑], 위 리화[於梨華], 린하이민[林懷民], 리양[李昂] 등의 소설은 각기 소재와 주제는 다르지만 내성, 죄의식, 개인존재의 불안과 소외감, 초조함, 정욕묘사, 망명, 쫓겨남의 정서 등에서 매우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또한 언어의 운용과 형식의 변화를 추구하는 데 있어 자각적인 인식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타이완 모더니즘문학의 공통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처럼 『문학잡지』와 『현대문학』은 동일 그룹에 의해 발간된 잡지로 농후한 학술적 색채, 엄격한 예술적 풍격

과 문학의 순수성을 중시하고 문학이 정치선전에 이용되는 도구화, 수단화에 반대하는 명확한 자세를 견지함에 있어 공통성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소개된 작가와 작품의 경향만으로도 전자의 보편적 구미문학 소개와 수입에서 후자로 갈수록 영미 모더니즘 경향이 많아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사실 1960년대 타이완의 지식문화계는 문학 뿐 아니라 모든 예술과 가치관에서 서구화(미국화)가 일반적 추세였다. 이들 두 잡지에서 활동한 왕원싱은 위기에 빠진 문학을 구하는 길은 서방문학에서 찾아야 한다고 공언했고⁴⁵⁾ 당시 전반적인 서구화를 주장한 『문성(文星)』잡지는 내용의 절반을 사르트르, 헤세 등 서구번역소설로 채웠으며 실존주의, 정신분석 이론이 유행처럼 지식인층에 번졌다. 고압적인 정치로 인한 정치적 냉감이 개인존재의 문제와 내면심리로의 천착으로 드러난 것이라는 분석이 많지만⁴⁶⁾ 이들 잡지가 의도적·계획적으로 구미문학을 번역·소개하고 그런 가운데 새로운 예술형식과 스타일을 찾고자 한 점, 그리고 이들 잡지의 창간과 미국공보원과의 밀접한 관련, 미국이 의도적으로 타이완, 홍콩 지역에서 추진한 미국식 가치관과 교육, 문화의 도입을 냉전의 문화적 전략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1960년대 타이완문학의 모더니즘 경향은 많은 부분 냉전 의식이 반영된 미국원조문화의 영향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V. 맺음말

이 글의 목적은 냉전의 산물인 미국원조문화와 1950, 1960년대 타이완문학 추이와의 관련성을 문학잡지를 대상으로 고찰하는 데 두었다. 미국의 중화민국에 대한 원조는 1949년 국공내전 패배 후 철회되었다가 1950년 한국전쟁을 계

45) 呂正惠, 1995, 「現代主義在台灣」, 『戰後台灣文學經驗』, 新地文學, 10쪽.

46) 呂正惠, 1995, 위의 글, 15~20쪽.

기로 재개되었는데 군사와 경제적 원조가 주를 이루었지만 그 외에도 전담기구를 두고 각종 문화 활동과 문예보급의 방식으로 미국적 가치를 전파했고 이를 통해 소위 미국원조문화가 형성되었다. 1950, 1960년대 타이완문학의 추이라 함은 반공문학으로부터 서구문학을 수용해 가는 과정으로 그중에서도 특히 영미 모더니즘문학으로 경도되는 과정을 말한다. 이 과정은 문학사의 사조 경질과 같은 문단내부 자체의 자연스런 발전과정일 수도 있고, 고압적 정치환경 같은 외부적 조건에 대한 문학적 반응의 결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본문에서는 이를 외국문학의 수용과 그 영향이 가져온 변화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외국문학의 접촉 경로가 된 미국원조문화와의 관련성을 찾아보았다. 미국원조문화가 미국의 대공산권 문화전략의 수단이자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본다면 이는 냉전이 만들어낸 문학적 풍경이라고 할 수 있으며 타이완의 경우를 통해 장래 냉전 동아시아의 문화상을 그려내는 데 참고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본문에서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첫 번째 단계는 미국원조문화와 1950년대 반공문단과의 관련성이다. 1949년 타이완으로 철수한 국민당 정부는 1930년대 진보적 문학의 민중에 대한 영향에서 내전패배의 원인을 찾는 동시에 공산당 정권의 문예정책에 맞서는 전략에서 반공문학체제를 건립하고 관방이 주도하는 삼민주의 이상을 드러내는 반공항아의 전투문예를 추진했다. 특정조직과 기구를 통해 작가들을 동원하는 방식의 반공문학은 몇 년 가지 않아 내부에서부터 공식성과 규범성을 반성하고 선전효과를 높일 수 있는 창작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그 일환으로 외국문학에서 참고할 만한 기교와 형식을 찾는 시도가 있었다. 반공문단의 대표적 잡지인 『문예창작』과 『반월문예』에서 이러한 시도를 볼 수 있는데 서구문예사조인 낭만주의, 자연주의, 상징주의, 모더니즘의 대표적 작가들과 작품이 번역·소개되었고 특히 노벨문학상을 받은 작가들에 대한 소개도 많았을 뿐만 아니라 동구권 작가의 반공문학도 중시되었다. 이들 반공문학잡지의 외국문학 수용에서 특별히 선호하는 경향은 보이지 않고 서구문학 일반의 기교와 형식을 참고하여 객관적인 묘사를 강화하고 긍정적인 인성을 그려내며, 낙관적인 미래상을 제시하여 반공문학의 창작기풍을 쇄신하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데 목적이 있었다고 하겠다. 즉 반공

의 내용과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외국문학의 창작방법과 기교적 측면을 참고하고자 했으며 서구 사조의 세계관이나 문학이념에 관심을 갖기 보다는 삼민주의 문학이념을 고수했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의 미국원조문화는 반공문학의 본질을 흐드는 데까지 이르지 못하는 못했으며 다양한 자유진영의 문학을 소개하는 정도의 관련성을 가진다고 하겠다.

두 번째 단계는 미국원조문화의 직접적인 주도 기구인 미국공보원과 아시아재단의 직접적 영향 아래 발행되어 타이완으로 보급된 『금일세계』와 『대학생활』을 통해 이들 잡지가 드러내는 현대의 속성과 현대문학의 주류적 내용을 알아보고 이것이 타이완의 문화지식계에 가져온 영향을 사고해 보았다. 이 두 잡지는 미국의 냉전문화전략을 보여주는데 자유와 민주관념, 미국의 정치와 경제체제, 과학적 사고와 실증정신을 현대적·진보적인 가치로 설정하고 이를 공산체제보다 우월한 근거로 선전했다. 특히 문학의 정치선전으로부터의 독립성과 자율성, 개인의 창작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강조는 반공문단에 대한 불만해소의 출구로 여겨졌고 무엇보다 이들 잡지가 고액의 보수를 내걸고 타이완 지식인들에게 서구문예의 번역을 의뢰하면서 반공문단에 균열이 가해지기 시작했다. 당시 번역에 참가했던 인원 중에는 반공문단에서 활동하던 여성작가와 이후의 모더니즘문학 주역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어 문학경향의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하겠다. 이들 잡지를 통해 번역·소개된 문학은 영국과 프랑스 등 서구문학도 있었지만 주류적 대상은 미국문학이었다. 에머슨에서 트웨인, 헤밍웨이, 사로얀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각 시기 문학과 낭만주의, 사실주의, 모더니즘을 망라하고 있어 미국 현대문학을 전파하고자 한 분명한 의도를 읽을 수 있다. 특히 『대학생활』은 향후 타이완문단의 주역이 될 젊은 층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는데 이를 통해 번역·소개된 문학은 주로 프랑스 상징파의 시작이며 영미 모더니즘문학도 상당수 있어 1960년대 타이완문학의 모더니즘 경향의 발단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미국공보원을 통해 발행, 보급된 이들 잡지는 미국원조문화의 속성을 그대로 보여주는데 기본적으로 반공을 기저로 한 공산권 대항논리로 미국식 가치관과 현대문예를 전파했다고 하겠다. 때문에 반공문단에서도 이들 잡지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취한 경우도

있는데 이로써 반공을 공통분모로 하여 각각 반공과 자유를 전유하면서 미국 원조문화와의 관련성을 지속시켜 갔다고 하겠다.

세 번째 단계는 1960년대 타이완 모더니즘문학을 선도한 『문학잡지』와 『현대문학』을 대상으로 이에 번역·소개된 구미문학을 통해 이 시기 타이완문학의 주류적 경향을 파악하고 미국원조문화와의 관련성을 검토해 보았다. 이 두 잡지는 특정 그룹, 즉 대학에서 외국문학을 전공한 교수와 학생들에 의해 발간되었고 미국공보원과 아주협회 등의 직간접적인 지원을 받은 것으로 이들 잡지를 통해 번역·소개된 구미문학은 전자에서는 광범위한 미국현대소설과 제임스, 포크너 등 미국 모더니즘 작가들이고, 후자에서는 이들은 물론이고 카프카, 카뮈(Albert Camus), 사르트르, 조이스 등 서구 모더니즘 일반으로 경도되어 가는 경향을 보여준다. 특히 『현대문학』은 집중적으로 작가별 작품을 소개하고 경향을 분석하는 방식을 통해 대량의 모더니즘문학을 들여왔는데 이는 반공문단과는 다른 현대문예의 새로운 예술형식과 내용을 찾는 데 있어 구미 모더니즘문학을 참고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실제로 이 두 잡지를 통해 등장한 대량의 모더니즘 경향 시작과 소설은 그들이 학습에서 모방과 창작으로 모더니즘문학을 수용해 나갔음을 알 수 있다. 『현대문학』의 핵심인물들이 반공문단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는 젊은층 작가들이고 이들 소설의 내성적 경향으로 보아 이들에 의한 미국원조문화의 영향은 외부의 억압에 대항하는 자유의 가치공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언어와 형식의 정밀한 조탁을 통해 개인의 내면에 천착하는 개인주의와 심리주의 경향으로 발전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찰을 통해 미국원조문화가 1950, 1960년대 타이완문학의 추이와 상당히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냉전 배경하에서 반공과 현대를 표방하는 미국적 가치가 미국원조문화의 본질적 특성이라면 1950, 1960년대 타이완문학의 추이가 보여주는 것은 미국원조문화가 반공문학을 강화하는 역할에서 점차 반공에 균열을 일으키면서 반공에 반대하고 현대로 나아가는 궤적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미국원조문화와 1950, 1960년대 타이완문학의 관련성에 대한 고찰은 반공과 모더니즘문학을 단절적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보다 입체적으로 문학사를 재구성할 수 있게 해 주며 나아가 냉전 아시아의 사회, 문학적 면모를 이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참고문헌

- 今日世界出版社, 1952. 3~1980. 12, 『今日世界』.
- 廖淑芳·包雅文, 2013, 『探索的年代－戰後台灣現代主義小說及其發展』, 國立台灣文學館.
- 文學雜誌社, 1956. 9~1960. 8, 『文學雜誌』.
- 半月文藝社, 1950. 3~1954. 6, 『半月文藝』.
- 友聯出版社, 1955. 5~1961. 11, 『大學生活』.
- 自由中國社, 1949. 11~1960. 9, 『自由中國』.
- 中華文藝獎金委員會, 1951. 5~1956. 9, 『文藝創作』.
- 陳芳明, 2011, 『台灣新文學史(上)』, 聯經.
- 馮祖貽, 2002, 『百年家族－張愛玲』, 立緒.
- 現代文學雜誌社, 1960. 3~1963. 9, 『現代文學』.
- 崔末順, 2013, 「민족에서 개인으로－1950년대 냉전타이완의 문학풍경」, 『中央史論』 38집, 중앙대학중앙사학연구소, 339~365쪽.
- 高碩泰, 1981, 『美援與70年代美國外交政策之研究』, 政治大學外交研究所碩士論文.
- 羅森棟, 1971. 11; 1972. 1, 「『今日世界』塑造映像的內容與範圍」(上, 下), 『思與言』 9卷 4, 5期.
- 呂正惠, 1995, 「現代主義在台灣」, 『戰後台灣文學經驗』, 新地文學.
- 白先勇, 1991, 「『現代文學』創立的時代背景及其精神風貌」, 『現文因緣』, 現代文學雜誌社.
- 白先勇, 2001. 7, 「故事新說: 我與台大的文學因緣及創作歷程」, 『中外文學』 第30卷 第2期.
- 謝尙文, 2003. 4, 「帝國主義下的美國文化戰略」, 『海峽評論』 第148期.
- 王梅香, 2005, 『肅殺肅殺歲月的美麗/美力?戰後美援文化與50, 60年代反共文學, 現代主義思潮發展之關係』, 國立成功大學台灣文學研究所碩士論文.
- 秦賢次, 1985. 10, 「香港文學期刊滄桑錄」, 『文訊』 第二十期.
- 黃怡菁, 2006, 『《文藝創作》(1950~1956)與自由中國文藝體制的形構與實踐』, 國立清華大學台灣文學研究所.

[국문 초록]

1950, 1960년대 타이완문학의 경향과
미국원조문화와의 상관성

최말순

이 글은 냉전의 산물인 미국원조문화와 1950, 1960년대 타이완문학 추이와의 관련성을 6권의 문학잡지를 대상으로 고찰했다. 1950, 1960년대 타이완문학의 추이라 함은 반공문학에서 서구문학을 수용해 가는 과정으로 그중에서도 특히 영미 모더니즘문학으로 경도되는 변화를 말한다. 본문에서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첫 번째 단계는 미국원조문화와 1950년대 반공문단과의 관련성으로 반공문단의 대표적 잡지인 『문예창작(文藝創作)』과 『반월문예(半月文藝)』를 대상으로 이들 잡지의 외국문학 소개의도를 고찰했고, 두 번째 단계는 미국원조문화의 직접적인 주도기구인 미국공보원이 발행하고 타이완으로 보급된 『금일세계(今日世界)』와 『대학생활(大學生活)』을 통해 이들 잡지가 드러내는 현대의 속성과 현대문학의 주류적 내용을 알아보고 이것이 타이완의 문화지식계에 가져온 영향을 사고해 보았으며, 세 번째 단계는 1960년대 타이완 모더니즘문학을 선도한 『문학잡지(文學雜誌)』와 『현대문학(現代文學)』을 대상으로 이에 번역·소개된 구미문학을 통해 이 시기 타이완문학의 주류적 경향을 파악하고 미국원조문화와의 관련성을 검토해 보았다.

이러한 고찰을 통해 미국원조문화가 1950, 1960년대 타이완문학의 추이와 상당히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냉전 배경하에서 반공과 현대를 표방하는 미국적 가치가 미국원조문화의 본질적 특성이라면 1950, 1960년대 타이완문학의 추이가 보여주는 것은 미국원조문화가 반공문학을 강화하는 역할에서 점차 반공에 균열을 일으키면서 반공에 반대하고 현대로 나아가는 궤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미국원조문화와 1950, 1960년대 타이

완문학의 관련성에 대한 고찰은 반공과 모더니즘문학을 단절적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보다 입체적으로 문학사를 재구성할 수 있게 해 주며 나아가 냉전아시아의 사회·문화적 면모를 이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타이완문학, 반공문학, 모더니즘문학, 미국원조문화, 냉전시기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BSTRACT]

The Correlation between the Inclinations of Taiwanese
Literature and United States Aid Culture
in the 1950s and the 1960s

Choi Malsoon

This paper investig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changes in Taiwanese literature and United States aid, which was a product of the Cold War, through an analysis of six literary magazines. The changes in Taiwanese literature in the 1950s and the 1960s show the process from anti-communism literature to an embrace of western literature, especially English and American modernist literature.

The paper is organized in to three sections. The first section focuses on the representative literary magazines 『文藝創作』 and 『半月文藝』 in the anti-communism literary circle in the 1950s, showing their correlation to American aid culture, and then investigates the intentions behind their import. The second section concentrates on two popular magazines in Taiwan, 『今日世界』 and 『大學生活』, which were published by an American press that was in charge of the United States aid culture, and studies these magazines for modernity and major streams of modern literature and for the impact on Taiwanese cultural circles.

Throughout the paper it is shown that changes in Taiwanese literature in the 1950s and the 1960s very much correlated with American aid. In the Cold War period, American value marking as anti-communist and modern was the essence of the United States aid culture. However, from the change we can see that the United States

aid culture, which mainly played a strong role in anti-communism, gradually stood up against anti-communism and followed on a path to modernity.

Given this result, the study of the changes in Taiwanese literature through American aid not only enables us to escape from the narrow understanding of the irrelevance between anti-communist literature and modern literature, it also helps us to construct the literary history of the period at a higher level. And it contributes to a broader understanding of Asian societies and literature during the Cold War.



동북아역사재단 Keywords

Taiwanese literature, Anti-communist literature, Modernist literature,
United States aid culture, Cold War period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연구의 과제와 전망

- 일본에서의 연구를 중심으로 -

다나카 마사타카 || 일본 센슈대학 교수

동북아역사재단

1. 머리말

이 글은 관동대지진 연구, 특히 조선인 학살을 비롯한 학살사건에 대한 연구상황을 개관하고 연구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일본사회에 나타난 배외적인 언동의 활발한 전개는 주지하는 바지만, 그중에는 ‘일본국가’나 ‘일본인’에 대치되는 존재로서 ‘재일외국인’, 특히 한반도와 역사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그 대상으로 지목하여 ‘조선인을 죽여라’라는 식으로 규탄하고 있다. 도쿄의 신오쿠보나 오사카의 쓰루하시를 비롯한 각지에서의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는 잘 알려진 대로다. 또 그들의 공격의 대상이 되는 ‘재일외국인’ 중에는 유럽과 미국 출신과 (그들이 인정하는) 사람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아시아에 대한 멸시가 농후하다.

다만 그들의 비난은 ‘재일외국인’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다. 헤이트 스피치의 대상은, 이른바 ‘부락차별’로도 표출되며, 오키나와의 군사기지의 현내 이설

에 항의해서 도쿄에 온 대표자도 포함되는 등 그들의 규탄대상은 보다 확대되고 있다. 즉 그들의 공격은 그들이 ‘비국민’이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러한 감각은 관동대지진 당시 조선인, 중국인, 일본인의 학살로 이어진 것이 아닐까 하고 최근 강하게 느끼게 되었다.

조선인 학살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예를 들어 조선인을 도와준 ‘미담’¹⁾을 언급하면서 일본인에 의한 학살의 사실을 은폐하는 수법으로 이용해 왔다. 다만 군대, 경찰, 민중의 3자가 조선인 학살을 조직적으로 행한 것은 감출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들은 사실인정이 곤란한 부분을 제시하며 조선인 학살을 ‘애매하다’, ‘조작’이라고 전면 부정하거나 자신들에게 편리한 담론을 끌어와서 자료에 대한 비판없이 실증적인 ‘논증’을 해 보인다.

조선인 학살의 ‘수’가 애매하거나 혹은 과장이라고 하는 비난은 공격의 대표적인 사례다. 그들은 당시 조선인이 조사해서 『독립신문』에 발표한 희생자 수를 애매한 숫자, 혹은 과장된 수라고 비난하며, 숫자가 애매하기 때문에 학살 그 자체가 애매하다고 한다. 하지만, 아마다 쇼지[山田昭次]의 지적에 의하면,²⁾ 관헌이 조사를 방해하고 사건을 은폐한 것이기 때문에 희생자 수가 불명확한 것은 당연하다. 애시당초 조사는 조선인이 해야 했던 것인가. 정부가 책임을 지고 조사해서 희생자의 이름을 확정하고, 유족에게 사죄와 보상을 행했더라면 희생자 수는 판명되었을 것이다. 희생자 수의 ‘애매함’은 국가가 져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으며, 그러한 것을 문제삼지 않으면 안된다.

덧붙여 말하면 숫자의 정확함이라는 일견 과학적인 수법을 통해 가능한 한 희생자 수를 줄이려는 담론은 이제까지 난징대학살 등 일본의 식민지 지배나

1) ‘미담’은 진재 후부터 미디어를 통해 전파되어 공적인 ‘기억’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러한 의미에서 그들이 말하는 ‘미담’도 역사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상세한 것은 成田龍一, 1996, 『關東大震災のメタヒストリーのために—報道・哀話・美談』, 『思想』 866; 成田龍一, 2003, 『近代都市空間の文化經驗』, 岩波書店 참조.

2) 山田昭次, 2003, 『關東大震災時の朝鮮人虐殺—その國家責任と民衆責任』, 創史社.

전쟁 책임을 부정하려고 할 때에 행해져 온 '전통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³⁾ 숫자의 크기만을 문제시하는 것은 사건을 축소하기 위한 것인 동시에 왜 희생자가 발생했는가라는 사건의 원인이나 학살의 실태라는 관점에서 눈을 돌리기 위함이다.

이러한 고전적인 공격과 함께 최근 그들의 공격 근거 중 하나가 된 것은 후술하는 구토 미요코[工藤美代子]의 서적이다. 그 책은 사건 당시에 있었던 유언비어가 '사실'이었다고 인정하고 그 주장에 근거해서 새로운 관동대지진의 담론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며, 과거의 담론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필자는 이러한 담론이 현대판 유언비어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강하게 느끼고 있다.

이상과 같은 현재 일본에 나타난 배외적인 언동은, 관동대지진 때 조선인 학살에 관한 언동과 관련지을 수도 있고, 일본에서의 연구는 그러한 현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이상과 같은 현상을 염두에 두면서 최근 일본의 연구동향과 과제에 대해서 검토한 것이다. 본래 이러한 연구에는 한국이나 중국, 미국 등 구미의 연구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지만, 이 글의 테마와 보고자의 능력으로 인해 최근의 연구만 소개하겠다.⁴⁾

-
- 3) 이러한 담론의 수법을 분석한 것으로 笠原十九司, 2007, 『南京事件論争史-日本人は史實をどう認識してきたか』, 平凡社新書가 있다.
- 4) 또한, 한국의 2000년대 초까지의 연구상황에 대해서는 金廣烈, 2004, 「韓國における在日朝鮮人と朝鮮人虐殺事件の研究状況」, 『世界史としての關東大震災: アジア・國家・民衆』, 日本經濟評論社 참조. 근래의 연구경향과 과제에 대해서는 노주은, 2013, 「동아시아 근대사의 '공백'-관동대지진 시기 조선인 학살 연구」, 『역사비평』 104 참조.

2. 일본에 나타난 배외적 담론과 이에 대항하는 움직임

전술한 바와 같이 배외적인 언동을 ‘보강’하는 서적의 하나가 구토의 책인데, 이 책에는 다음과 같은 부분이 있다.

반복해서 말하지만, 무고한 조선인이 위험천만의 상황에 처한 예가 적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생사의 기로에서 공포심을 조성하는 상황이 각 자경단 쪽에는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이미 기술한 것처럼 ‘선인(원문 그대로-인용자 주)습격’이 진실이었기 때문이다. 다소 과장이라고 하더라도 마을과 가족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서 수상한 행동을 일삼는 조선인을 힐난하고, 상대가 반항하거나 도망가면 폭력 사태가 벌어지더라도 이것을 진압하는 것은 자위적인 측면에서 부득이한 조치다.⁵⁾

구토는 유언비어가 ‘진실’이었다고 인정하고, 그 근거를 당시 신문의 유언비어 관련 기사에서 찾고 있다. 널리 알려진 대로 일본의 신문은 지방에 이르기까지 조선인에 대한 유언비어를 일제히 흘려 보냈다.⁶⁾ 그런데 조선인‘습격’의 기사가 ‘진실’인지 아닌지, 이 책에서는 전혀 검증되고 있지 않으며 이 주장이 실증에 근거하지 않은 것은 명확하다. 말하자면, 당시의 유언비어를 그대로 현대에도 유포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 구토의 방법이고, 여기에서 관동대지진 때 나타난 국가와 민중 쌍방의 조선인 인식과 구토의 조선인 인식과의 연속성과 친화성이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는 담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실증이 확실한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자신들을 정당화할

5) 工藤美代子, 2009, 『關東大震災「朝鮮人虐殺」の眞實』, 産経新聞出版, 111쪽. 또한 이 책은 구토의 남편인 가토 야스오[加藤康男]의 『關東大震災「朝鮮人虐殺」はなかった!』(wac, 2014)으로 재판되었다.

6) 신문 보도에 대해서는 山田昭次, 2004, 『朝鮮人虐殺關連新聞報道史料』 全5卷, 綠蔭書房 참조.

수 있다면 충분한 것이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전술한 것처럼, 유언비어의 배경이 되는 배외주의적인 언동이나 정치가의 발언이 계속되고 있다. 2000년 4월 9일, 육상자위대 내리마주둔지에서 당시의 도지사였던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郎]는 ‘오늘날의 도쿄를 보면, 불법입국한 많은 삼국인(三國人)(원문대로 - 인용자 주), 외국인이 아주 흉악한 범죄를 반복하고 있다. 그야말로 도쿄의 범죄 형태는 과거와 달라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엄청나게 큰 재난이 닥친다면 커다란 소요사건조차 예상된다’고 말하고, 외국인은 곧 범죄자라는 편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었다.

이시하라 도지사의 발언에 대해서 연구자들은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이시하라의 발언은, ‘대재난-무질서-외국인에 의한 범죄다발(폭동·약탈)’이라는 도식을 전제로 해서, 대재난 때에 치안유지를 위해 자위대 출동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대재난에 대한 방재훈련에도 그러한 방향을 중시하는 것 같다. 그러나 방재문제에 관한 사회심리학자의 연구는 이와 같은 스테레오 타입을 비판하며, 일반적으로 대규모의 자연재해 이후에는 사람들의 연대가 강해지고, 범죄는 감소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그다지 알려져 있지 않다.⁷⁾

이상과 같은 분석이 있지만, 재일외국인에 대한 편견은 계속되고 있다. 1995년 1월 17일의 한신아와지대지진이나 2011년 3월 11일의 동일본대지진에서도 재일외국인을 타깃으로 하는 유언비어가 확인되는 상황이다.⁸⁾

한편 이러한 풍조를 적극적으로 비판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지적하고자 한다. 서적에 있어서는 가토 나오키[加藤直樹]의 『九月，東京の路上で-1923年關東大震災 ジェノサイドの残響』이 주목된다. 이 책은 관동대지진 때의 조선인 학살을 다룬 연구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가토는 다음과 같이 서

7) 齊藤豊治, 2002, 「阪神大震災と犯罪問題」, 『刑法雑誌』 42-1.

8) 동일본대지진 당시의 유언비어에 대해서는 荻上チキ, 2011, 『檢證 東日本大震災の流言・デマ』, 光文社新書 참조.

술하고 있다.

관동대지진 때 조선인들은 ‘불령선인’이라고 불려져 희생당했지만, 원래 ‘불령선인’이란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저항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용어로서 당시의 미디어에 자주 이용되었다. 지진 4년 전에 일어난 조선독립을 위한 3·1운동도 ‘불령선인의 폭동’으로 간주되었다. 외국의 강권 지배에 분노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감정이다. 그것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를 그 호소의 내용에 귀 기울일 필요가 없는 ‘비인간’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조선인을 마주하고 대화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 능력이 없는 상대인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거짓말쟁이’, ‘변좌자’, ‘외국의 첩자’ 등의 모든 부정적인 레테르를 붙이는 캠페인이 전개된 것이다.⁹⁾

가토는 이렇게 기술한 후, 이것에 대항하고 극복할 길은 ‘사람들이 상대를 보통의 인간으로 인정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 상대의 목소리에 ‘공감’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조선인 학살이 ‘부득이 했다’고 말을 돌리는 구토의 담론은 그야말로 조선인을 ‘비인간’으로 여기는 논리인 것이다.

학살이 일어난 지역에서 조선인 희생자를 애도하고 학살의 실태를 조사하는 노력도 있다. 2009년 9월, 학살지인 도쿄 스미다의 아라카와 하천 부지 옆의 사유지에서 ‘그룹 봉선화’와 ‘관동대지진 때에 학살된 조선인 유골을 발굴하고 추도하는 회’의 손으로 추도비가 세워지고, 학살의 양상이 추도비와 설명판에 구체적으로 새겨졌다. ‘그룹 봉선화’의 중심적 인물 중 한 사람인 니시자키 마사오[西崎雅夫]는 이 지역에서의 학살사건과 전후의 노력에 대해 관동대지진 90주년 기념집회에서 보고했다.¹⁰⁾ 타 지역 사람들에게 의한 사건의 조사는 빠

9) 加藤直樹, 2014, 『九月, 東京の路上でー1923年關東大震災 ジェノサイドの殘響』, ころから, 204쪽.

10) 西崎雅夫, 2014, 「八廣に追悼碑ができるまでー東京の朝鮮人虐殺の實態」, 『關東大震災 記憶の繼承ー歴史・地域・運動から現在を問う』, 日本經濟評論社.

른 것은 1960년대부터 시작되었고, 도쿄,¹¹⁾ 지바,¹²⁾ 사이타마,¹³⁾ 군마,¹⁴⁾ 가나가와¹⁵⁾에서 추도와 조사활동을 계속하고 지역의 학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자료도 작성되었다. 또 조선인들에게서 청취조사도 1960년대부터 행해지고 있다.¹⁶⁾ 1980년대에는 오충공(吳充功) 감독이 조선인의 체험과 일본인 학살의 목격자·관계자 쌍방으로부터 청취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다큐멘터리 영화로 만들었다.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미 타계했으며, 직접 체험자의 증언을 들을 수 없는 우리들 세대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록이 되고 있다.¹⁷⁾

- 11) 도쿄에서의 조사는 日朝協會豊島支部編, 1973, 『民族の棘-關東大震災と朝鮮人虐殺の記録』; 關東大震災時に虐殺された朝鮮人の遺骨を發掘し追悼する會編, 1992, 『風よ鳳仙花の歌をはこべ-關東大震災・朝鮮人虐殺から70年』, 教育史料出版會가 있다.
- 12) 지금의 지바 후나바시·나라시노·야치요에서 일어난 사건의 실태해명은 1970년대 중반부터 진행되었다. 그 성과로서는 千葉縣における關東大震災と朝鮮人犠牲者追悼・調査實行委員會, 1983, 『いわれなく殺された人びと-關東大震災と朝鮮人』; 千葉縣における關東大震災と朝鮮人犠牲者追悼・調査實行委員會, 2009, 『關東大震災85周年 資料集: 増補・改訂版』을 들 수 있다. 또 실행위원회를 비롯한 지역의 활동에 대한 청취조사를 정리한 田中正敬·專修大學關東大震災史研究會編, 2012, 『地域に學ぶ關東大震災-千葉縣における朝鮮人虐殺 その解明・追悼はいかになされたか』, 日本經濟評論社; 小笠原強, 2014, 『千葉縣での朝鮮人虐殺の解明と記憶の繼承について-『地域に學ぶ關東大震災』刊行を通して』, 『關東大震災 記憶の繼承』가 있다.
- 13) 사이타마의 조사에 대해서는 關東大震災50周年朝鮮人犠牲者調査・追悼事業實行委員會, 1974·1987, 『かくされていた歴史-關東大震災と埼玉の朝鮮人虐殺事件』, 關東大震災60周年朝鮮人犠牲者追悼事業實行委員會により増補保存版을 發行을 참조.
- 14) 군마의 조사에 대해서는 猪上輝雄, 1995, 『關東大震災(1923年)藤岡での朝鮮人虐殺事件』, 私家版 참조.
- 15) 요코하마의 지진피해와 조선인 학살조사의 성과의 하나로서 山本すみ子, 2014, 「横浜における關東大震災時朝鮮人虐殺」, 『大原社會問題研究所雜誌』 668 참조.
- 16) 이른 시기의 청취조사로서는 朝鮮大學校, 1963, 『關東大震災における朝鮮人虐殺の真相と實態 朝鮮に關する研究資料』 第9集 참조.
- 17) 도쿄 스미다의 야히로 주변 아라카와 하천부지의 조선인 학살을 그린 오충공 감독 작품 『隠された爪跡-關東大震災と朝鮮人虐殺』(1983), 지바 후나바시·나라시노·야치요에서의 학살을 그린 『拂い下げられた朝鮮人-關東大震災と習志野收容所』(1986)가 있다. 이들 작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小齒崇明, 2014, 『吳充功監督

이러한 활동을 실행해 온 사람들이 전하는 말은 당시 조선인 학살에 주체적으로 관여하고, 또 그러한 사실에 근거해서 희생자의 조사와 보상을 시행하지 않은 일본 정부에 대한 비판이다. 2003년에는 일본변호사연합회가 일본 정부에 대해 인권구제의 입장에서 권고를 행했지만,¹⁸⁾ 정부는 이것을 무시하고 있다. 2010년에는 지역의 조사나 추도를 행해 온 시민이나 연구자가 합동으로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의 국가책임을 묻는 회'를 결성해서 희생자 유족에게 정부가 진지하게 응할 것을 요구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Ⅲ. '천재', '인재'로서의 관동대지진 연구의 현상과 성과

1. '천재', '인재' 연구와 신자료의 발굴

관동대지진 때에 일어난 사건에는, 지진 그 자체에 의한 가옥의 붕괴나 화재·쓰나미 등에 의한 물질·인적피해의 측면과, 조선인, 중국인, 일본인 학살의 측면이 있다. 편의상 이 글에서는 전자를 '천재'에 대한 연구, 후자를 '인재'에 대한 연구라고 칭하고자 한다.

천재에 대해서는 지진학이나 건축학 등의 접근법,¹⁹⁾ 사람들의 피난이나 구

と朝鮮人虐殺ドキュメンタリー映畫」；吳充功，2014，「映畫完成から30年 一曹仁承あぼと共に」，『關東大震災 記憶の継承－歴史・地域・運動から現在を問う』，日本經濟評論社 참조.

18) 권고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국가는 관동대지진 직후의 조선인, 중국인에 대한 학살사건에 관해 군대에 의한 학살의 피해자, 유족 및 허위사실의 전달 등 국가의 행위로서 유발된 사경단에 의한 학살의 피해자, 유족에 대해 그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해야 한다.
2. 국가는 조선인, 중국인 학살의 전모와 진상을 조사하고, 그 원인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19) 예를 들면 武村雅之，2003，『關東大震災：大東京圏の揺れを知る』，鹿島出版會

조 등의 움직임이나 부흥의 과정을 추적하는 역사학의 접근법이 있다. 한편 후자는 조선인, 중국인, 일본인과 같이 민족별로 나누어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또 학살사건의 양상이 지역 시민의 손에 의해 명확해졌다고는 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비교적 잘 알려진 지역과 불명확한 지역의 차는 크다. 직접 목격하고 체험한 사람이 사망하는 가운데 종래의 구술조사의 수법도 곤란해지고 있다.²⁰⁾

그렇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자료의 발굴 가능성은 존재한다. 아라이 가쓰히로[新井勝紘]의 선협적인 조사²¹⁾에 의해 귀중한 자료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던 스미다 요코즈나초공원의 부흥기념관과 도쿄도위령당의 소장자료가, 최근 본격적으로 조사되었다. 조사를 행한 다카노 히로야스[高野宏康]는 기념관과 위령당의 건설과정에 있어서 공적인 ‘진재의 기억’이 형성되어 가는 것을 논증했다.²²⁾ 다카노와 함께 조사를 진행한 기타하라 이토코[北原絲子]는 관동대지진이 그 이후 재난 부흥방법의 모델이 되었다고 논하고 있다. 또 재해사 연구가 역사학과 지리학, 공학계의 학문과 연계시키는 역할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있다.²³⁾ 더욱이 기타하라는 이러한 조사 중에 ‘진재사망자조사표’ 등의 새로운 자료를 발굴했다. 기타하라에 의하면, 이 조사표 5만 건의 카드 속에 조선인(본적이 한반도라고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83건 포함되어 있다고

를 비롯해서 관동대지진에 대한 많은 논고가 발표되고 있다.

- 20) 2013년 1월, 지바의 나라시노 수용소 근처 마을에서 조선인 학살을 목격했던 야기 가야 다에코[八木ヶ谷妙子]가 타계한 것은 상징적인 일이다.
- 21) 조사의 성과로서 新井勝紘, 1997, 「少年が見た朝鮮人追跡-「描かれた朝鮮人虐殺」序論」, 『歴史科學と教育』 16號; 新井勝紘, 2002, 「「描かれた朝鮮人虐殺」論-1枚のスケッチからみえるもの」, 『隣人』 16號가 있지만, 이것은 학살장면을 그린 회고에서 학살의 경과나 여기에 가담한 군대, 경찰, 민중의 관계를 읽어내고자 하는 논고다.
- 22) 高野宏康, 2010, 「「震災の記憶」の變遷と展示-復興記念館および東京都慰靈堂收藏・關東大震災關係資料を中心に」, 『年報 非文字資料研究』 6; 高野宏康, 2014, 「關東大震災の公的な記念施設と復興期の社會意識」, 『關東大震災 記憶の繼承-歴史・地域・運動から現在を問う』이 있다.
- 23) 北原絲子, 2011, 『關東大震災の社會史』, 朝日選書; 北原絲子, 2012, 「理系災害學と文系災害史研究」, 『人民の歴史學』 192 참조.

한다. 조사표에는 생년월일, 남녀 구별, 본적, 일본의 주소, 사망한 장소 등을 기재하는 란이 있고, 이는 관동대지진 때에 사망한 조선인의 이름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조사표에 기록된 사람들이 어떻게 사망했는가는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조사표 기재의 조선인이 바로 살해된 사람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학살이 아닌 지진이나 화재에 따른 사망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인재에 의한 희생자인가, 천재에 의한 희생자인가의 판단은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²⁴⁾

진재사 연구에서 피해의 구체적인 양상이나 사람들의 이동 등이 명확해지면 그 성과는 ‘인재’ 연구에도 유용하다. 구 요추기바시(현 도쿄 스미다 야히로)에서는, 지진 직후부터 재해를 피해 외곽으로 향하는 피난민이 쇄도하는 가운데 9월 1일부터 민중에 의한 학살이 일어나고, 나중에 군대에 의한 학살도 일어났다는 증언이 있다.²⁵⁾ 이러한 의미에서 ‘천재’와 ‘인재’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2_ 조선인 학살 연구

‘인재’에 대한 연구에서는 지역의 조사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 최초의 것은 전술한 ‘재일본관동지방이재동포위문반’이, 요시노 사쿠조[吉野作造] 등의 지원을 얻어 행한 조사일 것이다. 그러나 가해자 측에 선 일본의 국가·민중에게 있어서는 학살이 금기였다는 사실 때문에 위문반의 조사는 방해를 받았으며, 정확한 조사를 행하는 것이 곤란했다. 또, 조선인 희생자의 추도는 전년부터 행해져 왔지만, 당시의 조선인은 공적으로 그러한 뜻을 나타내는 것이 당연

24) 조사표의 성격에 대해서는 北原絲子, 2012, 「關東大震災の被災者の動向」, 『日本史研究』 598; 北原絲子, 2014, 「關東大震災における下賜金について」, 『關東大震災 記憶の継承 - 歴史・地域・運動から現在を問う』, 日本經濟評論社.

25) 이러한 증언을 정리한 것이 西崎雅夫, 2011, 『關東大震災時 朝鮮人虐殺事件 東京下町フィールドワーク資料』; 西崎雅夫, 2012, 『關東大震災時 朝鮮人虐殺事件 東京フィールドワーク資料(下町以外編)』; 西崎雅夫, 2012, 『關東大震災時・朝鮮人關連「流言蜚語」・東京證言集』으로 세 책 모두 私家版이다.

히 불가능 했다. 일본의 패전 후에는 김병직(金秉稷)의 『關東大震災白色テロルの真相』(朝鮮民主文化團體總連盟, 1947)이 출판되고, 일본 연구자 중에서도 사이토 히데오[齊藤秀夫]의 「關東大震災と朝鮮人さわぎ-35周年によせて」(『歴史評論』 99, 1958) 등이 발표되었지만, 커다란 영향을 준 것은 강덕상(姜徳相)·금병동(琴秉洞)의 『現代史資料6 關東大震災と朝鮮人』(みすず書房, 1963), 조선대학교의 『關東大震災における朝鮮人虐殺の真相と實態 朝鮮に關する研究資料』 第9集(1963) 등의 간행이었다.²⁶⁾

한편, 일본인 조사자에 의한 목격 증언의 발굴도 있고, 공적인 기록에서는 불명확했던 지역에서의 사건 양상이 명확하게 되었다. 또 지역에서는 지진후부터 희생자의 추도가 조선인이나 일본인들에 의해 행해져 왔다.²⁷⁾ 이러한 행위들은 학살의 기억을 풍화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중요했다고 생각된다.

전후 연구의 목적은 당초 학살의 실태와 이러한 사건을 일으킨 국가권력과 민중 관여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었다. 즉, 일본인은 왜 조선인을 살해했는지에 대한 관심이었다. 한편 희생자 측에 선 연구자의 관심도 살해의 실태와 그 사건을 일으킨 정부 및 민중의 의식으로 향한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하지만 오로지 가해자 측에 시선이 집중되면 희생자인 조선인은 객체화되고, 그 동포가 사건을 어떻게 파악하고 행동하려 했는가 등 희생자와 관계를 갖는

26) 또한, 금병동은 綠蔭書房에서 『關東大震災朝鮮人虐殺問題關係史料』을 계속해서 출판하고 자료의 공개를 위해 노력했다. 그 후에도 지진 이후 10년마다 새로운 연구가 진전되었다[關東大震災50周年朝鮮人犠牲者追悼行事實行委員會·調査委員會 編, 1975, 『關東大震災と朝鮮人虐殺-歴史の眞實』, 現代史出版會; 關東大震災70周年記念行事實行委員會 編, 1994, 『この歴史永遠に忘れず-關東大震災70周年記念集會の記録』, 日本經濟評論社; 關東大震災80周年記念行事實行委員會 編, 2004, 『世界史としての關東大震災: アジア・國家・民衆』, 日本經濟評論社 등이 그 예다].

27) 해방 후 지역별 조사는 조선인들 사이에서 시작되었고, 1963년경부터 일조협회와 같은 일본인단체 안에서도 다루어지게 되었다. 이에 대한 연구로 高橋信雄의 편, 1961, 『悲しみと怒りと悔やみを明日乃ために-殉難朝鮮人の靈に捧ぐ 大正12年朝鮮人虐殺事件調査記録』, 日朝協會群馬縣連合會; 日朝協會朝鮮人犠牲者問題特別委員會, 1963, 『本庄・船橋調査報告』同會가 있다. 그 후의 성과로는 주9 이후에 제시한 일련의 조사 및 활자화가 이루어졌다.

사람들의 주체적인 행동과 사유를 찾으려는 문제의식은 뒷전으로 여겨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최근 관동대지진의 조선총독부의 대응에 대해 검토한 노주은의 연구나²⁸⁾ 지진 전후부터 전시기에 이르기까지 조선인의 주체적인 대응이나 운동을 쫓아가는 아마다의 연구,²⁹⁾ 관동대지진 직전의 조선인 노동자 학살사건이나 당시의 조선인 유학생을 쫓아가는 배영미(裴始美)의 연구,³⁰⁾ 해방 후 조선인의 운동과의 관계성을 검토한 정영환(鄭榮桓)의 연구,³¹⁾ 지역의 활동에 대한 기록화의 시도³²⁾ 등 새로운 틀의 연구가 나타나고 있다.

관동대지진이 일어난지 90년째를 맞이하여 이상과 같은 연구가 새롭게 등장하는 한편, 한국에서 혹은 한국과 일본의 연구자가 공동으로 연구에 참여하는 움직임도 활발해졌다. 그 상징이 2013년에 개최된 국제심포지엄이며, 한국 연구자의 연구성과가 다수 보고되었다.

한국에서는 2013년 8월 및 2014년 8월에 동북아역사재단 주최로 국제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2013년의 ‘관동대지진 90년 한일학술회의’에서는, ‘한일관

- 28) 노주은, 2007, 「關東大地震과 朝鮮總督府의 在日朝鮮人 政策－總督府의 ‘震災處理’ 過程을 中心으로」, 『韓日民族問題研究』 12.
- 29) 山田昭次, 2003, 『關東大震災時の朝鮮人虐殺』; 山田昭次, 2011, 『關東大震災時の朝鮮人虐殺とその後－虐殺の國家責任と民衆責任』, 創史社; 山田昭次, 2011, 「關東大震災時の朝鮮人虐殺とその犠牲者をめぐって」, 專修大學人文科學研究所編, 『移動と定住の文化誌－人はなぜ移動するのか』, 彩流社 참조. 최근에 관련 서적으로 山田昭次, 2014, 『關東大震災朝鮮人虐殺裁判資料1 (埼玉縣關係)』, 『關東大震災朝鮮人虐殺裁判資料2 (群馬縣關係)』, 綠蔭書房; 山田昭次, 2014, 『關東大震災時の朝鮮人迫害－全國各地での流言と朝鮮人虐待』, 創史社를 발표하고 있다.
- 30) 裴始美, 2010, 「1922年, 中津川朝鮮人勞働者虐殺事件」, 『在日朝鮮人史研究』 40; 2013年 6月 15日の關東大震災90周年記念行事實行委員會主催の事前學習會における報告, 「關東大震災時の朝鮮人留學生の動向」; 小齒崇明, 2014, 『關東大震災 記憶の繼承－歴史・地域・運動から現在を問う』에 수록.
- 31) 鄭榮桓, 2011, 「在日朝鮮人の形成と「關東大虐殺」」, 趙景達編, 『植民地朝鮮－その現實と解放への道』, 東京堂出版; 鄭榮桓, 2014, 「解放直後の在日朝鮮人運動と「關東大虐殺」問題－震災追悼行事の検討を中心に」 참조.
- 32) 田中正敬·專修大學關東大震災史研究會 編, 2012, 『地域に學ぶ關東大震災－千葉縣における朝鮮人虐殺 その解明・追悼はいかになされたか』, 日本經濟評論社.

계와 관동대지진의 역사적 의의’, ‘관동대지진에 대한 연구와 교육’, ‘관동대지진과 남겨진 과제’의 3부 구성으로 한일 역사 연구나 사법, 시민운동의 입장에서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진상규명에 있어서 문제의식과 과제, 조선인 학살 관련 자료의 검토, 한일역사교과서의 분석, 한국 시민운동의 활동 등이 보고되었다.³³⁾

2014년의 심포지엄은 ‘청암대학교 개교 60주년 기념 재일코리아연구소 국제학술대회-관동대지진과 조선인문제 연구’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이 심포지엄에서는, 일본에서의 관동대지진 연구의 동향 소개, 학살사건의 지역적인 특징과 비교, 학살사건과 일본에 있어서의 조선인의 다양한 운동과의 관계, 조선인 학살과 중국인 학살의 비교를 통한 질적인 차이, 학살사건이 한반도에 미친 영향, 2013년에 도쿄의 한국대사관에서 발견된 명부의 분석 등이 보고되었다.³⁴⁾

한편, 2013년에 일본의 리쓰메이칸대학에서도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와 리쓰메이칸대학 코리아연구센터와 공동으로 관동대지진 90주년 국제 심포지엄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로부터 90년, 국가폭력과 식민주의를 넘어서’가 개최되었다.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에 대한 유럽 미주 주재 조선인의

33) 강덕상, 2013, 「한일관계에서 본 관동대지진」; 야마다 쇼지, 2013, 「일본 민중은 관동대지진 당시 조선학살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오늘날 일본의 정치적사상적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강효숙, 2013, 「관동대진재 당시 피학살 조선인과 가해자에 대한 일고찰」; 다나카 마사타카, 2013, 「전후 일본의 역사교육과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 서종진, 2013, 「일본 교과서의 관동대지진과 학살사건 기술 내용 분석」; 김인덕, 2013, 「한국 역사교육 속의 재일조선인과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 장세운, 2013, 「관동대지진시 한인 학살에 대한 [독립신문]의 보도와 최근 연구동향」; 모리카와 후미토, 2013, 「1923~2013년 관동대지진 90년, 우리들은 국가민족을 극복했는가?」; 김종수, 2013,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을 규명하는 한국에서의 시민운동」 참조.

34) 다나카 마사타카, 「일본에 있어서의 관동대지진연구의 과제와 전망」; 강효숙, 「1923년 관동지역 조선인 학살의 비교 연구(1) - 일변연(日辯聯)의 관고문 보고서를 중심으로」; 김인덕, 「1923년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과 조일 운동세력의 동향」; 김광열, 「관동대지진 시에 학살당한 한인과 중국인의 사후조치 고찰-피해자 보상을 위한 입론」; 성주현, 「1923년 관동대지진에 대한 국내의 동향과 기억」; 김도형, 「관동대지진 희생자 명부의 내용 검토와 역사적 성격」.

반응, 조선이나 일본에 있어서 독립운동이나 노동운동과의 관계성, 일본 지식인의 반응 등이 보고되었다.³⁵⁾ 조선인 학살과 민족독립운동과의 관련성, 한국의 역사교육의 입장에서의 분석 등은 종래 일본에서는 연구축적이 그다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주제이며, 그러한 의미에서 한국 연구자의 시각에서 배울 점이 많다.

전술한 것처럼 종래의 연구는 자칫하면 왜 일본인이 관동대지진 때 조선인 학살했는가, 혹은 이 사건이 일본의 다이쇼[大正]데모크라시로부터 준전시체제로의 전환점이 되었는가 등의 소위 일본근대사 입장에서의 관심이 강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상과 같은 조선인의 의미를 되묻는 형태의 연구는 귀중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필자도 이러한 문제의식을 배우면서 조선인 학살이 한반도에 어떻게 전해졌는가라는 문제,³⁶⁾ 일본 각 지역의 조선인이나 일본인이 이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학살의 실태조사나 희생자의 추도를 행하여 왔는가의 문제³⁷⁾ 등에 대해 검토를 해 온 것이다.

- 35) 보고의 일부는 아래와 같이 수록되고 출판되었다. 洪善杓, 2014, 「關東大震災に對する歐米在住韓人の對應」, 『코리아연구』 5; 李明花, 2014, 「關東大震災と韓國獨立運動」, 『코리아연구』 5; 尹素英, 2014, 「關東大震災の朝鮮人虐殺に對する認識と對應—秋田兩雀とクロボトキニストを中心に」, 『코리아연구』 5; 田中正敬, 2014, 「關東大震災と千葉における朝鮮人虐殺の推移」, 『코리아연구』 5.
- 36) 田中正敬, 2003, 「關東大震災はいかに傳えられたか」, 『歴史地理教育』 657; 田中正敬, 2005, 「關東大震災と朝鮮人の反應—その意識を考察する手がかりとして」, 『人文科學年報<專修大學人文科學研究所>』 35에서는 관동대지진 때의 학살의 정보에 대한 한반도 거주 조선인의 반응에 대해 검토했다.
- 37) 田中正敬, 2009, 「千葉縣における關東大震災と朝鮮人犠牲者追悼・調査實行委員會の活動—『いわれなく殺された人びと—關東大震災と朝鮮人』刊行まで」, 『專修史學』 46; 田中正敬, 2010, 「關東大震災と習志野・船橋—朝鮮人虐殺事件の解明・追悼はいかになされたか(4) 船橋における關東大震災朝鮮人虐殺と在日朝鮮人による追悼運動について—船橋における追悼碑建立と追悼式についての聞き取り」, 『專修史學』 48. 이 두 논문은 후에 『地域に學ぶ關東大震災』에 초록했다. 이 두 논문에서는 지바의 후나바시·나라시노·야치요에서 일본인의 조선인 학살의 실태와 추도활동, 후나바시에서 희생자동포에 의한 추도에 대해 정리했다. 또한 山田昭次, 2011, 「關東大震災時の朝鮮人虐殺とその犠牲者をめぐって」, 『關東大震災時の朝鮮人虐殺とその後—虐殺の國家責任と民衆責任』, 創社社에서는 주로 식민지기를 중심으로 조선인의 추도활동을 검토했다.

그 외, 재판자료의 분석을 통해 적극적·자발적인 것을 포함하여 다양한 자경단의 형성 방법이나 그것을 만들어낸 지역사회 사람들의 관계성 및 의식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유언비어에 놀아났다’라는 외재적이고 단순한 자경단의 이미지에 반문하는 후지노 유우코[藤野裕子]의 연구도 주목된다. 이 글에서 후지노는 재판이 진행된 조선인 학살사건을 분석하고 이 지역에서 일본민중이 ‘상호부조적인 행위의 일환’으로써 조선인 학살을 행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³⁸⁾ 한편, 민중은 조선인만을 습격한 것이 아니다. 그들은 사이타마의 본조나 요리이, 군마의 후지오카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은 경찰서를 습격하거나 사이타마의 메누마와 같이 일본인이라고 인식하면서도 살해하기도 했다. 학살사건의 검토에 있어서 앞으로도 민중의 의식이나 이것과 관련한 지역사회의 여러 규제에 대해 다양한 사례로부터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3_ 일본인 학살·중국인 학살에 대한 연구

최근 일본인의 학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대표적인 것으로 지바의 후쿠다·다나카손의 주민이 일으킨 일본인 행상인들의 살해사건이 있다.³⁹⁾ 여기에서는 가가와 출신의 9명의 행상인들이 집단적으로 살해되었다. 지방출신자이기 때문에 일본어가 ‘불명확’했다라는 것이 이유였다.

또, 고조노 다카아키[小園崇明]는 조선인으로 오인되어 살해 당한 일본인이 아닌 일본인이지만 신체장애자로서 일본인에게 차별을 받는 입장인 청각장애자를 겨냥하고 있다.⁴⁰⁾ 조선인과 일본인 사회주의자라고 하는 틀을 중심으

38) 藤野裕子, 2012, 「關東大震災時の朝鮮人虐殺と向きあう」, 歴史學研究會編, 『震災・核災害の時代と歴史學』, 青木書店.

39) 石井雍大, 1994, 「千葉縣福田・田中村事件研究の歩み」, 千葉縣福田村事件真相調査會, 2001, 『福田村事件の真相』; 辻野彌生, 2013, 『福田村事件-關東大震災知られざる悲劇』.

40) 小園崇明, 2012, 「關東大震災下に虐殺されたる者-近代日本における音聲言語のポリテクス」, 『東京社會福祉史研究』 6; 小園崇明, 2014, 「關東大震災下に「誤殺」されたる者について」, 『關東大震災 記憶の繼承』.

로 하는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지방출신자나 신체장애자들은 적극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러한 연구들은 학살 관련 연구들의 틀에 대한 재인식을 촉구하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중국인 학살의 연구에 대해서는 이마이 세이이치[今井清一] 등이 선구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었지만,⁴¹⁾ 본격적으로는 문서자료만이 아닌 중국인 학살을 알고있는 관계자의 인터뷰나 왕시티엔살해사건⁴²⁾에 대해 명확히 밝힌 다하라 요우[田原洋]의 연구⁴³⁾가 연구를 크게 진전시켰다. 그후 중국에서의 신문 보도나 중국인 학살을 둘러싼 중국 측과 일본과의 외교 교섭⁴⁴⁾ 등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졌지만, 그중에서도 중국의 희생자 유족을 방문하는 등의 일을 한 니키 후미코[仁木ふみ子]의 연구는 중요하다.⁴⁵⁾ 이 자료에는 중국인 학살을 조사한 베이징 정부의 조사단 보고 등 귀중한 자료가 수록되어 있다. 특히 「일본진재참살화교안권(日本震災慘殺華僑案卷)」과 같은 중국인 희생자의 상세한 일람은 사건의 실태를 아는데 있어서 가치가 있다. 하지만 자신의 좁은 학식으로만 보면 상기의 다하라와 니키를 제외하면 이러한 자료를 충분히 분석한 논문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이상과 같이, '인재'에 관한 연구는 민족별로 행해지는 경향이 강했다고 하

-
- 41) 今井清一, 1976, 「大島町事件・王希天事件と日本政府の對應」, 『論集 現代史』, 筑摩書房.
- 42) 왕시티엔[王希天]은 1896년에 중국동북지방의 창춘에서 태어나 1915년에 일본으로 유학, 1922년에 재일중국인노동자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설립한 교일공제회의 회장으로서 활동했다.
- 43) 田原洋, 1982, 『關東大震災と王希天事件: もうひとつの虐殺秘史』, 三一書房.
- 44) 横田豊, 1989, 「關東大震災に對する中國の對應」, 『史潮』新26; 横田豊, 1993, 「大島町事件再考-關東大震災下の中國人・朝鮮人虐殺事件の眞因をめぐして」, 『青山史學』16; 川島眞, 1999, 「關東大震災と中國外交-北京政府外交部の對應を中心に」, 『現代中國研究』4. 이후에 川島眞, 2004, 『中國近代外交の形成』, 名古屋大學出版會에 수록.
- 45) 仁木ふみ子, 1993, 『震災下の中國人虐殺-中國人労働者と王希天はなぜ殺されたか』, 青木書店; 今井清一・仁木ふみ子編, 2008, 『關東大震災下の中國人虐殺事件-史料集』, 明石書店.

더라도 관동대지진 70주년,⁴⁶⁾ 80주년,⁴⁷⁾ 90주년 등의 주년 행사에서 각 사건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지는 기회가 있었다. 또한 각각의 주년 행사에서의 보고에는 연구상의 과제나 성과가 반영되어 있고 일본의 문제에 대한 관심 등을 알아가는 데 주년 행사의 기록집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예를 들면, 관동대지진에 관한 최신의 연구성과로서 2013년에 개최된 「관동대지진 90주년 기념집회」 및 그 사전학술회의 보고를 정리한 『關東大震災 記憶の繼承 - 歴史・地域・運動から現在を問う』⁴⁸⁾는 제1부가 「학살과 국가책임」, 제2부가 「구원·부흥·지역」, 제3부가 「기억의 발굴 - 「지역」, 「재일」의 시점에서」, 제4부가 「여러가지 시점으로부터의 연구」의 4부 구성으로 되어 있다. 제1부에서는 학살사건에 대한 일본의 국가책임이 테마가 되고, 제2부에서는 지진 후 부흥 과정에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의 표출이나 집단적인 기억의 형성 등을, 제3부에서는 일본의 패전 후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각 지역의 조사와 추도의 활동을, 제4부에서는 최근 관동대지진 연구의 새로운 문제의식에 기초한 논고가 수록되어 있다.

IV. 맺음말

관동대지진사의 전후 연구는 지진으로부터 40년째인 1963년을 계기로 크게 발전해 왔다. 그중에서 이마이 세이이치의 「大震災下の諸事件の位置づけ」(『労働運動史研究』 37, 1963) 이후, 가메이도사건, 아마카스사건, 조선인 학

46) 關東大震災70周年記念行事実行委員會 編, 1994, 『この歴史永遠に忘れず - 關東大震災70周年記念集會の記録』.

47) 關東大震災80周年記念行事実行委員會 編, 『世界史としての關東大震災: アジア・國家・民衆』.

48) 小園崇明, 2014, 『關東大震災 記憶の繼承 - 歴史・地域・運動から現在を問う』.

살을 ‘3대 테러’로 자리매김하는 견해도 나타났지만, 강덕상이 이러한 견해를 비판했다.

가족 3명이 살해 당한 오스기사건, 10명이 살해 당한 가메이도사건, 6,000명 이상이 살해당한 조선인 학살사건. 이 정도의 숫자 차이는 당연히 질적인 차이도 나타난다. 권력에 의한 밀실범죄, 계급문제로서의 가메이도사건과 오스기사건, 관·민일체의 학살행위, 민족문제로서의 조선인 학살사건. 이 같은 완전히 이질적인 것을 무리하게 관련지으려는 것은 관헌의 은폐공작에 가담한 것과 같은 일이 되어 버린다고 필자는 생각한다.⁴⁹⁾

이러한 비판은 물론 학살된 사람들의 생명을 구별하는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니다. 강덕상의 지적은 학살사건의 성격에 관한 것으로 일본인·중국인 학살을 포함한 지진 때의 학살의 핵심은 조선인 학살에 있고, 이것을 같은 수준으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전술한 것처럼 조선인 학살의 중대함을 부정하려는 담론이 횡행하고 지금까지도 학살의 사실이 금기시되는 현상하에서 강덕상의 물음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한다.

다만, 강덕상이 조선인 학살만을 연구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는 점에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강덕상의 문제제기를 고려하면서도 중국이나 일본인 학살을 포함한 총체적인 시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⁵⁰⁾ 그러한 시점을 갖는 것이 조선인 학살과 다른 사건과의 공통성이나 차이를 명확히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지 않을까? 구체적으로는 조선인 학살과 중국인 학

49) 강덕상의 비판은 1973년에 쓰여진 『關東大震災』, 中公新書에 나타나 있지만 여기서의 인용은 姜德相, 1994, 「三大テロ史觀について」, 『この歴史永遠に忘れず』, 145쪽에 의한다.

50) 총체적인 시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도쿄의 재일한인역사자료관에서의 기획전시 『關東大震災時の朝鮮人虐殺と國家・民衆』(2010. 9. 1~12, 25)에 맞추어 작성되었던 「企畫展示 關東大震災時の朝鮮人虐殺と國家・民衆」, 實行委員會 在日韓人歴史資料館編·發行, 2010에는 조선인 학살사건만이 아니고 중국인·일본인 학살사건에 대한 자료와 해설도 수록되어 있다.

살, 일본인 학살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며, 그것을 위해서는 하나의 지역 안에서 일어난 것, 즉 지진의 피해, 언제, 어떠한 정보가 어떠한 방법(누가 전했는가 등)으로 지역에 들어갔는가, 이것에 대한 대응(피난이나 경계 등 지역 내에서의 사람들의 움직임이나 의식), 권력이 얼마만큼 관여했는가 등, 복합적인 사건의 양상이나 그 배경을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이 경우의 ‘지역’이라는 말은 현 수준의 큰 틀에서 각 초[町], 손[村] 등 작은 틀까지 여러가지 단위를 가리킨다. 예를 들면, 조선인을 학살해 버릴까, 도와줄까라는 대응의 결정에는 현 수준의 정보전달이나 지시가 작용할 경우도 있고, 일개의 손 내의 협의의 결과로 좌우되는 경우도 있다.

사이타마에서는 내무성에서 사이타마청을 통해 각 초, 손에 대해 경계태세를 취하도록 지시한 것이 조선인 학살을 일으킨 요인이다.⁵¹⁾ 이 경우는 ‘현’이라는 큰 수준에서 일률적으로 이루어진 정보와 지시가 각 초, 손에 내려진 것

51) 사이타마에서 각 초, 손의 장에게 보낸 아래의 지시가 사이타마의 대규모 조선인 학살을 일으켰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庶發 第8號

大正 12年 9月 2日

埼玉縣 內務部長 郡町村長 앞

불령선인 폭동에 관한 건 이첩

이번 지진에 대해 도쿄에서 불령선인의 망동이 있었다. …… 이러한 때에 초, 손의 당국자는 재향군인분회·소방대·청년단 등은 일치단결해서 그 경계에 임하고 또 다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조속히 적당한 방책을 강구하도록 급히 상당한 조치를 취하고자 하니 허가하기 바란다. 우측 내용의 접수에 의해 이첩한다.

이 지시는 원래 내무성에서 낸 것이지만, 지시속에 보이는 ‘적당한 방책을 강구한다’라는 것은 살상을 포함해서 처분해도 좋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추측된다. 9월 2일 오후 5시에 사이타마의 지방과장이 도쿄의 내무성에서 온 통첩을 사이타마청으로 가지고 돌아와서 사이타마의 내무과장이 현하의 각 군청에 전화로 전했다(이첩)는 것이다. 이 사실은 1923년 12월 15일의 중의원인 나가이 류타로[永井柳太郎] 의원의 질문 속에 소개되었다. 상세한 것은 關東大震災50周年朝鮮人犠牲者調査・追悼事業實行委員會, 1974, 『かくされていた歴史-關東大震災と埼玉の朝鮮人虐殺事件』; 米倉勉, 2014, 「2003年「日弁連勧告」の意義と現状-差別的・排外的傾向が強まる中で」, 『關東大震災 記憶の継承-歴史・地域・運動から現在を問う』 수록 참조.

이 자경단의 결성으로 이어지는 이유다.

한편, 그러한 정보가 위에서부터 나오더라도 반드시 각각의 손에 있어서 이웃 손과 같은 대응을 했을리는 없다. 민중에 의해 대규모 조선인 학살사건이 일어난 지바 후나바시 근처의 마루야마라는 손에서는 주민이 합심하여 조선인의 인도를 요구한 이웃 손으로부터 손에 있던 조선인을 지켰다. 후나바시의 근처에는 해군 도쿄전신소 후나바시송신소가 있고, 송신소에서는 내무성의 요청으로 조선인에 관한 유언비어를 무전으로 전달함과 동시에,⁵²⁾ 주민들에게 무기를 지급하고 조선인을 경계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2명의 조선인이 거주하던 마루야마에서는 손의 주민이 협의해서 조선인이 숙박하고 있던 집을 지키고, 여기로 몰려가 조선인의 인도를 요구한 이웃 손의 주민을 쫓아냈다. 평소부터 조선인과 손의 주민들의 교류가 있었다는 것 등이 조선인을 지키자라는 의식을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된다.⁵³⁾

또 조선인·중국인·일본인의 학살에는 공통의 특징을 보이지 않았을까라고도 생각한다. 실은 3자의 학살은 모두 무차별의 것과 특정 인물을 선택해서 살해한 예가 있다.

조선인에 대해서는, 무차별적인 학살(조선인이라고 보이고 죽인다는 의미에는 선택적이지만)의 이미지가 강하지만, 조선인 ‘보호’를 위해서 9월 5일에 나라시노에 개설된 수용소에서는 ‘보호’라는 공적인 목적과는 정반대로 군대가

52) 전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吳鎮(守府－引用者註)副官宛打電
各地方長官宛
9月3日午前8時15分了解
内務省警保局長出
도쿄 부근의 지진을 이용해서 조선인은 각지에서 방화를 하고 부정한 목적을 수행하려 한다. 현재 도쿄 시내에서 폭탄을 소지하고 석유를 뿌려 방화하는 자가 있다. 이미 도쿄 산하에는 일부 계엄령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각지에 있어서 충분히 세밀한 주의와 시찰을 강화하고 조선인의 행동에 대해서는 엄밀한 단속을 가할 것 (「9月3日午前8時15分, 吳鎮守府宛打電」, 各地方長官宛, 内務省警保局長出). 姜徳相·琴秉洞 編, 1963, 『現代史資料6－關東大震災と朝鮮人』, みすず書房, 18쪽.

53) 상세한 내용은 田中正敬, 2009, 『いわれなく殺された人びと』 참조.

수용자의 사상조사를 해서 선별된 조선인을 살해하고, 근린 주민에게도 살해하도록 했다(적어도 9월 7일 이후)라는 것이 명확해지고 있다.⁵⁴⁾ 중국인 학살에서도 오시마사건으로 상징되듯이 무차별 학살이 일어나는 한편, 교일공제회 회장인 왕시티엔이 군대에 끌려가서 살해당한 사건(9월 12일)도 일어났다. 일본인 희생자의 경우도 조선인으로 오인되어 살해당한 예와 함께 가메이도사건(4~5일에 걸쳐),⁵⁵⁾ 무정부주의자인 오스기 사카에[大衫榮] 등의 살해사건(아마카스사건, 9월 16일)과 같은 사상탄압사건도 일어나고 있다.

선별적 살해의 예를 보면, 무차별 학살과는 성격이 다르고 계획적이며, 살해의 시기도 늦다. 어떤 식으로든 군대가 관계하고 있다는 특징도 있다. 이러한 실태를 근거로 삼아서 보면 사건을 설명할 때에 자주 이용되는 「지진의 혼란 속에서 살해되었다」, 혹은 「조선인·중국인과 일본인 사회주의자가 살해되었다」라는 문언으로는 이들의 예가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총체적인 시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또 하나 있다. 현재 일본의 과제는 가토가 말한대로 ‘공감’으로의 길을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가에 있으며, 그것을 위해서는 지진 이후 학살사건을 한편에서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상징하는 것으로 자리매김하는 것과 동시에 중국인이나 일본인을 포함한 보다 보편적인 ‘제노사이드’의 문제로 바라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이라도 구체적으로 강덕상의 문제제기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가 과제다.

54) 상세한 내용은 田中正敬, 2009, 앞의 책 참조.

55) 일반적으로는 사회주의자의 탄압으로 알려진 사건이다. 난카쓰노동회의 가와이 요시토라[川合義虎]·기타지마 기치조[北島吉藏]·야마기시 지쓰지[山岸實司]·가토 코쥬[加藤高壽]·곤도 고조[近藤廣造]·요시무라 코지[吉村光治]·사토 킨지[佐藤欣治]·스즈키 나오키즈[鈴木直一], 준노동조합의 히라사와 게이시치[平澤計七]·나카사지 우하치[中筋宇八] 등 10명이 살해되었다.

참고문헌

- 강효숙, 2013, 「관동대지진 당시 피학살 조선인과 가해자에 대한 일고찰」, 『관동대지진과 조선인 학살』, 동북아역사재단.
- 김인덕, 2013, 「한국 역사교육 속의 재일조선인과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 『관동대지진과 조선인 학살』, 동북아역사재단.
- 김중수, 2013,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을 규명하는 한국에서의 시민운동」, 『관동대지진과 조선인 학살』, 동북아역사재단.
- 노주은, 2007, 「關東大地震과 朝鮮總督府의 在日朝鮮人 政策－總督府의 「震災處理」過程을 中心으로」, 『韓日民族問題研究』 12.
- 노주은, 2013, 「동아시아 근대사의 '공백'－관동대지진 시기 조선인 학살 연구」, 『역사비평』 104.
- 다나카 마사타카, 「전후 일본의 역사교육과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 『관동대지진과 조선인 학살』, 동북아역사재단.
- 모리가와 후미토, 2013, 「1923~2013년 관동대지진 90년, 우리들은 국가민족을 극복했는가?」, 『관동대지진과 조선인 학살』, 동북아역사재단.
- 서종진, 2013, 「일본 교과서의 관동대지진과 학살사건 기술 내용 분석」, 『관동대지진과 조선인 학살』, 동북아역사재단.
- 야마다 쇼지, 2013, 「일본 민중은 관동대지진 당시 조선학살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오늘날 일본의 정치적사상적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관동대지진과 조선인 학살』, 동북아역사재단.
- 장세윤, 2013, 「관동대지진시 한인 학살에 대한 [독립신문]의 보도와 최근 연구동향」, 『관동대지진과 조선인 학살』, 동북아역사재단.
- 實行委員會 在日韓人歴史資料館 編, 2010, 『在日韓人歴史資料館 第7回企画展「關東大震災時の朝鮮人虐殺と國家・民衆」資料と解説』.
- 加藤康男, 2014, 『關東大震災「朝鮮人虐殺」はなかった!』, wac.
- 加藤直樹, 2014, 『九月, 東京の路上で－1923年關東大震災 ジェノサイドの残響』, ころかち.
- 姜徳相, 1973, 『關東大震災』, 中公新書.
- 姜徳相, 2003, 『關東大震災・虐殺の記憶』, 靑丘文化社.

- 姜徳相, 1994, 「三大テロ史觀について」, 關東大震災70周年記念行事實行委員會編, 『この歴史永遠に忘れず-關東大震災70周年記念集會の記録』, 日本經濟評論社.
- 姜徳相・琴乘洞 編, 1963, 『現代史資料6 關東大震災と朝鮮人』, みすず書房.
- 高橋信雄ほか 編, 1961, 『悲しみと怒りと悔やみを明日乃ために-殉難朝鮮人の靈に捧ぐ 大正12年朝鮮人虐殺事件調査記録』, 日朝協會群馬縣連合會.
- 高野宏康, 2010, 「「震災の記憶」の變遷と展示-復興記念館および東京都慰靈堂收藏・關東大震災關係資料を中心に」, 『年報 非文字資料研究』6.
- 高野宏康, 2014, 「關東大震災の公的な記念施設と復興期の社會意識」, 『關東大震災記憶の繼承-歴史・地域・運動から現在を問う』, 日本經濟評論社.
- 工藤美代子, 2009, 『關東大震災「朝鮮人虐殺」の眞實』, 産經新聞出版.
- 關東大震災50周年朝鮮人犠牲者調査・追悼事業實行委員會, 1974・1987, 『かくされていた歴史-關東大震災と埼玉の朝鮮人虐殺事件』, 關東大震災60周年朝鮮人犠牲者追悼事業實行委員會により増補保存版を發行.
- 關東大震災50周年朝鮮人犠牲者追悼行事實行委員會・調査委員會 編, 1975, 『關東大震災と朝鮮人虐殺-歴史の眞實』, 現代史出版會.
- 關東大震災70周年記念行事實行委員會 編, 1994, 『この歴史永遠に忘れず-關東大震災70周年記念集會の記録』, 日本經濟評論社.
- 關東大震災80周年記念行事實行委員會 編, 2004, 『世界史としての關東大震災: アジア・國家・民衆』, 日本經濟評論社.
- 關東大震災時に虐殺された朝鮮人の遺骨を發掘し追悼する會 編, 1992, 『風よ鳳仙花の歌をはこべ-關東大震災・朝鮮人虐殺から70年』, 教育史料出版會.
- 今井清一, 1976, 「大島町事件・王希天事件と日本政府の對應」, 『論集 現代史』, 筑摩書房.
- 今井清一・仁木ふみ子 編, 2008, 『關東大震災下の中國人虐殺事件-史料集』, 明石書店.
- 金廣烈, 2004, 「韓國における在日朝鮮人と朝鮮人虐殺事件の研究狀況」, 『世界史としての關東大震災: アジア・國家・民衆』, 日本經濟評論社.
- 金秉稷, 1947, 『關東大震災白色テロルの眞相』, 朝鮮民主文化團體總連盟.
- 千葉福田村事件眞相調査會, 2002, 『福田村事件の眞相』第2集.
- 千葉福田村事件眞相調査會, 2003, 『福田村事件の眞相』第3集.
- 藤野裕子, 2012, 「關東大震災時の朝鮮人虐殺と向きあう」, 『震災・核災害の時代と歴

- 史學』, 青木書店.
- 李明花, 2014, 「關東大震災と韓國獨立運動」, 『코리아研究』 5.
- 笠原十九司, 2007, 『南京事件論争史－日本人は史實をどう認識してきたか』, 平凡社新書.
- 武村雅之, 2003, 『關東大震災: 大東京圏の揺れを知る』, 鹿島出版會.
- 米倉勉, 2014, 「2003年「日弁連勸告」の意義と現状－差別的・排外的傾向が強まる中で」, 『關東大震災 記憶の繼承－歴史・地域・運動から現在を問う』, 日本經濟評論社.
- 裊玲美, 2010, 「1922年, 中津川朝鮮人労働者虐殺事件」, 『在日朝鮮人史研究』 40.
- 裊玲美, 2014, 「關東大震災時の朝鮮人留學生の動向」, 『關東大震災 記憶の繼承－歴史・地域・運動から現在を問う』, 日本經濟評論社.
- 北原絳子, 2011, 『關東大震災の社會史』, 朝日選書.
- 北原絳子, 2012, 「關東大震災の被災者の動向」, 『日本史研究』 598.
- 北原絳子, 2012, 「理系災害學と文系災害史研究」, 『人民の歴史學』 192.
- 北原絳子, 2014, 「關東大震災における下賜金について」, 『關東大震災 記憶の繼承－歴史・地域・運動から現在を問う』, 日本經濟評論社.
- 山本すみ子, 2014, 「横浜における關東大震災時朝鮮人虐殺」, 『大原社會問題研究所雜誌』 668.
- 山田昭次, 2003, 『關東大震災時の朝鮮人虐殺－その國家責任と民衆責任』, 創史社.
- 山田昭次, 2004, 『朝鮮人虐殺關連新聞報道史料』全5卷, 綠蔭書房.
- 山田昭次, 2011, 『關東大震災時の朝鮮人虐殺とその後－虐殺の國家責任と民衆責任』, 創史社.
- 山田昭次, 2014, 『關東大震災時の朝鮮人迫害－全國各地での流言と朝鮮人虐待』, 創史社.
- 山田昭次, 2014, 『關東大震災朝鮮人虐殺裁判資料1 (埼玉縣關係)』, 綠蔭書房.
- 山田昭次, 2014, 『關東大震災朝鮮人虐殺裁判資料2 (群馬縣關係)』, 綠蔭書房.
- 西崎雅夫, 2011, 『關東大震災時 朝鮮人虐殺事件 東京下町フィールドワーク資料』, 私家版.
- 西崎雅夫, 2012, 『關東大震災時 朝鮮人虐殺事件 東京フィールドワーク資料(下町以外編)』, 私家版.
- 西崎雅夫, 2012, 『關東大震災時・朝鮮人關連「流言蜚語」・東京證言集』, 私家版.

- 西崎雅夫, 2014, 「八廣に追悼碑ができるまで-東京の朝鮮人虐殺の實態」, 『關東大震災 記憶の繼承-歴史・地域・運動から現在を問う』, 日本經濟評論社.
- 石井雍大, 1994, 「千葉縣福田・田中村事件研究の歩み」, 『この歴史永遠に忘れず-關東大震災70周年記念集會の記録』, 日本經濟評論社.
- 成田龍一, 1996, 「關東大震災のメタヒストリーのために-報道・哀話・美談」, 『思想』 866.
- 成田龍一, 2003, 『近代都市空間の文化經驗』, 岩波書店.
- 小笠原強, 2014, 「千葉縣での朝鮮人虐殺の解明と記憶の繼承について-『地域に學ぶ 關東大震災』刊行を通して」, 『關東大震災 記憶の繼承-歴史・地域・運動から現在を問う』, 日本經濟評論社.
- 小園崇明, 2012, 「關東大震災下に虐殺されたろう者-近代日本における音聲言語のポリティクス」, 『東京社會福祉史研究』 6.
- 小園崇明, 2014, 「關東大震災下に「誤殺」されたろう者について」, 『關東大震災 記憶の繼承-歴史・地域・運動から現在を問う』, 日本經濟評論社.
- 小園崇明, 2014, 「吳充功監督と朝鮮人虐殺ドキュメンタリー映畫」, 『關東大震災 記憶の繼承-歴史・地域・運動から現在を問う』, 日本經濟評論社.
- 新井勝紘, 1997, 「少年が見た朝鮮人追跡-「描かれた朝鮮人虐殺」序論」, 『歴史科學と教育』 16號.
- 新井勝紘, 2002, 「「描かれた朝鮮人虐殺」論-一枚のスケッチからみえるもの」, 『隣人』 16號.
- 辻野彌生, 2013, 『福田村事件-關東大震災知られざる悲劇』, 崙書房出版.
- 吳充功, 2014, 「映畫完成から30年-直仁承あぼぢと共に」, 『關東大震災 記憶の繼承-歴史・地域・運動から現在を問う』, 日本經濟評論社.
- 尹素英, 2014, 「關東大震災の朝鮮人虐殺に對する認識と對應-秋田雨雀とクロボトキニストを中心に」, 『コア研究』 5.
- 仁木ふみ子, 1993, 『震災下の中國人虐殺-中國人労働者と王希天はなぜ殺されたか』, 青木書店.
- 日朝協會朝鮮人犠牲者問題特別委員會, 1963, 『本庄・船橋調査報告』(同會).
- 日朝協會豊島支部 編, 1973, 『民族の棘-關東大震災と朝鮮人虐殺の記録』(同會).
- 猪上輝雄, 1995, 『關東大震災(1923年)藤岡での朝鮮人虐殺事件』, 私家版.
- 荻上チキ, 2011, 『檢證 東日本大震災の流言・デマ』, 光文社新書.

- 田原洋, 1982, 『關東大震災と王希天事件: もうひとつの虐殺秘史』, 三一書房.
- 田中正敬, 2003, 「關東大震災はいかに伝えられたか」, 『歴史地理教育』 657.
- 田中正敬, 2005, 「關東大震災と朝鮮人の反應—その意識を考察する手がかりとして」, 『人文科學年報<專修大學人文科學研究所>』 35.
- 田中正敬, 2009, 「千葉縣における關東大震災と朝鮮人犠牲者追悼・調査實行委員會の活動—『いわれなく殺された人びと—關東大震災と朝鮮人』刊行まで」, 『專修史學』 46.
- 田中正敬, 2010, 「關東大震災と習志野・船橋—朝鮮人虐殺事件の解明・追悼はいかになされたか(4) 船橋における關東大震災朝鮮人虐殺と在日朝鮮人による追悼運動について—船橋における追悼碑建立と追悼式についての聞き取り」, 『專修史學』 48.
- 田中正敬, 2011, 「關東大震災時の朝鮮人虐殺とその犠牲者をめぐって」, 『移動と定住の文化誌—人はなぜ移動するのか』, 彩流社.
- 田中正敬, 2014, 「關東大震災と千葉における朝鮮人虐殺の推移」, 『코리아研究』 5.
- 田中正敬・專修大學關東大震災史研究會編, 2012, 『地域に學ぶ關東大震災—千葉縣における朝鮮人虐殺 その解明・追悼はいかになされたか』, 日本經濟評論社.
- 鄭榮桓, 2011, 「在日朝鮮人の形成と「關東大虐殺」」, 『植民地朝鮮—その現實と解放への道』, 東京堂出版.
- 鄭榮桓, 2014, 「解放直後の在日朝鮮人運動と「關東大虐殺」問題—震災追悼行事の検討を中心に」, 『關東大震災 記憶の繼承—歴史・地域・運動から現在を問う』, 日本經濟評論社.
- 齊藤秀夫, 1958, 「關東大震災と朝鮮人さわぎ—35周年によせて」, 『歴史評論』 99.
- 齊藤豊治, 2002, 「阪神大震災と犯罪問題」, 『刑法雜誌』 42-1.
- 朝鮮大學校, 1963, 『關東大震災における朝鮮人虐殺の真相と實態 朝鮮に關する研究資料』 第9集.
- 川島眞, 1999, 「關東大震災と中國外交—北京政府外交部の對應を中心に」, 『現代中國研究』 4.
- 川島眞, 2004, 『中國近代外交の形成』, 名古屋大學出版會.
- 千葉縣における關東大震災と朝鮮人犠牲者追悼・調査實行委員會, 1983, 『いわれなく殺された人びと—關東大震災と朝鮮人』, 青木書店.
- 千葉縣における關東大震災と朝鮮人犠牲者追悼・調査實行委員會, 2009, 『關東大震

災85周年 資料集：増補・改訂版』(同會).

千葉縣福田村事件真相調査會編發行, 2001, 『福田村事件の真相』第1集.

洪善杓, 2014, 「關東大震災に對する歐米在住韓人の對應」, 『코리아研究』5.

橫田豊, 1989, 「關東大震災に對する中國の對應」, 『史潮』新26.

橫田豊, 1993, 「大島町事件再考-關東大震災下の中國人・朝鮮人虐殺事件の眞因を
めざして」, 『青山史學』16.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국문 초록]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연구의
과제와 전망
- 일본에서의 연구를 중심으로 -

다나카 마사타카

관동대지진사의 전쟁 후 연구는 지진 재해로부터 40년째인 1963년을 계기로 크게 발전되어 왔다. 그중에서 이마이 세이이치의 「大震災下の諸事件の位置づけ」(『労働運動史研究』37, 1963) 이후, 가메이도사건, 아마카스사건, 조선인 학살을 '3대 테러'라고 보는 견해도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물론 학살된 사람들의 생명을 구별하는 의도가 아니다. 일본인, 중국인 학살을 포함한 지진 재해 당시 학살의 핵심은 조선인 학살에 있고, 이것을 같은 맥락으로 다룰 수는 없다라는 지적이다. 앞에서 논한 대로, 조선인 학살의 중대함을 부정하려고 하는 언행과 설명이 병행되어, 아직까지 학살 사실을 밝히는 것을 꺼리고 있는 것이 현 상황이다.

관동대지진 당시 중국인이나 일본인 학살을 포함한 전체적인 시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을 가짐으로써, 조선인 학살과 다른 사건과의 공통점이나 차이를 명확하게 할 수 있다. 조선인에 대해서는, 무차별적인 학살(조선인이라고 알려지면 죽였다는 의미에서는 선별적이지만)의 이미지가 강하나, 조선인 '보호'를 위해 9월 5일에 개설된 나라시노 수용소에서는, '보호'라고 하는 공적인 목적과는 다르게, 군대가 수용자의 사상조사를 행하여 골라낸 조선인을 죽이고, 근처 주민들에게도 죽이게 했다.

현재 일본에 있어서의 과제는 '공감의 길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지진 재해 아래에서의 살해사건을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자리매김시키면서, 중국인이나 일본인을 포함한 '제노사이드'로서의

보편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주제어

조선인, 일본인, 중국인, 제노사이드, 연구동향, 관동대지진, 학살, 배외주의,
도쿄, 지바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BSTRACT]

Problems and Images for the Future of the Korean Genocide
following the Great Kanto Earthquake: Focusing on
Research in Japan

Tanaka Masataka

Antiforeignism is increasing in Japan. The present Japanese antiforeignism is akin to that of the Korean genocide after the Great Kanto Earthquake. Studies of the genocide after the Great Kanto Earthquake have investigated the actual conditions of the genocide. However, currently, researchers are interested in how people memorialized the slaughter. It has become clear that there was a pattern of slaughter, and that differs from the previous image. Reorganization of the genocide of the Great Kanto Earthquake is an important problem.

Keywords

Korean, Japanese, Chinese, genocide, research trends, Great Kanto Earthquake, slaughter, antiforeignism, Tokyo, Chiba

1923년 일본 관동대지진 시 학살된 한인과 중국인에 대한 사후조치

김광열 | 광운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동북아역사재단

I. 머리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923년 9월 1일 발생한 일본의 관동대지진 때 관헌에 의해 조작된 “무장 조선인 폭동” 등의 유언비어는 지진 발생지역의 민간 자경단과 군경을 폭도로 변화시켰고, 그 결과 6,000명 이상의 한인과 650명 이상의 중국인, 그리고 10여 명의 일본인 사회주의자들이 잔인하게 학살당했다. 이 중 한인 학살 피해자들은 억울한 죽음에 대해 법적으로나 도의적으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일본 정부는 아직도 함구로 일관하고 있으며, 보상은 물론 명예회복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채 90년이 지났다.

본 주제와 관련된 기존 연구¹⁾는 민간 자경단에 의한 대규모 학살의 상황,

※ 투고: 2015년 2월 11일, 심사 완료: 2015년 4월 30일, 게재 확정: 2015년 5월 18일

- 1) 대표적인 선행연구를 들면 다음과 같다. ① 학살 상황과 사후조치: 姜德相, 1975, 『關東大震災』, 中公新書; 山田昭次, 2011, 『關東大震災時の朝鮮人虐殺とその後 - 虐殺の國家責任と民衆責任』, 創史社, ② 조선총독부의 대응: 노주은, 2007, 「관동대지진과 조선총독부의 제일조선인 정책 - 총독부의 '진재처리' 과정을 중심으로

유언비어의 전파 주체가 경찰과 계엄군이었다는 사실, 중국인 학살 상황 등을 구체적인 정도까지 밝혔다. 이 글에서는 선행연구의 성과를 비판적으로 계승하면서, 1923년 일본 관동지방에서 발생한 한인 학살사건에 관해 다음과 같은 주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① 한인들에 관한 유언비어의 확산 상황과 학살 가해 자들에 대한 사법적인 조치, ② 조선총독부의 한인 학살 피해에 대한 무마 조치, ③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대처 상황, ④ 중국의 베이징 정부[직예(直隸)파 정부]의 중국인 학살피해자에 대한 대처 상황, 그리하여 상기 ①과 ②가 과연 적절했는지를 확인하고, ③과 ④는 전자와 후자의 대응 방식을 비교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과거 일본에서 발생한 이민족 학살사건에 대해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역할을 재고하고, 확인된 역사적 사실을 교훈으로 계승하여 피학살 당사자들의 명예회복 및 보상의 당위성을 부각시키는 데에 일조하고자 한다.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II. 일본 군경의 학살 책임과 사실 은폐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_ 경찰의 유언비어 살포와 군대의 학살

1923년 9월 일본의 관동대지진 시에 민간 자경단 및 군대 등에 의해 자행된 한인 학살에 관한 대체적인 상황은 이미 선행 연구²⁾에 의해 밝혀졌다. 이 항에서

로, 『한일민족문제연구』 제12호, ③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대응: 李明花, 2014, 「關東大震災と韓國獨立運動」, 『코리아연구』, 立命館大學코리아研究センター; 장세윤, 2013, 「관동대지진시 한인학살에 대한 <독립신문>의 보도와 최근 연구동향」, 『관동대지진과 조선인 학살』, 동북아역사재단, ④ 중국인의 학살상황과 사후조치: 仁木ふみ子, 1993, 『震災下の中國人虐殺－中國人労働者と王希天はなぜ殺されたか』, 青木書店; 川島眞, 2004, 「關東大震災と中國外交－北京政府外交部の對應を中心に」, 『中國近代外交の形成』, 名古屋大學出版會.

2) 姜德相, 1975, 『關東大震災』; 山田昭次, 2011, 『關東大震災時の朝鮮人虐殺とそ

는 민간 자경단에 의한 한인 학살의 책임이 기본적으로 경찰과 군대에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한인 학살은 1923년 9월 1일 오후부터 9월 6일까지 도쿄[東京]를 비롯하여 요코하마[横浜], 사이타마[埼玉], 지바[千葉] 등 그 주변 지역에 걸쳐, 민간 자경단원들에 의해 자행되었다. 9월 2일부터 지진 피해 지역에 계엄령이 포고되었지만 학살은 계속되었다. 장소에 따라서는 군대가 학살에 직접 가담한 경우도 확인된다.

계엄사령부는 식민지 지배의 논리로 “제국 신민”으로 취급하던 한인에 대한 학살이 광범위하게 일어났음을 알고, 일단 9월 5일자 언론을 통해 “조선인 폭동은 낭설이다”라고 공표하고, 군대에 의한 경비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불령선인이 습격해 온다는 기소불명의 유언비어에 현혹되어 경거망동은 말라”고 경고했다.³⁾ 그러나 민간 자경단이 유언비어에 광분하여 학살을 공공연하게 자행한 이유는 다름아닌 경찰이나 군대가 관련된 유언비어를 유포했기 때문이었다. 1923년 10월 20일에 학살에 관한 보도 통제가 해제된 이후에 그와 관련된 있는 보도를 다수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10월 22일자 『호치[報知]신문』 기사다.

진재 후 관동 일대가 혼란의 거리로 바뀐 것은 조선인 망동이 과대하게 전해졌기 때문인데, 그것이 전해져 온 것은 가나가와[神奈川] 방면이라고 본사가 이미 보도한 대로다. 당시 경시청 및 각 경찰이 그 헛소문에 허둥지둥하여 큰 소동을 연출한 것도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 사실 2일 밤부터 3일 오후에 걸쳐 아사쿠사[淺草], 스가모[巢鴨], 요도바시[淀橋] 방면에서는 오토바이를 탄 경관과 재향군인이 “조선인이 쳐들어오니 여자와 어린이는 빨리 안전지대에 피난시키고 장정들은……”라고 하면서 돌아다녀서 인심을 불안의 극에 달하게 하여 한층 소동을 크게 했다. 경시청에서도 2일 밤에는 조선인 폭동을 완전히 사실이라고 믿은 것 같고 부내의 모 서에서는 그 소문이 진짜인지 가나가와

の後－虐殺の國家責任と民衆責任』, 創史社.

3) 「鮮人暴動は流説, 戒嚴司令部發表」, 『報知新聞』, 1923. 9. 5.

현으로 경찰대를 보냈고 그것이 헛소문이라고 본청에 보고하자 한 간부는 보고가 엉망이라고 질타할 정도였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 형사부원을 각 방면에 보내어 사실 조사를 하니 드디어 헛소문인 것이 판명되어 서둘러 유언비어라고 하는 포고를 일반에 발표했다고 한다…….⁴⁾

이를 보면 도쿄의 지진 피해 지역에서 9월 2일 오후부터 경찰과 재향군인이 “조선인 습격”이라는 악의적인 유언비어를 살포하며 순회했다는 것이 확인된다. 심지어 경시청의 간부조차 그 유언비어를 믿고 있을 정도였다. 이는 당시 도쿄 경시청의 특별고등경찰 고위간부였던 쇼리키 마츠타로[正力松太郎]의 다음 증언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 때마침 경시청으로부터 불령 조선인의 단체가 가나가와현 가와사키[川崎] 방면에서 습격해서 오는 중이니 빨리 귀청하라는 전령이 와서 급히 복귀해보니 경시청 앞은 대단한 경계태세가 펼쳐져 있었으므로 나는 조선인 소동이 사실이라고 믿었습니다. …… 하지만 그 후 조선인이 아무래도 쳐들어오지 않아서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동안에 이윽고 밤 10시경이 되어서야 그 정보는 허위라는 것이 판명되었습니다…….⁵⁾

대지진 발생 직후에 경찰의 고위층이 한인을 포함하는 유언비어를 신뢰하고 경계를 강화한 것이 확인된다. 경찰이 그렇다고 하니 재향군인들도 당연히 믿었을 것이다. 근거 없는 유언비어가 경찰이라는 공적 기관을 통해 전파됨으로써 민간 자경단이 아무 의심없이 받아들여 한인에 대한 학살을 자행한 것이다. 다음날 경찰은 그것이 허위라고 공표했지만, 이미 도쿄와 그 주변 지역

4) 『鮮人襲來を巡查が觸れ回る』, 『報知新聞』, 1923. 10. 22.

5) 正力松太郎, 1994, 「米騒動や大震災の思い出」, 『悪戦苦闘』, 讀賣新聞社. 당시 경시청의 특고경찰 간부로서 좌파 사회운동의 탄압을 지휘하던 쇼리키 마츠타로는 그 직후 1923년 10월에 히로히토 섭정을 저격한 도라노몬[虎ノ門] 사건이 일어난 탓에 경비책임의 불찰이란 이유로 파면되었으나 이듬해 1월에 당시 중소 규모의 언론사였던 요미우리신문사를 매입하여 그 사장이 되어, 차후 요미우리가 일본의 큰 신문사로 발전하는 데 다대한 역할을 했다.

에 들붙처럼 확산된 유언비어로 믿고 광분한 민간 자경단은 학살을 계속했다.

일본군도 학살에 관한 책임이 지대하다. 9월 2일부터 계엄령(긴급칙령 제 398호)이 공포되어 도쿄 주변의 사단들이 경비의 명목으로 지진 피해 지역에 병력을 출동시켰다. 지진 피해 지역에 출동한 군대와 유언비어의 관련성을 잘 나타내는 1923년 10월 22일자 『요미우리[讀賣]신문』 기사를 보도록 하자.

…… 이번의 여러 사건에 대해 아무리 생각해봐도 육군 계엄부가 월권 행위를 했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대체로 계엄령이란 두 가지 입장이 있어서, 전시 비상시의 경우와 국내 비상시를 대비하는 경우가 그것인데, 이번 진재에서는 그 후자의 방법에 의해 시행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엄사령부 당국은 당시 마치 적국이 국내에 난입이라도 한 것처럼 했지 않았다. 내 집 부근에서도 너무 시끄러워서 내가 문밖에 나가보니까 무장한 군대가 있었다. 그리고 대장 같은 자가 “적은 지금 하타가야[幡ヶ谷] 방면에 나타났다” 운운의 호령을 하므로 내가 그 장교를 붙잡고 “적이란 누구인가”라고 질문하자 “적은 조선인이다”라고 대답했고, 내가 다시 “조선인이 왜 적인가”라고 묻자 “상관의 명령이니까 모른다”고 답했다……⁶⁾

이 기사는 육군 소장이며 국회의원인 츠노다 고레시게[津野田是重]의 인터뷰를 실은 것이다. 계엄령하에 지진 피해 지역에 출동한 군대가 유언비어에 근거한 상부의 모순된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원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을 철칙으로 하는 군대라는 조직이 계엄령 발포 초기부터 헛소문에 따른 상부의 “조선인이 적(敵)”이라는 명령을 준수하며 행동했기 때문에, 군대를 믿는 민간 자경단의 학살을 증폭시켰다고 할 수 있다.

출동한 군대는 유언비어를 확산시키는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학살도 자행했다. 도쿄의 가메이도[亀戸] 경찰서, 아라카와[荒川] 제방, 오시마[大島]정에서 발생한 학살은 군대에 의한 실제 사례로 들 수 있다. 군대가 직접 학살에 가담한 실제 사례를 하나 보기로 한다. 다음은 1923년 9월 2일에 지금의 도쿄

6) 「敵は朝鮮人だと上官が命令した」, 『讀賣新聞』, 1923. 10. 22.

에도가와[江戸川]구 고마즈가와[小松川]정에 출동한 기병 제13연대의 이와나미[岩波] 소대에 소속된 병사의 일기 내용이다.

진재지의 경비 임무를 띠고 가서, 고마즈가와에서 무저항으로 온순하게 있는 조선인 노동자 200여 명도 병사들을 지휘하여 잔학을 일삼았다. 여자는 다리를 당겨 가랑이를 찢고, 철사로 목을 묶어 연못에 빠트리려 괴롭히면서 죽이거나, 헤아릴 수 없이 학살을 한 것에 대해 너무 지나친 비상식이라며 다른 사람들의 평판이 나쁘다…….⁷⁾

계엄령이 공포되어, 대지진 발생지역에 치안유지를 위해 출동한 군대가 한인 학살에 직접 가담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증언이다. 그런데 이 일기의 주인은 군인들의 악행을 타인이 비판하는 것에는 신경을 쓰고 있지만, 유언비에 근거한 명령에 따라 무고한 한인들을 집단학살하고 말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선악의 판단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2_ 재일동포에 의한 피해조사와 관현의 은폐

한편 1923년 9월 초의 관동대지진과 그 와중의 학살에서 살아남은 거주 한인들은 무엇보다도 동포들의 인명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조사를 하고자 했다. 1923년 10월 3일자 『도쿄니치니치[東京日日]신문』에 의하면 “재경 조선 학생 기타 유지들이 서로 협의하여 고이시가와[小石川]구 오츠카시타[大塚下] 정 190의 천도교회 내에 이재조선동포 위문반을 설치”⁸⁾했다는 것으로 보아, 재일한인들이 피학살자 조사를 시작한 것은 그 이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 재일 조선YMCA의 총무였던 최승만에 의하면, 아직 계엄령이 계속되고 있던 시기여서 일본경찰은 한인피해조사회라는 명칭의 활동은 허가하지 않았으므로, 자신과 천도교 간부 박사직(朴思稷)을 비롯한 일본어에 능숙한 한인

7) 姜德相, 1975, 앞의 책, 149쪽.

8) 『東京日日新聞』, 1923. 10. 3.

20여 명이 “이재조선동포 위문반”이라는 것을 만들어 피해 조사를 했다고 한다.⁹⁾ 이 재일 한인들에 의한 위문반에는 조선유학생학우회 등 한인 사회단체들이 참가했으며 변호사 후세 타츠지[布施辰治]가 고문을 맡았다.

그러나 해당 지역의 관헌은 학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피학살자의 시체를 암화장 또는 암매장을 했고, 한인 위문반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거나 피살자의 정보나 유골 반환에 관해 일절 협조하지 않았다. 다음은 위문반 관련자가 사이타마에서 겪은 실제 사례다.

…… 집단적으로 학살이 일어난 장소에는 이미 하수인에 의해 면밀하게 증거를 남기지 않는 처리를 했으므로 도저히 그 진상이나 수 그리고 동포인지 아닌지도 알 수도 없었다고 한다. 그래도 죽은 자의 골격이나 여러 동포들의 추측으로 피해자 집계를 한 경우도 있다. …… 혼조[本庄]에 도착했을 때, 도쿄로부터 미행을 해 온 경시청 내선(內鮮)과 형사 2명 외에 혼조 경찰서 형사 2명이 가세해 있었다고 한다. 마을의 여관에 숙박했을 때는 형사가 변소에 가는 것조차 미행할 정도였으며 일체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했다.¹⁰⁾

…… 혼조경찰서 순사 아라이 켄지로[新井賢次郎]는 학살된 조선인 시체를 불태운 것은 상부에서 수를 알 수 없도록 하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했다.¹¹⁾

이와 같은 사례는 다른 곳에서도 볼 수 있다. 1923년 9월 1일 밤부터 도쿄 아라[荒]강 요츠기바시[四ッ木橋] 부근의 하천 제방에서는 민간 자경대와 군대에 의한 다수의 한인 학살이 자행되었고, 피학살자들의 시체는 아라강의 방수로 부근에 매장되었는데, 11월 중순에 가메이도[亀戸] 경찰서와 데라시마[寺

9) 최승만, 1985, 『나의 回顧錄』, 인하대학교출판부, 126쪽. 최승만에 따르면 이 당시의 재일한인으로 구성된 “이재조선동포 위문반”에는 『동아일보』의 특파원 이상협도 참가했다고 한다.

10) 山田昭次, 2011, 앞의 책, 103쪽. 원자료는 한현상, 「재일 한민족 운동사」.

11) 關東大震災60周年朝鮮人犠牲者追悼行事實行委員會 편, 1987, 『隠されていた歴史—關東大震災と埼玉の朝鮮人虐殺事件』; 山田昭次, 2011, 위의 책, 104쪽.

島] 경찰서 직원들에 의해 비밀리에 다른 곳으로 이장되었다고 한다.¹²⁾

또한 군대와 경찰의 상부는 당사자나 목격자들에게 철저한 함구 지시를 했다. 다음은 당시 지진 피해 지역에 계엄군의 일원으로 출동해 학살을 목격했던 구보노 시게지[久保野茂次]의 일기 증언이다.

11월 28일 비

오후 중대장 훈시가 있었음. 전국 규모의 징병, 병역 제도, 칙서에 대해. 마지막에는 지진재해 시에 군대가 많은 조선인을 살해한 것에 대해서 꿈에서조차 일절 말해서는 안 된다고 엄하게 명했다…….¹³⁾

이와 같은 학살 은폐의 지시는 학살 현장을 관할하는 경찰서 직원에 대해서도 행해진 것이 확인된다.¹⁴⁾

이상의 상황을 종합해 보면, 재일한인들로 구성된 “위문반”은 실제 피해조사를 하는 데 매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추측된다. 일본 경찰과 군대는 그들을 감시하고 방해한 것이 아니라, 직접 학살의 증거를 은폐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피학살 한인의 총수는 얼마나 될까?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기관지 역할을 했던 『독립신문』 1923년 12월 5일자 1면에는 일본 거주자 한세복(韓世復)이 독립신문사 사장인 김승학(金承學) 앞으로 보낸 편지의 형식으로 당시 “이재조선동포 위문단”이 피해자 조사를 한 결과 6,661명의 내역이 게재되었다.¹⁵⁾ 이 시기는 그해 10월 초순에 시작된 상기 위문단의 조사가 일단락되었다고 추측되므로, 관동대지진 시 한인 피살자수에 대해서는 이 12월 5일자 『독립신문』의 보도 내용을 채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에 비해 일본 관헌에 의해 발표된 한인 사망자 수는, 사법성 233명, 내무성 경보국 231명, 조선총독

12) 『國民新聞』, 1923. 11. 15.; 山田昭次, 2011, 앞의 책, 106~107쪽.

13) 仁木ふみ子, 1993, 『震災下の中國人虐殺』, 青木書店, 58쪽.

14) 仁木ふみ子, 1993, 위의 책, 45쪽.

15) 『獨立新聞』 제167호, 1923. 12. 5. 『독립신문』 167호의 기사를 보면 일본 거주 한세복이 독립신문사 사장 김승학 앞으로 우송한 편지를 통해 피해자 조사결과를 게재한 것이었다.

부 831명으로 각각 너무 상이하다. 즉 일본 정부기관의 피해자 수 발표는 신빙성이 없다는 것이다.

한편 9월 11일 이후 재일 친일단체 상애회(회장 박춘금, 부회장 이기동)는 자발적으로 산하의 한인 노동자를 이끌고 지진 피해지의 화재 및 파괴된 건물의 잔해 정리 작업을 실시하여 일본 당국의 환심을 샀다.¹⁶⁾

Ⅲ. 학살에 대한 가벼운 사법처리와 조선총독부의 무마 조치

1_ 학살 가담자에 대한 가벼운 사법처리와 그 배경

1923년 10월 하순경에는 학살을 자행한 자경단원들에 대한 사법처리의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를 예상하는 신문보도가 나온다. 그중에는 판결이 내려지기도 전에 “가벼운 형벌”을 암시하는 기사가 적지 않다. 그와 관련된 당시 『도쿄 니치니치신문』의 보도를 보도록 하자.

…… 사이타마 법조계의 관측에 의하면 이번에 기소당한 백십여 명의 피고는 실제의 작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① 자랑처럼 상이라도 받은 것처럼 자수한 사람, ② 쉽게 흥행을 자백한 사람, ③ 증거를 대니까 어쩔 수 없이 자백한 사람 등인데, 이들은 일면에서 보면 마을을 치안을 맡아서 하다가 그리된 것으로 일단 검거되니까 정촌(町村)에서 일체의 비용을 대면서 변호사도 부탁할 정도니까 만약 재판의 결과를 기껏해야 집행유예 정도로 생각하는데 징벌이라도 받으면 피고는 성질이 나서 일체의 연루자를 모두 폭로할지도 모른다. 이 점은 형사정책을 신봉

16) 『報知新聞』, 1923. 9. 11; 『東京日日新聞』, 1923. 9. 11.

하는 후쿠이[福井] 검사정이 우려하는 바인 것 같은데, 원래 재판소와 검사국은 별개의 기관이지만 사건을 확대하는 것은 피하고자 함은 말할 나위도 없으므로 이번의 피고는 의외로 가볍게 처단되지 않은가 라고 한다.¹⁷⁾

이 기사는 사이타마 검사국의 후쿠이라는 검사가 신문기자에게 흘린 말을 보도한 것으로 추측된다. 문제는 중반 이후의 부분인데, 한인을 살해한 마을의 자경단원들의 행위는 마을의 치안을 지키려다 그런 것이니까, 출신 마을사람들이 피검거자의 뒷바라지를 하는 것을 보면 안스럽다라든지, 체포된 자경단에게 실형을 언도하면 더 많은 체포자가 나올거니까 그를 방지하는 의미에서 형벌을 가볍게 할 의도가 있다고 한다. 그런데 학살자의 죄를 제대로 물어아 할 검사가 이렇게 고의적인 살인 범죄를 ‘실수’로 간주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위 기사의 말미에 “연루자를 모두 폭로할지 모른다”고 두려워한 것과 연결된다고 보여진다. 즉 검찰은 대지진 직후에 자경단으로 하여금 학살을 하도록 부추긴 각지 경찰의 책임이 법정에서 공개되면, 통제할 수 없는 한층 곤란한 상황에 직면할 것 같다는 우려를 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사실 그 당시에 이와 관련된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다. 아래에서 관련 사실을 확인해보자.

대지진 당시 각지에서 발생한 잔혹한 학살 사실이 밝혀지고 사회적으로 문제되자, 그해 10월부터 학살에 가담한 자경단원이 각지에서 검거되기 시작했다.¹⁸⁾ 그러나 그와 동시에 각지의 자경단이나 그 옹호 세력들로부터 학살자들을 일제히 체포하여 처벌하려는 경찰의 조치에 대해 집단적인 저항이 일어나고 있었다. 다음은 그러한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도쿄니치니치신문』 10월 22일자의 보도다.

신시대협회 기쿠치 요시로[菊地義郎] 외 32명, 노동공제회 나카니시 유도[中西雄洞] 외 52명, 자유법조회 노다 기요시[野田季吉] 외 12명,

17) 「刑罰は輕かろう」, 『東京日日新聞』, 1923. 10. 22.

18) 예를 들면, 「殺傷自警團續々檢擧さる, 判檢事が各方面へ出動」, 『報知新聞』, 1923. 10. 17.

성남장[城南莊] 기구치 료이치[菊地良一] 외 수 명, 만몽조사과 히시카와 다케지[菱川武治] 외 8명이 발기인이 되어 시내 각 구에 설치된 자경단을 산하에 모아서 이번에 관동자경단동맹을 조직하여 작금 각 방면에 벌어지고 있는 자경단 검거 소동에 대해 대응책을 강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의를 가결하고 내무상과 법무상에게 보내기로 했다.

우리는 당국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묻는다.

1. 헛소문의 출처에 대해 당국은 그 책임을 지지 않고 이를 민중에게 전가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2. 당국이 목전의 자경단 폭행을 방임했으면서 후일이 되어 그 죄를 묻는 이유는 무엇인가.
3. 자경단의 죄악만 오로지 천하에 폭로하고 수많은 경관의 폭행은 숨기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는 당국에게 다음 사항을 요구한다.

1. 과실에 의해 저지른 자경단의 상해죄는 전부 면해 줄 것.
2. 과실에 의해 저지른 자경단원의 살인죄는 전부 이례의 은전을 베풀어 판결할 것.
3. 자경단원 중에 공로자를 표창하고 특히 경비를 위해 생명을 잃은 자는 그 유족에 대해 적당한 위자(慰藉)료를 주는 방법을 취할 것
.....¹⁹⁾

즉 당시 일본 관동지방 각지에서 민간 자경단이 일제히 상해죄 및 살인죄로 체포되어 처벌받는 상황에 처하자, 대지진 직후에 헛소문을 낸 것도 자경단의 폭행과 학살을 방임한 것도 경찰인데 뒤늦게 자경단만 일반적으로 질책하는 것은 문제라며, 자경단들의 연합단체가 반대 의견서를 내무대신과 법무대신 앞으로 송부하여 피체포 자경단원들에 대한 처벌경감 운동을 전개했던 것이다.

19) 「今頃になって檢舉は何事ぞ 關東自警同盟から内相法相に詰問狀」, 『東京日日新聞』, 1923. 10. 22(夕刊).

〈표 1〉 한인 학살사건 가해자의 판결 변화 사례

사건 유형	경찰 습격, 한인 학살	경찰 습격, 한인 학살	한인 학살	일본인 학살	
사건 명칭	후지오카[藤岡] 사건	요리이[寄居]사 건	구마가이[熊谷] 사건	후쿠다[福田]마 을 사건	
발생 시기	1923. 9. 5~ 9. 6	1923. 9. 6	1923. 9. 4	1923. 9. 6	
피살자 수	17명	1명	최저 57명	9명	
제 1 심	실형	25명	3명	3명	8명
	집행유예	11명	9명	32명	
	무죄	1명	1명		
	피고	37명	13명	35명	8명
판결일	1923. 11. 14	1923. 11. 26	1923. 11. 26	1923. 12	
항 소 심	실형	11	3	1	7
	집행유예	14		2	1
	무죄				
	피고	25	3	3	8
판결일	1924. 4. 30	1924. 4. 22	1924. 3. 10	1924. 4. 30	
상 고 심	실형	2	기각 3명	기각 1명	7명
	집행유예	7			
	무죄				
	피고	9	3	1	7
	최고형	징역 3년	징역 3년	징역 2년	징역 10년
	판결일	1924. 5. 30	1924. 4. 22	1924. 5. 26	1924. 8. 29

* 주: 山田昭次, 2011, 『關東大震災時の朝鮮人虐殺とその後－虐殺の國家責任と民衆責任』, 94쪽에서 인용. 피살자 수는 필자가 추가함.

따라서 이 학살사건의 처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싶은 일본 정부나 법조계도 그런 사회적 분위기에 호응했을 것이라고 추측된다. 앞에서 본 신문보도에서 사이타마의 후쿠이 검사정이란 자가 “가벼운 처벌” 운운했다고 한 것은 바로 당시의 상황을 정치적으로 고려한 것이리라.

실제로 그 후 각지의 재판소에서 나온 판결은 자경단원들의 명백한 학살을 엄벌하지 않는 “기묘한”²⁰⁾ 결과가 나왔다. <표 1>은 한인 학살사건의 가해 형태와 그에 따른 판결, 그리고 항소 과정의 형량 변화를 명시한 것이다.

<표 1>을 통해 학살자들에 대한 판결은 한인 학살, 파출소 습격 및 한인 학살, 일본인 학살 등의 가해 형태에 따라 형량이 달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지극히 이상한 점은 경찰서 습격(후지오카, 요리이사건)이나 일본인 살해(후쿠다마을사건)라는 가해 형태에 비해 한인 살해라는 가해 형태가 실형을 받을 확률이 낮았다는 것이다. 민간인이 관공서를 공격하여 파괴했다는 사실과 한인 학살이 겹쳐 있으면, 그 가해자는 그냥 한인 학살만 일어난 사건의 가해자보다 더 형량이 많았다. 일본인 학살사건의 판결도 유사했다. 더욱 기묘한 것은 항소 과정을 거칠수록 피고들의 형량이 감소된 것이다. 이는 앞에서 본 학살 가담자에 대해 동정론이 확산된 당시 일본사회의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우연한 살인사건도 아니며, 공공연하게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다수의 사람을 잔인하게 학살한 사건이므로 훨씬 엄하게 처벌해야 할 사안이었다. 당시 일본의 형법(메이지 40년 법 45호)에서 살인죄에 관한 제 199조를 보면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 또는 무기나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살인죄의 최소 형량은 3년이였다. 그러나 <표 1>에서 본 판결의 형량은 공공연한 장소에서 사람을 학살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관대했다.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자리에서도 무고하게 학살당한 수많은 한인들은 정의와는 먼 곳에서 소외당하고 있었다. 더욱이 경찰이나 군인 등 관련에 의한 학살은 전혀 추궁되지 않아서, 그들의 학살 책임은 한층 은폐될 수밖에 없었다.

20) 姜徳相, 『關東大震災』, 176쪽 이후의 “奇妙な裁判”과 山田昭次, 2011, 『關東大震災時の朝鮮人虐殺とその後一虐殺の國家責任と民衆責任一』의 “3節, 見せかけの裁判による朝鮮人虐殺の國家責任の回避”을 참조.

2_ 조선총독부의 학살 피해 무마 조치와 조위금 교부

식민지 통치기구인 조선총독부가 관동대지진 발생 이후에 일본 정부를 대신해서 도쿄에 있는 출장소를 통해 지진 발생지 및 주변 지역의 한인들을 수용하여 구호하거나, 수용 한인들에게 지진 피해 지역의 청소를 시키거나 하면서 차년도 예산 확보 등 스스로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어필했다는 사실은 이미 밝혀졌다.²¹⁾ 이 항에서는 조선총독부가 1923년 일본에서 발생한 한인 대량학살사건에 대해 어떻게 인식했으며, 피학살자에 대한 무마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조선총독부는 일본 정부의 다른 기관들과 마찬가지로 한인 학살 사실을 왜곡 및 축소했고, 학살 피해를 무마하고자 했다. 총독부가 가장 먼저 취한 조치는 관동대지진 발생지역에서 귀환한 한인들에 대해 함구령을 내려 학살 사실이 조선에 전파되지 않도록 한 것이다. 당시 총독부 기관지인 『경성일보』는 한인 학살에 관해 발언한 도쿄 귀환 학생이 체포되었다는 사실을 보도하고 있다.²²⁾ 그리고 총독부 경무국은 한인의 노동자로서의 도일을 당분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²³⁾ 또한 총독부는 민족 신문에 대해 학살 관련하여 엄격한 보도 통제를 했다. 예를 들면, 『조선일보』, 『동아일보』는 1923년 11월까지 기사 게재금지 601건, 차압 18회를 당했다고 한다.²⁴⁾ 이러한 총독부 당국의 정책은 일본에서 발생한 한인 학살사건에 대한 소문이 확산되면 식민지 통치에 위협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예견했기 때문일 것이다.

한편 1924년 6월에 조선총독부 관방외사과(官房外事課)는 자체 제작의 『관동대진재 시의 조선인문제』(이하 『조선인문제』)라는 책자를 본국의 내무성

21) 노주은, 2007, 앞의 글, 20~33쪽, 41~45쪽.

22) 「東京から歸った鮮人學生, 不穩なことしゃべて檢束さる」, 『京城日報』, 1923. 9. 7.

23) 김광열, 2010, 『일본이주사 연구-1910~1940년대』, 논형, 84쪽.

24) 장세윤, 2014, 「3·1운동과 관동대지진 한인 학살피해의 역사적 조명」, 한일협정 50년사의 재조명 국제학술회의 발표자료집, 『일제식민지배 피해자의 구제를 위한 법정정책적 과제』, 29쪽.

경보국장 앞으로 송부했다.²⁵⁾ 이 책자는 조선총독부가 대지진 발생 이후에 재일한인을 대상으로 행한 사후조치 업무를 정리한 것으로, 식민지 통치기관으로서 그 대처를 얼마나 잘했는지를 본토 정부에게 홍보하는 성격의 것이다. 이 책자의 제작은 관방외사과장 차원의 결정이 아니라 당연히 총독의 결재하에서 이루어졌다고 추측된다. 따라서 이 책자에는 한인 학살사건 당시의 총독부의 태도가 여실히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 먼저 『조선인문제』에서 조선총독부의 한인 학살에 대한 인식이 잘 나타나 있는 “제2. 조선인 살상의 동기” 부분을 보도록 하자.

제2. 조선인 살상의 동기

…… 내가 보기에는 유언비어는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서 믿었던 것이다. …… 편이상 먼 요인과 가까운 요인을 나누어 말할 수 있다. 먼 요인으로서 들 수 있는 것은 ① 내지(內地)로 돈벌이 가는 조선인 노동자의 수가 근년에 급격하게 증가한 것, ② 평소에 직업적 불령선인의 망동에 의해 내지인의 염두에 만연하게 각인된 일종의 인상이 있었다. 그리고 가까운 요인 즉 직접적 동기로 인정되는 것은 ① 유언비어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흥행(興行)이 실제 일부 조선인에 의해 저질러졌다는 것, ② 일시적으로 경찰력과 일체의 통신기관 및 보도기관이 정지하고 질서의 유지에 대해서도 이상한 말의 진위에 대해서도 아무런 확인할 곳이 없었다는 것, ③ 말할 것도 없이 인심이 극도로 흥분했다 …….

즉 조선총독부는 1923년 9월 초 일본 관동지방 전역에서 발생한 군, 경, 민간자경단에 의해 자행된 한인 대학살의 원인을 “일부 조선인”의 “흥행”이라든지 “인심이 극도로 흥분”에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민간 자경단 및 군경의 학살 책임을 밝히기는커녕 오히려 정당화하고 있으며, 학살사건을 야기

25) 朝鮮總督府官房外事課가 발간한 『關東地方震災時における朝鮮人問題』의 내용은 姜德相·琴秉洞 編, 1963, 『現代史資料 6 關東大震災』, みすず書房에 수록되어 있다. 그에 대한 편자의 해설을 보면, 1924년 6월 5일자로 총독부 관방외사과장 소노 다[園田]의 명의로 25부를 인쇄하여 내무성 경보국장 앞으로 송부했다고 한다.

한 치안 당국의 책임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를 통해 총독부 당국자의 학살사건에 대한 인식에는 식민지 지배자의 오만함이 겹쳐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그 총독부가 발간한 『조선인문제』에는 “8. 이제 조선인 유족에 대한 위자(慰藉)”라는 부분이 있다. 거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주목할 만한 내용을 말하고 있다.

총독부에서는 지진 때문에 죽거나 행방불명이 된 조선인의 유족에 대해서는 1인당 200엔 정도의 조위금을 보내고 지방 관리를 시켜 유족을 위문하도록 했는데, 그 인원은 830명이고 조위금 총액은 16만 6,000엔이었다.²⁶⁾

이를 통해, 총독부 당국은 관동대지진 시의 한인 사망자를 830명이라고 산정했고, 1924년 6월 이전에 그들의 유족에게 당시 금액으로 1인당 200엔의 조위금을 교부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상기의 사망자 830명이란 인원수는 이 총독부 책자의 “제5. 진재 당시의 피살 조선인 수”에서 밝힌 조사 결과에 기인한다고 추정되는데, 그를 보면 사망자는 832명이며 그중 7할은 압사(壓死), 소사(燒死), 행방불명이고 그 외 2~3할은 자경단에게 피살되었다고 추정하고 있다.²⁷⁾

하지만 이 사망자 수는 앞에서 본 제일 유학생들의 조사 결과에 비해 너무 큰 차이가 나므로, 전체적으로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인다. 조위금 교부 대상자에는 사망 원인이 전혀 다른 3그룹(지진으로 인한 사고사와 행방불명, 피학살)이 뒤섞여 있어 조위금 교부의 명분이 모호하다. 굳이 왜 그랬는지 이유를 생각해보면, 피학살자도 지진 사고사망에 포함시켜서 학살이라는 의미를 약화시키는 한편, 유족들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피살에 대한

26) 朝鮮總督府官房外事課, 『關東地方震災時における朝鮮人問題』; 姜徳相·琴秉洞編, 1963, 『現代史資料6 關東大震災』, 462쪽.

27) 朝鮮總督府官房外事課, 『第5 震災當時の被殺朝鮮人數』, 『關東地方震災時における朝鮮人問題』.

항의제기를 막고자 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 조위금이 조선총독부의 정상적인 재정 지출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하다.²⁸⁾ 다만 당시 1인당 200엔이라는 금액은 생계를 위해 일본에 품팔이를 가야 했던 조선의 서민들에게는 큰 금액이었다. 1922년 당시 관동지방의 물가 통계를 보면 백미 10kg의 소매가격이 3엔 4전이였다.²⁹⁾ 즉 쌀 560kg을 살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을 유족에게 교부함으로써 피학살자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항의하지 못하도록 입막음을 한 셈이다. 그런데 다른 시각에서 보면, 총독부의 이런 피살자 유족에 대한 조위금 지급 행위는 부분적이거나 학살 피해를 인정 한 행정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아이러니컬하게도 당시 일본 정부의 대표인 야마모토 곤노효에[山本權兵衛] 수상이 1923년 12월에 열린 제47회 제국의회 중의원 본회의에서 한인 학살 관련에 관한 대정부 질책에 대해 도피성 답변을 한 것과 비교되는 조치였다.³⁰⁾

28) 朝鮮總督府 官房庶務部 調査課, 1923, 「關東地方大震罹災者に對する朝鮮の救援並慰問」, 『朝鮮』 11월호에 따르면, 당시 총독부가 조선 내에서 모금한 대지진 이재민을 위한 의연금인 23만 4,056엔이 있었는데 그 용처가 불분명하다.

29) 週刊朝日編輯部, 1981, 『值段の明治・大正・昭和風俗史』, 朝日新聞社.

30) 당시 중의원 대정부질의 시간에 무소속 다부치 도요키치[田淵豊吉]가 한인 학살사건에 대해 무책임한 대정부 비판을(12월 14일), 헌정회 소속 나가이 류타로[永井柳太郎]의 군대, 내무성이 유연비어 살포를 주도하여 한인 및 중국인 학살이 일어나게 한 사실을 지적하고 대정부 비판(12월 15일)을 한 것에 대해, 당시 야마모토 수상은 “그 건에 대해서는 고등경찰 및 사법경찰에서 상당한 수단을 사용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니 그 자세한 것에 대해서는 동료로부터 정밀한 보고가 있을 것……”이라고 즉답을 회피했다. 「官報 號外 大正12年 12月15日 衆議院議事速記録 第4號」, 「官報 號外 大正12年 12月16日 衆議院議事速記録 第5號」 참조.

IV.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상하이 교민단의 항의

중국 상하이의 대한민국임시정부는 3·1 독립만세운동 직후인 1919년 4월에 상하이의 프랑스 조계지에서 거주 한인들에 의해 설립되었다가, 9월에 서울, 상하이, 러시아의 한인 독립단체들을 통합한 형태로 재수립되었다. 임시정부는 기관지로 『독립신문(獨立新聞)』(초기 제호는 『獨立』)을 발행했다. 이하에서는 『독립신문』의 관련 기사를 통해 임시정부의 관동대지진 시 동포 학살에 대한 대응을 살펴보기로 한다.

1923년 9월 1일에 일본 관동지방에서 대지진이 발생한 사실에 대해 『독립신문』이 처음 보도한 것은 3일 뒤인 9월 4일자 『호외』³¹⁾였다. 이 『호외』에는 “도쿄를 중심으로 한 적(敵) 국내의 대진재-지진, 폭풍, 해일, 대화(大火)가 병기(並起)하여 전 시가 초토로 화(化)함”이란 표제어로 도쿄와 그 주변 지역에서 대지진이 발생하여 막대한 인명 및 건물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소식과 당해지역 거주 동포들의 동향을 전하고 있다. 관동대지진이 발생한지 3일 만에 중국 상하이에서 관련된 내용의 호외가 발행되었다는 것은 제법 신속한 보도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이 호외 인쇄시에는 아직 대규모의 학살이 일어났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었으며, 현재의 한인들이 무장 활동을 한다는 전혀 사실무근의 소문을 전하거나, 대지진이라는 천재지변이 일본제국에 타격을 입혀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그 다음에 발행된 『독립신문』 1923년 9월 19일자(제164호)에서는 1면 최상단에서 “적지의 대지진 대화재-수도(水都)와 명항(名港)이 전멸되어, 가경(可驚)할 인명과 재산의 손해”, “적의 신 내각원”, “재류 동포의 동정” 등의 관동대지진 관련 기사를 게재하여 대지진의 피해와 당해지역 거주 동포들의 상황, 부분적

31) 필자가 본 이 1923년 9월 4일에 발행된 『獨立新聞 號外』는 그 공백 부분에 펜으로 “大正 12年 9月19日 최승하 순사 압수”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다. 이로 보아 이 호외가 발행된 후 국내로 반입되어 일정 기간 유통되던 중에 한인 순사에게 압수당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기는 하지만 현지에서 한인들이 학살당했다는 내용을 간략하게 보도했다.³²⁾ 그러나 이 제164호는 아직도 일제 관헌이 고의로 전파시킨 유언비어를 그대로 보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9월 5일 이후에 관동대지진에 관한 정보를 한층 더 수집하여 발행된 것이지만 아직도 관동대지진 발생 직후에 일어난 한인 대학살의 전모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이 164호에서 임시정부의 외교총장 조소앙(趙蘇昂)이 일본의 수상 겸 외상인 아마모토 곤노효에 앞으로 아래와 같은 항의서를 보냈다는 내용은 특기할 만하다. “우리 임시정부에서 적 정부 항의 제출-재중(災中) 한인 학살에 대하여”라는 표제어의 그 내용을 요약하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들도 일본인과 같은 대지진의 피해자로서 일체 경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는 유언비어를 광신한 일본 관민이 한인들을 학살한 것은 도저히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천벌을 받을 일이므로 강제 수용된 한인들의 석방, 재난지역의 한인들에 대한 생사여부 조사, 학살 가해자의 엄중 징계 등을 요구하는 것이었다.³³⁾ 상하이에서 임시로 수립한 망명 정부였지만, 그래도 일본의 수도 지역에서 자국민이 학살당한 사건에 대해 응당 책임을 져야할 일본 정부에 항의하고 인도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문서를 보냈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임시정부의 기관지 『독립신문』이 한인 대학살의 정황을 상세하게 보도한 것은 그로부터 1개월 후인 1923년 10월 13일자로 발행된 제165호에서였다. 164호 발행 이후 약 1개월간의 시간 간격은 교통 및 상업의 요충지인 상하이에서 이전과 다른 한층 다양한 정보가 전달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165호의 1면 최상단 기사에서 “적의 죄악”이라는 제목으로 한인 학살사건이 일어나게 한 일본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는 기사가 실렸으며, 그 외 대부분의 지면에서도

32) 『獨立新聞』, 1923, 9. 19, 1쪽 상단.

33) 『獨立新聞』, 1923, 9. 19, 1쪽 하단. 하지만 실제 일본 정부가 이러한 임시정부의 항의서에 어떤 대응을 했는지 확인할 수는 없다. 냉정하게 생각하면 일본은 임시정부 측의 항의에 일부러 대응하지 않았을 확률이 높다. 왜냐하면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항의 행동 대응을 한다는 것은 3·1운동 이후 조선독립운동 세력들이 중국 상하이의 프랑스 조계에서 수립한 임시정부를 외교적 상대로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도쿄를 중심으로 한 주변 지역에서 동포들이 학살 당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보도했다. 또한 같은 165호에는 일본의 대지진 직후에 일어난 한인 대학살 소식에 분노한 교민대회의 상황도 전하고 있다. 당시 이 학살사건에 대해 국내외를 막론하고 한인들이 집단적으로 항의 행동을 취한 것은 상하이 교민들 이외에는 확인할 수 없으므로 아래에 인용해 주목하고자 한다.

9월 1일 적지(敵地) 관동 일대에 대지진 대화재가 있는 이래 요코하마와 도쿄를 중심으로 하여 적의 군민(軍民)이 우리 동포를 학살하며 학대한 데 대하여 이를 묵과할 수 없으므로 상하이에 재류하는 우리 동포는 분연히 일어나서 지난 5일 하오 8시 당지(當地) 삼일당(三一堂)에서 교민대회를 열고 이재동포 학살과 학대에 대한 보고가 있었고 좌와 같은 결의를 행한 후 여운형(呂運亨), 조덕률(趙德律), 조상섭(趙尙燮), 이유헌(李裕瀾), 김승학(金承學), 윤기섭(尹琦燮), 조완구(趙琬九) 등 7인을 위원으로 선거하여 결의사항을 집행하게 하고 폐회했다더라.

결의문

하나, 금후는 그 진상을 더욱 자세하게 조사하거나 필요한 계획을 진행할 것.

둘, 안으로 동포에게 각성하는 격문을 발하고 밖으로 열강에 대하여 일본의 부도덕한 만행을 선포하는 동시에 조락위학(助樂爲虐)과 동일한 의연(義捐)의 공급을 중지하기를 요구할 일.³⁴⁾

이를 보면 이 교민대회는 일본 관동지방에서 발생한 동포 대학살에 대해 사실 공유 및 항의, 진상조사, 내외로 일본의 만행을 선전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해 10월 5일 상하이에서 한인학살에 항의하는 교민대회가 개최되었고 그들이 관련 행동에 착수한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이때 교민대회에서 선출된 실행위원의 면면을 보면 대회를 주최한 세력이 다름 아닌 상하이의 한인 교민단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상하이 교민단은 1919년 9월에 여운형이 창

34) 「적의 한인 학살에 대한 상하이 우리 교민 대회」, 『獨立新聞』, 1923. 10. 13, 3면.

설한 이후 임시정부를 실질적으로 지탱하는 하부 조직의 역할을 했고, 상기 1923년 10월 교민대회 당시는 이유필이 단장을 맡고 있었다.³⁵⁾

상동 10월 13일자 『독립신문』 1면 하단에는 상하이 거주 전체 한인들 앞으로 일본 관동지방에서 발생한 한인 대학살에 관한 진상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국문, 한문, 영문으로 책자를 만들어 배포할 예정이니, 모금에 협조해 달라는 호소문을 게재한 것이 확인된다.³⁶⁾ 이는 앞에서 본 상하이 교민대회에서 선출된 여운형과 이유필 외 5명의 집행위원들이 곧장 후속 행동을 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인 학살 항의 교민대회에서 선출된 집행위원들이 학살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제로 어떻게 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필경 당시 일본에 거주하던 지인을 통해 학살사건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을 것이라고 추측된다. 이와 관련하여 독립신문사 사장이었으며 집행위원의 한 사람이던 김승학은 회고록에서 “신문사에서는 왜경(倭京)이 진재시(震災時)에 한인을 대학살한 사건이 내외에 전파되므로 명고옥(名古屋) 잡지사에 있는 한세복 군을 도쿄 등지에 특파하여 학살된 진상을 조사했다”고 적고 있다.³⁷⁾ 이를 미루어보아 김승학은 교민단의 집행위원을 대표하여 당시 일본의 나고야[名古屋]에 거주하던 지인 한세복에게 진상을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판단된다. 다만 한세복이 앞에서 언급했던 재일한인들의 피해 조사단인 “위문반”에 포함되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후 1923년 11월 10일자 발행 『독립신문』을 통해 상하이 거주 한인들은 일본에서 한인 학살사건이 일어난 원인이 된 유언비어는 일본 내무성에 의해 조작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또한 한인 교민단은 그해 11월 17일에 프랑스 조계 삼일당(三一堂)에서 학살 희생자 추도회를 개최했다. 당일은 “추도 피학살 재일동포의 령”이라고 검은 무명예 백서한 횡단막을 걸고 교민단 총무 김봉준(金朋濬)이 개회사를 했고

35) 姜德相, 2005, 『呂運亨評傳2-上海臨時政府』, 新幹社, 11쪽.

36) 『獨立新聞』, 1923, 10. 13, 1면 하단.

37) 김승학, 1988, 「망명객행적록(亡命客行蹟錄)」의 “16. 독립신문으로 선전(宣傳)하던 때”,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12호.

조덕률의 피해상황 경과 보고, 인성학교 생도들의 추도가, 조완구의 추도문 낭독이 있었다.³⁸⁾

그리고 『독립신문』 1923년 12월 5일자 1면에서 일본의 한세복이 김승학 앞으로 우편 발송한 내용을 전달하는 형식으로 관동대지진 시의 한인 피해 조사 결과(사망자 총 6,661명, 부상자를 합치면 1만여 명)가 공표되었다.³⁹⁾ 이때 처음으로 그해 9월 초 일본에서 일어난 한인 학살사건의 피해자 규모가 명시된 것이다. 그를 접한 상하이 거주 동포들이 얼마나 분노와 경악을 했는지 상상이 된다.

1923년 9월 일본의 관동대지진 시에 발생한 한인 대학살사건에 대해 상하이의 대한민국임시정부와 거주 한인들은 처음에는 상황을 잘 몰라서 일본 정부에게 충격을 준 대규모 천재지변의 발생한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차츰 지진 발생지역에서 다수의 한인들이 학살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국에서 망명한 상태일지라도 애족주의의 차원에서 자신들이 가능한 수단을 최대한 동원하여 항의 표시를 했다. 하지만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은 일본 정부가 그에 대해 어떠한 대응을 했다는 흔적은 없다.

V. 중국인 학살에 관한 베이징 정부의 항의와 외교적 대응

관동대지진 시의 중국인 학살도 천재지변의 와중에 한인을 희생양으로 삼고자 일본 군경이 악의적으로 퍼뜨린 유언비어에 의해 발생한 것이다. 비록 피해 인

38) 「학살된 동포를 위하여, 처장(悽愴) 통절(痛切) 추도회」, 『獨立新聞』, 1923. 12. 5.

39) 「일만의 희생자! 슬프다 칠천의 가련한 동포가 적지에서 피바다를 이루었다」, 『獨立新聞』, 1923. 12. 5, 1면.

원은 한인의 경우보다 적지만, 일본 군경과 민간인에 의해 잔인하게 학살당했다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한인들의 경우와 동일한 성격의 학살이라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1923년 당시 도쿄 등지에서 일어난 중국인 학살 상황을 개관한 후, 그에 대한 일본 정부와 중국 정부의 사후조치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살펴 보도록 한다.

1923년 9월 당시 도쿄에서 중국인 노동자가 집중적으로 거주하던 지역은 미나미센[南千住]나 오시마[大島]였다. 그들의 직업은 행상 등의 상인도 있었지만, 주로 일본인보다 저렴한 일당을 받으며 석탄 하역 운반, 강관 운반, 토사 운반 등의 육체노동에 종사했다. 하지만 1922년부터 일본은 워싱턴회의의 결정에 의한 해군의 군축을 감행했고, 그로 인해 해군공창, 조병창을 비롯한 조선업계에 대량 해고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해고의 여파는 말단의 일용직과 육체노동에까지 파급되어 해당 직종에서 일본인과 중국인은 경쟁 상대가 되었다. 그 결과로, 1922년 10월에는 스미다[隅田]강 주변의 인부 300여 명이 중국인 노동자의 퇴출을 요구하는 연판장을 작성하여 경시청 외사과장에 제출했고, 1923년 5월에는 도쿄의 혼조[本所], 후카가와[深川]의 인부 하청업자들이 인근 운송업자 및 공장에 대해 석탄 하역 인부로 중국인을 사용하지 말라고 의뢰하는 등 중국인 배척 운동이 일어나고 있었다.⁴⁰⁾

그러던 중에 1923년 9월 1일에 도쿄와 인근 지역에 대지진이 발생했던 것이다. 중국인 노동자가 집중적으로 거주하던 미나미 가츠시카[南葛飾] 오시마에는 9월 1일 저녁부터 수일에 걸쳐 군대와 경찰 및 민간 노동자에 의해 “조선인 습격”이라는 유언비어가 전파되었다. 그로 인해 일본 노동자를 앞세운 군인들이 “한인 사냥”을 핑계로 중국인 학살을 벌였다. 그 외에 요코하마[横浜] 지역에서도 중국인에 대한 학살이 다수 발생했다.

그런데 대지진 발생으로부터 12일이 지난 9월 12일, 재일 중국인노동자공제회 회장이며 사회운동가인 왕시티엔[王希天]이 상부의 명령을 받은 육군 야

40) 仁木ふみ子, 1993, 앞의 책, 137쪽. 원자료는 大原社會問題研究所가 발간한 『日本勞働年鑑』 4와 5.

전중포(野戰重砲) 제7연대 6중대의 가키우치[垣内] 중위에게 살해되었다.⁴¹⁾ 이미 관동지방에서는 관헌이 유포한 유언비어가 실체가 없는 것이라고 확인되어 더 이상의 학살이 일어나지 않은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본군은 이전부터 탐탁지 않게 여기던 중국인 노동운동의 지도자 왕시티엔을 유언비어를 빌미삼아 고의적으로 살인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뒤늦게 중국인에 대한 학살 사실을 알고, 필시 대중국 외교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을 염려하여 사후조치를 취했다. 먼저, 9월 중순에 귀국을 희망하는 도쿄 거주 일반 중국인을 대상으로 무료로 귀국 선편을 마련해 주었고, 다음으로 9월 말에서 10월 중순에 걸쳐 학살사건 발생 직후에 나라시노[習志野] 수용소 등에서 감금 상태에 있던 피학살 지역의 중국인을 송환했다. 그 제1편이 9월 15일에 시바우라[芝浦]항을 출발한 지토세마루[千歳丸]였고, 귀국편에 오른 중국인에게 학생 50엔, 상인과 노동자 10엔씩 위로 수당을 지급했다.⁴²⁾

그러나 당시 중국에는 구미 제국 등의 인정을 받은 베이징[北京] 정부가 있었으나, 국내 정세가 매우 복잡했다. 청 왕조를 무너뜨린 신해혁명 이후, 1912년에 북양군벌의 위안스카이[遠世凱]를 중심으로 수립된 베이징[北京] 정부는 제1차 세계대전 중인 1916년에 위안스카이가 사망한 후, 북양 등의 군벌, 마오쩌둥[毛澤東]을 중심으로 한 공산당 세력, 위안스카이에 의해 해체된 국민당의 잔존 세력 등이 서로 대립하며 정권 쟁탈을 벌였다. 1923년 9월 일본에서 관동대지진이 일어났을 당시 베이징 정부는 북양군벌 내부에서 일어난 권력 쟁탈전에서 장쥘린[張作霖]의 봉천파(奉天派)를 이긴 직예파(直隸派)인 차오쿤[曹錕]이 대총통이 되어 정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그러나 조쿤은 그해 6월 대총통 선출 과정에서 뇌물을 준 의혹을 받고 있었으며, 정권 자체도 금권 부패, 재정

41) 仁木ふみ子, 1993, 앞의 책, 55쪽.

42) 仁木ふみ子, 1993, 위의 책, 68쪽. 원자료는 外務省, 『救濟及び送還』의 “2 罹災支那人救濟事務會計報告書”(일본 外交史料館 소장). 인용서에 따르면, 중국인 위로 수당 지출 근거는 학생은 대중국 문화사업 특별회계에서, 상인 노동자는 진재구호비에서 했다고 한다.

악화 등으로 국민의 지지를 잃고 있었다.⁴³⁾ 특히 아편전쟁 이래 거듭된 전쟁과 대외 정책의 실패로 구미 열강 및 일본에 막대한 차관을 들였던 중국의 재정 상황은 심각할 정도로 취약했으며, 거기에 정권 탈환의 기회를 노리고 있는 만주의 봉천파에 대한 경계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한 베이징 정부가 관동대지진 시에 중국인 집단학살 피해를 접했으나, 즉각 자국민 학살의 증거 수집에 외교적 기동력을 발휘한다든지, 일본 정부에 대한 강경 자세를 유지하기 힘들었다. 하지만 중국인 학살 사실을 감지하고 격분한 국내 여론이 고조되자, 베이징 정부는 외교 통로를 통해 일본 정부에 항의하고 사후조치를 요구했다.

〈표 2〉는 당시 중국인 학살에 대해 중국의 베이징 정부와 일본 정부가 취한 조치를 시계열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이를 통해 양국 정부가 중국인 학살에 대해 어떤 입장에 있었는지를 개관할 수 있다.

〈표 2〉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당시 중국(베이징) 정부는 중국인 학살사건에 대해 1923년 10월 상순까지는 비교적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나라시노에 감금되었던 중국인들의 귀국선이 도착한 10월 중순부터 중국인에 대한 학살 및 습격 사실이 알려졌으며, 저장[浙江]성, 지린[吉林]성 등 학살 피해자들이 집중된 지방을 중심으로 해당 사건에 격분하는 여론이 고조되었다. 또한 일본 현지에서 근무하는 중국공사관으로부터 해당 사건의 심각성이 보고되어 일본에 대한 엄중 항의 및 강력한 외교적 조치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그러자 베이징 정부도 일본 정부에 대해 가해자의 처벌과 피살자의 보상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중국 국내 각 지방의 분노한 여론을

43) 당시 중국의 정치상황에 대해서는 조너선 D. 스펠스 저, 김희교 역, 『현대중국을 찾아서1』; 이산, 1998, 「12장 새로운공화국」; 中央大學人文科學研究所編, 1999(일본), 『民國前期中國と東アジアの變動』, 中央大學研究叢書21, 中央大學出版部 참조. 당시 과거 위안스카이 산하의 북양 군벌이 베이징 정부를 지탱하고 있었는데, 그중에 차오쿤[曹錕], 우페이푸[吳佩孚] 등의 직예파와 장쥘린[張作霖]의 봉천파가 대표적인 존재였다. 1920년 7월에 수립된 직예파와 봉천파의 연합정권은 분열이 일어났고, 1922년 4월에 발발한 제1차 봉·직(奉直)전쟁의 결과 봉천파는 직예파에 패배하여 정권에서 일시적으로 멀어졌다.

〈표 2〉 대지진 직후 발생한 중국인 피해 관련 조치 일람

연도	월일	중국 또는 일본의 정부 행정기관 사후조치 내용	비고
	9. 15	일본 정부, 귀국을 희망하는 일반 중국인 대상으로 무료송환 작업 시작. 제1편으로 9월 15일에 지토세마루[千歳丸]가 시바우라[芝浦]항을 출발(9월 21일에 상하이항 도착). 일본 정부는 학생 50엔, 상인과 노동자에게 10엔 씩 위로 수당을 지급함.	위로 수당의 지출 근거로 학생은 대중국 문화사업 특별회계에서, 상인 노동자는 진재구호비에서 지급.
	9. 19	중국노동자공제회 부회장 왕차오첵[王兆澄]과 중국청년회 간사 시에치에메이[謝介眉] 등이 일본 외무성에게 나라시노[翟志野]에 감금중인 중국 노동자의 석방 및 귀국을 요청함.	
	9. 30	나라시노 수용소에서 나온 중국인 제1진 449명이 시바우라항에서 하쿠아이마루[博愛丸]로 출항(고베[神戸]항을 경유 상하이 출항).	나라시노 수용소에서 의 혹독한 처우를 전함.
	10. 1	베이징 정부 주일공사대리가 자국 외교부에 사망자는 없고 이름이 밝혀진 부상자 3명, 행방불명자 5~6명, 중국인노동자공제회장 왕시티엔이 실종되었다고 보고함.	
	10. 3	베이징 외교부는 신문보도로 정보를 입수하고 요시자와 켄키치[芳澤謙吉] 주중 일본공사 앞으로 조회 공문을 보내 중국인 사상자가 많다는 점, 왕시티엔이 살해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하면서 “본국 정부는 지극히 유감”이라는 견해를 표명함.	
	10. 6	9월 30일 시바우라항을 출발한 하쿠아이마루에 승선한 중국인 449명 상하이항에 도착. 베이징 정부 외교총장 구요우친[顧有鈞]은 요시자와 주중 공사와 회담시에 “처음에 풍설인 줄 알았고 아직 진실이라고 믿기 힘들다. …… 이러한 사건은 우리나라 인민의 오해를 약기하므로 상세한 보고를 기다려 다시 상의하자”고 소극적인 태도를 취함.	
	10. 11	10월 5일 시바우라항을 출발한 지토세마루[千歳丸]에 승선한 중국인 738명이 상하이항 도착.	

연도	월일	중국 또는 일본의 정부 행정기관 사후조치 내용	비고
	10. 12	전날에 이어 오시마의 학살 사실을 아는 원저우 [溫州] 출신자 피난민 63명을 태운 야마시로마루 [山城丸]가 상하이에 도착. 폭력으로 부상당한 사람들이 많고, 집단학살 사실이 알려지자 격분한 여론이 고조됨.	오시마에서의 집단 학살사건, 왕시티엔 행방불명 등의 사실 확산.
	10월 중순 ~하순	원저우 여호동향회(溫州旅滬同鄉會)가 “원저우 출신 노동자 수백명이 참살당했다”라고 베이징 외교부에 진정서 제출. 주일공사관으로부터 “왕시티엔의 실종사건, 학생 수명의 부상사건 이외에도 중국 노동자가 일본인에게 맞아서 사상자가 매우 많음”이라는 보고서 도착. 주일 중국공사관은 강경한 태도로 일본 외무성에 “엄중 항의”를 표명함.	
	10. 24	주중 일본공사관은 다수의 중국인 희생자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여 “목하 최대한 조사”하고 있고, 일본 정부는 그것이 일부 한인들의 횡포에 의해 일어났다면 “유감”을 표명하고 귀국 희망자를 무료로 상하이로 수송하고 있다고 생색을 냄.	
	10. 26	베이징 외교부에 주 오키야마 대리 총영사의 “일본 정부가 책임 회피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다”, “엄중 교섭”을 요구하는 보고서가 도착함.	
	10월 말	선리에첸[孫烈臣] 지린[吉林]성장, 자국 외교부에 공문을 보내 주일공사를 통해 대일본 엄중 교섭을 요구함.	
	11. 1	지린성 의회는 길림 유일학생(留日學生)동향회의 서신에 근거하여 매우 구체적인 피해상황을 외교부에 보고하면서 일본의 “왕시티엔 석방”설에 이의 제기, 일본 측에 대한 정식 항의와 철저한 조사를 요구함. 저장[浙江]성 의회 왕무언[王濶]외 27명의 의원들이 성장(省長) 앞으로 도쿄 오시마에서 저장 성민(원저우 출신자) 다수가 살해당했다고 즉각 주일공사를 통해 항의하라고 요구하나, 성장은 더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신중한 태도를 취함.	
	11. 3	베이징 외교부, 일본에 조사위원 파견을 결정함.	

연도	월일	중국 또는 일본의 정부 행정기관 사후조치 내용	비고
	11. 5	왕시티엔 행방불명사건에 대해 일본 정부에 철저한 조사 요구를 하도록 주일 대리공사에게 엄명함.	
	11. 7	일본 야마모토[山本]내각은 5개 부처(총리, 내무, 외무, 법무, 육군) 대신회의를 열어 오시마 중국인 집단학살사건 및 왕시티엔 살해사건을 철저하게 은폐한다고 결정함.	
	11. 10	주일 중국공사관, “현재 조사중”이라는 일본 외무성 아시아국장과의 회담을 첨부하여 본국 외교부에 전송함. 지린성 의회가 “문명국”인 체하며 “야만적”인 일본 정부에 “상당한 조건을 요구하고 장래에 이러한 폭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증을 받아라”고 베이징 외교부에 요구함.	
	11. 21	베이징 외교총장 구요우친은 요시자와 일본공사와의 회담에서 처음으로 피해자 가족에 대한 배상에 대해 언급함.	
1923	11. 29	저장성 의회 명의로 중국 외교부에 대일 엄중 교섭을 요구하면서 “국권을 지켜 국민의 생명을 중시”하라고 강력하게 요청함과 동시에, 중국 전국의 각 성 의회, 현 의회에도 유사한 내용의 전보를 보냄. 이에 지린[吉林]성, 장소[江蘇]성 의회가 유사한 항의 전문을 외교부에 발송. 허난[河南]성의 의회는 국제법에 의거하여 범인 체포, 배상, 사죄, 장래 안전 등을 요구하라고 주장.	
	12. 6	구요우친은 중국 “각계의 분격(憤激)”을 이유로 다시 일본공사에게 범인의 엄중처벌과 배상 요구.	
	12. 7	베이징 외교부 파견 조사단 왕정팅[王正廷] 일행은 6일 시모노세키[下關]항을 통해 도쿄로 이동하여 일본 정부의 요인을 접견함.	학살사건 조사 이외에도, 만주 교섭, 개인 용무 등 산만한 업무를 전개한 탓에 집중적인 조사를 하지 못함.
1923	12. 26	주일 대리공사는 왕정팅 일행의 조사 결과는 일본 공사관의 조사와 별 차이 없다고 구요우친 외교총장에게 보고함.	

연도	월일	중국 또는 일본의 정부 행정기관 사후조치 내용	비고
1924	1. 28	원저우 여호 동향회가 외교부의 안일한 조사를 질책함.	
	1. 30	왕징팅 일행이 베이징 외교부에 조사 보고서 제출하나, 새로운 사실 발굴은 없음. 이후에도 베이징 외교부는 일본 정부에 범인 처벌과 배상을 수차례 요구함.	중국 측 배상 요구 가치춤 약화됨.
	5월	일본의 기요우라 게이고[清浦圭吾] 내각은 외교적 결착을 피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20만 엔의 위자금” 지불을 결정함.	이후 유아무야됨.

* 출처: 이 일람표는 仁木ふみ子, 1993, 『震災下の中國人虐殺—中國人労働者と王希天はなぜ殺されたか』, 青木書店; 川島眞, 2004, 「關東大震災と中國外交—北京政府外交部の對應を中心に」, 『中國近代外交の形成』, 名古屋大學出版會 참조.

바탕으로 한 대정부 요구는 1923년 11월에 절정을 이루었다. 그러나 12월 중순에 일본에 파견된 중국 정부 조사단은 실질적인 조사 활동을 하지 못했고, 결국 기존의 조사를 답습하는 오류를 범한다. 이는 일본 정부의 학살사건에 대한 철저한 은폐와 비협조적인 태도에 기인했지만, 중국 측 조사단의 소극적인 태도 또한 문제였다.

따라서 관동대지진 시에 도쿄와 요코하마 등에서 피살 또는 부상을 입은 중국인의 인원은 주로 민간의 사후 조사를 통해 상당히 자세하게 밝혀졌다. 민간의 조사로는, 재일 중국인노동자공제회 부회장인 왕차오칭[王兆澄]의 탐문 조사, 피해자가 집중되었던 저장성 원저우의 추가 조사를 들 수 있고, 베이징 정부 차원의 조사는 주일 공사관의 추가 조사를 한 것이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밝혀진 중국인 피해자 내역은 사망 656명, 행방불명 11명, 부상 91명으로 총 758명이었는데, 그 결과를 자세하게 수록한 「일인 참살 중국 노동자의 조사(日人慘殺華工之調査)」라는 자료는 베이징 정부의 공식 항의문서와 함께 일본 외무성에 전달되었다.⁴⁴⁾

44) 이 「日人慘殺華工之調査」는 일본 외무성 외교사료관과 타이완중앙연구원 근대사

베이징 정부는 국내 여론의 동향도 있어 수차례에 걸쳐 일본 측에 범인 처벌과 피해 배상을 요구하긴 했으나, 결국은 즉답을 회피하며 시간을 때우기 식의 태도로 일관하는 일본 정부를 강하게 질책하며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압박하지는 못했다. 왜 그러했는지 베이징 직예파 정권의 입장을 추론하면 다음과 같다. 직예파 정권은 자기들과 경쟁하는 봉천파의 근거지 만주(동북 3성)에서 일본의 지배하에 있던 남만주철도 및 관동주(뤼순·다롄)에서 일본의 투자가 계속해서 이루어고 있었으며, 1917~1918년에 이전 정권이 일본에서 1억 5,000엔의 차관을 도입했으나 갚지 못하여 전전공공하고 있었다. 따라서 일본에 대해 관동대지진 중국인 학살에 대해서 민족적 감정은 있었지만, 역시 만주를 노리고 있던 국내 정치적 이유와 거액의 차관을 환급하지 못했다는 실리적인 입장도 있어 일본에 강력한 배상요구를 못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1924년이 되면서 학살에 대한 중국 국내의 비판적 여론이 비교적 약화되자, 베이징 정부의 대일 요구도 약해졌다. 1924년 5월, 일본의 기요우라[清浦] 내각은 학살 피해자에게 “20만 엔”의 위자금을 지불을 한다고 결정하여 그 책임을 무마하려고 했으나, 그 결정은 이후 유아무야되고 말았고, 결국 중국인 학살의 책임 규명도 미궁에 빠지고 말았다.

VI. 맺음말

이상 지극히 제한된 현존 자료의 상황에서, 1923년 일본의 관동대지진 시에 발생한 한인 및 중국인에 대한대량 학살사건과 관련하여, 학살 가해자에 대한 일본 관헌의 사법 조치,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대응, 조선총독부의 무마 조치, 중국 베이징 정부의 사후조치 등에 대해 검토해보았다.

일본 사법당국의 민간 자경단의 학살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을 살펴보면 지나치게 관대했다. 관동대지진 시의 한인 학살은 우발적인 살인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공장소에서 무자비하게 살인이 자행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판결까지 가는 과정에서 피고에 대한 일본 사법부의 판단은 매우 문제가 많았다. 그 배경에는 피해자가 “식민지 출신의 조선인”이라는 점, 학살을 야기한 유언비어의 살포 책임은 관헌에게 있다는 자경단 측의 항의, 대지진 혼란 속의 자기방어적인 행위이었다는 동정론 확산 등이 있었다. 그 결과 극히 소수의 가해자에게만 법정 최저의 형량이 내려졌다.

조선총독부는 식민지 통치기관으로서 자기방어적인 사후조치를 취한 것이 확인되었다. 다만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총독부가 일본 정부에 보낸 홍보용 자료를 통해, 총독부가 1924년 6월 이전에 한인 사망자 830명을 선정해 1인당 200엔의 조위금, 총 16만 6,000엔을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학살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차원에서 볼 때, 향후 당시 조선총독부가 어떻게 조위금 교부 대상자를 조사 및 선정했는지, 어떤 명목으로 재정 지출을 했는지 등에 관한 자료 발굴이 필요하다.

중국 상하이의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일본 관동지방에서 발생한 한인 대학살에 관해 여러 방면에서 정보를 얻고 있었다. 그것은 상하이가 중국의 교통 및 상업의 중심 역할을 하는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그만큼 관동대지진으로 인한 피해 소식에 대해서도 중국의 여타 지역보다 유리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상하이에 있던 임시정부와 교민단은 일본의 대지진과 한인 대학살에 관해 자세한 소식을 접했고, 임시정부 차원에서는 항의서를 송부했고, 교민단 차원에서는 항의 교민대회와 추도회를 개최하면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응을 했다.

중국인 학살에 대한 중국 베이징 정부의 대응과 일본 정부의 사후조치를 검토해 보니, 한인 피해자에 대한 사후조치와는 많이 달랐다. 일본 정부는 외교적 문제를 무마하기 위해 학살사건의 직후에 관동지방에 거주하던 중국인들을 “무료 송환”하는 봉사를 했다. 그러나 1923년 10월부터 도쿄나 요코하마에서 군경 및 자경단에게 중국인들이 학살당한 사실을 목도했거나 부상당한 중국인들이 선박편으로 상하이항을 통해 귀국한 이후, 중국 내에서 분노한 대일

여론이 고조되었다. 베이징 정부 외교부는 격분한 국내 여론을 무시할 수 없어서 대일 질책과 보상 요구를 했고, 일본 정부도 외교적인 관례에 따라 그에 대응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결국 1924년에 일본 정부가 내각 차원에서 “20만 엔의 위자금”을 지불한다는 결정을 한 것은 그 때문이었다. 막대한 대일 부채가 있던 베이징 정부로서는 학살 피해에 관해 지속적인 대일 압박을 할 수 없었다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정부가 존재하던 중국인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후 대응은 한인에 비해 큰 격차가 있었다.

해방 이후 한반도에서 수립된 국가는 과거 국권 침탈시기에 발생한 자민족의 피해 중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의 규명을 위해 응분의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1923년 일본에서 발생한 한인 대학살은 비록 대지진의 혼란 속에서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결코 전시가 아닌 평시에 일어났으며, 배타적인 유언비어를 믿고 민족적 마이너리티를 집단학살한 잔인한 사건이다. 이는 세계사에서도 손꼽힐만한 대학살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존재하는 민족 정부는 지금까지 1923년 일본에서 발생한 자민족 학살사건에 대해 진상 파악을 시도조차 한 적이 없다. 1950~1960년대 중반까지 진행된 한일국교정상화 회담에서도 이에 관해 제대로 언급하지 않았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일제강점기의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민족을 대표한다고 자부하는 정부라면, 과거 국권을 상실했던 시절에 중국 상하이에서 외교권도 재력도 없는 임시정부와 한인 민단이 재일동포들의 대학살사건에 항의하고자 노력했던 사실을 되새기고, 미해결 과제를 계승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단행본

- 김광열, 2010, 『한인의 일본이주사 연구-1910~1940년대』, 논형.
- 조너선 D. 스펜스 저, 김희교 역, 1998, 『현대중국을 찾아서1』, 이산.
- 최승만, 1985, 『나의 回顧錄』, 인하대학교출판부.
- 姜德相, 1975, 『關東大震災』, 中公新書.
- 姜德相, 2005, 『呂運亨評傳2-上海臨時政府』, 新幹社.
- 姜德相·琴秉洞 編, 1963, 『現代史資料 6 關東大震災』, みすず書房.
- 關東大震災50周年朝鮮人犠牲者追悼行事實行委員會, 1975, 『關東大震災と朝鮮人虐殺-歴史の眞實』, 現代史出版會.
- 關東大震災60周年朝鮮人犠牲者追悼行事實行委員會, 1987, 『隠されていた歴史-關東大震災と埼玉の朝鮮人虐殺事件』.
- 山田昭次, 2003, 『關東大震災時の朝鮮人虐殺-その國家責任と民衆責任』, 創史社.
- 山田昭次, 2011, 『關東大震災時の朝鮮人虐殺とその後-虐殺の國家責任と民衆責任』, 創史社.
- 山田昭次, 2014, 『關東大震災時の朝鮮人迫害-全国各地での流言と朝鮮人虐待』, 創史社.
- 仁木ふみ子, 1993, 『震災下の中國人虐殺-中國人労働者と王希天はなぜ殺されたか』, 青木書店.
- 正力松太郎, 1944, 『惡戰苦闘』, 讀賣新聞社.
- 週刊朝日編集部, 1981, 『値段の明治・大正・昭和風俗史』, 朝日新聞社.
- 中央大學人文科學研究所編, 1999, 『民國前期中國と東アジアの變動』, 中央大學出版部.

논문

- 김승학, 1998, 「망명객행적록(亡命客行蹟錄)」,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12호,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 노주은, 2007, 「관동대지진과 조선총독부의 재일조선인 정책-총독부의 '진재처리' 과정을 중심으로」, 『한일민족문제연구』 제12호.
- 장세운, 2013, 「관동대지진시 한인학살에 대한 <독립신문>의 보도와 최근 연구동향」.

『관동대지진과 조선인 학살』, 동북아역사재단.

李明花, 2014, 「關東大震災と韓國獨立運動」, 『코리아연구』立命館大學코리아研究中心.
センター.

川島眞, 2004, 「關東大震災と中國外交－北京政府外交部の對應を中心に」, 『中國近代外交の形成』, 名古屋大學出版會.

공간물

「官報 號外 大正12年 12月15日 衆議院議事速記録 第4號」.

「官報 號外 大正12年 12月16日 衆議院議事速記録 第5號」.

정기간행물

『獨立新聞』.

『동아일보』.

『京城日報』.

『國民新聞』.

『讀賣新聞』.

『東京日日新聞』.

『報知新聞』.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국문 초록]

1923년 일본 관동대지진 시 학살된
한인과 중국인에 대한 사후조치

김광열

이 글은 1923년 일본의 관동대지진 시에 학살된 한인과 중국인에 대한 사후조치를 학살가해자의 처벌, 조선총독부, 대한민국임시정부, 중국 베이징 정부의 차원에서 각각 검토함으로써, 학살사건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재고하고자 하는 것이다.

일본 사법기관의 학살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 상황을 살펴보면 그들의 고의적인 살인 행위에 대해 결과는 지나치게 관대했다. 관동대지진 시의 한인 학살은 우발적인 살인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공장소에서 무자비하게 살인이 자행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판결은 당시의 동정론을 배경으로 극히 소수의 가해자에게 법정 최저의 형량이 내려졌다.

조선총독부는 식민지 통치기관으로서 자기방어적인 사후조치를 취한 것이 확인되었다. 총독부가 1924년에 일본 정부로 송부한 홍보용 자료를 통해, 총독부 당국은 이미 한인 사망자 830명을 선정해 1인당 200엔, 총 16만 6,000엔의 조위금을 교부한 사실을 확인했다.

상하이에 있던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기관지 역할을 했던 『독립신문』을 통해 학살사건에 대한 임시정부와 한인 교민단의 대응은 어떠한지를 검토해보았다. 임시정부는 한인 학살에 관해 여러 방면에서 정보를 얻고 있었던 것이 확인된다. 임시정부와 상하이 민단은 관동대지진 중에 다수의 한인들이 학살당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대일 항의서를 송부했고, 교민대회와 피살동포 추도회를 개최하는 등 가능한의 의사 표시를 했다. 당시 이 사건에 대해 한인이 집단적으로 항의 행동을 한 것은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었다.

중국인 학살에 관한 중국 베이징 정부의 대응은 한인의 경우와는 많이 달랐다. 1923년 10월부터 도쿄나 요코하마에서 군경 및 자경단에게 중국인들이 학살당한 사실을 목도했거나 부상당한 중국인들 다수가 선박 편으로 상하이항을 통해 귀국한 후, 중국 내에 분노한 대일 여론이 고조되었다. 베이징 정부 외교부는 대일 질책과 보상 요구를 했고, 일본 정부는 외교적인 관례에 따라 대응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당시 중국은 국력이 약했지만, 실질적으로 정부가 존재했기 때문에, 중국인 학살 피해에 대해 외교적 노력을 할 수 있었다.

주제어

관동대지진, 학살, 재일한인, 재일 중국인, 대한민국임시정부, 상하이 민단, 조선총독부, 베이징 정부, 질책과 보상

[ABSTRACT]Management for Koreans and Chinese Massacred after the
Great Kanto Earthquake in 1923

Kim Gwangyol

This paper considers the roles which the Japanese state played in the massacres after the Great Kanto Earthquake in 1923, and probes into the truth and the compensation of victims by examining in four ways the post-earthquake management for Koreans and Chinese murdered following the earthquake. Did the state grasp that Koreans had been massacred, and what legal actions were taken against the assailants? What actions did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the colonial government in Korea, take after the earthquake with regard to victims? How did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n Shanghai respond to the massacres that occurred after the earthquake? And how did the Chinese government in Beijing cope with the massacre of Chinese after the earthquake?

The conditions of the judicial agencies in Japan for the punishment of assailants revealed the absurdly lenient judgment in comparison with the willful murders. The massacre of Koreans after the earthquake were not accidental murders but premeditated crimes perpetrated in public space. Nevertheless, only a few assailants were found guilty, and they received minimal legal punishment.

The Japanese colonial government in Korea, as the organization of colonial administration, took charge of self-defense. Through the press packet that the colonial Japanese government sent to the Japanese

government in 1924, we can find that it already had chosen 830 Korean victims, and presented condolence money of 200 yen per person, for a total of 166,000 yen.

This paper examines the response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n Shanghai and Korean society in foreign lands through the *Dongnip sinmun*, a newspaper published by the provisional government in Shanghai. From this, it was found that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received information regarding the massacre of Koreans after the earthquake in many ways. The provisional government and Korean society in Shanghai responded in various ways, for example, sending a written protest to Japan and holding a memorial service for Korean victims and a general meeting to register the protest of Korean society, when they learned of the massacre of many Koreans after the earthquake. This collective protest movement could not be seen in other regions at the time.

There were many differences between the response of the Beijing government and the Japanese government toward the massacre of Chinese. In China, the anger of Japanese became excited after October 1923, when many Chinese who witnessed the massacre of Chinese or were wounded by the military, police, and civil militia in Tokyo and Yokohama returned home through Shanghai harbor. As the diplomatic service of the Beijing government demanded compensation and reprimanded the Japanese government for this matter, the Japanese government could not help responding according to diplomatic rules. At that time, as the Chinese had an effective government, there were many differences in post-earthquake management from Koreans who did not have a government.

Keywords

Great Kanto earthquake, massacre, Korean minority in Japan, Chinese minority in Japan, the minimum legal punishment,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Korean society in Shanghai, the colonial Japanese government of Korea, the Beijing government in China, compensation, reprimands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식민지 조선에서 관동대지진의 기억과 전승

성주현 | 청암대학교 재일코리아연구소 연구교수

동북아역사재단

I. 머리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923년 9월 1일 일본 도쿄[東京]를 중심으로 일어난 매그니튜드 7.9의 관동대지진은 190만 명의 피해자, 그리고 10만 5,000여 명의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대재앙이었다. 특히 민주주의(democracy)가 성숙해가는 시기에 관동대지진은 일본의 정치 상황도 바꾸어 놓았다. 관동대지진이 발생함과 거의 동시에 계엄령이 선포되자 군부가 전면에서 나서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식민지 조선인에 대해 ‘불령선인’이라는 유언비어가 경시청 전단이 유포되어 조선인 학살이 자행되었다.¹⁾

※ 투고: 2015년 2월 11일, 심사 완료: 2015년 4월 30일, 게재 확정: 2015년 5월 18일

- 1) 관동대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에 대한 연구 성과는 다음과 같다[강덕상, 1998, 「1923년 관동대지진(關東大地震) 대학살 진상」, 『역사비평』 45, 역사문제연구소; 강덕상, 1999,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을 보는 새로운 시각-일본측의 '3대 테러사건' 사관의 오류」, 『역사비평』 47, 역사문제연구소; 노주은, 2007, 「관동대지진과 일본의 재일조선인 정책: 일본정부와 조선총독부의 '진재처리' 과정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아마다 쇼지, 2008,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에 대한

관동대지진이 일어난 일본뿐만 아니라 식민지 조선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당시 도쿄는 식민지 모국의 수도였지만 식민지 조선인이 적지 않았다. 한말부터 유학생과 노동자의 이주로 시작된 도일은 오사카[大阪] 외에도 도쿄에 적지 않은 조선인이 거주하고 있었다.

관동대지진이 식민지 조선에 알려진 것은 9월 3일이었다. 조선총독부에는 이미 보고가 되었겠지만 일반사회에서는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 즉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9월 3일 첫 보도를 하면서 관동대지진이 알려졌다. 이후 언론은 현지 조사단을 파견하는 한편 모든 방안을 통해 관동대지진의 정확한 진상을 파악하고자 했다. 뿐만 아니라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관계자를 통해 생사 안부를 확인하고자 했다. 이후 언론은 비록 일제의 언론 통제라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장감 있는 보도를 지향했다.

이와 같은 관동대지진이 일어난 시기 식민지 조선의 상황은 서선지역에 대규모의 수해가 발생하여 사회전반에서 이재민 구제활동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관동대지진이 발생하자 옆친 데 덮친 격으로 국내의 상황은 혼란이 가중되었다. 초기의 서선지역 수해에 대한 관심이 점차 관동대지진에 대해서도 갖게 되었고, 각종 구제회가 조직되면서 본격적인 구제활동이 전개되었다.

또한 관동대지진은 1923년 재앙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한동안 기억되고 전승되었다. 조선인 학살 역시 추모 관련 행사를 통해 기억되고 전승되었다. 이러한 기억과 전승은 식민지 조선뿐만 아니라 국외 교민사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전개되었다. 이는 식민지 조선에서 일본의 식민정책에 대한 저항이기도 했다. 우선 관동대지진 1주년을 맞는 1924년 9월 1일 인천노동총동맹은 추도식을 거행한 바 있으며, 이러한 추모행사는 사회단체와 청년단체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데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언론에서도 관동대지진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기도 했다. 『동아일보』는 1924년 9월 1일자 신문에 당시 보도했던 기사를 사진으로 게재한 바 있다.

일본국가와 민중의 책임』, 논형; 강덕상·야마다 쇼지, 2013, 『관동대지진과 조선인 학살』, 동북아역사재단.

이 글에서는 1923년 관동대지진에 대한 식민지 조선의 동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는 관동대지진에 대한 보도와 사회적 인식이 어떠했는가를, 둘째는 관동대지진 발생 직후 전개되었던 구제활동을 추적해보고자 한다. 셋째는 관동대지진이 식민지시기 어떻게 기억이 되고 전승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 글은 당시 발행되었던 신문인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등을 중심으로 활용했음을 밝혀두고자 한다. 특히 그동안 일제강점기 언론 통제로 인해 당시 국내의 신문이 관동대지진의 진상에 대해 제대로 알려지지 못한 것으로 인식되었다.²⁾ 그렇지만 이에 대한 새로운 시각의 연구도 필요하다고 본다.

II. 관동대지진에 대한 보도와 인식

1923년 9월 1일 도쿄에서 일어난 관동대지진이 식민지 조선에 알려진 것은 지진이 난 직후로 보인다. 사이토 총독에게는 당일 오후 6시경 일본에서 지진이 일어난 것은 알려졌지만 정확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관동대지진이 보다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은 늦은 밤이었고, 언론사인 『동아일보』에도 오후에 그 상황이 전해졌다.³⁾ 종로경찰서에서 작성한 「경내정황 보고의 건」에 의하면, 9월 2일 이상협 편집국장은 관동대지진에 따른 유학생의 안부를 염려하고 기사화하기로 했다.⁴⁾ 그리고 다음날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호외를 발행하는 등 관동대지진의 기사를 대서특필했다. 이로써 식민지 조선에서도 관동대지진에

2) 장세윤, 2013, 「관동대지진시 한인학살에 대한 《독립신문》의 보도와 최근 연구동향」, 『관동대지진과 조선인 학살』, 동북아역사재단, 225~227쪽.

3) 당시 『동아일보』 편집국장 이상협은 관동대지진의 상황을 당일 오후에 전달받았다고 회고한 바 있다.

4) 「京内情况報告ノ件」, 京鍾警高秘 제10066호, 京城鐘路警察署長, 1923. 9. 2. 종로경찰서는 다음날 9월 3일에도 관동대지진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

대해 알려지기 시작했다

‘일본 유사 이래 초유의 대지진’으로 알려진 관동대지진의 기사는 ‘오사카 또는 각지에서 신문사에 도착한 전보를 종합’하여 기사화되었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에 첫 보도된 주요 기사는 <표 1>과 같다.

이상에서 보듯이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두 신문은 3면 전체를 관동대지진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보도했다. 관동대지진의 첫 보도는 참상 그대로였다. 무엇보다도 ‘무질서’와 ‘계엄령 선포’ 사실을 실감 있게 보도했다.

이러한 보도 때문이었는지 『조선일보』에서 9월 3일 발행한 ‘호외 제6호’는 ‘當局의 忌諱’로 압수되었다.⁵⁾ 이와 같은 신문의 압수는 언론 통제가 심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동대지진은 “實로 空前한 慘劇”⁶⁾이라 할 정도로 대재앙이라고 평가했다. 뿐만 아니라 도쿄 일대의 화재 등 지진으로 인한 피해구역을 동(洞)단위별로 게재하기도 했다.⁷⁾ 그러나 9월 10일이 지나면서 도쿄 일대의 질서가 점차 회복되어가고 복구에 주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보도했다.⁸⁾

이후에도 두 신문은 관동대지진에 대한 보도는 현장의 사실을 보도하고자 했다. 이는 두 신문사가 특파원을 관동대지진 현장에 직접 파견했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동대지진의 보도는 조선총독부의 언론 통제로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다.⁹⁾

두 언론은 대지진으로 인한 일본의 피해를 주로 보도했지만 도쿄 일대에 있는 조선인의 ‘생사 여부’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관동대지진 발생 초기에는 주로 관동대지진의 피해상황에 대한 것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러나 관동대지진이 발생한 도쿄 일대는 적지 않은 유학생과 노동자 등 조선인들이 생활했

5) 『조선일보』, 1923. 9. 5.

6) 『동아일보』, 1923. 9. 4.

7) 「東京燒失區域 全市의 約 半數 燒失」, 『동아일보』, 1923. 9. 7.

8) 「東京 秩序 恢復」, 『동아일보』, 1923. 9. 10.

9) 관동대지진 당시 조선총독부의 언론 통제에 대해서는 이연, 2013, 『일제강점기 조선언론통제사』, 박영사, 308~328쪽 참조.

〈표 1〉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에 보도된 관동대지진 첫 보도 기사

『동아일보』	『조선일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東海道 各地 大地震, 震源地는 桑名 方面인가 • 別報에 의하면 信濃川 前海 • 東京市街의 全滅, 火焰 宮城에 延燒되어 危險中 • 水道 汚濁로 袖手傍觀 • 橫濱 全市 火災 衝天 • 山本伯 暗殺說, 事實與否는 未詳 • 社會主義者를 大警戒中 • 秩父連山 噴火 • 鐵橋全部 墜落 • 宮城은 尙燃燒中 • 山北隧道 崩壞 • 攝政殿下 行在所 不明 • 八岳 火山 噴火 • 東京市의 安全 殘存地 도쿄역 부근뿐 • 燒失된 日本建築, 제국대학 소실 • 熱海下田 伊東方面 慘害 • 東京 京城間의 通信系統 빙빙 돌아서 간신히 온다 • 甲府地方 火災, 사상자 다수할 듯 • 東京全市에 戒嚴令 • 淺草에서 일어난 火焰 猛烈한 南風에 불려 • 삼시간에 여섯 구를 살렸다. 죽은 사람 수만에 달하여서 시체는 길에 깔린 형편이다 • 2일 오전 3시경 東京 火災 消息, 지구 하나만 남고 모두 전소 • 橫須賀에도 火災 • 舞鶴 東京間의 無線電信도 不通 • 各, 線 鐵道 不通, 東京 新聞 全滅 • 淺間山鳴動 上田市가 결단 났다 • 大阪서 救助船 횡빈을 향함 • 橫濱灣頭에 沈沒船이 多數 • 大阪地方도 猛烈, 日本은 本來 地震國 • 念慮되는 朝鮮人의 消息.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日本 有史 以來 初有의 大地震, 東京 全市街는 火焰 중에 埋沒되어 있고 各處에 死亡者와 全燒 家屋이 不知其數 • 四十八處에 火焰이 衝天 • 全市街가 燼灰化 • 宮城은 軍隊가 包圍 戒嚴 • 宮城의 火因은 三越 • 破壞家屋이 一千二百 • 晶川 全滅 • 公園 蝟集 피난민들이 • 東京에 新聞社 全滅 • 攝政宮殿下 避難不明 • 東京 全市에 戒嚴令 • 山本伯 暗殺說 • 社會主義者를 警戒 • 橫濱市는 全滅乎 • 大阪도 強震 • 熱海는 海溢 • 救護船 出發 • 列車 墜落 • 無秩序 狀態로 變化, 조선 사람들과 기타 주의자들이 • 東京 大阪間 列車 埋沒 • 東京驛은 四五 建物뿐 • 大阪 三市場 全部 休業 • 震源地는 桑名方面 • 米價와 柱式에 影響

다. 때문에 첫 보도를 한 『동아일보』는 「염려되는 조선인의 소식」이라는 기사를 통해 유학생과 노동자의 ‘생사존몰’을 염려했다.¹⁰⁾ 이러한 인식은 당시 『동아일보』 편집국장 이상협(李相協)의 회고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九月一日 突然 東京에 큰 地震이 이어나서 關東 一帶-東京 橫濱 鎌倉는 말할 것 업고 그 附近全部가-實로 삼시간에 焦土로 化하였다는 飛報가 서울에 떠러지기는 그날 午後이였다. …… 그때 우리 心理를 支配한 것은 東京 天地가 불속에 들었스니 거기 잇은 白衣同胞의 生死는 엇지 되었슬고, 全朝鮮 各地로부터 드러간 數萬의 留學生들은 엇지 되고 父母妻子를 내버리고 勞働으로 드러간 고단한 勞働者의 運命은 엇지 되었는고 함이다.¹¹⁾

이상협은 관동대지진이 발생하자 식민 모국 일본보다는 ‘백의동포’, ‘유학생’, ‘노동자’의 운명을 염려했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관동대지진 첫 보도와 함께 기사로 다루었다. 『조선일보』도 같은 날 ‘우리 친족은 안부 여하’라는 기사에서 유학생과 노동자 등 동포의 안부를 염려했다. 9월 7일에는 원산 출신으로 도쿄대학에 재학 중인 이주성(李周盛)과 평남 강서 출신 메이지대학의 한승연(韓昇寅) 두 유학생의 무사 귀환한 모험담과 현지의 이야기를 현실감 있게 게재했다.¹²⁾ 이후 부산항을 통해 생환하는 조선인에 기사도 적지 않게 소개되었다.¹³⁾ 『동아일보』는 자체적으로 조사한 조선인의 ‘안부조사(安否調査)’를 9월 23일부터 게재했다.¹⁴⁾

10) 『동아일보』, 1923. 9. 3.

11) 이상협, 1934. 9. 「名記者 그 時節 回想(2), 東京大震災때 特派」, 『삼천리』 6-9, 79~80쪽.

12) 「萬死의 力으로 東京에서 古國에 歸還한 二學生의 實地冒險談」, 『조선일보』, 1923. 9. 7.

13) 「釜山埠頭는 歸國同胞로 混雜」, 『동아일보』, 1923. 9. 11.

14) 「震災地方 在留同胞의 第1回 安否調査 到着」, 『동아일보』 1923. 9. 22. 『동아일보』의 재류동포 안부조사는 조선인 생사에 무관심했던 조선총독부도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했다. 이후 조선총독부의 재류동포 ‘안부조사’를 두 신문에 제공하고, 두 신문사는 이를 보도했다.



〈그림 1〉 『동아일보』 9월 3일자 관동대지진 기사

관동대지진 초기 현장감 있던 보도는 점차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혼란하던 도쿄 일대가 안정되어 가고 있으며, 조선인도 안전하다는 보도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¹⁵⁾ 이러한 보도에 따라 조선인 학살에 대한 기사는 게재될 상황이 아니었다. 여기에는 총독부의 언론 통제가 크게 영향을 미쳤다. 이에 『조선일보』는 「금회 동경진재에 대한 당국의 언론취체」라는 사실을 통해 이를 비판하기도 했다.¹⁶⁾

한편 관동대지진 첫 보도 이후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사실을 통해 관동대지진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두 신문의 사실 제목은 <표 2>와 같다.

두 신문의 사실 논조는 천재지변에 대한 피해에서 동포구제, 그리고 민족성의 개조에까지 다양하게 변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비록 천재지변이지만 관동대지진을 통해 민족적 감정을 초월하여 조선민족의 새로운 변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 남은 不可抗의 天災나 當하여 民族的 損失을 當했건만은 우리는 그러한 天災도 地變도 없이 왜 이 慘變을 當했는냐고? …… 대관절 吾族의 政治的 經濟的 文化的 모든 生活이 무슨 天災로 이토록 慘酷한 全滅을 當한고? 그 慘酷함이 어찌 東京의 全滅, 橫濱의 全滅에 比하랴. 진실로 全朝鮮의 全滅이다!

嗚呼 人災다! 사람이 없는 災이며 옳지 못한 사람이 있는 災이다. 自作 運動을 할만한 사람은 없고 무너트릴 사람은 있는 災다. 民立大學運動 自由運動을 할만한 사람은 없고 무너트릴 사람은 있는 災다! ……¹⁷⁾

즉 『동아일보』는 일본은 ‘사후 미증유’의 천재(天災)로 도쿄와 요코하마가 전멸되었지만, 식민지 조선은 분열과 대립이라는 인재(人災)로 전멸했다고 자

15) 「동경 유학생은 대부분이 안전, 『동아일보』 1923. 9. 12; 「재동경 동포는 안전, 『조선일보』, 1923. 9. 15; 「조선인을 보호한다고 일본인의 반응이 격심하여, 『조선일보』, 1923. 9. 16; 「신전구 재유학생 약 6백명 전부 생명은 안전하다, 『동아일보』, 1923. 9. 19; 「조선인의 폭행은 점루, 『조선일보』, 1923. 9. 24.

16) 『조선일보』, 1923. 9. 9.

17) 『동아일보』, 1923. 9. 5.

〈표 2〉 관동대지진에 대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사설

날짜	『동아일보』	『조선일보』
9. 4	일본의 재난, 일대 참극	미확인
9. 5	오호 인재, 조선인아 거듭나자	
9. 6	조난 동포를 懷함, 동포여 구제하러 일어나자	조선은 人災 日本은 火災
9. 8	동경 災變과 인심, 반성할 기회	東京 橫濱의 全滅狀態와 今後の 경제계의 觀測
9. 9		今回 東京震災에 對한 當局의 言論 取締
9. 10	東京地方 罹災同胞救濟會 發起, 救急의 의연 모집	歸哉歸哉어다. 同胞同胞여 生乎아 死乎아?
9. 11	일본 재정의 前途, 복구사업은 如何	罹災한 在外同胞를 구제하라. 在內同胞의 同情을 促함
9. 12	삭제	미확인
9. 13	조선에 緊急 勅令의 시행, 解釋上 疑義	
9. 14	東京 복구책의 전도, 일본의 시련 기회	震災 後의 日本, 現內閣의 覺醒期
9. 15		流言蜚語의 근본적 관찰
9. 16	사회운동에 대한 관찰, 考慮處	震災 先後策에 對한 觀測
9. 20	日本 震災와 東洋의 政局, 中國의 동정은 무엇을 의미	
9. 21	일본 있던 조선인의 송환, 緘口치 못할 문제(일부 삭제)	
9. 22	일본 경제계와 인심의 安固, 復興사업의 前提	
9. 23		目下 朝鮮인의 생활상태를 考慮하라
9. 24		日本人들아. 自重하라
9. 25		銀行業者들에게
9. 26		일본의 進해 後 朝鮮 경제계
9. 27	東京 罹災朝鮮人의 處置에 對하여, 速히 해방을 望함	

날짜	『동아일보』	『조선일보』
9. 29	急激한 暗流, 大杉氏 慘殺에 대하여	民을 震怒케 함은 곧 皇天을 震怒케 함이나라
9. 30		震災 後日, 中露의 關係, 天然的 均等 形勢
10. 2		總督府 豫算計劃의 大變革에 대하여
10. 4		僑日同胞에게, 辛酸한 涙로써 그 死한 者를 弔하고 生한 者를 慰함
10. 6	齋藤 總督에게, 眞相의 발표를 望함	
10. 11	시대착오의 희비극, 大杉의 死와 甘柑의 涙(일부 삭제)	
10. 26		急激한 恐慌에 包圍되어 破滅코자하는 經濟, 現下 우리의 生活現像에서 鑑하여
10. 28	民族愛, 人類愛는 民族愛에 始한다	日本 震災 當時의 死亡한 同胞를 追悼함
11. 3	大難에 處하는 道理, 舍己의 努力과 團結	
11. 5		銀行業者들에게

탄했다. 3·1운동 이후 전개되었던 민립대학설립운동, 물산장려운동 등과 같은 사회운동이 통합하여 조선사회를 변화보다는 분열과 대립으로 자멸했다고 본 것이다. 일본이 천재를 겪으면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려는 것처럼 조선도 “虛僞와 慚惰와 詭譎과 猜忌와 怯愉의 모든 醜한 털을 벗어버리고 眞實과 勤勉과 成實과 相愛와 勇氣의 흰옷 속에 거듭나는 慘憺한 災變의 遺墟에 新生命을 建設하자!”라고 하여, 조선민족의 새로운 변화를 촉구했다.

한편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은 10월 19일에 이르러서야 『동아일보』에 처음으로 보도되었다. 조선인 학살은 9월 2일 계엄령이 내린 이후인 9월 4일을 전후해서 시작되었다. 이 사실이 식민지 조선에 알려진 것은 9월 6일 천도교당

에서 개최한 재경유학생대회였다.¹⁸⁾ 대회는 일본경찰의 철저한 통제로 지정자 외에는 참석할 수 없었다.¹⁹⁾ 이날 대회에서는 기부금을 모금하는 한편 정창욱, 김낙영, 강훈 등 3명을 대지진이 일어난 현장에 파견하기로 했다. 또한 연락사무소를 개벽사에 두고 한위건, 임정호, 김창진, 홍승로, 이옥 등을 상무위원으로 선임하여 유학생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로 했다.²⁰⁾ 그러나 이 대회에서 조선인 학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제시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²¹⁾

그렇지만 다음날 9월 7일 재류동포의 생사를 확인하기 위한 재류동포친족회가 조직된 것²²⁾으로 보아 조선인 학살에 대한 사실은 어느 정도 전해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친족회 역시 유학생 학부모 이외에는 회의장에 입장할 수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통제되었다.²³⁾ 친족회는 연락사무소를 역시 개벽사에 두기로 했으며, 생사 확인을 위한 특파원과 연락 업무를 담당할 상무위원을 선임했다.²⁴⁾

이처럼 조선인 학살에 대한 관심을 가지자 후쿠다[福田] 계엄군사령관은 일부 배일조선인의 폭동이 있었으나 진정되었고, 도쿄와 요코하마 일대의 질서는 회복되고 인심도 안정되었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이 발표에 의하면 “요코하마 부근에 일부 조선인은 강도와 강간과 방화를 계획한 일이 있었으며, 도쿄 시바구[芝區] 다마치[田町] 정류장에서도 삼영제과소에 방화하려는 자가 있었고, 또 가메이도[龜井戸]경찰서에서도 지난 5일에 조선인 6명과 일본사회주의자를 검속하려 할 때 그들은 폭행뿐만 아니라 다른 구속자까지 선동하여 불온한 행동을 한 일이 있었다”라고 한 바,²⁵⁾ 이미 조선인 학살이 있었다는 것을 간

18) 김인덕 외, 2008, 『1920년대 이후 일본·동남아시아지역 민족운동』,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38쪽.

19) 「유학생대회는 금일」, 『동아일보』, 1923. 9. 6.

20) 「위선 특파원을 일본유학생대회에서 특파원 7일 밤 출발」, 『동아일보』, 1923. 9. 7.
21) 만약 알려졌다 하더라도 언론 통제로 인하여 보도되지 못할 수 있었다.

22) 「재류동포친족회 금일 오전 10시 종로청년회관에서」, 『동아일보』, 1923. 9. 7.

23) 일본 경찰은 모인 사람의 주소와 성명을 일일이 확인했고, 노동자의 부모조차 입장할 수 없게 철저하게 회의를 봉쇄했다.

24) 「간섭하에 열린 재류동포친족회」, 『동아일보』, 1923. 9. 9.

25) 「재류동포에 관한 계엄사령관의 발표」, 『동아일보』, 1923. 9. 10.

접적으로 시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마루야마[丸山] 경무국장은 조선인 학살을 ‘일본사람의 조선 사람에게 대한 감정이 극도에 달한 바 서로 충돌이 되기 쉽다’, ‘조선 사람의 폭동’ 때문에 발생했다고 하는 입장을 표명했다.²⁶⁾ 그리고 관동계엄사령부는 “① 조선인에게 대하여 그의 성질 선악을 불구하고 무법의 대우를 하는 일은 삼가는 동시에 그들도 우리 동포임을 잊지 말라. ② 모든 조선인이 악모(惡謨)를 계획한다는 것은 오해인바, 이런 풍설에 의지하여 폭행을 더하고 스스로 죄인이 되지 말라”²⁷⁾고 경고문을 도쿄 시내에 배포한 바 있는데, 이는 이미 조선인 학살이 적지 않았음을 증명해준다. 이러한 상황에서 볼 때 조선인 학살은 이미 널리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인 학살에 대한 사실을 보도하지 못한 것은 언론 통제 때문이었다.

관동대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이 국내에 보도된 것은 대체로 10월 중순경이었다. 『동아일보』는 10월 19일, 22~24일자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했다.²⁸⁾ 그러나 기사 중에서도 ‘○○○학살사건’이라고 하여 조선인 학살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이에 비해 중국인 학살과 관련된 기사는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즉 중국인 학살은 9월 2일 오후 9시 일본인 300여 명이 중국인 하숙소로 몰려와 174명을 일시에 타살했다는 증언을 보도했다.²⁹⁾ 이처럼 중국인 학살은 보도되었지만 조선인 학살은 구체적으로 다루지 못했던 것이다. 조선인 학살은 자경단, 청년단뿐만 아니라 경찰까지도 가담했지만, 다만 조선인 학살에 가담했던 자경단원 검거 소식으로 이를 대체했다. 이로 볼 때 일제는 조선인 학살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도 통제를 했다.

26) 「조선인 도항제한과 구산경무국장의 발표」, 『조선일보』, 1923. 9. 9.

27) 「계엄사령의 경고」, 『조선일보』, 1923. 9. 10.

28) 「유언의 출처와 각지 학살 상황」, 『동아일보』, 1923. 10. 19; 「○○○학살사건 경관도 관계호」, 『동아일보』, 1923. 10. 22; 「살인 자경단원 113명 검거」, 『동아일보』, 1923. 10. 24; 「기옥현의 학살사건」, 『동아일보』, 1923. 10. 30.

29) 「170여 인을 일시 타살 상해로 돌아온 중국인의 한 말」, 『동아일보』, 1923. 10. 22.

Ⅲ. 구제회 조직과 의연활동

예나 지금이나 한해나 수해 등 큰 재해가 있으면 어김없이 구제활동이 자발적으로 전개되었다. 1923년 관동대지진이 일어났을 때도 일본에 거주하거나 동포들을 위한 구제활동이 전개되었다. 그런데 관동대지진이 일어나기에 앞서 1923년에는 평안도와 황해도 등 서선지역에서도 대규모의 수해가 일어나 먼저 구제활동이 전개되었기 때문에 관동대지진 구제활동은 서선지역 수해구제활동에 비해 관심과 성금액이 적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동대지진 구제활동은 전국적 참여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구제활동은 관동대지진 보도 초기부터 동포들의 ‘안부여하’에 대한 우려에서 이미 비롯되었지만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9월 6일부터였다. 이미 8월 초부터 서선수해에 대한 구제회가 각 지역에서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관동대지진 구제활동은 크게 관심을 받지 못했다. 『동아일보』는 9월 6일에 「遭難同胞를 懷함」이라는 사설에서 ‘동포야 구제하러 일어날지어다’라고 하여 구제활동을 촉구했다. 이어 경성부는 다음날 9월 7일에 「東京橫濱震災 義捐金 募集 趣旨書」를 광고하면서 본격적인 구제활동이 관심을 갖게 되었다. 경성부의 의연금 모집 취지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 慘愴하다. 帝都의 災害, 慘愴하다. 橫港의 殃禍여, 天柱는 折하고 地維는 缺하여 大厦高樓는 炭爐에 歸하고 邸第園囿는 焦土로 化하고 父母가 죽어도 葬할 수 없고 子息이 傷하여도 求할 수 없으며 居處에 家屋이 無하여 飲食에 食糧이 無하여 繁繁히 荒墟에 彷徨하는 者-幾十萬人인지 其數를 不知로다. 참으로 이것이 現世의 修羅場이 아니고 무엇이뇨. 吾人은 멀리 山海를 隔하여 아득히 一報를 得할 때마다 其 慘狀을 想見하고 懊惱痛苦로 高枕安息하며 好飲座食할 수 바이 없도다. 大抵 共存共榮은 人類의 大道요, 患難相求는 社會의 道義라. 어지 同胞된 者-晏然坐視할 바이리오. 하물며 我京城은 特히 天眷을 蒙하여 前에는 西鮮에의 水害가 없고 後에는 內地의 震災가 없이 家

家團樂의 幸福을 享得함에 있으리오. 假令 衣服을 벗어주고 飲食을 나누어준들 어찌 足히 累라 할 바이리오. 茲에 京城府에서는 府費로 約 二萬圓을 支出할 計劃을 立하고 또한 府民 各位의 同情에 訴하여 義捐을 募集하여 二市에 增送하여써 아울러 救援의 一助를 하고자 합니다. 方今 일이 매우 急한지라 만일 空然히 遷迫하면 誠意가 效를 失하고 마침내 轍府를 枯魚의 肆에 見함과 如한 後悔를 不免할지라. 此를 아직 廣布치 아님에 不拘하고 自進하여 巨額을 提供하는 者-不少 합니다. 願하건데 迅速敏活 大奮하여 可能한 바를 모두 出捐하여서 博愛의 至情을 發揮하시기를.³⁰⁾

취지서는 ‘공존공영은 인류의 대도’, ‘환난상구는 사회의 대도’라는 명분으로 의연금을 모금하고자 했다. 그러면서 경성부는 의연금 2만 원을 내기로 한 것을 알리면서 경성부민의 참여를 유도했다. 의연금은 1원 이상으로 9월 30일까지 모금했다.³¹⁾ 이에 앞서 9월 5일부터 인천부에서도 관민합동으로 의연금을 모금하기로 했다.³²⁾ 『조선일보』도 9월 8일자 사설 「罹災한 在外同胞를 구제하라」를 통해 의연금 모금에 적극 참여할 것을 권장했다. 이처럼 초기 경성부와 인천부가 의연금 모금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식민지 조선인보다는 일본인의 피해를 먼저 우려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이 두 언론과 경성부 및 인천부가 의연금 모금에 앞장서자 주요 도시와 일부 지방에서도 의연금 모금을 위한 구제회가 조직되었다. 우선 기독교 인들은 9월 6일 기독교청년회관에서 기도와 의연금 모금 등 구제활동을 협의했다.³³⁾ 이어 서울의 유지 50여 명이 중심이 되어 9월 8일 천도교중앙대교당

30) 『동아일보』, 1923. 9. 7.

31) 「京城府에서 義捐 募集」, 『조선일보』, 1923. 9. 6.

32) 「인천도 의연 모집」, 『조선일보』, 1923. 9. 6.

33) 「기독교인의 구제협의」, 『조선일보』, 1923. 9. 8. 구제 협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이번 일본 이재민에 대하여 우리 기독교인은 종족(種族)과 국계(國界)를 분별치 아니하고 지성 동정할 일.
- ② 각 교파에 교섭하여 교회마다 가급적으로 최근 한 주일을 구제일로 작하고 그날을 아지 인민을 위하여 기도도 하고 의염도 모집할 일.
- ③ 모집되는 금액은 일본적십자의 본부나 동경에 특별히 조직되는 구제회 본부에

에서 ‘동경지방이재조선인구제회(東京地方罹災朝鮮人救濟會(이하 조선인구제회))’를 조직했다. 조선인구제회 사무실은 경운동 천도교당에 두었고, 의연금은 9월 말일까지 모금하기로 하고 신문에 꾸준히 광고를 했다.³⁴⁾ 모금액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통해 공개되었다. 조선인구제회에 참여한 주요 인물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 俞星濬

위원: 高元勳, 李範昇, 朴勝彬, 張友植, 洪泰賢, 金炳喜, 趙南駿,

李潤載, 李仁, 宋鎮禹

사무위원: 辛泰嶽, 崔麟, 任政鎬

회계: 張斗玄³⁵⁾

조선인구제회에 참여한 인물들은 당시 조선 사회를 이끄는 지도층들이었다. 유성준은 안동교회를 설립한 인물로 조선물산장려회, 민립대학설립기성회 등에 참여하고 있었다. 고원훈은 보성전문학교장, 조선체육회 이사장 등으로 활동 중이었고, 박승빈과 이인은 변호사였다. 송진우는 동아일보 사장, 최림은 천도교 중진으로 활동하는 등 저명한 인사들이 적지 않게 참여했다.

조선인구제회는 9월 11일 위원회를 개최하고 구제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선인유학생학우회에서 활동 중인 한위건과 이옥을 위원으로 추가 선정하는 한편 이날부터 의연금 모금을 착수했다.³⁶⁾ 한위건과 이옥을 추가 선정한 것은 이들이 일본유학생 신분으로 일본의 상황을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동대지진의 현장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한위건은 관동

보낼 일.

34) 『동아일보』, 1923. 9. 11.

35) 「참화에 죽어가는 동포를 위하여 동경지방이재조선인구제회 성립」, 『동아일보』, 1923. 9. 10; 「구제회의 구체적 조직」, 『조선일보』, 1923. 9. 10. 발기인으로 참여한 인물 중에는 한위건, 한상룡, 백관수, 이대위, 한용운, 이종린, 이진호, 허현, 방정환, 유각경, 신흥우, 이상재 등 친일인물뿐만 아니라 민족주의계, 사회주의계, 천도교·기독교·불교 등 종교계 등 연합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36) 「이재구제회 인원을 더 늘이고 의연금 수집 착수」, 『동아일보』, 1923. 9. 12.

대지진이 일어나자 도쿄로 돌아가 이재민 구호활동을 전개했다.

조선인구제회는 이재동포를 위해 일차적으로 모금한 의연금 4,000원은 도쿄, 300원은 부산으로 각각 전달한 바 있다. 그런데 조선총독부는 종로경찰서를 통해 조선인만을 구제하기 위한 조선인구제회의 활동을 방해했다. 이는 조선인과 일본인을 구별하지 않고 구제활동을 하는 동경진재의연금모금조성회가 이미 있기 때문이었다. 이 의연금조성회는 박영효, 한상룡, 민대식 등이 9월 8일 종로기독교청년회에 조직했는데, 이상재 등 14명을 의원으로 선정하여 활동 중이었다. 조성회는 9월 말일까지 의연금을 모아 경성부에 일임하기로 했다.³⁷⁾ 조성회가 이재민 구제를 내세워서 조선인과 일본인을 구별하지 않았지만 구제회는 이재조선인 구제활동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민족의식을 은연중에 고취시킨다고 보아서 구제회의 의연금 모금 활동을 금지시키고 해산을 종용했다.³⁸⁾

이와 같이 일제의 방해가 있자 조선인구제회는 우선 유성준, 박승빈, 이범승 3명을 교섭위원으로 선정하여 종로경찰서 당국과 교섭을 하기로 했다.³⁹⁾ 그 결과 조선인구제회는 기부금 모금을 할 수 있는 기부원은 취하하고 동정금만 받기로 했다.⁴⁰⁾ 즉 “기부금 신청은 중지하기로 함, 발기인 간에 동정금을 진력 출연하여 금월 20일 내로 수집할 것, 수익금의 다소를 불구하고 최초의 목적을 실행하기로 함” 등 3개항을 결의했다.⁴¹⁾ 이는 일반인을 대상으로는 의연금을 모금할 수 없고, 발기인끼리만 의연금을 모금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자발적인 기부금은 모금할 수 있어 자발적 의연금은 환영하기로 했다.

37) 「동경진재에 대하여 의연금모금조성회 시내유지의 발기로 성립」, 『동아일보』, 1923. 9. 10.

38) 「조선인구제회는 해산? 조선인 구제를 따로 함이 불가타고」, 『조선일보』, 1923. 9. 14. 당시 『조선일보』는 동경진재의연금모금조성회를 후원했고, 『동아일보』는 동경지방이재조선인구제회를 각각 후원했다. 그래서 의연금조성회의 의연금은 『조선일보』에, 조선인구제회의 의연금 모금 상황은 『동아일보』에 게재되었다.

39) 「구제회의 금후 방침」, 『조선일보』, 1923. 9. 15.

40) 「이재조선인구제회」, 『조선일보』, 1923. 9.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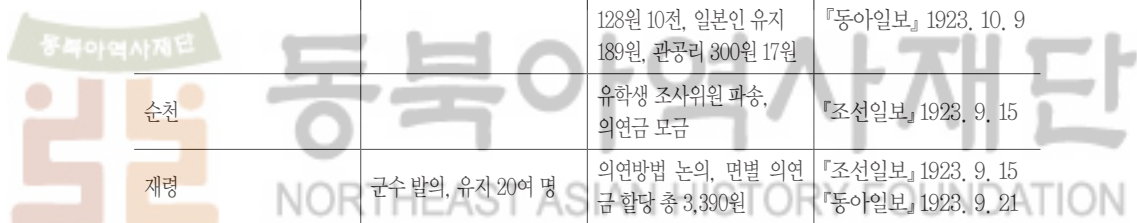
41) 「동경지방진재동포구제회는」, 『동아일보』, 1923. 8. 18.

〈표 3〉 각지에 조직된 관동대지진 구제회 및 구제활동 관련 현황

명칭/지역	주도계층	내용	비고
동경이재동포구제회(영동)	영동야소교장로회, 영동청년회, 동아일보영동분국	회원 1원 이상 의연, 9월 25일까지 모금	『동아일보』 1923. 9. 10
일본유학생회(평양)	유학생 및 학부모 등	유학생 조사 구제	『동아일보』 1923. 9. 11
재동경마산인고학생구제회(마산)	유학생	의연금 모금, 구호원 파견	『동아일보』 1923. 9. 11
진재구제협의회(마산)	부협의원, 학교조합의원, 학교평의원 등 10여 명	구제금 500원 등 모금	『동아일보』 1923. 9. 11
동래	유지 60여 명	조선인, 일본인 측에서 의연금 모금, 9월 20일까지	『조선일보』 1923. 9. 11
진위	진위군청	구제금 모집	『조선일보』 1923. 9. 11
동경재류인천친족회(인천)	동경재류동포 친척	동정금 모금, 『동아일보』 위탁	『동아일보』 1923. 9. 12
재동경유학생조사회(평양)	학부모형	특파원 파견 동정	『동아일보』 1923. 9. 12
무주	군수, 면장 등 지역 유지	의연금 모금	『조선일보』 1923. 9. 12
재동경이재군산유학생구제회(군산)	군산화생학우회, 지역 단체 등	의연금 모금, 조사반·상무반 설치	『조선일보』 1923. 9. 12
부안	군청, 면장 등	2,000원 모금	『동아일보』 1923. 9. 12
신의주	부협의원, 최창조 등 유지	모집임원 조직	『동아일보』 1923. 9. 12
일본진재동포구제회(진주)	회장 박재호, 부회장 정상진 등	의연금 모금, 찬성회원 50원 이상, 특별회원 20원 이상, 정회원 5원 이상, 통상회원 1원 이상	『동아일보』 1923. 9. 13
전주	도지사 발기, 관민 50여 명 유지	4만 원 이상 모금기로	『동아일보』 1923. 9. 13
	전주청년회, 동경유학생	489원 모금	
동경진재상향조사회(창원)	창원유학생향우회, 창원학우회	의연금 모금, 청원 출신 유학생 조사, 특파원 파견	『조선일보』 1923. 9. 13 『동아일보』 1923. 9. 23 『조선일보』 1923. 10. 1
구제협의회(예천)	군수 등	의연금 1,500원 이상 모금	『조선일보』 1923. 9. 13
재동경고창유학생이재구제회(고창)	고창청년회, 동아일보지국	9월 말까지 회비 1원 이상으로 의연금 모금	『조선일보』 1923. 9. 13

명칭/지역	주도계층	내용	비고
동경진재구제연주회(군산)	군산 각 단체	모금을 위한 연주회 개최, 군산 기생 참여	『조선일보』 1923. 9. 13
예산	조선 및 일본인 등 관민	2,500원 이상 모금키로	『조선일보』 1923. 9. 13
	예산청년회, 동아일보 지국, 조선일보 지국	224원 모금, 반액 진재, 반액 수해로 전달	『동아일보』 1923. 10. 9
재류동포이재구제연주회(목포)	기생	3일간 공연, 의연금 모금	『조선일보』 1923. 9. 13
재동경이재동포구급회(진해)	면장, 이장 등 유지	면민대회 개최, 의연금 모금, 특파원 손대권 김시영 선정	『조선일보』 1923. 9. 13 『동아일보』 1923. 9. 14
진해	재향군인회, 청년회, 각종 사원, 각구장 등 유지	의연금 2,000원 모금키로	『조선일보』 1923. 9. 13
	불교동지회, 진해청년회, 중추진성회	52원 34전 모금	『동아일보』 1923. 10. 13
광주	각 단체 대표, 유학생 학부모	동경파송위원 선정, 의연금 모금	『동아일보』 1923. 9. 14
관동지방진재구제회(평양)	위원장 박경석, 위원 김능원·손수경·한원한·황석환·박상조·백윤식·최재학·정규현·홍재기	의연금 모금	『동아일보』 1923. 9. 14
구제회(대구)	상업회의소 주최	1만 4,146원 94전 모금	『동아일보』 1923. 9. 14
구제회(원산)	지역 유지, 상무위원 안정협, 위원 조중구 등	구제금품 모집, 위문원 파견	『동아일보』 1923. 9. 14
	사립 해성보통학교 소년단	음악회 개최 의연금 모금	『동아일보』 1923. 9. 23
광주	관민 100여 명	9월 20일까지 의연금 4,000원 모금	『동아일보』 1923. 9. 14
동경지방진재선천구제회, 일본관동진재구제회(선천)	관민 유지 30여 명	구역별 모금위원 선정, 각 구 담당 위원이 호별 방문하여 의연금 모금, 982원 모금	『동아일보』 1923. 9. 14 『조선일보』 1923. 9. 14 『동아일보』 1923. 9. 21 『조선일보』 1923. 9. 22
동경이재동포구제회(삼량진)	『동아일보』 지국	9월 25일까지 회원 1원 이상 모금	『동아일보』 1923. 9. 14
		의연금 모집	『동아일보』 1923. 10. 8

명칭/지역	주도계층	내용	비고
일본진재구제회(안주)	관민 유지	동정금 모집위원 10인 선정, 20일까지 모금	『조선일보』1923. 9. 14
진남포	부청, 상업회의소, 일본적십자회, 애국부인회 등 발기	9월 20일까지 의연금 모집, 3,000여 원 모금	『조선일보』1923. 9. 14 『동아일보』1923. 9. 17
고창	관공리 및 지역 유지	의연금 모금 협의	『조선일보』1923. 9. 14
		3,000원 모금키로	『동아일보』1923. 9. 20
		4,024원 50전 모금	『조선일보』1923. 9. 26
안성	면장 발의	주민 737원 45전 모금 (주민 7만 3,745명으로 평균 1전)	『동아일보』1923. 9. 15
		10월 4일까지 조선인 유지 128원 10전, 일본인 유지 189원, 관공리 300원 17원	『동아일보』1923. 10. 9
순천		유학생 조사위원 파송, 의연금 모금	『조선일보』1923. 9. 15
재령	군수 발의, 유지 20여 명	의연방법 논의, 면별 의연금 할당 총 3,390원	『조선일보』1923. 9. 15 『동아일보』1923. 9. 21
평강	유도천명희 지회	의연 취지서 작성, 면당 2명씩 모금원 파송	『조선일보』1923. 9. 15
연천	지역 유지	호별 방문으로 의연금 모금	『조선일보』1923. 9. 15
부안	관공리, 지역 유지 100여 명	모금위원 수십 명 선정, 15일까지 의연금품 모집	『조선일보』1923. 9. 15
예천	각 단체	취지서 각 방면에 선전	『조선일보』1923. 9. 15
		관공리 거출 32원, 애국부인회 22원, 일본적십자 1,826원 55전(민간 측)	『조선일보』1923. 10. 3
광주 송정리	군수, 면장	면장회의에서 의연 강조, 22일까지 모금	『조선일보』1923. 9. 15
영미(박천)	애국부인회	13일부터 의연금 모금	『동아일보』1923. 9. 17
동경이재조선인구제회(강경)	『동아일보』 및 『조선일보』 지국, 강경청년회	동정금 모금	『조선일보』1923. 9. 16
고양(경기)	면민, 동척 대표	1인 1원 이상 의연, 28일까지 모금	『조선일보』1923. 9. 16



명칭/지역	주도계층	내용	비고
이원	일본유학생회	조사위원 파견키로, 동정금 모금위원 선정	『동아일보』 1923. 9. 18
군산	부청, 경찰서	일본인 측 1만 5,108원, 중국 측 362원, 조선인 측	『조선일보』 1923. 9. 17
	보성예기조합(기생)	동정금 모집을 위한 연주회 개최	『조선일보』 1923. 9. 22 『동아일보』 1923. 9. 23
		2만 원 예상에 1만 9,133원 과 5,177점 모집	『조선일보』 1923.10. 3
철원	조선인 및 일본인 유지	일본인 측 1만 원, 조선인 측 1,500원 이상 모금키로	『동아일보』 1923. 9. 18
남원	관공리 및 지역 유지	조선인 4,000원, 일본인 1,000원 모금키로, 9월 20일까지	『동아일보』 1923. 9. 18
제주	도청(島廳)과 경찰서	1,200원 모금, 진재에 1,000원, 서선수해에 200원 기부	『조선일보』 1923. 9. 18
이천(강원)	지역 유지, 조선일보지국 후원	서선수해와 함께 의연금 모집	『조선일보』 1923. 9. 18
안주		의연 물품 모집, 면장회의에서 동정금 모금 협의	『동아일보』 1923. 9. 19
연기	면사무소 주최, 진흥회 후원	서선수해와 함께 순회모금	『동아일보』 1923. 9. 19
	금남청년친목회	133원 구호금 송금	『동아일보』 1923. 10. 24
동서재해구원회(북청)	유지 일동	서선수해와 함께 동정금 모금	『조선일보』 1923. 9. 19
금산	군청	동정금 모금	『조선일보』 1923. 9. 19
갑산	군청	의연금 1,500원 20일까지 모금키로	『조선일보』 1923. 9. 19
정평	군청, 면협의회	매 호당 50전씩 의연금 배당, 부내면 풍곡리에서 부당하다고 반발	『동아일보』 1923. 9. 20
박천	군수, 면장, 주재소장 등 50여 명	의연금 3,500원 모금키로 하고 면별로 배당, 25일까지 모금키로	『동아일보』 1923. 9. 20

명칭/지역	주도계층	내용	비고
담양	지역 유지	구제금 모금을 위한 연극 개최, 동정금 모금	『동아일보』 1923. 9. 20
초계(합천)	초계기독교청년회	동정금 모금	『동아일보』 1923. 9. 20
송화	군수 등 유지 30여 명	의연금 모금	『조선일보』 1923. 9. 20
		9월 25일까지 3,646원 모금	『동아일보』 1923. 10. 3 『조선일보』 1923. 10. 1
벽계(고양)	동척유민, 면내 유지	의연금 600여 원 모금키로	『조선일보』 1923. 9. 20
남천(평산)	군청직원, 면장, 순사 등	배당된 600여 원 모금	『조선일보』 1923. 9. 20
동경재류동포 및 서선이재 민구제회(이원)	이원청년회연합회, 이원기독교청년회, 이원천도교청년회, 이원군상무회, 조선일보지국, 동아일보지국	10월 말일까지 의연금 모금	『동아일보』 1923. 9. 21
장연	은율군수 발기	동정금 모집	『동아일보』 1923. 9. 21
동진서해구제회(거창)	거창기독교청년회, 거창청년회, 조선일보 및 동아일보지국	동정금 모집, 집행위원 등 선정, 200원 모금	『동아일보』 1923. 9. 21 『조선일보』 1923. 9. 21 『조선일보』 1923. 9. 24
거창	군	총액 3,600원 모금	『조선일보』 1923. 10. 3
사리원		시내재산가 1,000원, 일본인 1,000원, 시외부호가와 회사 1,000원, 기타 일반 3,000원 총 6,000원 모금키로	『조선일보』 1923. 9. 21
아산	아산청년회, 조선일보지국	서선수해와 함께 의연금 모금	『조선일보』 1923. 9. 21
상주	상주예기조합(기생)	연주회 개최, 9월 26일 연주회 개최	『조선일보』 1923. 9. 22 『조선일보』 1923. 10. 1
	관민 합동	2,596원 모금	『조선일보』 1923. 9. 24
장성	장성면 금천리수양회	위문대 120개	『조선일보』 1923. 9. 23
	노동공제회	동정금 모금	『조선일보』 1923. 9. 24
	관공리 및 일반인	관공리 봉급의 5%, 일반주민 의연 등 2,000여 원 모금	『조선일보』 1923. 9. 25
	북이면 모현리 청년회	구제회 조직, 의연금 모금	『동아일보』 1923. 9. 30

명칭/지역	주도계층	내용	비고
제천	관민	의연금 1,000원	『조선일보』 1923. 9. 23
오산	오산공립보통학교 후원회	진재의연금 20원, 수해의 연금 5원	『조선일보』 1923. 9. 23
신창(북청)	청년 10여 명	의연금 모집 집행위원 선정 한태을 외, 구제금 모금	『조선일보』 1923. 9. 23
		면에 324원 배당, 구제회 조직, 집행위원 선정, 600 원 모집	『동아일보』 1923. 10. 3
여수		4,812원 모금	『동아일보』 1923. 9. 23
	여수청년회, 여수소년회	동정금 모금	『동아일보』 1923. 10. 4
구제회(은울)	야소교회, 은울상회, 동아 일보지국	회금 1원 이상 모금, 25일 까지 모금	『동아일보』 1923. 9. 24
은울		조선인 4,255원 98전, 일 본인 629원 20전, 관공리 198원 90전, 적십자가 626 원, 애국부인회 191원 24 전, 총 5,801원 32전	『동아일보』 1923. 10. 24
이재동포구제회(포항)	송리청년회(송리면)	의연금 모금 순회위원 선 정, 면별로 순회 모금	『조선일보』 1923. 9. 24
영변	관민합동	각 면당 1백 원 이상 모금 할당, 3,336원 모금 예상	『조선일보』 1923. 9. 25
울산	중남면 노동야학회연합회	17원 기부	『조선일보』 1923. 9. 27
금천	군수, 경찰서장	진재의연금 3,030원 15전, 수해의연금 500원 50전	『조선일보』 1923. 9. 27
속천	군내 유지, 애국부인회	의연금 모금	『동아일보』 1923. 9. 27
개천	군청	각면 의연금 배정	『동아일보』 1923. 9. 27
개성		6,827원 25전 모금	『조선일보』 1923. 9. 28
정주	면장, 유력자 등 50여 명	면별 배당, 2,000원 모금 키로	『동아일보』 1923. 9. 30
함안	군수, 면장	면장에게 위탁하여 9월 22 일까지 1,000 원 모금	『동아일보』 1923. 9. 30
용문(안악)		동정금 1,206원 모금	『동아일보』 1923. 10. 1
마산		9월 28일 모금 마감, 7,377 원 모금	『동아일보』 1923. 10. 3

명칭/지역	주도계층	내용	비고
경주	면협의회	4,733원 83전 모금	『동아일보』 1923. 10. 5
맹산	면장, 유생회	3,300원 모금	『동아일보』 1923. 10. 5
광양	일본인	300원 모금	『조선일보』 1923. 10. 5
모도(인천)	모도소년회	20원 30전 모금	『동아일보』 1923. 10. 9
목포		1차 1만 9,165원, 후속 360원 23전 추가 모금	『동아일보』 1923. 10. 9
창녕		각면에 배당, 1,399원 85전, 758인 참여	『동아일보』 1923. 10. 11
인천		1차 3만 5,000원 모금, 223원 70전 추가 모금	『조선일보』 1923. 10. 7
신막	지역 유지	10월 4일부터 소인국	『조선일보』 1923. 10. 9
진해			
괴산	군수, 면장	면별 배정, 4,605원 모금	『동아일보』 1923. 10. 14
영주	시천교종무원	동정금 10원 모금	『조선일보』 1923. 10. 14
아산		286원 모금	『조선일보』 1923. 10. 16
보성	면장, 유지	510원 모금	『조선일보』 1923. 10. 18
능주	능주청년회	모금 연주회 개최, 78원 96전 모금	『동아일보』 1923. 10. 15
태천		1,539원 30전 모금	『동아일보』 1923. 10. 16
평양		1만 6,538원 78전 모금	『동아일보』 1923. 10. 17
원산		767원 35전 모금	『동아일보』 1923. 10. 19
강경	금강관 요리점 예기(기생)	모금을 위한 순회공연	『동아일보』 1923. 10. 23
해주		1만 2,480여 원 모금	『동아일보』 1923. 10. 29

이에 『동아일보』는 조선인구제회에 답지되는 의연금을 신문에 게재하여 자발적 의연을 유도했다.

이를 계기로 지방에서도 다양한 구제단체가 조직되었는데, 그 상황은 <표 3>과 같다. <표 3>에 따르면, 지방의 구제의연금은 주로 관 주도로 모금되었다. 식민정책을 충실히 수행하는 부윤이나 군수 등 지방 관리들은 관동대지진

을 ‘일선용화의 장’으로 삼으려고 했다. 특히 면장회의에서 일본인과 조선인을 구별하지 말고 의연금을 모아 전달하자는 것을 강조했다. 그리고 의연금 모금을 ‘인류애’로 포장하고자 했다.⁴²⁾ 뿐만 아니라 지방의 의연금 모금은 대부분이 ‘관민일치’를 대의명분으로 내걸었다. 이에 따라 관 주도의 모금은 면 단위로 의연금을 배정했다. 예를 들어 박천군은 3,500원을 모금하기로 하고 박천면은 550원, 동면과 서면, 청룡면은 400원, 가동면과 용계면은 300원, 덕안면·북면·가산면은 250원, 남면·가남면은 200원씩 각각 할당했다.⁴³⁾ 또 남원의 경우처럼 조선인 측은 4,000원, 일본인 측은 1,000원으로 나누어 모금액을 할당하기도 했다.⁴⁴⁾ 북청군 신창면은 면에 배당된 모금액은 324원이었지만 청년들이 구제회를 조직하고 집행위원을 선정 하는 등 활동으로 600원의 의연금을 모으기도 했다.⁴⁵⁾

이처럼 관 주도로 하다 보니 적지 않은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했다. 여수에서는 학생들에게도 의연금을 부과했는데, 서선수해 의연금은 거두지 않고 관 동대지진 의연금만 모금한다고 부당함을 지적하기도 했다.⁴⁶⁾ 하동에서는 지진 의연금을 적게 낸다고 얼굴을 때리고 발로 차기도 했다.⁴⁷⁾ 고양군에서는 자신에게 부과된 동정금 30원이 많다고 진정했다가 면장에게 면박을 받고 5일간 구류에 처해지기도 했다.⁴⁸⁾

관 주도가 아닌 자발적인 의연금 모금도 적지 않았다. 영동군의 영동기독교장로회와 영동청년회는 회원은 1원 이상 의연하기로 했고,⁴⁹⁾ 고창청년회도 9월 말일까지 회원은 1원 이상 의연하기로 했다.⁵⁰⁾ 이들 청년회는 신문지상에

42) 「동경진재 구제금」, 『조선일보』, 1923. 9. 21.

43) 「재해구제협의회」, 『동아일보』, 1923. 9. 20.

44) 「진재의연금 모집」, 『동아일보』, 1923. 9. 18.

45) 「신창의 구제금 모집」, 『동아일보』, 1923. 10. 3. 신창의 의연금 모금은 서선수해 의연금과 함께 모집했다.

46) 「진재동정만은 偏僻된다고」, 『동아일보』, 1923. 9. 26.

47) 「진재의연을 적게 한다고」, 『조선일보』 1923. 9. 28.

48) 「간난을 진정하다가 구류」, 『조선일보』 1923. 10. 6.

49) 『동아일보』, 1923. 9. 10.

50) 『동아일보』, 1923. 9. 14.

광고까지 하면서 적극적인 모금 활동을 했다. 뿐만 아니라 기생들도 관동대지진 의연금 모금에 참여하는 사례도 없지 않았다. 군산의 보성예기조합은 9월 16일과 17일 조선일보지국의 후원으로 군산좌에서 동경진재구제연주회를 개최한 바 있고,⁵¹⁾ 상주예기조합은 9월 26일부터 5일간 상주 시내를 순회하면서 공연을 하면서 의연금을 모금했다.⁵²⁾ 강경에서도 금강관의 기생들이 연극단을 만들어 논산과 공주 일대를 순회공연하면서 의연금을 모금하기도 했다.⁵³⁾ 의연금 모금에는 이처럼 관공서나 사회단체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사례도 있었다. 함안군의 조봉규는 서울에서 개최하는 부업공진회에 참가하려고 했으나 이를 취소하고 경비 33원 중 20원을 관동대지진 의연금으로 기부했다.⁵⁴⁾

그리고 의연금은 일반적으로 9월 20일을 전후하여 9월 말일까지 모금했다. 9월 이후에도 계속해서 모금한 곳도 없지 않았는데, 이원지역의 사회단체는 10월 말일까지 모금했다.⁵⁵⁾ 조선야소교장로회 수재진재구제부는 1924년 3월까지 모금한 1,432원 61전 중 320원을 일본 내무성 부흥국에 전달한 바 있다.⁵⁶⁾

한편 10월 들어서는 관동대지진으로 사망한 조선인 희생자를 위한 추모행사도 이어졌다. 추모행사는 관동대지진에서 조선인 희생자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관동대지진 초기에는 조선인이 안전하다는 보도가 주류를 이루었는데, 이는 조선총독부의 언론 통제가 뒤따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9월 말경에 이르러서야 조선인 학살 등 희생자 소식이 전해지자 추모회가 잇따랐던 것이다. 안주는 서선수회에서 사망한 희생자와 함께 추모회를 개최한 바 있고,⁵⁷⁾ 불교단체 연합은 각황사에서 추모법회를 개최했는데 아리요시[有吉] 정무총감을

51) 「구제 연주 후보」, 『조선일보』, 1923. 9. 22.

52) 「상주에 구제연주회」, 『조선일보』, 1923. 10. 1.

53) 「구제연극단체공」, 『동아일보』, 1923. 10. 23.

54) 「관광 여비로 동정」, 『동아일보』, 1923. 9. 28.

55) 「동경진재동포급서선이재민구제회」, 『동아일보』, 1923. 10. 30. 참가한 사회단체는 이원청년회연합회, 이원기독청년연합회, 이원천도교청년회, 이원군상무회, 조선일보지국, 동아일보지국 등이었다.

56) 「수진재 동정금」, 『동아일보』, 1924. 4. 8.

57) 「진수재 사망자 추모회」, 『조선일보』, 1923. 10. 1.

비롯하여 관민 유지, 희생자 가족 등 1,000여 명이 참석할 정도로 성황을 이루었다.⁵⁸⁾ 이외에도 부안청년회,⁵⁹⁾ 대구부와 종교단체,⁶⁰⁾ 김천 광천사⁶¹⁾ 등의 주최로 관동대지진 희생자 추모행사가 개최되었다.

IV. 관동대지진의 기억과 전승

지난해는 관동대지진이 일어난 지 90주년이었다. 90주년을 맞아 동북아역사재단에서는 학술대회를 개최한바 있다. 이는 단순한 학술대회라고 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관동대지진에 대한 기억이고 전승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1923년 9월 1일에 일어난 관동대지진은 당시의 사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까지 기억되고 전승되고 있다. 본절에서는 일제강점기 관동대지진의 기억과 전승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관동대지진 1주년을 맞는 1924년 9월 1일에 도쿄는 가무와 음곡 정지를 결의하는 한편 전차도 1분간 정차하기로 했다.⁶²⁾ 이에 호응하여 도쿄의 예기조합은 이날 아예 휴업을 결정했다.⁶³⁾ 이러한 도쿄의 분위기에 도쿄의 옥순철은 “우리도 당일 원만하고 한껏 고향을 위무할 뿐 아니라 열패자의 비애를 통절히 느낄 뿐이다”⁶⁴⁾라고 하여, 관동대지진 당시 희생된 조선인을 위한 추모행사를 잊지 말고 추진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 바 있다.

관동대지진 1주년을 맞아 첫 추도회는 북청에서 있었다. 재일본청우간담회

58) 「재난사망자 추모법회」, 『동아일보』, 1923. 9. 29.

59) 「수진조산자 추도」, 『동아일보』, 1923. 10. 2.

60) 「진재사자 추도회」, 『동아일보』, 1923. 10. 2.

61) 「김천에서 진재 추도」, 『동아일보』, 1923. 10. 30.

62) 「진재 기념일. 歌舞 音曲 정지 결의」, 『조선일보』, 1924. 8. 3.

63) 「대지진의 기념일에 예기조합이 휴업한다」, 『조선일보』, 1924. 8. 4.

64) 옥순철, 「9월 1일 기념을 듣고」, 『동아일보』, 1924. 8. 13.

의 주최로 8월 2일 북청청년회관에서 진행된 추도회에 800여 명이 참가했다.⁶⁵⁾ 이 추도회는 관동대지진을 맞은 9월 1일보다 약 한 달간 앞서 진행되었다.

관동대지진 1주년을 맞는 추도회는 인천 노동총동맹회에서 준비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천 노동총동맹회에서는 작년 9월 중에 일본 동경 지방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수많은 생명의 참혹한 죽음이 있었음을 느끼어 금년 9월 1일을 가리어 그때 그들의 죽음을 추도하고자 그날 밤 8시부터 산수정 공회당에서 추도식을 비참하게 거행할 터이러는데, 당일은 응당 남달리 죽은 자의 동족으로 있어서 그만큼 더욱 비분강개가 가슴을 치는 추도문 낭독도 많을 터이라고.⁶⁶⁾ 또한 인천에서는 1주년을 기해 이날 오전 11시 50분에 각 사원과 종교단체가 조종을 올려 추도의 의미를 새겼다.⁶⁷⁾

즉 인천 노동총동맹회는 관동대지진 1주년인 9월 1일에 조선인 희생자에 대한 비분강개의 추도식을 하기로 했던 것이다. 조선불교중앙종무원과 불교대회에서도 9월 1일 관동대지진 1주년 추도회를 개최하기로 한 바 있다.⁶⁸⁾

『동아일보』도 9월 1일자 신문에 관동대지진 당시 학살된 동포를 잊지 말자는 전단식 기사를 게재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오늘은 9월 1일! 세월은 쉽다. 동경 천지를 진동하던 지진의 보도를 듣고 전광석화같이 호의를 발행하던 일이 엇그제 같은데, 어느덧 또다시 9월 1일을 당했다. 멀리 동편 하늘 바라보는 부모처자가 얼마나 이 비참한 보도에 울었는가. 피로 물들인 이 조화옹의 괴변에 재류동포가 몇 천 명이나 죄 없이 죽었는가. 우리는 이 핏빛 드린 9월 1일을 맞으며 고

65) 「청우추도회」, 『조선일보』, 1924. 8. 7.

66) 「인천의 9월 1일 기념」, 『동아일보』, 1924. 8. 25; 「동경 진재시 참사동포의 추도회」, 『조선일보』, 1924. 8. 23.

67) 「진재 기념일에 인천에서는 弔鐘」, 『조선일보』, 1924. 8. 28.

68) 「진재 참사자 일주년 추도회」, 『조선일보』, 1924. 8. 29; 「불교대회 주최. 진재 사망자 추도회」, 『조선일보』, 1924. 8. 30.



〈그림 2〉 『동아일보』 1924년 9월 1일자에 게재된 기사

요히 작년 이때를 생각하고 입투가 중형하고 가슴이 막히어 할 말을 모르겠다.⁶⁹⁾

『동아일보』는 관동대지진 1주년을 맞아 지난해 도쿄에서 무고하게 학살된 조선인 희생자를 잊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러한 내용의 선전문은 서울 시내에 부착되기도 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오는 9월 1일은 일본 동경에서 진재가 발생한 날로서 일본인도 많이 죽었지만 애매한 동포는 그간에 과연 얼마나 비참한 죽음을 이루었으랴. 이것은 조선동포로서 잠시를 잊지 못할 이날인즉 이날을 맞는 조선동포는 슬픈 눈물로 비참한 혼령이 된 그들을 추도하고 동시에 이날을 기념하자”는 내용의 전단지가 8월 28일 오전 훈련원 전봇대에 부착되었다.⁷⁰⁾

69) 『동아일보』, 1924, 9. 1.

70) 「九月一日을 紀念하자」, 『조선일보』, 1924, 8. 30.



〈그림 3〉 신흥청년회와 서울청년회가 주최한 관동대지진 추모식

또한 관동대지진에서 희생된 개인에 대한 추도식이 거행되기도 했다. 고흥 출신으로 도쿄 유학 중이던 송기일은 관동대지진 당시 희생되었는데, 이날을 기해 고흥청년회와 고흥학원의 주최로 추도식을 갖기도 했다.⁷¹⁾ 이외에도 부산진구락부,⁷²⁾ 신흥청년회와 서울청년회,⁷³⁾ 전주청년회,⁷⁴⁾ 벌교 기독교면려청년회⁷⁵⁾ 등에서 추모행사를 가진바 있다.

그렇다고 추도회가 모두 원만하게 진행되지는 않았다. 군산청년회는 9월 1일 추도회를 진행하던 도중 추도문의 내용 중 불온한 것이 있다고 압수당한 바 있다.⁷⁶⁾ 청진청년회도 1주년을 맞아 추도회를 개최한바 있는데, 추도문이 불온하다고 추도회를 해산시키는 한편 사회자 남윤구와 추도문을 낭독한 정석도를

71) 「宋君의 追悼式」, 『조선일보』, 1924. 8. 29.

72) 「구일 추도회」, 『시대일보』, 1924. 9. 6.

73) 「진재참사동포 기념추도, 금일 하오3시, 천도교당에서」, 『시대일보』, 1924. 9. 13; 『동아일보』, 1924. 9. 13; 「경성의 추도회」, 『시대일보』, 1923. 9. 15.

74) 「전주에 추도회」, 『조선일보』, 1924. 9. 14.

75) 「진재시 참사동포 보성에서 추도」, 『조선일보』, 1924. 9. 23.

76) 「추도회문도 압수」, 『조선일보』, 1924. 9. 6.

검색 취소하기도 했다.⁷⁷⁾ 이들은 9월 말경에야 방면되었다.⁷⁸⁾

관동대지진 1주년을 맞는 1924년에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추모행사가 적지 않았지만 2주년을 맞는 1925년에는 한 건의 추모행사도 없었다. 3주년을 맞는 1926년에는 “작일이 구월 일일이다. 사년전 일본 관동지방에서 세계적 대지진이 나던 날이다. 누억의 재산과 수만의 생명이 없어진 날이다. 그리고 우리 동포도 참화를 당했던 날이다”라고 하여 회고한 글⁷⁹⁾ 한 편이 게재되었다.

이후 잊혀졌던 관동대지진의 기억은 해방 후가 되어서야 전승되었다. 재일 본조선인연맹과 반일운동자구원회는 관동대지진 23주년을 맞는 1946년 9월 2일 기독교청년회관에서 해방 후 첫 추도회인 일본관동진재피해살상동포추도회를 거행했다. 이날 추도회는 배철의 사회로 허헌의 개회사, 장건상 등의 추도문 낭독이 있었다.⁸⁰⁾

이처럼 국내에서는 관동대지진의 기억이 제대로 전승되지 못했지만 일본에서는 꾸준히 기억되고 전승되었다. 해마다 도쿄에서 가진 관동대지진 희생동포 추도회는 기독교청년회관에서 거행되었다.⁸¹⁾ 그러나 1937년 중일전쟁 이후 이마저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던 것으로 추정된다.⁸²⁾

77) 「진재동포추도회의 사회자를 검색」, 『조선일보』, 1924. 9. 8; 「진재참사동포 추도회석상에서 2명을 검거」, 『시대일보』, 1924. 9. 8.

78) 「추도회에서 검거된 양씨는 방면될 듯」, 『조선일보』, 1924. 9. 30.

79) 「4년전 9월 1일」, 『동아일보』, 1926. 9. 2.

80) 「아-罪 없는 우리 同胞를 虐殺 怨恨 깊은 關東震災昨日基青館에서」, 『동아일보』, 1946. 9. 3; 「학살당한 동포 추도」, 『국민보』, 1946. 10. 30.

81) 「震災當時 橫死한 同胞慰靈式舉行」, 『동아일보』, 1932. 9. 5; 「關東震災同胞追悼會 東京基青에서」, 『동아일보』, 1934. 9. 5.

82) 1937년 중일전쟁 이후인 1939년에는 일본 관 주도로 추도회가 진행되었다.

V. 맺음말

이상으로 관동대지진이 일어났던 1923년 식민지 조선의 동향, 그리고 전승과 기억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맺음말은 이를 정리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관동대지진은 당시 ‘실(實)로 공전(空前)한 참극(慘劇)’이라고 할 정도로 참혹했다. 식민지 모국에서 일어난 지진임에도 불구하고 관동대지진은 식민지 조선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이는 식민지 모국인 일본에 식민지 조선인이 적지 않게 거주했기 때문이었다.

일제는 관동대지진이 발생하자 이를 역이용하여 도쿄를 비롯한 관동 일대에서 조선인을 학살했다. 이러한 조선인 학살사건은 3·1운동이 일어난 지 불과 4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민족적 감정을 최대한 건들지 않으려고 했다. 이를 위해 철저한 언론통제를 하는 한편 심지어 유언비어까지 단속했다.

이러한 가운데 관동대지진이 식민지 조선에 알려지자 언론은 가능하면 사실적 보도를 하고자 했으나, 조선인 학살에 대해서는 철저한 총독부 당국의 통제로 기사화되지 못했다. 이러한 가운데 식민지 조선에서는 식민지 모국의 조선인을 위한 구제활동을 전개했다.

초기의 구제활동은 일본인사회, 관 주도로 전개되었다. 이는 인류애라는 보편적 차원에서 전개했지만 내성용화라는 식민정책의 일환으로 활용하고자 했다. 이와 때를 같이 하여 언론에서도 구제활동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경성에서는 의연금조성회와 조선인구제회가 각각 조직되어 의연금을 모금하는 등 구제활동이 본격화되었다. 그러나 총독부는 조선인만을 위한 조선인구제회의 활동을 방해하는 한편 조선인과 일본인을 구별하지 않고 구제하는 의연금조성회에 대해서는 보이지 않는 선에서 이를 지원했다.

경성을 비롯하여 인천, 대구, 부산, 전주 등 일본인사회가 형성된 대도시에서 우선적으로 일본인, 관 중심의 구제회를 조직하는 한편 구제활동을 전개했다.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구제활동을 확산되어 각지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구제활동을 전개했다. 이러한 구제활동은 대체로 1923년 9월에 한정되었고, 10월에는 희생자를 위한 추모행사가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도 했다.

한편 관동대지진은 1923년 당시에는 식민지 조선에서 구제활동과 추모행사 등 많은 관심을 가졌지만, 1년 후인 1924년부터는 사실상 잊혀진 사건이었다. 이러한 점은 식민지 모국과 달리 민족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다는 인식 아래 총독부의 철저한 통제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관 중심의 구제활동은 인류애라는 보편적 사랑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제적으로는 일선영화를 바탕으로 둔 식민지배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고 할 수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참고문헌

『국민보』.

『동아일보』.

『매일신보』.

『삼천리』.

『시대일보』.

『조선일보』.

강덕상, 1998, 「1923년 관동대지진(關東大地震) 대학살 진당」, 『역사비평』 45, 역사문제연구소.

강덕상, 1999,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을 보는 새로운 시각-일본측의 '3대 테러사건' 사관의 오류」, 『역사비평』 47, 역사문제연구소.

강덕상·야마다 쇼지, 2013, 『관동대지진과 조선인 학살』, 동북아역사재단.

김인덕 외, 2008, 『1920년대 이후 일본·동남아시아지역 민족운동』, 한국독립운동사 편찬위원회.

노주은, 2007, 「관동대지진과 일본의 재일조선인 정책: 일본정부와 조선총독부의 '진재 처리' 과정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야마다 쇼지, 2008,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에 대한 일본국가와 민중의 책임』, 논형.

이연, 2013, 『일제강점기 조선언론통제사』, 박영사.

[국문 초록]

식민지 조선에서
관동대지진의 기억과 전승

성주현

관동대지진은 당시 ‘實로 空前한 慘劇’이라고 할 정도로 참혹했다. 식민지 모국에서 일어난 지진임에도 불구하고 관동대지진은 식민지 조선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일제는 관동대지진이 발생하자 이를 역이용하여 도교를 비롯한 관동 일대에서 조선인을 학살했다. 이러한 조선인 학살사건은 3·1운동이 일어난 지 불과 4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민족적 감정이 최대한 드러나지 않도록 했다.

관동대지진이 식민지 조선에 알려지자 언론은 가능하면 사실적 보도를 하고자 했다. 그러나 조선총독부는 이를 철저히 통제했다. 이는 일본에서 조선인 학살이 자행되었기 때문이었다. 이로 인해 식민지 조선에는 조선인 학살이 10월 중순까지는 전혀 보도되지 못했다. 이러한 가운데 식민지 조선에서는 일본의 조선인을 위한 구제활동을 전개했다. 초기의 구제활동은 일본인사회, 관주도로 전개되었다. 즉 구제활동을 ‘내선융화’라는 식민정책의 일환으로 활용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언론은 구제활동을 독려했다. 이에 경성에서는 의연금조성회와 조선인구제회가 각각 조직되어 의연금을 모금하는 등 구제활동이 본격화되었다.

경성을 비롯하여 인천, 대구, 부산, 전주 등 일본인사회가 형성된 대도시에서 우선적으로 일본인, 관 중심의 구제회를 조직하는 한편 구제활동을 전개했다.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구제활동을 확산되어 각지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구제활동을 전개했다. 이러한 구제활동은 대체로 1923년 9월에 한정되었고, 10월에는 희생자를 위한 추모행사가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도 했다.

관동대지진은 당시에는 국내에서 구제활동과 추모행사 등 많은 관심을 가졌지만, 1년 후인 1924년부터는 사실상 잊혀진 사건이 되었다. 이러한 점은 식민지 모국과 달리 민족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다는 인식 아래 일제의 통제에서 비롯되었다.

주제어

관동대지진, 구제활동, 조선인 학살, 기억과 전승, 의연금, 일선영화, 언론 통제



[ABSTRACT]

The Trends and the Transmission to Korea of the Great Kanto Earthquake in 1923

Sung Joohyun

The Great Kanto Earthquake was horrible to the point of being called at that time a “truly unprecedented tragedy.” Although the earthquake occurred in Japan, it also had important effects on Korea, a colony of Japan. This was because many Koreans resided in Japan, the mother country.

When the earthquake occurred, Japanese Imperialism conversely massacred Koreans in the Kanto area, including Tokyo. As this was just four years after the March First Movement, Japanese Imperialism avoided stimulating the Korean national feeling through this massacre. Japan thus controlled the press and even clamped down on canards and groundless rumors.

As news of the earthquake became known to Koreans, the domestic press tried to report factual coverage as far as possible, but the massacre was not reported because of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s tight control over the press. Meanwhile, relief activities for Koreans residing in Japan were initiated in Korea.

The early relief activities were developed and led by Japanese society and government offices. This was the general dimension of the love for humanity, but Japanese Imperialism desired to use this as part of Korea-Japan harmonization. At the same time, the press became concerned with the relief activities. In Gyeongseong, the Organization

for Collection of Subscriptions for Relief and the Organization for Relief for Koreans each was established and relief activities began in earnest. However, while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prevented the Organization for Relief for Koreans from being exclusively for Koreans, it supported the Organization for Collection of Subscriptions for Relief, which assisted both Koreans and Japanese, in an unobserved manner.

In major cities such as Gyeongseong, Incheon, Daegu, Busan, and Jeonju, which formed the Japanese society in Korea, the organization for relief was established around Japanese and the government office, which developed relief activities. These relief activities were limited to September of 1923, and in October a memorial ceremony based around religious organization was held in remembrance of the victims.

The Great Kanto Earthquake attracted concern with relief activities and memorial ceremonies at the time, but in 1924 it became a forgotten accident. This was because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exhaustively controlled the domestic press under the perspective that the earthquake could stimulate the Korean national consciousness. The relief activities centered in government offices brought general love for humanity as a justification, but, in practical terms, this was carried forward as a part of colonial policy based on Korea-Japan harmonization,

Keywords

Great Kanto Earthquake, relief activities, memorial ceremonies, Korea-Japan harmonization, massacre of Koreans, media control, contributions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중국의 '백두산의 중국화' 전략

윤휘탁 | 한경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동북아역사재단

I. 머리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통일은 대박이다!” 분명 남북통일은 우리 민족의 국제적 역량과 위상을 한 단계 비약시켜주고, 우리 민족 내부의 갈등과 모순을 해소시켜줄 수 있으므로 한 민족의 단결과 민족중흥을 실현시켜줄 수 있는 중차대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남북통일은, 요즘 우리 정책당국 및 사회, 국민 모두가 보편적으로 기대하고 있듯이, 영토의 배가, 시장의 확대, 값싸고 질 좋은 노력의 확보, 주변 강대국의 영향력과 압력의 완화, 국제적 운신의 폭 확대, 민족 대립으로 인한 이념갈등과 그로 인한 내부 분열의 완화 등의 효과를 가져다줄 것이다.

그런데 남북통일이 실현된다면, 상술한 문제들은 어쩌면 이차적이고 부수적인 문제일 수 있다. 왜냐하면 남북통일이 실현될 경우, 우리가 가장 먼저 맞닥뜨리게 될 가장 일차적이고 중대한 문제는, 우리 영토의 확보이고 그것을 지켜내기 위한 국방과 안보이다. 그리고 이 문제를 순조롭게 해결하려면 한반도

의 영토가 어디까지인지, 특히 중국과 접경을 이루고 있는 압록강, 백두산, 두만강으로 이어진 북·중 사이의 국경이 어떻게 설정·관리되고 있고, 백두산에 대해 북·중 양국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백두산을 어떻게 보호·개발·관리·이용하고 있는지를 사전에 파악해야 한다. 게다가 북한의 ‘급변사태’로 인해 한반도의 통일이 급작스럽게 도래할 경우, 통일 과정에서 백두산의 귀속권 문제나 국경문제 등을 둘러싸고 한·중 간에 마찰이 야기될 수도 있다.

그런데도 우리 정책당국에서는 백두산의 정보, 현황, 백두산을 둘러싼 중국의 전략적 움직임, 통일과정에서 야기될지도 모르는 한·중 간 백두산 귀속권이나 주도권을 둘러싼 분쟁의 가능성 등에 대비하려는 움직임이 거의 없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서도 입증되고 있다. 즉, 중국에는 백두산을 관할하는 길림성 직속의 지방정부인 장백산보호개발구관리위원회¹⁾를 비롯해 산하의 백두산 관련 기관들이 있어서, 백두산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수백명에 달한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는 백두산에 관한 중국의 인식·전략·개발·정책 등에 관한 정보 등을 수집하거나 이를 총체적으로 분석한 연구성과도 없고 백두산 문제를 다루는 전문적인 정부기관이나 전문 부서도 없는 실정이다. 그뿐만 아니라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백두산의 귀속권과 그것을 중심으로 하는 국경·영토문제가 대두될 터인데, 우리의 외교부나 통일부 혹은 관련 기관 어디에도 백두산 문제를 다루는 공무원이 한 명도 없다.

게다가 중국에는 백두산에 대한 자국의 귀속권을 주장하는 논문들이 수십 편에 달하고 관련 서적들이 속속 출간되고 있지만,²⁾ 우리 사회나 학계에서는 백두산에 대한 한국의 역사적 귀속권을 전문적으로 밝히거나 주장하는 연구성

1) 이 위원회는 백두산자연보호구에 대한 보호 능력을 강화하고 각 방면과의 관계를 순조롭게 처리하며 생태관광산업을 육성하고 백두산을 통일적으로 계획·관리·보호·개발하기 위한 전략적 목표를 실현시키려고 2006년 1월 길림성인민정부에 의해 설립되었다. 이 위원회는 길림성인민정부 직속의 지방정부로서 시·자치주 급에 해당하는 위상을 지니고 있다.

2) 중국학계 및 남북한 학계의 백두산 연구동향과 그 특징에 관해서는 윤휘탁, 2013, 5, 「중국·남북한의 백두산 인식과 귀속권 논리」, 『한국사학보』 제51호, 107~142쪽 참조.

과들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만일 북한의 급변사태 및 통일 과정에서 백두산의 귀속권 분쟁이 야기될 경우, 중국은 순식간에 수십 편의 논문들을 번역해 국제사회에 자신들의 입장을 신속하게 대변할 수 있는 근거자료들을 확보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는 국제사회에 “백두산=한민족의 성산” 논리를 홍보하고 설득시킬 마땅한 근거 자료들이 거의 없어서 그것을 적시에 제시하지 못할 것이다. 그 결과 “장백산(長白山)=중국의 산”이라는 중국 측의 백두산 귀속권 논리가 국제사회에 먹혀들어갈 가능성이 농후하다.

현재 중국에서는 백두산의 식피수직경관(植被垂直景觀) 및 화산지형경관이 국가자연유산지역으로 설정되어 ‘중국국가자연유산, 국가자연과 문화 이중유산(雙遺產) 예비목록’에 들어있다. 또한 백두산은 최고의 국가급 자연보호구, 최고의 국가 5A급 관광지, 유엔의 ‘사람과 생물권’ 자연보호지구 및 국제 A급 자연보호지구로 지정되어 있다. 백두산 및 천지, 폭포, 눈 조각, 임해(林海)는 기네스의 세계 최고기록에 등재되어 있고, 백두산은 ‘중화 10대 명산’, 중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5대 호수, 중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10대 삼림 등의 영예스런 칭호를 갖고 있다.³⁾ 이것은 그만큼 중국이 백두산의 가치를 직시하고 백두산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처럼 백두산 문제에 관한 한·중 간의 현격한 관심도나 가치의 활용도, 백두산 정책의 수립과 실천적 개발 역량 및 진척도, 전략적 접근 방식이나 태도, 그리고 필연적으로 닥칠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불거질 한·중 간의 백두산 귀속권이나 주도권을 둘러싼 갈등이나 분쟁 등을 고려해볼 때, 중국의 백두산 인식 및 백두산에 대한 역사적·민족적·문화적 귀속권 논리, 그것의 적극적인 홍보·선전활동, 백두산의 자연생태문화관광자원의 개발·활용 및 이를 바탕으로 한 주도권 확보 노력, 한반도 급변사태 시 백두산 지역의 전략적 가치를 고려한 중국의 군사적 접근 노력 등 ‘백두산을 둘러싼 중국의 전략적 조치들’을 파헤치는 문제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3) 「長白山概況」, 『吉林省長白山保護開發區政務網』(<http://www.changbaishan.gov.cn/web/cbsgk.aspx?moduleid=234&id=1026>).

만일 우리가 백두산 문제를 간과해서 적절하고도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하지 않는다면, 자칫 우리는 백두산에 대한 역사적 귀속권과 백두산의 개발·활용을 둘러싼 주도권 등을 상실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통일 한반도에서 백두산을 활용한 다양한 관광산업의 위축, 백두산을 매개로 그동안 만주지역에 미치고 있던 우리의 영향력 감소, “백두산=한민족의 성산, 발상지” 인식에 대한 충격과 심정적 타격, 북방으로 뺏어나가려는 우리 민족의 원동력과 중흥에 대한 기대감의 상실로 이어져 한민족의 역량이 한반도 틀 속에만 갇혀버릴 수가 있다.

백두산 문제가 이렇할진대, 압록강이나 두만강, 백두산이 북한과 관련되어 우리의 직접적인 통치영역과 실생활의 행동반경에서 벗어나 있다 보니, 우리 정책당국이나 사회, 국민들 대다수는 남북통일의 실현과정에서 가장 일차적으로 직면하게 될 영토의 확보와 그것을 위한 사전적인 정보수집과 대책 마련, 백두산에 대한 중국의 다양한 전략적 조치들, 통일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백두산 귀속권 분쟁에 대한 대응전략 수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북한과 중국 사이의 국경은 압록강-백두산-두만강으로 설정되어 있다. 압록강이나 두만강은 1962년 북·중 사이에 체결된 조중변계조약(朝中邊界條約)에 의해 소유·관리·이용 등이 명시되어 있어서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니다. 그렇지만 중국이 백두산을 매개로 한반도가 중국의 동북지구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적 조치들을 취하면서, 중국의 백두산 귀속권 인식이나 자연생태문화관광산업의 주도권 확보 노력은, 후술하겠지만, 우리에게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특히 2012년 9월 북한은 자신들에게 귀속된 백두산(전체의 약 1/4에 해당)의 개발권조차 중국에 넘겨버렸다. 그 결과 중국은 2012년 말부터 북한 쪽 백두산에 대한 관광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다.⁴⁾ 이를 계기로 중국은 자국의 의도대로 북한 영내에 귀속된 백두

4) 「中朝開發長白山旅游合作意向書日前簽署」, 『城市晚報』, 2012. 9. 26(<http://roll.sohu.com/20120926/n353936078.shtml>). 북한과 중국은 2012년 9월 25일 백두산

산을 개발하면서 백두산에 대한 주도권과 영향력을 더욱 강화시켜나가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 정책당국이나 사회, 국민들은 아직도 백두산의 위치, 백두산을 관통하는 북·중 국경의 실태, 북·중 간의 백두산 및 천지(天池)의 분할 상황 등의 기초적인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 게다가 우리 정책당국은 백두산에 대한 중국의 귀속권 인식, 중국의 백두산 보호·개발·관리·이용 실태, 백두산을 매개로 북·중 간의 관광 연계사업과 전략적 협력, 백두산에 대한 중국의 군사 전략을 포함한 다각적인 전략 조치, 그것들이 향후 한반도에 미칠 영향 등에 관해서는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그러한 중국의 다각적인 움직임에 대한 기초 정보 수집의 필요성이나 중요성, 그것에 대한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한 청사진을 마련하려는 인식 자체가 거의 없다.

그렇다면 상술한 것처럼 나날이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는 백두산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는 중국의 다각적인 전략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백두산의 중국화 전략'이란 개념적으로 정의해보면, 중국에서 백두산과 관련해 역사적·

관광 협력개발을 위한 첫 회의를 열고 쌍방 간 합작 의향서를 체결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합작 의향서에는 북한 국가관광총국의 조성길 부국장과 중국 장백산관리위원회 휘젠전 부주임이 서명했다. 북·중은 이번 합의를 토대로 백두산의 북한 쪽 관광지 건설을 공동 추진하고 합작 범위를 넓혀 가기로 했다. 이 내용은 신민재, 「중국, 백두산 북한지역 관광 개발 참여」, 『연합뉴스』, 2012. 9. 29(<http://www.yonhapnews.co.kr/local/0899000000.html?cid=MYH20120929001600038&from=search>)에도 보도되었다. 남북한은 2005년과 2007년 백두산 관광에 합의했지만 정권교체가 이뤄지고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진척을 보지 못했다. 북한 전문가들은 관광 분야에서 북·중 간 협력이 확대되는 것에 대해 북한의 경제난 해소를 지원하려는 중국과 단기간에 외화를 벌어들여려는 북한의 이해가 맞물린 현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백두산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천혜의 자연경관이 훼손될 것이라 우려도 나오고 있다.

북한 백두산 관광지 개발과 관광객 왕래는 남북한이 그동안 수차례 합의했다가 후속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불발된 사업이다. 현대아산과 한국관광공사는 2005년 11월 북한의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연내 백두산 관광 2회 이상 실시'에 합의했지만, 진척을 보지 못했다. 이후 남북은 2007년 '10·4 남북 정상선언'에서도 직항로를 이용한 백두산 관광에 합의했지만, 이듬해 남한에서 정권교체가 이뤄지고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흐지부지됐다[「중국 지원성, 북한에 '백두산 자가용 관광' 제안」, 『연합뉴스』, 2014. 4. 24(<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4/24/0200000000AKR20140424055200097.HTML?input=1179m>)].

문화적·경제적·민족적·정치적·군사적 형태의 다양한 전략적 요소들을 발굴하고 각각의 요소들을 결합시켜 국내적 시너지 효과를 거두는 동시에, 백두산에 대한 중국의 다양한 연고권이나 귀속권을 강화시켜 한반도(특히 북한)와 중국 동북지구를 둘러싼 동북아 지역에서 중국의 국익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중국에서는 백두산에 관한 다양한 정책들을 수립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방면에서 백두산에 대한 중국의 연고권과 귀속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논리체계를 확립·주창하면서 향후 야기될 수 있는 주변국과의 갈등이나 분쟁에 대비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중국에서는 자연생태관광산업 방면에서도 ‘백두산의 중국화’를 실현하기 위해 다각도의 전략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그렇다면 “백두산=한민족의 성산, 발상지”라는 데 공감하고 있는 남북한에서는 백두산 문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그 연구성과는 어떠한지를 살펴보자. 현재 백두산에 대한 남북한의 연구 동향과 특징⁵⁾을 살펴보면, 백두산을 중심으로 북방 영토·국경문제·백두산정계비 등을 다룬 저서, 『조선왕조실록』 속에 기재된 백두산 관련 자료나 중국의 백두산 귀속권을 주창하는 ‘장백산문화론’ 관련 자료들을 편집한 자료집, 백두산에 얽힌 설화·전설·민담, 백두산의 동물·식물·생태·지질, 우리 역사와 미래에서 백두산이 차지하는 의미, 백두산과 조선족의 상관성, 백두산 관련 답사기, 백두산의 자연경관 등을 다룬 책들이 있다. 또한 백두산을 연구한 논문들로는, 백두산정계비나 한·중간의 국경문제, 간도문제, 이와 밀접한 관련성을 지닌 백두산의 수계(水系), 백두산과 관련된 지명의 기원, 지리, 백두산의 신앙·전설·신화·제사 행위, 고려 및 조선왕조의 백두산 인식, 백두산에 대한 조선족의 인식, 백두산 주변 조선족 마을의 주거 형식 등을 다룬 것들이 있다. 그리고 백두산의 관광자원을 전망하거나 리조트 개발 실태 등을 다룬 수편의 논문이 있을 뿐이다.

결국 국내학계의 백두산 연구현황을 살펴보면, 중국의 백두산 인식을 대변

5) 여기에 관해서는 윤희탁, 2013. 5, 「중국·남북한의 백두산 인식과 귀속권 논리」, 『한국사학보』 제51호, 107~142쪽 참조.

해주는 '장백산문화론(長白山文化論)'을 다룬 2편의 논문⁶⁾ 이외에, "장백산=만주족의 발상지, 뿌리"라는 중국의 논리체계, 중국의 백두산 귀속화 논리나 정책 혹은 백두산의 자연생태문화유산의 관광 자원화 정책과 그 추진실태 등을 다룬 것은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다음에 북한학계의 백두산 연구 현황⁷⁾을 살펴보면, 백두산 문제를 김일성 일가 중심의 항일활동 성지로 인식하는 가운데 항일투쟁사적 관점에서 다룬 것, 백두산에 얽힌 전설·설화, 백두산의 자연경관·식생·기후, 동식물 실태 등을 다룬 책 등이 있을 뿐이다. 그 결과 북한학계에서는 최근 중국학계에서 주창하고 있는 '장백산문화론'의 출현배경이나 실태,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전혀 주목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중국정부가 백두산에 대한 주도권을 장악하고 '백두산의 중국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각종 개발·발전 전략이나 실태 등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더욱이 북한학계에서는 역사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군사적 차원에서 전방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중국의 '백두산의 중국화' 전략에 대한 대응논리 개발, 백두산에 대한 향후 대응 방향, 백두산에 대한 중국의 보호·개발·관리·이용 및 관광 정책 등도 전혀 연구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학계에서는 단순히 김일성 가문 중심의 백두산 항일투쟁사를 빛내고 김일성 가문을 우상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백두산에 얽힌 각종 전설·소설·문학·서사 등의 작품 제작에 몰두해서 이를 바탕으로 백두산을 상징화하고 선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을 뿐이다.

결국 우리 정책당국, 사회, 학계, 국민들의 무관심과 안일함 속에서 '백두산의 중국화'를 실현하기 위한 중국의 전략적 조치들은 다방면에서 추진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본다면, '백두산의 중국화' 전략의 실체를 파악하고 그것에 대한 총체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절실하다. 이 글의

6) 조법중, 2006, 「中國의 '長白山文化'論과 高句麗」, 『백산학보』 제76집; 윤휘탁, 2007, 「중국의 동북 文化疆域 인식 고찰—“長白山文化論”을 중심으로」, 『중국학보』 제55집.

7) 윤휘탁, 2013. 5, 앞의 글, 107~142쪽 참조.

집필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다.

II. 명칭의 주도권 확보: 장백산 명칭으로의 일원화

중국에서 ‘백두산의 중국화’를 실현하기 위해 내딛은 전략적 첫걸음은, 남북한과 조선족 사이에서 통용되고 있는 ‘백두산’ 명칭의 폐기와 ‘장백산’ 명칭으로의 일원화 정책과 인식의 통일이었다. 그런데 백두산을 둘러싼 명칭 문제를 논하기에 앞서, 상식적인 면에서 우리는 북한과 중국 사이의 국경과 영토 문제가 어떻게 해결·정리되었는지에 대해 파악할 필요가 있다. 북·중 양국은 1962년 조중변계조약을 체결하여 양국의 국경을 확정했다. 북한과 중국은 압록강과 두만강을 공동 소유로 하여 두 강을 면적인 차원의 국경으로 삼고 있다. 북·중 양국은 조중변계조약을 체결해 강 안의 도서(섬)와 사주(모래톱)의 귀속권도 확정했다. 이 조약에서는 조약 체결 이전에 이미 어느 일방의 공민(公民)이 정주하거나 경작할 경우, 그 섬이나 사주는 해당국의 영토로 귀속시켰다. 그 밖의 도서와 사주의 경우, 중국 쪽에 가까운 것은 중국에, 북한 쪽에 가까운 것은 북한에 귀속시켰다. 강의 정중앙에 위치한 도서나 사주는 쌍방 협의를 거쳐 귀속을 결정했다. 이 변계조약 체결 이후에 새로 생긴 도서와 사주는 쌍방의 협의를 거쳐 귀속을 결정하기로 했다.⁸⁾

이러한 협의 결과 현재 압록강과 두만강에 있는 451개의 섬과 사주 가운데 북한에는 264개(58.5%, 압록강 쪽 127개, 두만강 쪽 137개)가, 중국에는 187개(41.5%)가 귀속되었고, 큰 섬들은 대부분 북한에 귀속되었다.⁹⁾ 왜냐하면 조

8) 吉林省革命委員會外事辦公室編印, 「中華人民共和國政府代表團和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政府代表團關於中朝邊界問題的會談紀要」, 『中朝, 中蘇, 中蒙有關條約, 協定, 議定書滙編』(機密文件), 1974, 6(이하에서는 『條約滙編』이라 약칭), 12~13쪽.

9) 「中華人民共和國政府代表團和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政府代表團關於中朝邊界

선왕조 시대에 중국보다 상대적으로 빈궁했던 함경도·평안도 거주 조선인들이 중국인보다 먼저 두만강과 압록강의 큰 섬들로 건너가 경작·정주하고 있어서 큰 섬들의 귀속권이 자연히 북한에 귀속되었기 때문이다.

상술한 변계조약의 체결로 과거부터 논쟁이 되어온 백두산을 둘러싼 경계도 확정되었다. 즉, 북한 쪽이 1909년 체결된 간도협약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중국 측은 조중변계조약을 체결할 때 북한 쪽의 의견을 일부 수용해 간도협약 때 북한에 귀속되지 못했던 백두산정계비(현재 정계비는 없고 터만 남아 있음)와 천지의 일부를 북한 쪽에 귀속되도록 양보했다. 그 결과 백두산의 전체 면적(19.64km²) 중 약 1/4은 북한 땅에, 약 3/4은 중국 땅에 귀속되었다. 그리고 백두산 천지도 분할되어 천지의 약 54.5%는 북한 땅에, 45.5%는 중국 땅에 귀속되었다.¹⁰⁾

백두산 문제는 1992년 한·중 수교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한·중 양국 모두의 관심 밖에 놓인 주제였다. 우리 역시 수교 전까지는 백두산을 직접 찾아갈 수가 없어서 백두산이 우리의 가슴에 직접 와 닿는 문제로 부각되지는 않았다. 중국 역시 건국 초기만 해도 백두산이나 그 명칭에 관해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것은 1962년 체결된 조중변계조약의 중문판(中文版) 조약문에서도 '백두산', '백두산 천지', '백두산지구' 등 '백두산'을 지칭하는 명칭이 모두 '백두산'이라는 명칭으로 일원화되어 있고, 어느 조문에도 '장백산'이라는 명칭이 사용되지 않았다¹¹⁾는 점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더욱이 그것은 1960년대 초기까지만 해도 중국에서 백두산을 지칭할 때 '백두산'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이 없었거나, '장백산' 지명보다는 '백두산' 지명이 더 일반적인 호칭이었음을 시사해준다.¹²⁾

問題的會談紀要」, 「兩國의界河和江海分界標志的位置」 제9조, 『條約匯編』, 13, 33~34쪽.

10) 「中華人民共和國和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邊界條約」, 『條約匯編』, 5~7쪽.

11) 「白頭山地區的界線走向和界庄位置」, 『條約匯編』, 21~23쪽.

12) 참고로 '백두산' 명칭이 처음으로 사료에 나오는 시기는 고려 성종 10년(991)이고 「逐鴨綠江外女眞 於白頭山外居之」 『高麗史』 권3 二十三, 成宗 10년(991)條], 또한 '장백산' 명칭이 사료상에 최초로 나온 시기는 요 성종 통화 30년(1012)이다

그런데 1990년대 전반기 한·중 수교 이후 많은 한국인이 중국을 방문하고 동북지역이나 백두산을 관광하면서 동북지역 사회, 특히 조선족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다. 이것은 조선족 사회를 한국사회에 연계시키는 중요한 계기로 되었고, 한국인의 입을 통해 만주의 고대사나 백두산에 대한 한반도의 역사적 귀속권이나 문화적 연구권 등에 관한 이야기들이 조선족 사회에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이러한 현상은 동북지역의 지방당국을 비롯한 중국정부를 자극하게 되었다. 이것은 결국 중국에서 ‘동북공정(東北邊疆歷史與現狀系列研究工程)’¹³⁾의 추진으로 이어졌고, “백두산=한민족의 성산, 한국사의 발원지”라는 남북한의 논리에 대응할 중국의 논리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중국학계에서 제기되는 계기로 작용했다.

이와 같은 중국 내의 변화 움직임에 따라 1998년 6월 중국 민정부(民政部)에서는 국무원(國務院) 비준을 거쳐 길림성 정부에게 ‘백두산 천지’를 ‘장백산 천지’로 바꾸고 공개 출판된 지도에도 그렇게 바뀐 명칭을 기재하도록 지시했다. 이 지시에 따라 1999년 1월 중국지도출판사에서 나온 『중국지도집』 제2판부터 ‘백두산 천지’가 ‘장백산 천지’로 바뀌어 기재되었다.¹⁴⁾ 이것은 조중변계조약 체결 당시 중문 조약문에 ‘백두산’ 명칭을 일관되게 표기했던 중국정부가, 중국사회에서 혼용되던 ‘백두산’ 명칭을 퇴출시키고 ‘장백산’ 명칭으로 일원화해서 백두산에 대한 중국인의 인식을 통일시키고 백두산의 귀속권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중국정부에서는 한·중 관계에서 백두산이 지니고 있는 민감성과 잠복된 논쟁 요인 때문에 백두산의 귀속권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자신들의 인식을 잘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2000년대 이전까지 백두산의 귀속권에 대해 중국정부가 어떠한 속내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았

【長白山三十部女直】(『遼史』, 「百官志」, 聖宗 統和 30년(1012)條).

13) 상세한 내용은 윤휘탁, 2003, 「現代中國의 邊疆·民族認識과 東北工程」, 『역사비평』 겨울호; 윤휘탁, 2008, 3, 「포스트(Post) 동북공정: 중국 東北邊疆戰略의 새로운 패러다임」, 『역사학보』 제197집 참조.

14) 艾貴生 編著, 2004, 『走進長白山』,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84쪽.

다. 그런데 상술한 '장백산' 명칭으로의 일원화 시도는 백두산에 대한 중국정부의 속내가 반영된 결과이며 백두산에 대한 중국의 인식이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음을 말해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필자는 다행스럽게도 백두산에 대한 중국정부의 속내가 잘 드러난 문건을 발견했다. 그것은 2007년 2월에 작성된 「중국 장백산에 대한 남북한의 도모행위에 대한 길림성국가안전영도소조(吉林省國家安全領導小組)의 조사·연구보고서」¹⁵⁾다. 중국국가안전영도소조의 조장이 중국 국가주석인 시진핑[習近平]이고, 길림성의 안보문제를 총괄하는 길림성국가안전영도소조가 공산당길림성위원회, 길림성정부, 길림성 국가안전부, 길림성 내 군부대, 경찰 등의 최고 간부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이 영도소조의 백두산 관련 보고서의 내용은 사실상 백두산에 대한 중국정부의 속내를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보고서를 보면, 길림성국가안전영도소조에서는 먼저 백두산의 귀속문제에 대한 중국인들의 모호한 인식을 개탄하고 있다. 즉, “백두산은 중국 동북지구 고로(古老) 민족인 숙신족의 발상지로서 중국의 역대 정부가 백두산을 관할해왔기 때문에 백두산은 옛날부터 중국 영토였다”는 것이다. 그래서 백두산을 중국 명칭인 '장백산'으로 지칭하는 차원을 넘어서 그 앞에 '중국'이라는 수식어를 붙여 '중국 장백산'이라 지칭한다.¹⁶⁾ 즉 이 글에서도 후술하겠지만, '장백산문화론'¹⁷⁾에 입각해 백두산을 중국 영토로 단정하고 있는 셈이다.

이와 아울러 이 보고서에서는 “장백산지구 거주민들은 장백산의 절반은 조

15) 「吉林省國家安全領導小組朝韓對我國長白山圖謀的調研報告」, 2007. 2. 16 (http://bbs.zol.com.cn/index2007_0216/index_134_58589.html). '길림성국가안전영도소조'는 소조장(小組長)이 공산당길림성위원회 서기이고 소조원이 길림성 내 공산당위원회, 성 정부, 국가안전부, 군부대 등 길림성 핵심 지도자들로 구성된 최고의 안보 조직이다.

16) 물론 이러한 명칭은 중국 길림성 내 백두산 선전 광고판에서도 일관되게 '중국 장백산'으로 표기되어 있다.

17) 이 글에서는 백두산에 대한 지명을 우리 지명 그대로 표기하지만 중국에서 주창하는 특수 용어인 '장백산문화'를 지칭할 때는 중국 나름대로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 '장백산문화' 혹은 '장백산문화론'으로 표기한다.

선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태연하게 말할 정도로, 장백산이 중국에 귀속되어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모호하고 그러한 귀속의식이 없다고 개탄한다. 그러면서 그러한 모호한 인식의 사례들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제시하고 있다.

“장백산지구의 중국 거주민들은 한국에서 장백산을 ‘백두산’이라 부르는 것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있으며, 장백산 밑에서 판매하는 수첩, 모자, 생수, 그림엽서, 지도, 티셔츠, 조끼 등 각종 여행상품에 모두 ‘백두산’이라는 명칭을 붙이고 있다. 심지어 연결시 기차역 앞에도 ‘백두산XX회사’라는 대형 광고판을 내걸고 있다. 장백산 소개 출판물은 공공연히 ‘장백산=조선족의 발상지’라고 선전하고 있다. 여행업에 종사하는 일부 가이드는 조선의 김일성을 적극 선전하는 독서대(讀書臺)는 알면서도, 장백산이 금대(金代) 여진족이 제사를 지내던 곳이었고 만주족 조상의 발상지인 ‘선녀가 목욕한 곳’이었음을 모르고 있다.”¹⁸⁾

또한 길림성국가안전영도소조는 “백두산=조선족 발상지”라는 남북한의 백두산 인식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하고 있다. 즉, 이 소조는 “장백산은 국가(중국)의 영토 주권에 관한 근본 문제이며, 동북지구는 중국의 영토”라는 전제 하에, “남북한이 줄곧 중국에 대해 영토적 야심을 지니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남북한의 일부 학자와 정객들은 신문이나 저작물을 통해 당조(唐朝) 때 발해 정권을 세운 사람들이 ‘만주족의 선조’인데도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떠들면서 중국을 ‘침략자’로 매도하고 중국에 대해 영토를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게다가 “장백산에 오는 한국 관광객들은 장백산의 뿌리를 찾거나 제사 지내기 위한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매도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그들 나름대로의 상황 판단에 따라 길림성국가안전영도소조에서는 “길림성 내 과국(跨國) 민족인 조선족에 대해 국가관과 애국주의 교육을 강화시켜야 한다. 또한 상공업 부분에서는 ‘백두산XXX’라고 등록된 간판·광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백두산XXX’ 명칭으로 등록된 상표·광고·간판에

18) 「吉林省國家安全領導小組朝韓對我國長白山圖謀的調研報告」, 2007. 2. 16, 앞의 보고서.

대해서는 절대로 등록시키지 말고, 이미 등록된 것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만주족이 장백산을 발상지로 하여 동북지구에 찬란한 문화를 창조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적극 선전하고, 국경 밖(남북한) 일부 야심가의 허무맹랑한 소리를 잠재워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는 조선족에게 국가관과 애국주의를 주입시켜 '백두산' 지명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백두산' 명칭을 퇴출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장백산=만주족의 발상지"라는 논리를 선전함으로써 남북한의 "백두산=한민족의 성산"이라는 논리를 제압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중국정부의 속내를 보여주는 이 보고서에서는, 현재 백두산이 북·중국경에 걸쳐 있고, 한국의 고대 왕조인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발해가 백두산을 관할해왔으며, 고려와 조선왕조 때부터 백두산을 숭배해서 제사를 지내는 등, 백두산과 한국 사이의 역사 문화적 귀속권과 민족적 정서 등을 전혀 인정하려고 하지 않은 채, 백두산에 대한 중국의 역사적 귀속권만을 강조하면서 백두산에 대한 남북한의 인식이나 행태만을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

상술한 중국의 백두산 속내가 현실사회에 투영되어 나타난 사례가 백두산 지역에 산재한 학교들의 명칭에 '장백산' 지명을 붙여 일원화·체계화한 일이다. 즉, 2006년 7월부터 백두산 지역 내의 18개 초·중·고교의 학교 명칭 앞에 '장백산' 명칭을 붙여 자연 발생적인 기존의 학교 명칭을 개명해서 체계화하기 시작한 것이다.¹⁹⁾ 이것은 백두산 지역 거주민과 학생들에게 '장백산' 명칭으로 일원화해서 '백두산' 명칭 대신 '장백산' 명칭을 통일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동시에, 장백산이 역사적으로 중국에 귀속되어 왔다는 장백산 귀속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중국정부에서는 남북한에서 부르는 명칭인 '백두산' 대신 중국에서 부르는 '장백산'만을 사용하도록 지시하고 그것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한 지시와 정책의 이면에는, 남북한에서 부르는 '백두산' 명칭을 없애고

19) 長白山文化傳播中心, 「長白山教育系統各學校更換新校名」, 2007. 1. 30(http://cbs.jl.gov.cn/news/news_view.asp?nid=288; <http://tieba.baidu.com/p/1839748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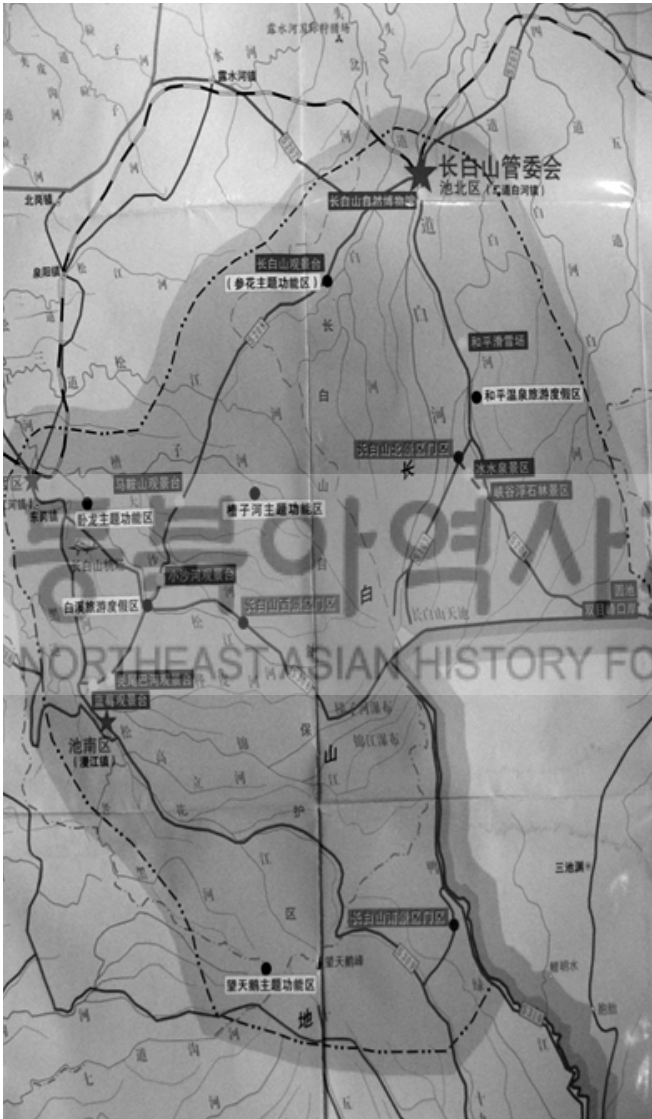
〈표 1〉 최근 개명된 백두산 소재 학교의 일람표

소재지	원래의 학교명	개명된 학교명
안도현	白河林業局高級中學	長白山第一高級中學
무송현	第七高級中學	長白山第二高級中學
〃	第四高級中學	長白山第三高級中學
안도현	二道鎮中學	長白山保護開發區池北區第一初級中學
〃	白河林業局初級中學	長白山保護開發區池北區第二初級中學
무송현	東崗中學	長白山保護開發區池西區第一初級中學
안도현	白河林業局第一小學	長白山保護開發區池北區第一小學
〃	白河林業局第二小學	長白山保護開發區池北區第二小學
〃	二道鎮中心小學	長白山保護開發區池北區第三小學
무송현	東崗中心小學	長白山保護開發區池西區第一小學
안도현 이도진	寶馬小學	長白山保護開發區池北區寶馬小學
〃	鐵北小學	長白山保護開發區池北區鐵北小學
〃	紅豐小學	長白山保護開發區池北區紅豐小學
〃	長白小學	長白山保護開發區池北區長白小學
〃	頭道小學	長白山保護開發區池北區頭道小學
〃	白河江小學	長白山保護開發區池北區白河江小學
무송현	第一參場小學	長白山保護開發區池西區參場小學
〃	漫江學校	長白山保護開發區池南區九年制學校

* 출처: 長白山文化傳播中心, 「長白山教育系統各學校更換新校名」, 2007. 1. 30

‘장백산’ 명칭으로 일원화시켜 백두산이 중국에 귀속되어 있고 엄연한 중국의 영토라는 점을 각인시켜 백두산에 대한 중국의 역사적 귀속권을 확립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그것은 한반도 통일 이후 야기될지 모르는 백두산 영유권 문제에 대비해, 장백산 명칭의 일원화 및 백두산에 대한 주도권을 차지하려는 선제적이고 의도적인 전략적 조치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길림성에서는 인식 차원의 백두산 명칭 정돈과 아울러 행정적 차원에서 백두산 구역을 정돈하고 행정적 관리 주체에 변화를 가하기 시작했다. 중



〈그림 1〉 장백산보호개발구(長白山保護開發區) 관할지역

래에는 백두산에 대한 기획·보호·개발·관리의 주체가 연변조선족자치주, 백산시(白山市), 안도현(安圖縣), 무송현(撫松縣), 장백현(長白縣) 등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어서 백두산을 통일적으로 기획·보호·개발·관리하는 것이 어려웠고 효율성도 떨어지는 등 많은 문제점들을 파생시켰기 때문이다. 따라서 길림성에서는 2005년 6월 백두산에 대한 통일적인 계획·보호·개발·관리를 위해 백두산 지역을 ‘장백산보호개발구’라는 특별행정구역을 설치하고 그것을 담당하는 지방정부로서 길림성 직속의 장백산보호개발구관리위원회(이하에서는 ‘장백산관리위원회’라 약칭)를 설립했다. 길림성 정부의 파출기구(派出機構)인 장백산관리위원회는 성 정부를 대표해 관할구역 내의 경제와 사회행정사무를 관장하고 자연자원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와 관리를 하도록 임무가 부여된 것이다.²⁰⁾ 이 지방정부는 공산당길림성위원회가 백두산 자연보호구역에 대한 보호 강도를 강화하고 길림성의 관광 우세 산업을 육성하고 각 방면의 관계를 순조롭게 관리하며, 백두산에 대한 통일적인 계획·보호·개발·관리를 위해 2005년 제7차 중공길림성위원회의 토론과 동의를 거쳐 설립된 것이다. 장백산관리위원회는 처음에 부청(副廳)급으로 설정되었다가 중요성이 더해지면서 정청(正廳)급으로 승급되었다.²¹⁾

장백산관리위원회의 관할 범위는 2005년 6월 길정발(吉政发)【2005】19호 문건에 의거하여, 길림장백산국가급자연보호구관리국(장백산보호국), 연변조선족자치주 안도현장백산관광경제개발구(이도백하여유구 포함), 장백산평화관광리조트, 백산시무송현장백산관광경제개발구(송강하여유구), 장백현장백산남파관광경제원구(장백산남파하여유구) 등 총 6,718km²에 이른다. 2007년 11월에는 길정함(吉政函)【2007】141호 문건에 의거하여 장백산관리위원회의 관할 지

20) 『百度百科』(http://baike.baidu.com/link?url=J4KGN5jqrF__XXg618nMJ5AukKVfp95Xk2PN1SvaT1cLx9LYd_3ZdHiFwin1AZt8Vs6a9ToA2sSff1jReoBjITK). 현재 이 위원회의 산하에는 지북구(池北區), 지남구(池南區), 지서구(池西區) 등의 3개 경제관리구와 5개의 행정촌이 배속되어 있다.

21) 「吉林省人民政府文件【2005】19號」; 「吉林省人民政府關於進一步明確長白山保護開發區管理委員會管理體制和職能權限的意見」(吉林省人民政府文件【2006】30號).

역이 계획지도구, 계획관리구, 자연보호구로 나뉘었다.²²⁾

백두산을 전담하는 지방정부의 신설은, 종래에 백두산에 대한 관할권이 백산시, 연변조선족자치주, 안도현, 무송현, 장백현 등지로 분산되어 있던 것을 통합하고 백두산 지역을 특별행정구역인 '장백산보호개발구'로 통합·재편함으로써, 백두산에 대한 통일적인 계획·보호·개발·관리·이용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직체계가 갖추어졌음을 의미한다. 또한 종래에는 백두산의 관할과 관련하여 연변조선족자치주의 권한이 상당히 컸지만, 길림성 직속의 지방정부 설립을 계기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는 한족이 주도하는 공산당길림성위원회와 길림성 정부가 백두산에 대한 절대적 권한을 장악한 반면에, 백두산에 대한 연변조선족자치주 정부의 권한이나 조선족의 역사적·심정적 연계성은 급격하게 약화되었음을 의미한다.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III. 역사적 귀속권 논리의 강화: 장백산문화론

한편 한·중 수교 이후 중국에서는 “백두산=한민족의 성산, 발상지” 논리에 대한 반발과 아울러, “백두산=중국의 산”이라는 역사적 귀속권 논리를 강화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분위기가 점점 고조되면서, ‘장백산문화’라는 개념이 출현하기 시작했다. 중국에서 ‘장백산문화’라는 개념은 1994년 중국 길림성 백산시에서 개최된 장백산문화연구토론회를 계기로 등장했다. 당시 백산시에서는 관내에 있는 백두산의 문화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지역 문화 차원에서 ‘장백산문화’ 개념이 제기되었다. 그런데 2000년대 이후 백두산에 대한 중국의 역사적 귀속권을 강하게 주창하는 논문들이 속속 발표되기 시작했고, 이와 관련된 학

22) 「長白山管委會」, 『長白山保護開發管理委員會政務網』(<http://cbs.jl.gov.cn/weball/main.aspx#>).

회나 연구활동, 선전활동 등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결국 '장백산문화론'²³⁾으로 집약되어 중국의 백두산 귀속권 논리체계로 확립되어 가고 있다. '장백산문화론'은 "중국의 역대 왕조가 백두산을 관할해왔으므로 백두산은 중화민족의 문화권에 속한다"는 논리로 결국 "장백산=중국의 산"이라는 주장이다.

현재 중국에서는 '장백산문화'를 "동북문화의 대표이자 동북인민의 정신적인 상징"²⁴⁾ 혹은 "중화문화의 중요한 발원지",²⁵⁾ "길림문화를 대표하는 문화이자 중화민족다원일체문화(中華民族多元一體文化)의 중요한 구성부분"²⁶⁾으로 인식하고 있다. 중국에서 '장백산문화'를 어떻게 인식하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려고 하는지는, '장백산문화론'을 선전·확산시키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길림성정치협상회의의 주석인 빠인차오루[巴音朝魯]의 연설에서 잘 드러난다. 즉, 그에 의하면, 장백산문화는 "길림문화의 상징이자 기호이며 길림성의 특색 있는 문화를 이끄는 길림성의 문화 브랜드", "인문과 자연을 심도 있게 결합시켜 다원일체(多元一體)를 완벽하게 결합시킨 지역문화"라는 것이다. 또한 장백산문화의 속성과 특질은 "애국성, 포용성, 개방성, 진취성을 지닌 역사적 추이 속에서 잘 드러나며", 장백산문화의 정신은 "사람들로 하여금 지혜롭고 폭넓은 사고를 갖게 해줄 뿐만 아니라 호탕하고 선량하게 만들어 온갖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분투하면서 가정과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는 빛으로 발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장백산문화의 정신과 특질은 "길림인민의 귀중한 정신적 재산이며 길림문화 발전의 원천이자 길림인민의 영광

23) 이 논리의 구체적인 내용은 윤휘탁, 2007, 6, 「중국의 동북 文化疆域 인식 고찰」, 『중국학보』 제55집, 285~313쪽 참조.

24) 「吉林舉行長白山文化研討會」, 2006, 6, 14(<http://www.artjil.99927.com/index-3.asp?xxpxddd=159076&xxpx ccc=354311>).

25) 『東北史地』評論員, 2004, 「深化長白山文化研究」, 『東北史地』第11期, 1쪽.

26) 省長 王儒林, 「着力培育長白山文化品牌-在長白山文化發展論壇上的致辭」, 2012, 6, 30, 『吉林省人民政府網』(http://www.jl.gov.cn/tzjl/tzdt/201206/t20120630_1236159.html).

과 자부심”이라는 것이다.²⁷⁾ 하여튼 장백산문화를 논리적으로 대변하는 ‘장백산문화론’은 중국의 ‘동북문화강역론(東北文化疆域論)’이자 ‘중화민족다원일체론(中華民族多元一體論)’²⁸⁾의 동북판(東北版)인 동시에 길림문화를 선도하는 문화적 상징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중국에서 ‘장백산문화론’이 대두하게 된 주요한 배경에는 “백두산 = 조선족(한민족)의 성산”이라는 남북한의 논리에 대한 동북지역 학계, 정치인, 안보 관계자들의 반발이 크게 작용했다. 이것은 “중국학계가 동북지구를 소수민족의 활동 공간으로 간주하던 전통적 인식에 따라 동북지역에서 활동했던 한족과 한 문화의 영역을 소홀히 취급한 채 장백산 문화를 소수민족의 문화로만 잘못 간주했다는 중국사회 자체의 성찰적 시각에서 비롯되었다”²⁹⁾는 중국학자의 글에서도 잘 드러난다. 다시 말해 ‘장백산문화론’을 주창하는 밑바탕에는 백두산을 한반도 혹은 조선민족의 역사적 권역으로 잘못 인식해왔던 기존의 방관적인 자세나 관행을 극복하고 백두산이 중국의 역사문화권에 속한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백두산 = 한민족의 성지·성산, 한국사의 발원지”라는 남북한의 논

27) 「加大保護發展弘揚力度 推動吉林文化發展繁榮—省政協舉辦長白山文化發展論壇」, 2012. 6. 28. 『吉林省人民政府網』, (http://www.jl.gov.cn/zwgk/zwdt/zwdt_2012/201206/t20120628_1234395.html).

28) 이것은 웨이샤오통(費孝通)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 “현대 중국의 구성원인 중화민족은 다민족의 상호 이주와 융합·발전 과정에서 중화민족다원일체격국(中華民族多元一體格局)이 형성되면서 도출된 결과”라는 이론이다(費孝通 主編, 2003, 『中華民族多元一體格局』, 北京: 中央民族大學出版社]. 상세한 내용은 윤휘탁, 2006, 『新중화주의: ‘중화민족 大家庭 만들기’와 한반도』, 푸른역사, 132~135쪽 참조.

29) “고구려는 기원전 37년에 건국되었다. 장백산지역에는 기원 전 천 년 전후의 문물들이 발견되고 있다. 이 문물은 시기적으로 보아 전국시대 연(燕)문화의 것으로 봐야 한다. 그런데도 그것을 고구려 선주민의 문화로 간주하고 있다. 이것은 근 백년 이래 중국 사학계가 동북 한족(漢族)의 한(漢) 문화 및 그 역사적 지위에 대한 연구를 소홀히 한 채, 관성적으로 전통적 인식을 쫓아 동북지구는 소수민족의 활동 공간일 뿐이라고 간주하고 한(漢)민족의 개발과 공헌을 고려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이다. 심지어 각 민족의 역사적 활동구역을 나눌 때도 한족의 존재 공간을 따로 떼어내지 않았다. 실령 한족 한(漢) 문화의 유적이 발견되더라도 부끄러운 듯이 중원(中原)의 ‘영향’을 받았다고만 할 뿐이다.”[田子馥, 2005, 「中國長白山文化本原論」, 『東北史地』 第1期, 2~3쪽].

리에 대해 중국의 대응 논리체계를 수립해야 한다는 시각이 깔려 있다. 또한 거기에는 ‘백두산의 중국화’를 통해 만주에 대한 한반도의 영향력을 차단하고 남북통일 이후 백두산을 둘러싼 영유권 및 국경·영토 분쟁에 대비하면서 백두산에 대한 역사적·문화적 귀속권 강화와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중국의 전략적 의도가 작용하고 있기도 하다.³⁰⁾

그렇다면 ‘장백산문화론’은 어떤 내용이고 어떠한 논리체계를 가지고 있을까? 우선 장백산문화의 연원과 관련하여, 중국학계에서는 ‘홍산문화(紅山文化)’³¹⁾로 보는 시각과 증원왕조가 동북에 행정기구를 설치한 시점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전자의 경우, 홍산문화의 대표적 유적지(서요하 상류와 우하량 일대)에서 유적들(제단·여신요·적성총·옥 조각품)이 발견된 것을 계기로, 요서의 홍산문화를 황제~하·상족(商族)시기의 유적으로 추측하는 동시에, 한족 선조들이 이룬 가장 북쪽의 문명 발원지로 파악한다.³²⁾ 그리고 홍산문화가 하·상 문명의 형성과 발전에 기여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는 홍산문화를 고상족(古商族, 殷人)이 세운 고국(古國)의 문화유적으로 보고, 고국 건국의 주체를 고상족으로 추측하면서 동북의 최초 개발자를 은인(殷人)으로 규정한다.³³⁾

30) 윤휘탁, 2007. 6. 앞의 논문, 285~313쪽.

31) 1906년 일본인 도리이 타키조[鳥居龍藏]에 이어 1935년 일본 동아고고학회(東亞考古學會)에 의해 내몽고자치구 적봉(內蒙古自治區 赤峰)의 홍산(紅山)에서 발견되어 1955년부터 정식으로 ‘홍산문화’로 불렸으며, 5000여 년 전의 신석기 문화를 가리킨다. ‘홍산문화’는 주로 요녕성 서부와 내몽고자치구 동부에 분포되어 있다[徐子峰, 2004. 11, 「紅山文化研究略論」, 『內蒙古師範大學學報』 第33卷 第6期, 184~185쪽; 薛志强, 2006. 12, 「紅山諸文化在中國文化形成發展中的特殊地位及影響」, 『동북아평화 정착을 위한 한·중 국제학술회의 논문집』, 국학운동시민연합, 68쪽.; 濱田耕作·水野清一, 1938, 「赤峰紅山」, 『東方考古學叢刊』(甲種第六冊), 東亞考古學會; 陳逸民 등, 2006, 「紅山文化玉器的神話學思考」, 『東北死地』 第6期, 29쪽].

32) 董萬崙, 2001, 「華夷, 華夏, 漢人在東方」, 『北方文物』 第4期, 58쪽.

33) 蘇秉琦, 1994, 『華人·龍的傳人·中國人—考古尋根記』, 瀋陽: 遼寧大學出版社; 傅斯年, 2002, 『民族與古代中國史』, 河北教育出版社, 14쪽; 郭大順, 1995, 「遼寧史前考古與遼河文明探源」, 『遼海文物學刊』 第1期, 14~20쪽.

후자의 경우, 주 무왕이 소공을 복연에, 기자를 조선지방에 봉하기 이전부터 요하유역에서 장백산지역까지는 상족이 거주하고 있었고, 기자의 동천과 연의 요동 5군(상곡, 어양, 우북평, 요서, 요동군) 설치가 이루어졌는데, 이를 장백산문화의 연원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³⁴⁾ 따라서 황제~하·상·주까지 중원왕조가 동북에 설치해서 동북을 관할했으므로 장백산문화를 최초로 개척한 주체는 연 왕조 혹은 기자조선이라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산해경·대항북경(大荒北經)』의 신화(“大荒之中, 有山, 名曰不咸, 有肅慎之國”)에 근거하여 숙신인이 처음으로 백두산 자락에 거주했고, 그 후 그 자손인 읍루·물길·말갈·여진·만주족이 변창하여 사방 수천 리의 백두산 지대를 개발·건설했으므로 ‘숙신인이 백두산 지구의 주인’이라는 주장도 있다.³⁵⁾

백두산의 보호·개발·관리·이용을 총괄하는 장백산관리위원회에서 주장하는 ‘백두산에 대한 중국의 역사적 귀속권 논리’에 의하면, 백두산의 역사는 서한(西漢) 시기부터 시작된다고 본다. 즉 백두산은 서한 때 ‘구려현(句麗縣)’의 관할지였고 동한(東漢) 때 ‘고구려국’ 점거지였으며, 당 때 말갈속말부족의 거주지이자 발해국의 소재지였다는 것이다. 또한 요 때 동단국이 처음 자리를 잡은 곳이고, 발해 시기 정안국과 홍료국의 할거지였으며, 금대 갈라로의 속지이자 동하국의 할거지였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원 때 개원로와 요양로에 분속되었고, 명 시기 삼위에 분속되었다는 것이다. 명말 청초 때는 백두산 지역이 청의 굴기지였기 때문에, 청조에서는 백두산을 용맥(龍脈)으로 인식해 봉금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다. 중화민국 시기에는 백두산이 길림성과 봉천성에 귀속되었다고 주장한다.³⁶⁾

34) 田子馥, 2005, 「中國長白山文化本原論」, 『東北史地』 第1期, 4쪽; 陳鵬陳琳, 2005, 「高句麗文化歸屬於中國東北“漢文化圈”」, 『東北史地』 第5期, 43쪽; 張碧波, 2006, 「朝鮮半島古文化淵源的考察」, 『東北史地』 第1期, 10쪽.

35) 郝慶雲, 2003, 「肅慎系長白山觀念透析」, 『中國邊疆史地研究』 第4期, 83쪽; 張杰, 2006, 「滿族先民與長白山的早期開發」, 『滿族研究』 第3期, 33쪽.

36) 「歷史沿革」, 2010. 12. 15, 『長白山保護開發區管理委員會政務網』, (<http://www.changbaishan.gov.cn/web/lsg.aspx?moduleid=234&id=1029>), ‘長白山概況’ 항목; 「長白山歷史」, 『長白山保護開發區管理委員會網站』(<http://www.>

‘장백산문화론’의 내용은 중국에서 “백두산=만주족의 발상지” 논리를 확산시키기 위해 길림성정부와 백산시인민정부가 공동으로 만든 홍보·선전 사이트인 장백산민족문화(長白山滿族文化)³⁷⁾에서도 더욱 더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 사이트가 백두산을 주도적으로 관장하는 중국의 두 지방정부에 의해 공동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볼 때, 이곳에서 제시되고 있는 ‘장백산문화론’은 사실상 중국정부의 공식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다.

“백두산=만주족의 뿌리”라는 논리를 내세우기 위해 만들어진 이 사이트에 의하면, 전국시대 연이 설치한 요동군의 동쪽 경계는 ‘만번한(滿潘汗)’이고, 그 위치는 패수(沛水), 즉 지금의 압록강 이동의 청천강 유역이라고 단정하면서 백두산이 전국시대 연의 관할 하에 있었다는 것이다. 진 역시 연의 요동군 설치를 유지했으므로 백두산은 진의 관할권에 속해 있었으며, 현대에는 한반도 북부의 위만조선을 멸망시키고 한사군을 설치함으로써 백두산 지역이 현도군의 관할에 속해 있었다고 주장한다.

특히 이 사이트에서는 ‘동북공정’ 논리에 기초해 고구려와 발해를 모두 중국 소수민족의 지방정권이자 중국사로 단정한다. 즉, 한의 현도군 관할권에 세워진 고구려는 중국 소수민족의 정권으로서 그 판도를 부단히 확장하다가 한과 위의 공격을 받자, 사신을 보내 ‘구속현도(求屬玄菟)’를 요청했으므로 고구려는 소수민족 지방정권으로서 시종 중국 중앙정부에 예속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고구려의 관할권에 속했던 백두산 지역 역시 사실상 중국왕조의 관할권에 속해 있었다는 논리이다. 또한 중국의 소수민족정권인 발해는 당의 안동도호부, 평로절도사의 관할 하에 있었던 중국의 속국이었는데, 백두산이 그러한 발해의 관할권에 속해 있었으므로 중국왕조의 관할권에 속해 있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chang baishan.gov.cn/CultureWeb/CultureWeb_xx.aspx?moduleid=653&id=7435).

37) 『中華名岳長白山』, 『長白山滿族文化』(<http://www.jl.gov.cn/rdzt/ztlz/cbmzw hgjzt/>).

발해를 멸망시킨 요 왕조의 경우 당의 판도를 이어 동북을 통치했고, 금 역시 요와 송의 주현 제도를 답습했으며, 특히 금은 백두산 지역을 민족의 '조흥지(肇興之地)'로 여겼다는 것이다. 원대에는 동북에 요양행성(遼陽行省)을 설치하여 백두산을 포함한 동북을 통치했고, 명대에는 백두산이 노이간도사(奴爾干都司) 관할하의 여진족 거주 지역에 속해 있었으며, 청대에는 백두산이 주로 길림장군의 관할하에 있었다는 것이다. 강희 53년(1714)에는 백두산이 혼춘하 지방의 혼춘협령(영고탑부도통에 예속)의 관할 하에 있었으며, 특히 청대의 황제들은 백두산을 '조종발상지(祖宗發祥之地)'로 인식하여 백두산에 대한 제례를 행하는 등 백두산을 매우 중시했다는 것이다.³⁸⁾

하여튼 백두산의 최초의 주인이 연 왕조이든 숙신족이든 간에 이들은 한족 왕조이거나 중화민족이었고, 역대의 중국왕조와 그에 예속된 '동북 소수민족의 지방정권'이 백두산을 관할해왔으므로, 백두산 지역은 처음부터 중화민족의 활동공간인 동시에 중화문화권에 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백두산은 선사시대부터 중화민국 때까지 중국의 역대 왕조가 관할해왔기 때문에 '백두산은 중국의 산에 속한다'는 논리이다. 그런데 그러한 주장의 밑바탕에는 오늘날 중화인민공화국의 영토 안에 존재했거나 존재하는 모든 역사적 활동이나 왕조, 민족은 모두 중국의 형성에 기여했으므로 중국의 역사이고 중화민족이라는 '통일적 다민족국가론'³⁹⁾이 관철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구려나 발해를 모두 중국의 왕조로 파악하는 '동북공정'의 논리가 깔려 있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길림성에서는 「중공길림성위관우관찰낙실〈중공중앙관우심화문화체제개혁추동사회주의문화대발전대변영약간중대문제적결정〉적실이의견(中共吉林省委關於貫徹落實〈中共中央關於深化文化體制改革推動社會主義文化大發展大繁榮若干重大問題的決定〉的實施意見)」에 부응하여 '지역역사문화

38) 「長白山滿族文化網」(http://www.jl.gov.cn/rdzt/ztl/cbmzwhgjzt/zhmycbs/201312/t20131216_1587788.html).

39) 중국의 역사관, 민족관, 국가관, 영토관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관해서는 윤휘탁, 2006, 『新중화주의: '中華民族 大家庭' 만들기와 한반도』, 푸른역사, 113~174쪽 참조.

자원건설공정'을 추진하고 있다. '포스트(post)동북공정'이라고도 지칭할 수 있는 이 '지역역사문화자원건설공정'에서는 길림성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발굴·계승·발전시켜 나가려는 것이다. 길림성에서는 이 공정을 통해 부여, 고구려, 발해, 요, 금, 원, 명, 청 시기의 고대문화유적을 발굴하는 동시에, 한족, 조선족, 만주족, 몽골족, 회족, 시버족[錫伯族] 등의 농경문화, 유목문화, 어렵문화 속의 우수한 요소를 비롯해, 관동이민문화, 동북항일연군 등의 홍색문화, 현대 공업문명이 배태한 문화정수 등을 발굴하여 길림문화의 함의를 심화시키려 하고 있다.⁴⁰⁾

하여튼 지역문화 차원에 국한되던 '장백산문화론'은 2000년 10월 장춘에서 '길림성장백산문화연구회'가 결성되면서 동북지역 전체를 대표하는 문화적 상징으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길림성장백산문화연구회'가 전면에서 나서 '장백산문화론'을 선전·확산시키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배후에서 장백산문화연구회의 조직, 활동, 지원, 통제, 지도를 하고 있는 곳은 중공길림성위원회 선전부다. 이것은 길림성장백산문화연구회가 전 중공길림성위원회 선전부부부장인 장푸여우[張福有]의 주도 하에 조직되었고, 그가 초대 회장을 맡았다는 점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중공길림성위원회 선전부 및 길림성인민정부에서는 '장백산문화론'을 확산시키기 위해 길림성 각지에 장백산문화를 연구하기 위한 학회를 조직하도록 독려하고 관련 학회 활동자금이나 연구비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길림성장백산문화연구회를 필두로 2013년 말까지 연변조선족자치주, 백산시, 통화시, 길림시, 안도현, 무송현 등지에서도 장백산문화연구회가 조직되었다. 장백산문화연구회에서는 중공길림성위원회 선전부의 통제·지도와 후원 하에 동북변강 및 백두산에 대한 중국의 역사적 연구권과 귀속성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는 역할을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셈이다.

장백산문화연구회가 단순히 학자들만의 순수 학술조직이 아니라 중국정부

40) 「長白山文化產業發展」, 2012. 4. 16, 『長白山網』(<http://www.jlcbns.cn/wenhua/wenhushidian/2012-04-16/1012.html>).

의 정치적·전략적 의도가 반영된 관변 학술조직이라는 점은, 길림성장백산문화연구회의 임원구성에서도 잘 드러난다. 즉, 2008년 7월 1일 새로 뽑힌 연구회의 임원을 보면, 백두산에 대한 실질적인 기획·보호·개발·관리 권한을 지닌 장백산관리위원회의 주임 스킨샹[石國祥]이 고문에, 부주임 리덴윈[李占文]이 부회장에, 문화전파중심 주임 잉안천[英安臣]이 부비서장에 당선되었고, 장백산관리위원회의 다른 8명이 장백산문화연구회의 이사에 피선되었다.⁴¹⁾ 동 연구회의 임원 구성과 활동을 보면, 길림성정부, 중공길림성위원회 선전부, 길림성 정치협상회의 등의 지도 하에 백두산을 총괄하고 있는 장백산관리위원회의 주요 구성원이 장백산문화연구회의 주요 임원과 이사가 되어 사실상 이 학회를 이끌면서 “장백산=중국의 산”이라는 ‘장백산문화론’을 확산시켜 장백산문화 연구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결국 길림성 각지에 조직된 이들 연구회는 반관반민(半官半民)의 학회 조직으로서 ‘장백산문화론’을 학문적으로 개발하고 그것을 학계나 기층 민중사회에 퍼뜨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장백산문화론’의 확산 과정에는 상술한 기관이나 학회뿐만 아니라, 백두산이 소재한 길림성의 관련 기관들, 중국정치협상회의, 중국국가문물국, 중국국가여유국, 길림성사회과학원, 공상연합기관, 작가협회 등이 적극적으로 후원하거나 참여하고 있다.

현재 300여 명의 회원이 소속되어 있는 길림성장백산문화연구회의 활동 추이를 살펴보면, 이 학회에서는 2001년 창립된 이래 4차례의 연구토론회를 개최했고 200여 편의 논문을 발표했으며, 두 차례의 『장백산문화논총』을 간행했다.⁴²⁾ 또한 2002년 5월 류젠펑[劉建封]의 기념비와 동상 건립 문제를 중공

41) 『百度百科』(http://baike.baidu.com/link?url=J4KGN5jqrF__XXg618nMJ5AukKVfp95Xk2PN1SvaTtclx9LYd_3ZdHiFwin1AZt8Vs6a9ToA2sSff1jReoBjITK); 「長白山文化研究會換屆結束」, 『延邊朝鮮族自治州人民政府網』, 2008. 7. 4 (<http://www.yanbian.gov.cn>).

42) 「長白山文化研究會換屆結束」, 『延邊朝鮮族自治州人民政府網』, 2008. 7. 4(<http://www.yanbian.gov.cn>); 「吉林省長白山文化研究會」, 2011. 11. 29, 『吉林省社會科學院網』(<http://www.jlass.org.cn/?mod=info&act=view&id=2633>); 『百度百科』(<http://baike.baidu.com/link?url=nFg1p2CjYRrflO9ddon9K14BMnSFWm>

길림성위원회에 타진하고 ‘변강사지(邊疆史地)에 관한 지식교육활동’을 전개했다. 동년 7월에는 장춘과 안도에서 류젠평의 백두산 답사 94주년, 서거 50주년을 기념하여 류젠평에 관한 주제로 제2차 연토회(研討會)를 개최하고 류젠평 동상을 건립한 후 참배 행사를 벌였다. 2008년 5월에는 류젠평의 백두산 답사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100년 전 류젠평의 답사길을 다시 밟는 행사를 벌였으며 『백년호여(百年苦旅)』라는 책을 발간해 그 의미를 되새겼다. 2010년 6월에는 류젠평이 두만강을 통해 중국이 다시 동해로 나가는 항로를 개척하는 문제(出海復航)에 대해 과학적 조사를 실시한 지 20주년을 기념하여 방천(防川)에 ‘도문강출해복항이십주년기략(圖們江出海復航二十周年紀略)’을 새긴 비석을 세우는 등 변경문제의 연구·확산에도 힘을 쏟고 있다.⁴³⁾

또한 2010년에는 중공길림성위원회 선전부와 길림성문화청에서 제6차 장백산문화연토회를 개최하고 길림성도서관 내에 ‘장백서원’을 개원했다.⁴⁴⁾ ‘장백서원’에서는 장백산문화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고 백두산과 관련된 문헌에 대한 정리와 보호, 장백산문화를 핵심적으로 하는 비물질 문화유산의 창조와 발굴 등을 추진하고 있다.⁴⁵⁾

게다가 길림성을 중심으로 백두산 개발이 본격화되고 ‘장백산문화’가 경제 개발의 문화적 자원이자 이데올로기적 추동력으로 인식되면서, ‘장백산문화론’은 길림성 내 각 지역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적극 주창되고 있다. 특히 중공길림성위원회 선전부는 ‘장백산문화론’의 주창과 확산 과정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하여튼 중공길림성위원회 선전부의 통제·후원하에 장백산문화 연구회가 결성되었고, 이와 더불어 백두산의 역사 문화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장백산문화가 ‘한족문화를 주체로 하는 일체다윈의 복합문화’로 새롭게 규정되면서 중국인의 시각으로 재조명된 소위

wC-JVi9GHhB1qE7qz-LwdWAPsOC0oMZFOrNZUyaN4dGpeoG_bIFeDhJK).

43) 「吉林省長白山文化研究會」, 『百度百科』(<http://baike.baidu.com>).

44) 위의 사전적 설명, 「吉林省長白山文化研究會」.

45) 「長白書院章程」(<http://www.jlplib.com.cn/cbsy/sy/g/>).

‘장백산의 역사’가 체계화되고 있는 셈이다.

IV. 민족적 귀속권 논리체계의 구축: “백두산 = 만주족의 발상지”

다른 한편 중국에서는 역사적 차원에서 백두산에 대한 귀속권을 주창하는 동시에, 민족적·문화적 차원에서 백두산과 중국의 소수민족을 연계시켜 백두산에 대한 중국 민족의 연고권을 주창하면서 백두산에 대한 중국의 귀속권을 강화시키려는 ‘이중적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특히 후자는 “장백산문화를 대대적으로 선전하여 백두산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산(聖山)으로 자리하도록 함으로써”⁴⁶⁾ “장백산 = 만주족의 성산, 뿌리”라는 주장을 확고하게 관철시키려는 데 있다. 다시 말해 “백두산 = 만주족의 발상지”라는 논리를 중국 국민 및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전파시켜, ‘동북공정’과는 별개로, 백두산에 대한 중국 민족(만주족)의 역사·문화적 연고권과 귀속권 논리체계를 강화·확산시켜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일찍이 중국에서는 백두산과 만주족 문화의 역사·문화적 연계성⁴⁷⁾을 중국 국내 및 전 세계에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드높이기 위해 2008년

46) 「關於定位長白山爲滿族文化聖山的提案(第81號)」, 2011, 『吉林省人民政府網站』 (http://www.jl.gov.cn/zwgk/yatabl/zxwyta2010/2011/201106/t20110608_1003329.html).

47) 참고로 장백산문화와 만주족을 다룬 중국학계의 연구서로는 黃甲元, 1992, 『長白山區開發史稿』, 吉林文史出版社; 黃甲元, 1994, 『長白山文化論說』, 吉林文史出版社; 刀書仁, 1995, 『明清東北史研究論叢』, 吉林文史出版社; 張佳生 主編, 1999, 『滿族文化史』, 遼寧民族出版社; 張福有·梁琴 主編, 2003·2005, 『長白山文化論叢』 1·2輯, 時代文藝出版社; 張杰, 2005, 『清代東北邊疆的滿族(1644~1840)』, 遼寧民族出版社 등이 있다.

북경올림픽 때 ‘상운소옥(祥雲小屋)’이라는 전시관을 설치하여 백두산을 배경으로 만주족의 다양한 풍속 문화 등을 선보인바 있다. 2010년에는 상해에서 열린 세계박람회 때 전 세계를 향해 백두산과 만주족을 한 묶음으로 한 만주족의 전지(剪紙), 목각(木刻), 복식(服飾), 치파오[旗袍] 등을 전시했다. 또한 동년 10월에는 제남에서 열린 제1회 중국 무형문화유산박람회에서 만주족의 문화를 선보인바 있다.

그런데 “장백산=만주족의 성산, 발상지, 뿌리” 논리의 확립과 선전의 필요성이 중국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한 것은 2011년부터다. 즉, 2011년 백두산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길림성정치협상회의에서는 제 10회 4차 회의 기간에 정부 차원에서 “백두산을 만주족 문화의 성산으로 위치지우자!”고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그들이 그렇게 제기한 첫 번째 근거로는 ‘백두산은 만주족의 조상들이 대대로 살던 곳’이라는 논리다. 다시 말해 『산해경·대황북경』의 “끝없이 펼쳐진 땅 한가운데 산이 있으니, 불함이라 하며, 속신의 나라다.” 라는 기록을 근거로, 만주족의 조상인 숙신족이 선진(先秦)시대부터 대황산(지금의 백두산)에 거주했다는 것이다. 그 후 한대의 읍루, 위진시대의 물길, 당대의 말갈, 금대의 여진, 청대의 만주(지금의 간칭인 만족) 등 역대 만주족 조상들이 만주에서 4000여 년 동안 거주하고 있었다는 것이다.⁴⁸⁾

두 번째 논거로는 당대의 속말말갈인인 대조영(大祚榮)이 백두산 서북쪽에 위치한 돈화의 동모산성에 발해국을 세웠는데, 장백산은 발해국이 설치한 5경 15부 62주에 속했다는 것이다. 또한 금대에는 백두산을 “흥왕지지(興王之地)”라 하여 숭배하고 봉작을 내려주고 사당을 지었으며, 청조 강희제나 건륭제 때 도 백두산에 망제를 지냈고, 백두산이 만주족 조상의 성지라 하여 백두산에 대해 봉금조치를 취했다는 것이다.⁴⁹⁾

길림성정치협상회의에서는 세 번째 근거로 백두산의 지명이 길림성의 지

48) 「關於定位長白山爲滿族文化聖山的提案(第81號)」, 2011, 『吉林省人民政府網站』 (http://www.jl.gov.cn/zwgk/yatabl/zxwyta2010/2011/201106/t20110608_1003329.html).

49) 「關於定位長白山爲滿族文化聖山的提案(第81號)」, 2011, 앞의 문건.

명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들고 있다. 가령 장백산은 대항산이라 칭했는데, 그 뜻은 만주어로 무변무제(無邊無際)이고, 불함산은 만주어로 신이 사는 산이며, 한위 시대에 불린 개마대산, 북조시대의 사태산, 수당시대의 태백산, 명청시대부터 지금까지의 장백산은 만주어로 과륙민산연아림(果勒敏珊延阿林) 등의 호칭으로 불렸다는 것이다. 따라서 장백산의 만주어 호칭은 만주의 수많은 만주어 지명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다.⁵⁰⁾

상술한 길림성정치협상회의 공식적인 제안에 대해 길림성정부에서는, 답변 형식으로 “백두산은 만주족의 발상지이며, 만주족 조상들이 대대로 거주하면서 찬란한 민족적·지역적 특수문화를 창조한 곳이므로, 장백산의 만주족 문화를 보호하고 선전하는 것이 길림성의 관광산업 발전, 백두산의 생태환경 보호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길림성에서는 진귀한 만주족의 민간문화를 무형문화유산의 보호 명단에 접어넣었다. 그 후 만주족의 전지(剪紙)문화는 유네스코의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또한 중국 중앙정부를 비롯하여 길림성정부에서는 만주족의 베개 자수(刺繡) 등 만주족 문화육성에 많은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⁵¹⁾

한편 중공길림성위원회와 길림성정부의 지도·통제하에 있는 장백산관리위원회를 비롯해 만주족이 많이 거주하는 장백시 등지에서는 백두산에 얽힌 청조 건국자의 탄생 설화나 만주족의 전신인 여진족⁵²⁾의 백두산 전설뿐만 아니라, 백두산이 여진족(만주족)의 성지·요람으로서 “여진족(만주족)의 뿌리=백두산”이라는 논리를 확산시키려고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길림성정부와 백산시인민정부에서는 “백두산=만주족의 성산, 발상지” 논리를 강화하고 선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조치로서, 공동으로 ‘장백

50) 「關於定位長白山爲滿族文化聖山的提案(第81號)」, 2011, 위의 문건.

51) 「關於定位長白山爲滿族文化聖山的提案(第81號)」, 2011, 위의 문건.

52) 중국학계에서는 만주족의 전신이 명대의 여진인데, ‘여진’이라는 호칭은 오대(五代) 시기에 처음 등장한 것으로 본다[張杰, 2006, 「滿族先民與長白山的早期開發」, 『滿族研究』 第3期, 31쪽].

산만족문화'⁵³⁾라는 홍보·선전 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장백산만족문화' 사이트가 백두산을 총괄하는 길림성정부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이 사이트의 내용은 사실상 길림성정부의 입장인 동시에, 사실상 중국정부의 입장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다. '장백산만족문화' 사이트에서는 '백두산 = 만주족의 발상지'라는 기본적인 시각에서 백두산에 대한 중국의 인식, 차칭 백두산에 대한 중국 역대왕조의 귀속 연혁, 청대의 백두산 답사 실태, 백두산 형성의 역사, 만주족의 백두산 신화와 전설, 민족박물관의 소개 등의 항목을 홍보하고 있다. 이 사이트에 의하면 만주족과 그 조상들은 대대로 백산과 흑수 사이에 살아오면서 백두산과 끊을 수 없는 인연을 맺고 있었고 백두산을 자신들의 발상지로 여겼으며 백두산을 신으로 섬기고 백두산에 대해 제례를 지냈다는 것이다.

먼저 위의 사이트에서는 앞서 언급한 길림성정치협상회의에서 제기한 내용과 마찬가지로, 만주족 신화를 내세워 만주족과 백두산의 역사 문화적 연구권을 강조한다. 즉, 백두산이 태산의 발원지이며 중국 삼황오제 전설 가운데 용의 화신인 복희(伏羲)와 여와(女媧)에 대한 숭배의식을 지니고 있어서 흑룡강의 용왕과 천지의 용왕이 만났다고 하여, 백두산과 중국인의 조상신을 연계시키고 있다. 또한 우랑직녀(牛郎織女)의 전설과 관련된 지명이나 명소가 송화강의 발원지(천지)와 관련이 있다고 하여, 백두산이 우랑직녀의 발원지라고 주장하고 있다.⁵⁴⁾ 이처럼 중국의 길림성에서는 만주족의 문화, 복희의 용 문화, 우랑직녀의 문화와 백두산 문화의 연관성을 강조하면서 백두산에 대한 중국의 문화적 귀속권을 주창하고 있다.

또한 중국에서는 백두산에 얽힌 여진족(만주족)의 탄생 설화 및 전설을 강조하여 만주족과 백두산의 불가분성을 강조하기도 한다. 즉, 청초의 건국자 누르하치[努爾哈赤, 1559~1626]의 탄생 설화 및 백두산에 얽힌 여진족의 전설

53) 『吉林省人民政府網』(<http://www.jl.gov.cn/rdzt/ztlz/cbmzwhgjzt/>).

54) 「整合長白山文化資源, 拓展長白山旅遊天地」第94號, 『吉林省人民政府網』, 2013. 11. 5(http://www.jl.gov.cn/zwgk/yatabl/zxwyta2010/2012_38836/201311/t20131105_1559478.html).

등에 의하면, '장백산'이라는 명칭은 여진족이 명명했으며, 만주는 백두산 동북쪽의 포고리산(布庫里山) 밑의 포이호(布爾湖)에서 기원했다는 것이다. 이 설화 및 전설에 의하면, 처음 하늘에서 세 선녀가 내려와 이 호수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는데, 신령스러운 까치(神鵲)가 색깔이 붉고 아름다운 열매를 막내 선녀(佛庫倫)의 옷 위에 떨어뜨리자 막내 선녀가 그것을 먹고 잉태하여 남자 아이를 낳았는데, 그가 곧 만주족의 조상인 애신각라(愛新覺羅) 포고리웅순(布庫里雍順)이라는 것이다. 그들은 '장백산 삼선녀 전설'을 근거로 백두산 일대의 광활한 지역이 만주족 조상의 발상지라고 주장한다.⁵⁵⁾ 한마디로 백두산은 창조 황실의 발상지로서 "天命玄鳥, 降而生商"의 신화가 전해지며, 이 신화와 관련된 백두산 원지(圓池)는 '천녀욕궁지'라 하여 천녀가 목욕을 하던 곳으로 '장백산의 혼'이라 부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중국학계에서는 만주족과 그 조상들이 백두산을 숭배하고 제사지냈다는 점을 "백두산=만주족의 성산, 발상지" 논리의 기반으로 활용하고 있다. 즉, 한·위 이래 그들이 숭배한 백두산신에는 크게 호랑이 신(虎神)인 산신아비(山神爺), 그옥함 속의 여신인 백의관음(白衣觀音), 호국신인 흥국영흥왕(興國靈興王), 신화적인 방산인(放山人)인 개산파두(開山把頭)의 네 종류가 있는데, 이 신들은 만주족과 그 조상들이 백두산을 신앙하는 핵심이자 영혼이라는 것이다.⁵⁶⁾ 숙신인들은 백두산을 '영산'으로 받들었고, 물길인은 백두산의 신비함을 숭배했으며, 발해를 세운 속말말갈인 역시 백두산을 '백산성모'라 하여 숭배했다고 한다.⁵⁷⁾

요대의 거란족은 백두산을 '백의관음'으로 받들었는데, 백의관음은 선량과 순결의 상징이며 대자대비하여 고난으로부터 구원해주는, 인간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아름다운 형상인데, 백두산이 바로 백의관음의 거처지라는 것이

55) 「長白山—滿族文化的發祥地」, 白山市人民政府辦公室, 2013. 12. 16(http://www.jl.gov.cn/rdzt/ztlz/cbmzwhgjzt/whys/smwh/201312/t20131216_1587792.html).

56) 汪玢玲, 1997, 「長白山—自然保護神崇拜的文化內涵」, 『長白學刊』第6期.

57) 劉厚生, 1999, 「古代渤海文化的奇葩」, 『東北邊疆與疆域研究動態』第2期.

다.⁵⁸⁾ 말갈을 계승한 여진 역시 국운지흥(國運之興)이 백두산의 잉태와 발육 여하에 달려 있다고 믿어 '동악장백산(東岳長白山)'으로 떠받들었는데 이때부터 백두산은 신의 차원으로 격상되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1172년 금 세종은 백두산을 '홍왕지'로, 금 대정 12년(1172)에는 장백산신을 '흥국령응왕(興國靈應王)'으로 봉하고 백두산 북쪽에 흥국령응왕묘(興國靈應王廟)를 세워 제사를 지냈으며, 금 장종 4년(1193)에도 백두산을 '개천광성제(開天宏聖帝)'로 봉하고 개광성제묘(開宏聖帝廟)를 설치해 매년 봄가을 백두산에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⁵⁹⁾ 특히 금 때는 백두산을 '조종의 발상지'라고 스스로 언급했다는 것이다.⁶⁰⁾

청조가 세워진 이후에도 백두산에 대한 만주족의 숭배행위는 계속되었는데, 청조 강희제는 1678년(강희 17년)에 처음으로 매년 영고탑(寧古塔) 관리를 통해 대오(大烏喇) 지방에서 망제를 지내게 했고, 1682년에는 길림을 순행하면서 송화강에서 백두산신에 대해 망제를 지냈으며 백두산에 대한 제문을 두 번 썼다고 한다. 1733년 옹정제도 소백산에서 만문(滿文)과 한문으로 '장백산 지신위(長白山之神位)'를 사당 안에 써넣고 망제를 지냈으며, 건륭제도 1743년과 1754년 두 차례 소백산의 온덕형망제전(溫德亨望祭殿)으로 가 백두산에 제사를 지내고 '망제장백산'이라는 시를 손수 지었으며 백두산에 대한 제문을 네 번이나 썼다고 한다. 건륭제는 백두산을 만주족의 성산이라 하여 이를 보호

58) 汪玢玲, 2001, 「長白山崇拜與民族文化融合」, 『山岳與象征 - 2001 山岳文化 國際學術研討會論文集』, 中國東方文化研究會; 陳慧, 2011, 「長白山崇拜考」, 『社會科學戰線』 第3期.

59) 『長白山滿族文化網』(http://www.jl.gov.cn/rdzt/ztzl/cbmzwhgjzt/mzssc/201312/t20131216_1587448.html); 汪亭存, 2009, 「滿足長白山崇拜論析」, 『民族文學研究』 第4期, 29~31쪽; 費聿平, 2009. 7, 「簡評『長白山滿族文化概覽』」, 『西南大學學報』 第34卷 第4號, 199쪽; 葛會清 主編, 2008, 『長白山滿族文化概覽』, 中國文史出版社; 「長白山封冊」, 『大金集禮』 卷35; 「長白山」條, 『金史』 卷35; 「禮八」, 『金史』 卷35; 張佳生, 2011, 『滿族與長白山』, 遼寧民族出版社; 孟慧英, 2011, 「《滿族與長白山》讀後」, 『滿語研究』 第3期, 140쪽.

60) 李樂營, 2004, 「長白山: 中國古代民族人口交融的鋒面地區」, 『學習與探索』 第5期.



〈그림 2〉 청조 조상을 모신 사당(淸祖祠)



〈그림 3〉 백두산신을 모신 사당(長白山神祠)

하기 위해 봉금령까지 내렸다는 것이다.⁶¹⁾ 통계에 의하면 청대의 황제들 중에는 강희제가 세 번, 건륭제가 네 번, 가경제가 두 번, 도광제가 한 번 백두산에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⁶²⁾

이처럼 숙신 때부터 청대까지 만주족 및 그 조상들의 백두산 숭배가 이어지면서 초창기의 사머니즘적인 자연숭배가 점점 조상숭배의 성격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게다가 백두산에 대한 국가의 숭배와 제사행위는 백두산의 자연숭배와 조상숭배를 결합시켜 백두산 숭배에 대한 각 민족의 집단적 기억을 강화시켰다고 한다.⁶³⁾ 게다가 중국학계에서는 청대 황제들의 백두산 망제의식을 고대 중국 황제들의 봉선⁶⁴⁾의식과 유사한 행위로 격상시켜 백두산의 문화적 귀속권이 일찍부터 중국에 있었음을 강조한다. 즉, 청대의 만주족 황제들은 왕조의 합법성을 과시하기 위해 명대 한족 황제들의 봉선의식을 모방해 백두산에 대해 봉선의식을 거행했다는 것이다.⁶⁵⁾

61) 柳成棟, 2010, 「望祭長白山」, 『黑龍江史志』 第2期, 39쪽; 胡美琳, 2003, 「長白山望祭的興衰」, 『學問』 第4期, 7쪽; 『長白山滿族文化網』(http://www.jl.gov.cn/rdzt/ztl/cbmzwhgjt/mzssc/201312/t20131216_15874_48.html).

62) 楊子忱, 2005, 『曠代關東才子王爾烈全傳』, 西苑出版社.

63) 汪亭存, 2009, 「滿足長白山崇拜論析」, 『民族文學研究』 第4期, 31쪽.

64) 봉(封)이란 땅에 제사를 지내는 것을 의미하고, 선(禪)이란 하늘에 예를 표하는 것을 의미한다.

65) 李自然, 2000, 「試談清代的長白山封禪及其特点」, 『內蒙古工業大學學報』 第9卷

상술한 점들을 염두에 두고 중국 길림성 돈화시에서는 청조 황제들의 망제 의식을 현대에 재현하기 위해 백두산을 바라보고 제례를 올리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여겨진 곳에 '백두산사당'인 장백산신사를 세워 매년 백두산에 대해 제례를 지내고 있다.⁶⁶⁾ 이는 청대에 시행되었던 백두산 망제를 현대에도 재현시켜 백두산에 대한 중국 여진족(만주족)의 정신적·문화적 연계성을 드러내어 백두산에 대한 중국의 정신적·문화적 연고권을 강화시키고 "백두산=만주족(중화민족)의 뿌리"라는 점을 강하게 내세우려는 것이다.

한편 중국에서는 백두산과 만주족 사이의 역사적·정치적 관련성, 특히 여진족(만주족) 왕조가 백두산을 관할했다는 점을 내세워 "백두산=만주족의 성지·요람"⁶⁷⁾이라는 의식을 확산시켜 "백두산=한민족의 성지" 논리에 대항하는 동시에, 자연스럽게 '백두산=여진족(만주족)의 뿌리' 논리를 입증하기 위한 역사적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백두산과 만주족의 역사적 관련성과 관련해, 중국 학계에서는 일찍이 만주족의 조상인 숙신족이 기원전부터 백두산에 거주하면서 백두산은 만주족을 우수한 민족으로 키워냈다고 주장한다. 그들에 따르면 만주족은 백두산에 세 번 흥기하여 정권을 세웠는데, 첫 번째는 발해 왕조(698~926)로서 동북에서 고대문명의 고조기를 실현했고,⁶⁸⁾ 두 번째는 금 왕조(1115~1234)로서 백두산 지역을 벗어나 연산(燕山)을 넘어 진령(秦嶺)까지 내달아 송 왕조와 대치하면서 중국의 절반을 차지했으며, 세 번째는 후금과 청

第1期, 46쪽.

- 66) 『百度百科』(<http://baike.baidu.com/link?url=r6oGEGrFUnBh54-zOjzK9ZUoVrEtsY7ExMEjuB3M2hsH6zbdBZygZjw3lig5mPUaXBUMAo6McPohA4JZZOs8a>).
- 67) 중국에서는 숙신, 읍루, 물길, 임갈(濛濛), 여진, 만주족의 선주민들이 백두산 지역에서 3천여 년 동안 살아가면서 독특한 민족·민간문화를 창조해내었다고 하여 백두산을 만주족의 요람으로 인식하고 있다. [『吉林省人民政府網』(http://www.jl.gov.cn/rdzt/ztlz/cbmzwhgjzt/whys/smwh/201312/t20131216_1587792.html)].
- 68) 중국학계에서는 발해가 동북을 통일하기 이전 백두산에 거주했던숙신, 읍루, 물길, 말갈인을 모두 만주족의 조상으로 규정한다[張杰, 2006, 『滿族先民與長白山的早期開發』, 『滿族研究』 第3期, 31쪽].

왕조(1616~1911)라는 것이다.⁶⁹⁾ 이 주장에서도 발해 왕조를 만주족 조상이 세운 왕조로 인식하면서 중국왕조로 규정하고 있다.

후금과 백두산 사이의 연관성에 관해서는, 명대 3대 여진부락집단 가운데 건주여진(建州女眞)을 이끈 누르하치(努爾哈赤)가 여진의 각 부족을 제압하고 명 군을 격파하게 된 중요한 계기를 백두산과 관련시켜 설명한다. 즉, 누르하치의 건주여진이 백두산 지역의 물자와 인력자원을 개발·활용하여 다른 부족을 이길 수 있었던 경제력, 특히 농업 경제력을 확보했다는 데 있었다는 것이다.⁷⁰⁾ 이를 바탕으로 청조는 역사상 최대의 판도를 확보하고 중국의 봉건문명을 최고의 정점에 올려놓았다는 것이다.

결국 중국학계에서는 백두산이 만주족과 그 조상들에게 역량과 믿음을 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왕조를 건국했다는 것이다. 그로 인해 만주족은 백두산을 성산, '조흥지'로 인식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만주족은 백두산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으며, 이 과정에서 '장백산문화'가 발생했다는 것이다.⁷¹⁾ 또한 백두산은 만주족의 경제생활, 생활습속의 형성에 제약 요인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영향을 미쳤다고 하여 백두산과 만주족의 불가분성을 강조한다.⁷²⁾

그런데 이러한 주장에서는 구체적으로 백두산이 만주족에게 어떠한 역량과 믿음을 주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역사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저 만주족이 백두산에서 거주하고 흥기했다는 것만으로 역사적 상관성을 논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백두산과 만주족을 연결하는 고리가, 만주족이 백두산에서 흥기했으므로 "백두산=만주족의 뿌리"일 수밖에 없다는 현대중국의 정치적 당위성으로만 설명될 뿐, 그 양자의 연관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역사적 근거'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9) 劉厚生, 2006, 「走進東北古國」序, 『東北民族的發展史及其歷史地位』, 呼和浩特: 遠方出版社.

70) 劉智文, 2006, 「後金時期的長白山開發」, 『黑龍江民族叢刊』第3期.

71) 劉厚生, 2010, 「長白山文化是滿學之源」, 『滿族研究』第3期, 7쪽.

72) 張佳生, 2011, 『滿族與長白山』, 瀋陽: 遼寧民族出版社; 孟慧英, 2011, 「《滿族與長白山》讀後」, 『滿語研究』第3期, 140쪽.

그러한 점들을 의식해서인지 중국 언론에서는 백두산과 만주족의 역사적 상관성, 백두산에 대한 중국의 문화적 귀속권 등을 입증하기 위한 역사적 증거물로, 1999년 8월 백두산 천지의 북쪽에서 ‘여진족의 제대(祭臺)’가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크게 보도한 적이 있다. 2013년 12월에는 ‘여진 문자가 적혀있는 비석’이 여진족의 제대로부터 약 3m 떨어진 천지 주변에서 발견되어 장춘으로 이송되었다는 것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기도 했다. 이번에 천지 주변에서 발견된 현무암의 여진문자 비석은 인공적으로 축조한 여진족 제대의 유물로 여진족이 백두산에 제사지내는 데 사용한 것이라 하여,⁷³⁾ “백두산=여진족의 성지, 성산”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한 역사적 물증으로 강조하고 있다. 최근에는 백두산에 대한 만주족과 그 조상들의 민족인식을 비롯해서 백두산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산맥, 하천, 성채 등에 붙여진 만주어 지명이나 명칭을 연구해 백두산과 만주족의 역사 문화적 연관성을 증명하려는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다.⁷⁴⁾

중국 역사학계에서는 백두산 인근의 발해 유적으로 알려졌던 보마성(寶馬城) 유적도 “백두산=여진족의 뿌리”라는 논리를 강화하기 위한 역사적 소재로 활용하고 있다. 즉, 2014년 10월 11일 중국 신화망(新華網)에 따르면, 길림대학 고고연구센터에서는 동년 8~9월 국가문물국의 승인을 받아 보마성 유적에 대한 유물 발굴 사업을 실시했다. 보마성 유적은 백두산 천지에서 북쪽으로 30km 거리에 있으며 1,200년 전 발해가 당과의 주요 교통로에 축조한 성으로 여겨져 왔다. 800년 전 금대에도 이 성이 사용된 것으로 추정돼 왔다. 그러나 길림대학 연구팀은 보마성이 발해가 조공로(朝貢路)에 세운 중요 역참이었다는 기존 학설을 뒤엎고 금나라 황실이 백두산신에게 제사를 올리기 위해 지은 건축물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연구팀은 이번 발굴사업에서 금 황실을 상징하

73) 「長白山發現女真文字碑」, 『長白山滿族文化網』(길림성 정부와 백산시인민정부판공실(白山市人民政府辦公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이트), 2013. 12. 16(http://www.jl.gov.cn/rdzt/ztzl/cbmzwhgjt/whys/yywz/201312/t20131216_1587568.html).

74) 張佳生, 2011, 『滿族與長白山』, 瀋陽: 遼寧民族出版社; 孟慧英, 2011, 「《滿族與長白山》讀後」, 『滿語研究』第3期, 140쪽.



〈그림 4〉 보마성 복원 조감도



〈그림 5〉 보마성 유적지

는 기와 조각 등이 다수 출토된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연구팀의 발굴 작업은 726m² 넓이의 건축물 기초 한 곳에서 이뤄졌으며, 거기에서 짐승 얼굴 모양이 새겨진 와당과 처마 끝의 기와, 장식물 등 도제 건축재료 100여 점이 출토됐다고 한다. 연구팀은 건축재료에 담긴 용과 봉황 무늬가 금 황실을 상징하며 쇠 못 수백 개와 도자기, 철기 등도 금대 유물의 특징을 지녔다고 밝혔다. 보마성 유적은 465m의 성벽과 성 안 중심부의 대형 건축물 기초 3곳이 남아 있다.⁷⁵⁾

보마성 유적이 이제는 발해의 유적지가 아니라, “장백산=여진족(만주족)의 발상지” 논리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역사적 유적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셈이다. 어찌되었든 중국에서는 백두산과 만주족의 신화, 전설, 역사, 문학, 풍속 사이의 연관성 및 백두산에 대한 만주족의 제사 행위 등을 근거로 백두산은 ‘만주족의 고향’이자 ‘만주족 문화의 발상지’로서 ‘만주족의 문화를 잉태하고 발육시킨 근원’이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⁷⁶⁾

“백두산=만주족의 뿌리” 논리를 대중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해, 길림성 백두산에서는 2009년 6월 장백산만족문화박물관을 개관해 만주족(중국에서는 만족이라 지칭)의 장백산 숭배, 역사적 추이, 생활습속, 문화예술 등의 전시구역과 백두산 표본, 인삼, 미술 등의 전람구역을 갖추고 만주족과 백두산의 역사적·문화적 연관성을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⁷⁷⁾ 그밖에 중국의 각 지역에서도 만주족에 관한 박물관들을 곳곳에 세우고 있다. 가령 하북성 풍녕만족자치현(豊寧滿族自治縣), 길림성 사평시 이통현, 길림시 등지에서는 만족박물관을 세워 만주족의 민간풍속뿐만 아니라 백두산과 만주족의 역사적·문화적 연관성 등을 홍보하고 있다.

더 나아가 중국 길림성 돈화시에서는 발해 왕조가 만주족 조상들이 세운 왕조라는 인식 하에 발해왕조의 건립 장소가 돈화 지역임을 상징적으로 내세우기 위해 만주족 조상들을 모신 대규모 사당인 청조사(淸祖祠)를 세웠다. 청

75) 「백두산 아래서 발견된 보마성은 발해 아닌 금나라 유적」, 『한국일보』, 2014. 10. 12.

76) 呂萍, 2010, 「滿族文化研究的盛會」, 『滿族研究』第3期, 4쪽.

77) 「長白山滿族文化博物館開館」, 『吉林省文化廳』, 2009. 6. 18.

조사는 시조요, 천녀궁, 열조관 등으로 구성되었다. 청조사에는 만주족의 샤머니즘이 결들여진 채 백두산과 만주족 사이의 역사 문화적 상관성을 알리는 문헌이나 자료, 백두산에 얽힌 만주족의 민간풍속 자료 등이 진열되었다. 이제 청조사는 만주족이 자신들의 뿌리를 찾고 조상을 참배하는 성지로 자리잡아가고 있다.⁷⁸⁾ 백두산에 대한 만주족의 뿌리 찾기 노력은 자연스럽게 백두산에 대한 중국의 민족적 연고권과 역사적 귀속권 강화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V. 맺음말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많은 한국인이 동북지역의 고구려, 발해 유적지나 백두산을 관광하면서 동북지역 사회, 특히 조선족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다. 그리고 한국인의 입을 통해 만주의 고대사나 백두산에 대한 한반도의 역사적 귀속권이나 문화적 연고권 등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이러한 현상은 중국 당국을 자극하게 되었고, 결국 '동북공정'의 추진과 '장백산문화론'의 주창으로 이어졌다. 특히 중국정부는 백두산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특히 조선족)의 백두산 귀속의식이 약하고 '장백산'이라는 명칭 이외에 '백두산' 명칭이 병용되는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 결과 백두산의 명칭을 장백산으로 일원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급기야 1998년 중국 민정부에서는 국무원 비준을 거쳐 길림성정부에게 '백두산 천지'를 '장백산 천지'로 바꾸고, 공개 출판된 지도에도 그렇게 바뀐 명칭을 기재하도록 지시하면서 백두산 명칭은 공식적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또한 백두산 지역 소재 학교 명칭에 일관되게 장백산이라는 명칭을 부여하여 개명하는 조치도 취했다. 이것은 조중변계조약 체결

78) 「清始祖祠」, 2013. 4. 25. 『敦化旅游网』(<http://www.dhlyw.com/index.php?m=Article&a=show&id=90>).

당시 중문 조약문에 ‘백두산’ 명칭을 일관되게 표기했던 중국정부가, 중국사회에서 혼용되던 ‘백두산’ 명칭을 퇴출시키고 ‘장백산’ 명칭으로 일원화해서 백두산에 대한 중국의 귀속권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2005년에는 종래에 연변조선족자치주, 백산시, 안도현, 무송현, 장백현 등이 관할하던 백두산 지역을 통합·재편해서 ‘장백산보호개발구’라는 특별행정구역을 설치하고, 이곳을 관할하기 위해 2006년 길림성정부 직속의 ‘장백산보호개발구관리위원회’라는 지방정부를 신설해서 백두산의 보호·개발·관리·이용을 일원화·체계화해서 백두산에 대한 중국의 주도권을 강화시켰다. 이로 인해 백두산에 대한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영향력은 급격하게 감소되었다.

또한 중국공산당길림성위원회 선전부에서는 길림성 각지에 ‘장백산문화연구회’라는 반관반민의 학술조직을 만들도록 유도한 뒤 소요 경비를 제공하면서, “중국의 역대 왕조가 백두산을 관할해왔으므로 백두산은 중화민족의 역사문화권에 속한다”는 ‘장백산문화론’의 선전·확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와 아울러 “장백산=중국의 산”이라고 주장하는 논문들을 양산하도록 유도하여 백두산에 대한 중국의 역사적 귀속권 논리체계를 강화시켜나가고 있다. 더 나아가 백두산에 대한 중국의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 그리고 백두산을 유네스코의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중국의 세계자연유산 예비 신청 항목 2위에 올려놓고 언제든지 백두산을 유네스코에 등재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게다가 백두산과 중국 소수민족 사이의 역사적·문화적 연고권을 강화시키기 위해, 길림성정부와 백산시에서는 “백두산=만주족의 발상지”라는 논리를 주창하고 그것을 확산시키기 위해 공동으로 장백산만주족문화라는 전문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청조를 세운 만주족 조상을 모신 사당(청조사)을 세워 국내외 관광객에게 백두산이 만주족의 뿌리임을 각인시키고 있다. 또한 청조사 입구 쪽에 백두산사당(장백산신사)을 세우고 청대 황제들이 백두산을 숭배하여 제례를 지낸 사실을 부각시켜 백두산에 대한 망제의식을 재현해 백두산에 대한 중국의 민족적·문화적 연고권을 대외적으로 과시하고 있다.

상술한 일련의 조치들, 다시 말해 ‘백두산의 중국화’를 위한 전략적 조치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중국정부가 ‘동북진흥전략’이나 ‘제11차 및 제

12차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전면에 나서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백두산의 중국화' 전략은 관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셈이다. 이는 '백두산의 중국화'라는 특정한 목표 하에 중국정부가 길림성정부를 전면에 내세워 추진하고 있는 국가전략의 일환이기 때문이다.

학술문제이자 정치·전략문제인 '동북공정'에서는 동북지구에서 활동한 각 민족과 왕조의 역사적 특성과 귀속성, 동북지구와 한반도(혹은 러시아 극동 지구) 사이의 역사적 상관성, 동북아에서의 동북지구의 전략적 가치 등에 관한 중국의 인식을 잘 보여준다. 이에 비해 '장백산문화론'과 "백두산=만주족의 발상지" 논리에서는 "백두산=한민족의 성산, 발상지"라는 남북한의 백두산 문화인식을 기본적으로 부정하고, 장백산문화를 중화민족의 문화라고 주장함으로써 백두산과 한반도의 역사적·문화적 연관성을 도외시한다. 게다가 그와 같은 백두산 인식을 바탕으로 향후 중국정부가 단독으로 백두산을 '장백산'이라는 이름으로 중국의 세계자연유산 및 세계지질공원으로 유네스코에 등재해버린다면, 그리고 중국정부가 동계올림픽을 개최하면서 백두산 천지에서 성화를 채화하는 장면을 전 세계에 방영이라도 한다면(실제로 중국은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음), 백두산은 국제사회에서 '장백산'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질 것이고 '장백산=중국의 산'으로 세계인에게 각인될 것이다.

만일 우리의 '민족혼'이자 민족 정체성이나 다름없는 백두산의 역사적 귀속권과 다양한 방면의 주도권이 중국에게 넘어간다면, 그로 인해 우리 민족이 받게 될 충격은 '동북공정' 이상일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본다면, 백두산에 대한 각종 정보나 자료의 수집, '백두산의 중국화'를 실현하기 위한 중국의 전략적 조치, 중국의 백두산 전략과 한반도 통일 사이의 상관성, 문화적·경제적·군사적·전략적 방면에서의 백두산의 가치, 남북한과 중국 관계에서 백두산이 차지하는 위치, 백두산의 귀속권이나 주도권을 둘러싼 한·중 간의 마찰 가능성과 그 해법, 백두산을 매개로 한 남북한의 전략적 공조와 화해 실현의 필요성 등을 분석하는 작업은 중차대한 과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북한정세의 불안정성과 급변사태가 예측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백두산의 중국화' 전략은, 갑작스럽게 닥쳐올지도 모르는 한반도 통일과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야기될 수 있는 백두산의 귀속권 분쟁을 염두에 둘 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참고문헌

1차 자료

1. 중국정부 문건

- 「關於成立《吉林省長白山文化產業發展規劃》編制工作領導小組的通知」(長管政辦函【2011】1號), 2011. 1. 16, 『長白山保護開發區管理委員會政務網』의 政府文件 항목.
- 「關於定位長白山爲滿族文化聖山的提案(第81號)」, 2011, 『吉林省人民政府網站』(http://www.jl.gov.cn/zwgk/yatabl/zxwyyta2010/2011/201106/t20110608_1003329.html).
- 「關於推進長白山文化與旅游產業融合發展的建議(24號)」, 2013. 10. 29, 『吉林省人民政府網』(http://www.jl.gov.cn/zwgk/yatabl/dpttta2010/2011_38837/201310/t20131029_1554874.html).
- 「國家旅游局, 國家發展改革委關於印發實施《東北地區旅游業發展規劃》的通知」, 2010. 3. 17, 『國家發展和改革委員會網站』(http://www.chinaneast.gov.cn/2010-03/17/c_13214227.htm).
- 「吉林舉行長白山文化研討會」, 2006. 6. 14(<http://www.artjl.99927.com/index-3.asp?xxpxddd=159076&xxpxccc=354311>).
- 「吉林省國家安全領導小組朝韓對我國長白山圖謀的調研報告」, 2007. 2. 16(http://bbs.zol.com.cn/index20070216/index_134_58589.html).
- 「吉林省旅游業發展“十二五”規劃」.
- 「吉林省人民政府文件【2005】19號」; 「吉林省人民政府關於進一步明確長白山保護開發區管理委員會管理體制和職能權限的意見」(吉林省人民政府文件【2006】30號).
- 「吉林省長白山文化研究會」, 2011. 11. 29, 『吉林省社會科學院網』(<http://www.jlass.org.cn/?mod=info&act=view&id=2633>).
- 「歷史沿革」, 2010. 12. 15, 『長白山保護開發區管理委員會政務網』(<http://www.changbaishan.gov.cn/web/lsgy.aspx?moduleid=234&id=1029>).
- 「長白山概況」, 『吉林省長白山保護開發區政務網』(<http://www.changbaishan.gov.cn/web/cbsgk.aspx?moduleid=234&id=1026>).
- 「長白山管委會」, 『長白山保護開發區管理委員會政務網』(<http://cbs.jl.gov.cn/weball/main.aspx#>).

- 『吉林省長白山保護開發區管理委員會政務網』의 政府文件 항목.
- 「長白山國際生態論壇開幕」, 『中國吉林網』(吉林省人民政府 홈페이지), 2013. 9. 17(http://www.jl.gov.cn/tzjl/tzdt/201309/t20130917_1526916.html).
- 「長白山－滿族文化的發祥地」, 白山市人民政府辦公室, 2013. 12. 16(http://www.jl.gov.cn/rdzt/ztlz/cbmzwhgjzt/whys/smwh/201312/t20131216_1587792.html).
- 「長白山文化發展戰略合作座談會暨簽約儀式舉行」, 2014. 1. 15, 『長白山保護開發區管理委員會政務網』(<http://cbs.jl.gov.cn/>).
- 「長白山文化研究會换届結束」, 『延邊朝鮮族自治州人民政府網』, 2008. 7. 4(<http://www.yanbian.gov.cn>).
- 「長白山發現女真文字碑」, 『長白山滿族文化網』, 2013. 12. 16(http://www.jl.gov.cn/rdzt/ztlz/cbmzwhgjzt/whys/yywz/201312/t20131216_1587568.html).
- 「長白山歷史」, 『長白山保護開發區管理委員會網站』(http://www.changbaishan.gov.cn/CultureWeb/CultureWeb_xx.aspx?moduleid=653&id=7435).
- 「中共長白山保護開發區工委辦公室文件：關於印發謝忠岩同志在2014年全區工作會議上講話的通知」(長白山黨辦發【2014】1號), 2014. 1. 9.
- 「中共長白山保護開發區工委辦公室文件」(長白山黨辦發【2014】1號), 2014. 1. 9.
- 「中國圖們江區域合作開發規劃綱要(全文)－以長吉圖爲開發開放先導區」, 『中國吉林網』, 2009. 11. 17(http://chinaneast.xinhuanet.com/2009-11/17/content_18251163.htm).
- 「中華名岳長白山」, 『長白山滿族文化』(길림성 정부와 白山市人民政府辦公室이 공동 운영하는 사이트)(<http://www.jl.gov.cn/rdzt/ztlz/cbmzwhgjzt/>).
- 「清始祖祠」, 2013. 4. 25, 『敦化旅遊網』(<http://www.dhlyw.com/index.php?m=Article&a=show&id=90>).
- 國家發展和改革委員會, 國務院振興東北地區等老工業基地領導小組辦公室, 「東北地區振興規劃」, 2007. 8. 20, 『中華人民共和國中央人民政府門戶網站』(http://www.gov.cn/gzdt/2007-08/20/content_721632.htm).
- 吉林省長 王儒林, 「政府工作報告－2012年2月1日在吉林省第十一屆人民代表大會第五次會議上」, 2012. 2. 7, 『吉林省人民政府網站』(http://www.jl.gov.cn/zwgk/gzbg/szfgzbg/201202/t2012_0207_1146709.html).
- 袁野, 「長白山申遺地拆遷工作啓動」, 2006. 10. 20, 『長白山保護開發區管理委員會

政務網』(<http://www.cbs.jl.gov.cn/news/news-view.asp?nid=223>).

2. 언론 기사

『吉林省長白山文化研究會』, 『百度百科』(<http://baike.baidu.com>).

『首批中國國家自然遺產, 國家自然與文化雙遺產豫備名錄名單』, 2013. 10. 25(<http://zhidao.baidu.com/question/2137871570574122548.html>).

『長白山文化產業創意研討會召開』, 『新吉林網』, 2011. 3. 28(http://www.jlsina.com/news/chang_baishan/2011-3-28/17930.shtml).

『長白書院章程』(<http://www.jlplib.com.cn/cbsy/sygg/>).

『中國的下一個世界遺產地將是哪里(備選名錄)』, 2013. 11. 8(<http://zhidao.baidu.com/question/646713738560129765.html>).

長白山文化傳播中心, 『長白山教育系統各學校更換新校名』, 2007. 1. 30(http://cbs.jl.gov.cn/news/news_view.asp?nid=288).

通訊 인터넷 사이트(http://chinaneast.xinhuanet.com/2007-06/22/content_10368904_2.htm).

『白山新聞』, 2011. 1. 14(<http://www.0439.com/html/2011/01/140953264448.htm>).

『연합뉴스』, 2014. 6. 19(<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6969206>).

연구서

1. 국내 연구서

Cavendish, A. E. J, 2008, 『백두산으로 가는 길: 영국군 장교의 백두산 등정기』, 살림.

James, H. Evan M, 2011, 『백두산 등정기: 만주의 역사, 주민, 행정 그리고 종교에 관한 이야기』, 동북아역사재단.

경도제국대학 백두산원정대, 1935, 『白頭山』, 梓書房.

고려대학교, 1990, 『한민족에 있어서 백두산 설화의 의미』,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김득황, 1988, 『白頭山과 北方疆界: 압록강, 두만강은 우리의 국경이 아니다』, 思社研.

김정락, 1992, 『백두산총서: 관광』, 과학기술출판사.

김정락, 1993, 『백두산총서: 동물』, 과학기술출판사.

김정배, 2010, 『백두산: 현재와 미래를 말한다』,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김정오, 2011, 『백두산 항일유적지 운동주생가: 2011년 해외연수와 역사탐방』, 흥익재.

- 김지남, 1998, 『조선시대 선비들의 백두산 답사기』, 혜안.
- 김한산, 2011, 『백두산 화산: 지리·지질·생태·관광』, 시그마프레스.
- 다무라 가즈히사, 2000, 『朝鮮郷土地理實例白頭山定界碑』, 경인문화사.
- 백두산총서 편찬위원회, 1992, 『백두산총서: 미생물』, 과학기술출판사.
- 백두산총서 편찬위원회, 1992, 『백두산총서: 토양』, 과학기술출판사.
- 서길수, 2009, 『백두산 국경 연구』, 여유당.
- 서대석, 1992, 「백두산과 민족신화」, 『백두산 설화 연구』,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 신정일, 1997, 『백두산과 조선족: 한국땅이름학회 14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백두문화 연구원.
- 심백강, 2001, 『朝鮮王朝實錄中の 白頭山關係資料』, 民族文化研究院.
- 심해숙, 1997, 『백두산』, 대원사.
- 안재홍, 2010, 『(정민 교수가 풀어 읽은) 백두산 등척기』, 해냄.
- 유중열, 1992, 『백두산: 韓民族의 靈山』, 大旺社.
- 유충걸, 1993, 『白頭山과 延邊朝鮮族: 地理學的研究』, 白山出版社.
- 윤영, 1990, 『조선민간전설 백두산 전설』, 료녕인민출판사.
- 윤복동, 1993, 『백두산총서 2, 지질』, 과학기술출판사.
- 尹輝鐸, 2006, 『新증화주의: '증화민족 大家庭 만들기'와 한반도』, 푸른역사.
- 이서행, 2011, 『고지도와 사진으로 본 백두산』,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 이성규, 2003, 『(백두산 툰드라 지역)식물의 살아남기』, 대원사.
- 이영노, 1991, 『白頭山の 꽃』, 한길사.
- 이철호 選譯, 2008, 『중국의 '장백산문화론』, 동북아역사재단.
- 이형석, 1993, 『(압록강과 두만강)백두산 천지』, 嘉泉文化財團.
- 정재호, 1992, 『白頭山 說話 研究』, 高大民族文化研究所出版社.
- 崔仁, 1971, 『韓國의 再發見』, 國民出版社.
- 최인학, 1994, 『구전설화의 연구』, 새문사.
- 최인학, 1994, 『백두산 설화』, 밀알.
- 한국종교사회연구소, 1990, 『백두산: 제천.자연.사람』, 미진사.
- 香港대아도서유한공사, 2007, 『백두산: 민족의 성산, 그리고 오늘』, 하비북스.
- 황청일, 1995, 『백두산의 전설 1』, 民族文化.

2. 북한 연구서

- 금성청년출판사 편, 1995, 『백두산 전설』, 금성청년출판사.
- 김복록 총편집, 2002, 『백두풍경』, 조선화보사.
- 김우경, 1998, 『백두산장수봉에 광명성 솟았다』, 문학예술종합출판사.
- 김윤성 외, 2001·2002, 『백두산3대장군 설화집 1, 2』, 사회과학출판사.
- 김일성 저, 1985, 『백두산동북부의 넓은 지역에서 대부대선회작전을 전개할데 대하여』, 조선로동당출판사.
- 김재환 집필, 2009, 『백두산녀장군의 거룩한 자욱』, 금성청년출판사.
- 김정일 저, 2003, 『백두산밀영지구를 잘 꾸릴데 대하여: 백두산밀영을 돌아보면서 일군들과 한 담화(1988년 8월 18일)』, 조선로동당출판사.
- 김종석 수집, 2005, 『(백두산전설집) 백두산의 쌀나무』, 문학예술출판사.
- 김주복, 1992, 『백두산밀영』, 조선로동당출판사.
- 리원희 편집, 1996, 『백두산의 옛 전설 (1)』, 한국문화사.
- 리원희 편집, 2002, 『백두산의 옛 전설 (2)』, 문학예술출판사.
- 리천록·최룡관 수집정리, 1989, 『백두산전설』, 연변인민출판사.
- 림학성 외 집필, 2010, 『조선사회과학학술집 88 백두산3대장군혁명력사학편: 백두산 3대장군 혁명력사연구론문집』, 사회과학출판사.
- 박찬수, 1998, 『백두산녀장수전설집 2』, 문학예술종합출판사.
- 윤재남, 2010, 『(누구나 꼭 따라야 할)백두산족의 길』, 오래.
- 정유호, 1992, 『백두산 답사기』, 한국문화사.
- 조상호·안창호·김성철 편집, 2012, 『(추모설화집) 백두산에 지동이 일다』, 문학예술출판사.
- 조선화보사 편, 1990, 『백두산밀영』, 조선화보사.
- 지흥길 수집·리순일 편집, 2004, 『백두산 전설집 4: 신기한 발자국』, 문학예술출판사.
- 최희복 집필, 2009, 『백두산 녀장군의 인생관』, 근로단체출판사.
- 평양동대사 편, 2000, 『혁명의 성산 백두산 해돋이』, 평양동대사.
- 평양비디오편집사, 『(기록영화) 백두산의 자연 1, 2』(비디오자료), 평양비디오편집사.
- 평양출판사 편, 2011, 『백두산의 아들 1,2,3』, 평양출판사.
- 한창환·한금실, 2010, 『조선사회과학학술집 105 백두산3대장군 혁명력사학편: 우리 공화국은 불패의 강국』, 사회과학출판사.
- 『(기록영화) 김정일 현지 지도: 백두산혁명전적지구(주체89.3.22~27)』(비디오자료).

『기록영화) 백두산 해돋이』(비디오자료), 1988~1999.

『(상식)백두산의 주요봉우리들』, 문학예술출판사.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조선화보, 2000, 7.

3. 중문서

傅斯年, 2002, 『民族與古代中國史』, 河北教育出版社.

費孝通 主編, 2003, 『中華民族多元一體格局』, 中央民族大學出版社.

蘇秉琦, 1994, 『華人·龍的傳人·中國人—考古尋根記』, 遼寧大學出版社.

艾貴生 編著, 2004, 『走進長白山』,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旅游宣傳通報社, 1900, 『白頭山』, 旅游宣傳通報社.

吳祿貞, 1986, 『延吉邊務報告延吉廳領土問題之解決』, 吉林文史出版社.

王季平 主編, 1989, 『長白山志』, 吉林文史出版社.

유충길, 1991, 『長白山地理論文集』, 延邊大學出版社.

曹保明, 1996, 『長白山下的民俗與旅遊』, 旅遊教育出版社.

黃甲元, 1992, 『長白山區開發史稿』, 吉林文史出版社.

연구논문

1. 영문

Yoon, Hwytak, 2005, "China's Northeast Project and Korean History," *Korea Journal* Vol.45 No.1 Spring.

Yoon, Hwytak, 2004, "China's Northeast Project: Defensive or Offensive Strategy?," *East Asian Review*, Vol.16 No 4 Winter.

2. 국문

강석화, 1997, 「白頭山 定界碑와 間島」, 『한국사연구』 제96집.

강석화, 2011, 「조선 후기 백두산에 대한 인식의 변화」, 『朝鮮時代史學報』 제56집.

고태우, 1991, 「백두산과 김일성 가계 우상화 실태」, 『北韓』 제229집.

김성식, 1999, 「백두산 민담 연구」, 『인문과학연구』 제21집.

김성식, 2004, 「백두산 설화의 갈등양상」, 『남도민속연구』 10집.

김재민, 2000, 「백두산지역 리조트 개발에 관한 연구」, 『호텔관광연구』 2-1.

김주환, 1992, 「백두산의 지질과 지형」, 『국토지리학회지』 제19권 제1호.

- 김준봉, 2000, 「중국 장백산 조선족 마을의 주거 형식에 관한 조사연구」, 『농촌건축: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2-1.
- 김택중, 2010, 「白頭山定界碑의 건립배경과 건립과정」, 『인문논총』 제20집.
- 남영, 2005, 「백두산지역(북한 측) 자연환경과 토지이용 연구」, 『地理教育論集』 제49집.
- 盧泳噉, 1990, 「白頭山地域에 있어서 北韓과 中國의 國境紛爭과 國際法」, 『國際法學會論叢』 제35권 제2호.
- 류연산, 2008, 「장백산문화박람회' 참가기: 천지 둘레 16봉 세 강이 만든 백두산의 위용」, 『민족21』 90.
- 박상규, 1990, 「長白山 祭文에 關한 一考」, 『한국민속학』 23-1.
- 박선영, 2007, 「백두산정계비와 화이(華夷)질서」, 『중국학보』 제56집.
- 朴容玉, 1985, 「白頭山 定界碑建立의 再檢討와 間島領有權」, 『白山學報』 제30·31집.
- 박정란, 강동완, 2011, 「백두산 화산 폭발에 의한 탈북: 방향과 대비」, 『국방연구』 제54권 제3호.
- 박창열, 유철상, 2011, 「백두산 화산 폭발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한국방재학회지』 제11권 제2호.
- 배우성, 2007, 「18세기 청의 지리지, 지도와 백두산의 수계」, 『역사와 경계』 제65집.
- 서길수, 2009, 「간도협약 직전(1908) 중국의 백두산 국경 날조사건에 관한 연구」, 『白山學報』 제83집.
- 서대석, 1991, 「백두산과 민족신화」, 『北韓』 제229집.
- 송용덕, 2007, 「고려~조선전기의 백두산 인식」, 『역사와 현실』 제64집.
- 신영철, 1984, 「백두산과 북한·중공의 엇갈린 이해관계」, 『北韓』 제152집.
- 안병삼, 2008, 「장백산에 나타난 중국 조선족 사회와 비판의식」, 『한국민족문화』 32.
- 안창범, 1999, 「東洋思想 發生과 우리나라의 白頭山」, 『백록논총』 1.
- 安和範, 1996, 「우리나라의 白頭山과 東洋思想의 發生」, 『韓國宗敎史研究』 제7집.
- 梁泰鎮, 1984, 「民族地緣으로 본 白頭山領域 考察」, 『白山學報』 제28집.
- 梁泰鎮, 1981, 「白頭山 天池를 圍繞한 韓中國境線」, 『韓國學報』 제7권 제1호.
- 양태진, 2007, 「朝·中邊界條約을 통해 본 北方限界線-白頭山 天池를 中心으로」, 『북한학보』 32.
- 유충걸, 1994, 「백두산을 찾아서2: 백두산의 지형특징과 분류체계」, 『北韓』 제273집.
- 윤성호·원종관·이문원, 2004, 「백두산의 화산활동과 형성과정」, 『한국암석학회 학술 발표회 논문집』.

- 윤성호·이정현, 2012, 「백두산 화산의 전조활동 분석 연구」, 『암석학회지』 제21권 제1호.
- 윤휘탁, 2007. 6, 「중국의 동북 文化疆域 인식 고찰」, 『중국학보』 제55집.
- 윤휘탁, 2008. 3, 「포스트(Post) 동북공정: 중국 東北邊疆戰略의 새로운 패러다임」, 『역사학보』 제197집.
- 윤휘탁, 2013. 5, 「중국·남북한의 백두산 인식과 귀속권 논리」, 『한국사학보』 제51호.
- 윤휘탁, 2005. 9, 「중국의 東北邊疆政策 - '東北振興戰略'을 중심으로」, 『中國近現代史研究』 제27집.
- 윤휘탁, 2003, 「現代中國의 邊疆·民族認識과 東北工程」, 『역사비평』 겨울호.
- 이강원, 2010, 『『대동아지도(大東亞地圖)』 백두산(白頭山), 두만강(豆滿江) 일대에 표시된 몇 가지 지명(地名)의 검토 - 국경인식(國境認識) 위치(位置), 어원(語源) 및 오기(誤記)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6-5.
- 이강원, 2010, 「백두산(白頭山), 천지(天池) 지명(地名)에 대한 일고찰: 한(韓), 중(中) 지명표기를 중심으로」, 『지리학연구』 44-2.
- 이범관·홍영희·조병현·김종남·김홍백·김봉준·김상민, 2009, 「白頭山定界碑의 役割과 再評價에 關한 研究(上): 白頭山定界碑 建立 過程에 나타난 問題點 分析을 中心으로」, 『한국지역학회지』 제25권 제2호.
- 이상태, 2007, 「백두산정계비 설치와 김지남의 역할」, 『역사와 실학』 제33집.
- 李瑄根, 1962, 「白頭山과 間島問題: 回想되는 우리 疆城의 歷史的 受難」, 『歷史學報』 제17-18집.
- 李源明·김우준, 2008, 「白頭山定界碑와 接伴使 朴權에 關한 일고찰」, 『白山學報』 제80집.
- 李花子, 2008, 「명청시기 중한 지리지에 기술된 백두산과 수계」, 『문화역사지리』 제20권 제3호.
- 林漢洙·金善姬, 1992, 「白頭山의 地理的 背景과 觀光資源」, 『관광지리학』 제1-2집.
- 장나, 2012, 『韓·中 백두산 전설의 비교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장남기·여성희·이선경·권혜련, 1991, 「백두산 서북사면 삼림의 수지분포」, 『한국생태학회지』 제14권 제4호.
- 장삼환, 1992, 「장백산지구의 관광자원과 관광업 전망」, 『관광연구저널』 2.
- 장승두·이복규, 1996, 「'주몽전설'의 민속학적 고찰」, 『韓國民俗學報』 7집.
- 정옥재, 2010, 「일제강점기 조선인 관료의 백두산 여행과 간도 인식」, 『장서각』 24.
- 정치영, 2011, 「조선시대 지도에 표현된 백두산에 대한 고찰」, 『문화 역사 지리』 제23

권 제2호.

- 조법중, 2006, 12, 「中國의 '長白山文化論과 高句麗」, 『백산학보』 제76집.
- 조법중, 2009, 「한국 고증세 백두산신앙과 만주명칭의 기원」, 『한국사연구』 제147집.
- 조병현·이범관·홍영희, 2007, 「地籍學 側面에서 본 白頭山定界碑의 役割 研究」, 『한국지적학회지』 제23권 제1호.
- 조희웅, 1992, 「백두산 설화와 민간의식」, 『백두산 설화 연구』,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 차종환, 1994, 「백두산 생태답사기4: 백두산의 식물연구사와 식물상태」, 『통일한국』 제124집.
- 편집부, 1996, 「白頭山 定界碑 考」, 『백산학보』 제1집.
- 洪永國, 1990, 「白頭山의 地質」, 『지질학회지』 제26권 제2호.

3. 중문

- 高雪嬌, 2010, 「長白山旅游產業集群形成與演化研究」, 『東北師範大學學報』 제67기.
- 高申余, 2012, 「打造長白山人口文化的意義與作用」, 『人口學刊』 제9기.
- 曲岩, 2006, 「長白山文化與東北地區經濟發展」, 『長白學刊』 제3기.
- 龔振東, 2011, 「試論長白山民間傳統文化的地域性特色」, 『商業文化(下半月)』 제6기.
- 郭大順, 1995, 「遼寧史前考古與遼河文明探源」, 『遼海文物學刊』 제17기.
- 吉林省長白山文化研究會會長 張福有, 「長白山文化的幾個基本問題」, 『吉林日報』, 2012. 6. 30.
- 金榮晃, 2012, 「論白頭山的多種地名及其來源」, 『中國朝鮮語文』 제3기.
- 「檀君陵發掘質疑」, 『東北亞歷史與考古信息』(1994) 제2기.
- 唐利芹·劉珊珊, 2012, 「長白山文化在東北地區經濟發展中的作用」, 『人民論壇』 제8기.
- 董萬崙, 2001, 「華夷, 華夏, 漢人在東方」, 『北方文物』 제4기.
- 呂萍, 2010, 「滿族文化研究的盛會“長白山與滿族文化研討會暨第二屆滿族文化研究機構聯席會議”綜述」, 『滿族研究』 제9기.
- 劉彥臣·谷芃, 2007, 「長白山區滿族歷史文化研究述評」, 『通化師範學院學報』 제9기.
- 劉厚生, 2004, 「關於長白山文化若干問題的思考」, 『東北史地』 제11기.
- 李德山, 2003, 「試論長白山文化的特點」, 『中國邊疆史地研究』 제12기.
- 李昌善, 2003, 「長白山神話傳說的文化解讀」, 『東疆學刊』 제9기.
- 苗威, 2009, 「“長白山”考辨」, 『中國邊疆史地研究』 제12기.
- 苗威·劉子敏, 2004, 「箕氏朝鮮研究」, 『東北史地』 제8기.

- 朴眞奭, 1980, 「關於古代朝鮮的幾個問題」, 『朝鮮史通訊』 제2기.
- 範犁, 1997, 「高句麗古墓的幾個問題」, 『高句麗歷史與文化研究』, 吉林文史出版社.
- 濱田耕作·水野清一, 1938, 「赤峰紅山」, 『東方考古學叢刊』(甲種第六冊), 東亞考古學會.
- 徐德源, 2005, 「漢字標記高句麗語語音地名字詞漢譯選釋」, 『東北史地』 제5기.
- 徐德源, 2002, 『中國高句麗史』序, 吉林人民出版社.
- 徐子峰, 2004. 6, 「紅山文化與中華文明的起源試析」, 『昭烏達蒙族師專學報』 제25권 제3기.
- 徐子峰, 2004. 11, 「紅山文化研究略論」, 『內蒙古師範大學學報』 제33권 제6기.
- 薛志强, 2006. 12, 「紅山諸文化在中國文化形成發展中的特殊地位及影響」, 『동북아 평화 정착을 위한 한중 국제학술회의 논문집』, 국학운동시민연합.
- 安龍禎, 2006, 「試談長白山文化的淵源與發展」, 『東疆學刊』 제3기.
- 安龍禎, 2006. 1, 「試談長白山文化的淵源與發展」, 『東疆學刊』 제23권 제1기.
- 余秋雨, 2012. 6. 30, 「長白山文化的新觀念和新戰略」, 『吉林日報』.
- 閻超, 2006, 「從薩滿教的崇拜看其生態環保因素」, 『東北史地』 제4기.
- 吳文昌, 2009, 「開拓傳承長白山文化的歷史壯舉」, 『東北史地』 제11기.
- 王彥明, 2009, 「長白山機場建設對吉林省道路運輸量影響研究」, 『吉林大學學報』 제5기.
- 王玉光, 2005, 「論東北地區的山神信仰」, 『中央民族大學學報』 제5기.
- 汪亭存, 2009, 「滿族長白山崇拜論析」, 『民族文學研究』 제11기.
- 于洪才, 2012, 「全面加強長白山人口文化建設」, 『人口與計劃生育』 제4기.
- 喻權中, 2003, 「長白山神話與中國東北諸族的文化取向」, 『學習與探索』 제1기.
- 劉子敏, 2000. 3, 「走出高句麗歷史研究的誤區」, 『東疆學刊』 제17권 제1기.
- 劉厚生, 2003, 「長白山文化的界定及其他」, 『中國邊疆史地研究』 제12기.
- 李樂營, 2004, 「長白山: 中國古代民族人口交融的鋒面地區」, 『學習與探索』 제5기.
- 李仰松, 1997, 「研究我國文明起源問題的一些思考」, 『考古與文物』 제1기.
- 李若遷, 1996, 「高句麗文化與中原文化淵源關係述略」, 『通化師院學報』(社會科學) 제1기.
- 李英·範犁, 1997, 「東明王史詩與高句麗傳說」, 『高句麗歷史與文化研究』, 吉林文史出版社.
- 李自然, 2000, 「試談清代的長白山封禪及其特點」, 『內蒙古工業大學學報』(社會科學版) 제9권 제1기.
- 李自然, 2000, 「清代長白山封禪及其對滿族社會文化的影響」, 『內蒙古社會科學』(漢

- 文版) 제4기.
- 李自然, 1999, 「清代統治者祭祀長白山的實質是封禪」, 『中央民族大學學報』(社會科學版) 제3기.
- 李殿福, 2001, 「高句麗民族的社會生活與習俗」, 『社會科學戰線』 제2기.
- 李昌善, 2003. 7, 「長白山神話傳說的文化解讀」, 『東疆學刊』 제20권 제3기.
- 任明明, 2008, 「長白山旅遊區探險旅遊開發研究」, 『西南大學學報』 제4기.
- 張杰, 2006, 「滿族先民與長白山的早期開發」, 『滿族研究』 제3기.
- 張軍, 2005, 「箕子朝鮮研究二題」, 『東北史地』 제3기.
- 張基樞, 2004, 「韓民族的建國理念과 尊嚴性」, 『韓國思想과 文化』 제25집.
- 蔣立文, 2010, 「挖掘滿族優秀文化 構建和諧華夏文明—“全國長白山與滿族文化研討會”綜述」, 『社會科學戰線』 제10기.
- 張碧波, 1998, 「高句麗文化淵源考」, 『北方文物』 제1기.
- 張碧波, 1998, 「對古朝鮮文化的幾點思考」, 『北方論叢』 제1기.
- 張碧波, 2002, 「長白山與太伯山考論」, 『滿語研究』 제2기.
- 張碧波, 2006, 「朝鮮半島古文化淵源的考察」, 『東北史地』 제1기.
- 張福有, 2010, 「大力推進長白山文化研究與建設」, 『東北史地』 제9기.
- 張福有, 「以長白山文化推動長吉圖開發」, 『吉林日報』, 2010. 1. 28.
- 張福有, 「長吉圖開發開放先導區要注重長白山文化建設」, 『協商新報』, 2012. 5. 18.
- 張福有, 「長白山文化：代表吉林文化的標志性符號」, 『吉林日報』, 2012. 2. 16.
- 張福有, 2007, 「長白山文化述要」, 『長白學刊』 제9기.
- 張增香, 2004, 「有關箕子朝鮮的幾個問題新探」, 『東北史地』 제8기.
- 翟振武·盛亦男, 2012, 「長白山生育文化的多元性研究」, 『人口學刊』 제9기.
- 田子馥, 2005, 「中國長白山文化本原論」, 『東北史地』 제1기.
- 田子馥, 「漢文化是長白山文化的主體」, 『吉林日報』, 2012. 7. 12.
- 曹保明, 「深化長白山文化的精神與內涵」, 『吉林日報』, 2010. 8. 19.
- 趙靜慧, 2012, 「長白山文化在廣場設計中的運用—以長白山保護開發區池北區長白山文化廣場規劃設計爲例」, 『才智』 제10기.
- 趙志忠, 2005, 「北方民族與薩滿教」, 『黑龍江民族叢刊』(雙月刊) 제3기.
- 「中華文明也發祥遼河」, 『僑報』, 2006. 12. 11.
- 陳鵬陳琳, 2005, 「高句麗文化歸屬於中國東北“漢文化圈”」, 『東北史地』 제5기.
- 陳艷飛, 2005. 4, 「關於“中華民族”的語境含義研究」, 『東疆學刊』 제22권 제2기.

郝慶雲, 2003, 「肅慎系長白山觀念透析」, 『中國邊疆史地研究』 제4기.

『東北史地』評論員, 2004, 「深化長白山文化研究」, 『東北史地』 제11기.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국문 초록]

중국의 '백두산의 중국화' 전략

윤희탁

중국에서는 백두산을 '중국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백두산의 명칭을 '장백산'으로 통일시키기 위해 1998년 출판된 지도 책부터 '백두산 천지'를 '장백산 천지'로 바꾸었다. 또한 백두산 지역에 소재한 학교들의 명칭에 장백산 명칭을 붙여 학생들로 하여금 장백산에 대한 귀속의식을 강화시키려고 한다. 2000년 이후 중국학계에서는 "중국의 역대 왕조가 장백산을 관할해왔으므로 장백산은 중국의 역사문화권에 속한다"는 '장백산문화론(長白山文化論)'을 주창하기 시작했다. 중국공산당 선전부에서는 각 지역에 '장백산문화연구회'라는 학회를 조직하고, 백두산의 중국 귀속권을 주장하는 논문들을 양산하도록 유도한 뒤 '장백산문화론'을 적극 선전하고 있다. 2005년에는 백두산 지역을 '장백산보호개발지구'로 개편하고 '장백산보호개발구관리위원회'라는 지방정부를 신설해 백두산의 보호·개발·관리·이용을 일원화했다. 이와 아울러 중국정부에서는 백두산을 중국의 세계자연유산으로 유네스코에 등재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게다가 "백두산=만주족의 발상지"라는 논리를 주창하고 그것을 확산시키기 위해 전문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만주족의 조상을 모신 사당(청조사)을 세워 국내외 관광객에게 백두산이 만주족의 뿌리임을 각인시키고 있다. 그리고 백두산사당(장백산신사)을 세워 청대 황제들의 백두산 제사행위를 재현해 백두산에 대한 중국의 민족적·문화적 연고권을 대외적으로 과시하고 있다. 결국 '백두산의 중국화'를 위한 중국의 전략적 조치들은, 남북한의 백두산 성산인식을 부정하고, 백두산과 한반도의 역사적·문화적 연관성을 단절시켜, 백두산에 대한 중국의 역사적·문화적·민족적 귀속권을 강화시키려는 것이다.

주제어

백두산, 장백산, 장백산문화론, 백두산 전략, 만주족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BSTRACT]

The Strategy of Baekdu Mountain in China

Yoon Hwytak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s advancing various policies to place Baekdu Mountain under its jurisdiction. First, the Chinese government changed the name "Baekdu Mountain Lake" (白頭山 天池) to "Changbai Mountain Lake" (長白山 天池) on a map published in 1998 to unify and fix Baekdu Mountain's name as Changbai Mountain. Moreover, the Chinese government has tried to add Changbai Mountain to the names of educational institutions located in the Baekdu Mountain area to reinforce students' consciousness of jurisdiction over Baekdu Mountain. Since 2000, the academic world in China has argued "the theory of Changbai Mountain culture" (長白山文化論), demonstrating that Changbai Mountain belongs to the Chinese historical and cultural area as Changbai Mountain had been within the jurisdiction of Chinese dynasties for many generations. A policy department of the Chinese Communist actively propagandizes by establishing the "Changbai Mountain Cultural Research Society" (長白山文化研究會) in every region and by guiding the mass production of dissertations that argue for the Chinese authority to name Changbai Mountain. In 2005, the Chinese government reformed the Baekdu Mountain region as the "Special Areas for Protection, Development, and Management of Changbai Mountain" (長白山保護開發區) and established a local government called the "Management Board of Changbai Mountain" (長白山管理委員會) so to unify the conservation, development, management, and utilization of

Baekdu Mountain. Also, China has put considerable effort into registering for the World Natural Heritage designation by UNESCO. Furthermore, the Chinese government manages a professional website to demonstrate the theory that “Baekdu Mountain = the cradle of the Manchu people” (滿洲族). China again has imprinted Baekdu Mountain’s value as a birthplace of the Manchu people’s culture. Lastly, by establishing the “Baekdu Mountain Shrine” the Chinese government boasts of China’s ethnic and cultural connection to Baekdu Mountain by reproducing ancestral rites performed by emperors of the Qing Dynasty. In conclusion, China’s actions for strengthening the claim to Baekdu Mountain are to deny Korea’s worship toward the mountain and to reinforce historical, cultural, and ethnic claims to Baekdu Mountain by disconnecting the connections between the Korean peninsula and Baekdu Mountain.

Keywords

Baekdu Mountain, Changbai Mountain, the theory of Changbai Mountain

1930년대 재만조선인, 이등국민론의 비판적 성찰*

- 교육정치사의 관점과 사례를 중심으로 -

정안기 | 고려대학교 연구교수

동북아역사재단

I. 머리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937년 재만조선인의 교육행정권은 만주국의 치외법권 철폐의 결과, 조선총독부 관할에서 만주국 정부 관할로 이관되었다. 그 결과, 1938년 이래 신학제(新學制)에 입각한 재만조선인의 교육은 일본인과의 명백한 민족차별과 교육의 양질 저하로 이어지면서 재만조선인은 물론이고 현지조선인의 거센 반발을 초래했다. 또한 1937년 중일전쟁 발발에 따른 중국인의 민심이반(民心離反)과 재만조선인 전시동원의 요청은 재만조선인의 정치적 교섭력 확대에 따른 만주국 정부와 조선총독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불가피하게 했다. 그 결과, 1941년 4월 선만(鮮滿) 수뇌의 '신경회담(新京會談)'이 개최되었고, 재만조선인 교육 행정권은 종래 만주국 정부 관할로부터 '선만일여(鮮滿一如)의 문교정책(文教政策)'에 입각한 '선만공동관리(鮮滿共同管理)'로 바뀌었다. 이러한 재만조선인

※ 투고: 2015년 2월 11일, 심사 완료: 2015년 4월 30일, 게재 확정: 2015년 5월 18일

* 이 논문은 2014년 국사편찬위원회의 연구지원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교육정책의 변용은 1937년 중일전쟁 발발 이후 재만조선인 정치적 위상의 급격한 변화를 시사한다.

현재 만주국기 재만조선인 연구 가운데 하나는 그 민족적 위상과 정체성의 문제다. 그동안 만주국이 재만조선인에 대해 임금과 미곡배급을 우대했다는 사실에 입각한 ‘재만조선인, 만주국 이등국민론’은 만주국기 재만조선인의 정치적 위상과 관련한 자민족 중심의 민족우월주의 역사관 또는 복합민족 국가 건설을 위해 만주국이 추진했던 민족정책(민족협화)의 기만성과 민족별 이간책(離間策)을 표상하는 주요 논거로 주목되어 왔다.¹⁾ 그러나 최근 재만조선인 이등국민론²⁾에 대한 실증적 비판과 함께 새로운 가설이 제시되었다. 윤희탁은

1) 만주국기 재만조선인의 정체성 혼란과 관련한 흥미로운 사례는 김만선의 단편소설 ‘귀국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주인공 혁의 아내 영애는 애국부인회(愛國婦人會)와 도모노카이 등 일본인부인회에 열심히 참가해서 일본인들의 환심을 사고자 노력했다. 그 와중에 그의 딸 경희는 물론이고 영애 본인조차도 스스로를 일본인으로 착각하게 되었다. 그러나 1940년대 징병제와 함께 식량배급제가 실시되면서 일본인에게 100% 쌀 배급을 했던 것과 달리 조선인에 대해서는 75%의 좁쌀과 35%의 쌀 혼식 배급이 실시되었다. 영애는 배급소에서 ‘당신은 선계(鮮系)이니까 미안하지만 좁쌀을 섞어야 하냐고 했을 때 새파랗게 낮이 질리고 말았다.’ 이를 계기로 영애는 자신이 결코 일본인이 될 수 없고 조선인임을 자각하게 되었다. 즉, ‘왜놈들이 이렇게 차별대우를 하면서 황국신민은 무엇이고 징병은 무엇이야고 격분했다. 나아가 쌀 배급제를 계기로 하얼빈과 봉천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반일(反日) 지하운동이 전개되었고, 그 때문인지 석달 만에 신경 등 도회지에서 다시 조선인에 대한 100% 쌀 배급제를 실시하게 되었다. 이는 ‘군부 사람들이 약아서라기보다 당장 실시할 징병제도에 지장이 많은 것은 뻔한 사실이기 때문인 걸 알았기 때문인 듯했었다’는 것이다. 단편 소설이기는 하지만, 사실성이 풍부한 내용으로 당시 재만조선인의 정체성 혼란을 극명하게 보여 주는 작품 가운데 하나다[김만선, 1949, 『압록강』, 동지사, 167~169쪽].

2) 이등국민론은 일제가 황국신민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재만조선인을 대륙침략에 동원하고자 중국인보다 조선인을 우대했다는 담론이다. 그 근거는 노동현장에서 민족별 임금과 식량배급이 일본인→조선인→중국인 순이었다는 것이다[염인호, 1994, 『조선의용군 연구-민족운동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대학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尹健治, 1989, 「植地日本人の精神構造」, 『思想』 4월호]. 중국인 朱海德은 ‘만주국이 건국과 함께 1등 일본인, 2등 조선인, 3등 한족과 만인과 구별해서 배급식량도 일본인에 대해서는 백미, 조선인에게는 백미와 고량 절반씩, 중국인에게는 전부 고량으로 구분했고, 봉급에도 차이를 두었다’고 했다. 결국, 민족협화를 국시로 했던 만주국이었지만, 식사라는 눈에 보이는 민족차별이 일상다반사(日常茶飯事)

『만선일보(滿鮮日報)』에 게재된 도시부 거주 재만조선인의 생활상을 심층 분석했다.³⁾ 그 결과, 만주국기 재만조선인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결코 중국인들보다 더 나은 위치에 있지도 않았고, 또한 당시 재만조선인 사회에 널리 유포되었던 이등국민론은 단지 “중국인들보다 우월한 지위를 누리고 싶어 하는 원망(願望)의 표현이자, 재만조선인 사회라는 상상의 공동체 의식이 파생시킨 허상(虛想)”⁴⁾이라 비판했다. 결국, 만주국의 입장에서 재만조선인은 ‘귀찮고 하찮은 존재’ 혹은 ‘천덕꾸러기(밀수, 아편밀매, 매춘, 도박, 건달, 부랑아 등)’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결국 윤휘탁의 새로운 평가는 만주국기 ‘이등국민’으로 간주되었던 재만조선인의 민족적 위상에 대한 재고와 반성을 촉구하는 본격적인 논의라 하겠다. 그러나 종래의 이등국민론은 물론이고 최근의 허상론도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갖는다.

첫째, 이등국민론의 문제점이다. 만주국 정치사 연구를 대표하는 야마무로 신이치[山室信一]는 물론이고 일본인의 만주 이민사 연구의 개척자로 알려진 아라라기 신조[蘭信三]는 재만인양자(在滿引揚者)의 증언을 발굴해서 만주국

였다는 것이다[安藤彦太郎, 1964, 『延邊紀行』, 『東洋文化』 第36號]. 당시 만주국 식량배급정책 담당자였던 후루우미[古海]는 ‘나는 그 방법이 정당하다고 생각했지만, 역시 비난은 있었다. 일본인에 한정해서 미곡을 배급해서 우리들 만에게는 미곡을 먹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지만 실제로 그들(중국인)은 쌀을 상식(尙食)하지 않았다. 그거야 어쨌든 방법으로서는 정당했다고 믿었다’는 것이다[山室信一, 1993, 『キメラ：滿州國の肖像』, 中公新書, 280~181쪽; 야마무로 신이치·윤대석 옮김, 2009, 『키메라 만주국의 초상』, 소명출판; 高碓達之介, 1953, 『滿洲の終焉』, 實業之日本社; 蘭信三, 1994, 『「滿州移民」의 歷史社會學』, 行路社, 286쪽]. 또한, 만주국기 만영(滿映)의 중국인 배우로 활약했던 이향란(李香蘭)은 그의 자서전에서 파티와 연회 등에서 같은 식탁에서 같은 요리를 즐기고, 같은 술을 마시면서도 일본인에게는 백반이 나왔고, 중국인에게는 고량반이 나왔다고 말했다[山口淑子·藤原作登, 1987, 『李香蘭·私の半生』, 新潮社, 110쪽].

3) 최봉룡은 이등국민을 재만조선인 가운데 일본인과 조선인의 이중적인 정체성을 지닌 ‘일제(日帝)의 주구(走狗)’ 혹은 일제의 만주 지배 혹은 대륙정책에 적극 기여해서 이득과 편익을 취한 조선인 유력자층으로 한정했다. 이는 만주국기 도시부에 거주하는 친일 조선인과 농촌 오지에 거주하는 조선인 농민층을 구별해서 현재 중국에 거주하는 항일 경력의 조선인과 친일 경력의 조선인을 구별하고자 하는 이분법적 시각이다[최봉룡, 2005, 『기억과 해석의 의미: ‘만주국’과 조선족』, 『만주연구』 제2집].

4) 윤휘탁, 2001, 『만주국의 2등 국(공)민, 그 허상과 실상』, 『역사학보』 제159권.

이 표방하는 민족정책의 허구성을 비판했다. 만주국은 민족협화 이데올로기를 강요하면서도 현실에서는 일본인을 지도민족으로 하는 민족차별이 일상다반사(日常茶飯事)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 동안 ‘이등국민론’을 누가, 언제, 어디에서, 어떤 정치적 맥락에서 제기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불분명한 가운데 이등국민론을 만주국기 전체에 걸쳐 통시적이고 편의적으로 적용해 왔던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이등국민론이 복합민족 국가 건설을 위해 ‘민족협화(民族協和)의 평준화정책(平準化政策)’을 추구했던 만주국의 건국 이념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민족분열(民族分裂)의 서열화정책(序列化政策)’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만주국의 국시(國是) 혹은 민족정책과는 결코 양립하기 곤란한 정치적 담론이었다. 관련해서 1935년 말 만주국은 재만조선인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민족협화 이데올로기를 앞세워 치외법권을 철폐하면서 재만조선인의 법적 지위를 크게 격화시켰던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등국민론의 논거 가운데 하나였던 미곡배급 우대정책 혹은 미곡통제정책의 개시는 1940년 전후였다는 사실이다.⁵⁾ 결국, 1937년 중일전쟁의 발발과 장기화는 재만조선인의 전시동원을 위한 정치적 재평가를 불가피하게 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문제는 1937년 중일전쟁의 발발이 만주국의 민족정책에 미친 불가역적인 충격과 재만조선인 스스로가 이등국민임을 자각 혹은 착각하게 했던 만주국의 민족정책의 변질 그리고 재만조선인의 지위 변동을 가늠케 하는 또 다른 사례 발굴이 불가결하다고 하겠다.

둘째, 이등국민 허상론의 문제점이다. 윤희탁의 주장과 같이 이등국민론은 과연 상상의 공동체 의식 혹은 자민족 중심주의 역사관이 파생시킨 허상에 불과했다고 단언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과 과연 같은 주장을 만주국기 전체에 걸

5) 그러나 이등국민론이 제기하는 재만조선인에 대한 상대적인 고임금은 만주국의 민족정책의 결과라기보다는 역시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였다. 연간 100만 명을 넘어서는 중국인 노동력(苦力)의 유입에 따른 노동시장의 수요공급 변화에 따른 상대적인 저임금과 조선인 노동력의 특질(보다 유창한 일본어 구사 능력과 더 일찍 물들었던 일본적 가치관)의 결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재만조선인의 고임금은 이등국민론의 논거로서는 지극히 불충분하다고 하겠다.

쳐 일반화할 수 있겠는가 하는 논점이다. 그러나 그동안 이등국민론은 중국인을 비롯한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도시부에 거주하는 재만조선인의 상대적인 고임금과 미곡배급의 우대라는 구체적인 사실을 거론해 왔다.⁶⁾ 더구나, 이등국민론의 기억은 1945년 이후 재중조선인만이 아닌 현지 중국인과 남한의 재만귀국자 그리고 일본의 재만인양자(在滿引揚者) 증언 등 동아시아 각지에서 산견(散見)되는 기억의 파편들이며, 지금까지 다수의 만주국 관련 연구자들이 이등국민론의 논거를 빈번하게 거론해 왔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등국민론의 논거를 단지 자민족우월주의 역사관 혹은 상상의 공동체 의식이 파생시킨 오염된 기억만으로 단정하기 곤란하다. 나아가 재만조선인에 대한 미곡배급을 우대했다는 논거와 관련해서 만주국에서 미곡통제정책의 개시는 1940년부터였다는 사실이다.⁷⁾ 이러한 사실은 이등국민론의 등장이 1937년 중일전쟁 발발에 따른 민족모순의 충격과 현재화를 반영한 지극히 정치적인 사안이었음을 시사한다. 더구나, 1936년 선만척식(주)의 설립과 함께 재만조선인은 그 이전과는 달리 '만주개척의 대행자'라는 국책수행의 정치적 존재로 재인식되었던 사실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⁸⁾ 따라서 이등국민론을 단순한 상상의 공동체 의식이 파생시킨 허상이라 단정하기에 앞서 재만조선인 스스로가 이등국민임을

6) 연변민족교육연구소교육사연구실, 1987, 『연변조선족교육사』, 연변인민출판사, 78쪽.

7) 만주국에서 미곡통제는 1938년 11월 7일 미곡의 생산, 배급, 소비에 걸친 일원적 통제를 목적으로 미곡관리법과 양곡회사법을 공포하고, 특수회사 만주양곡(주) 설립을 추진했다. 실제로 1939년 6월 일본에서 미곡통제법의 제국의회 통과를 계기로 만주국도 미곡관리법시행세칙을 공포해서 미곡통제를 본격화했다. 미곡관구(양곡회사와 지점 설치 관구)는 신경관구(신경), 봉천관구(봉천, 안동-안동성), 하얼빈관구(하얼빈), 목단강관구(목단강), 연길관구(연길, 흑하(黑河)특별관구, 헤라미(海拉彌)특별관구, 열하(熱河)특별관구 등 주로 도시부에 집중되었다. 미곡의 관리기구는 미곡관리법 실시에 따라 미곡의 배급기구 만주양곡(주)을 설립해서 종래 정미업자와 양곡도매상 그리고 양곡소매상의 기능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었다[朝鮮貿易協會新京出張所, 1939, 6, 『滿洲米穀配給大綱 生産・配給・消費の一貫統制』, 『朝鮮貿易協會通報』 제39호; 大蓮商工會議所, 1939, 6, 『滿洲國の米穀統制愈々實施』, 『東亞商工經濟』 제3권 제6호].

8) 정안기, 2011, 「만주국기 조선인의 만주 이민과 鮮滿拓植(주)」, 『동북아역사논총』 제31집; 金永哲, 2012, 『『滿洲國期』における朝鮮人の滿州移民政策』, 昭和堂.

착각하게 했던 만주국의 정치적 상황 변화와 재만조선인의 지위 변동을 가늠케 하는 또 다른 사례의 발굴이 긴급하다고 하겠다.

셋째, 만주국기 재만조선인의 존재 혹은 정체성 혼란에 대한 정치사적 함의다. 이등국민 허상론은 재만조선인을 만주국의 ‘부담스런 존재’ 혹은 ‘귀찮고 하찮은 천덕꾸러기’로 재평가했다. 그러나 생활사 차원에서 재만조선인의 존재는 단지 재만조선인 사회만이 아닌 중국인과 일본인 사회 등에서도 산견되는 근대 사회 일반의 계급문제일 수도 있다. 또한 재만조선인의 교육과 지위 문제는 선만 관계의 전환점이었던 1936년 10월 선만 수뇌의 도문(圖們)회담의 주요 의제였다는 사실이다.⁹⁾ 당시 도문회담에 임하는 관동군의 입장은 산업개발 5개년계획과 관련한 조선측의 경제적 협력이었고, 조선측은 치외법권 철폐에 따른 재만조선인의 지위 변동에 대한 만주국측의 정치적 배려였다. 그 결과, 도문회담은 당시 만주국이 당면한 산업개발과 식민통치의 안정화를 추구하는 조선측의 정치적 현안을 맞교환하는 식민정부 차원의 정치경제적 빅딜(big-deal)의 장(場)이었다.¹⁰⁾ 결과적으로, 만주국의 입장에서 재만조선인의 존재는 조선총독부를 압박해서 경제적 협력을 끌어내는 정치적 빅카드(big-card)로

9) 1936년 8월 미나미 지로[南次郎] 총독은 니노미야 하루시게[二宮治重]에게 선만척식(주)의 총재직을 제안하면서 선만척식의 설립 의의를 다음과 같이 피력했다. ‘니노미야는 만주를 아직 잘 모른다. 만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선인 문제다. 이 문제를 경시해서 만주 거주 100만 조선인이 반항하면, 오족협화(五族協和)는 물론이고 모든 것이 수포(水泡)로 돌아가고 만다. 또한, 조선통치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조선인을 편애(偏愛)하면 만주인이 질투해서 이 또한 오족협화를 저해한다. 그 점이 가장 골치 아픈 문제다.…… 특히, 만주의 출구(出口)를 폐쇄하는 무리를 범한다면, 재만 100만 조선인이 폭동을 일으킨다. 우리는 이들 100만 조선인을 교묘하게 교화하고 국경 부근에 모범적인 조선인촌(朝鮮人村)을 건설해서 연해주 거주 20만 조선인에게 보일 수 있다면, 이것만으로도 정신적으로 우리 쪽으로 기울게 할 수 있다. 그렇게 한다면, 만주에 3개 혹은 4개 사단의 병력(兵力)을 증강하는 것보다도 훨씬 유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의 지적은 미나미총독이 당시 조선인의 만주이민 문제와 조선인의 내지도항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만주에서 조선인 이민자의 적절한 통제와 계획이민을 담당하는 선만척식(주)의 정치적 중요성을 피력한 것이다[정안기, 2011, 『만주국기 조선인의 만주 이민과 鮮滿拓植(주)』, 『동북아역사논총』 제31호].

10) 정안기, 2011, 「1936년 鮮滿 首腦의 「圖們會談」과 「鮮滿一如」」, 『만주연구』 제12집.

서 요긴한 존재였다. 이러한 실태는 재만조선인의 지위가 만주국이 당면한 정치 정황과 의도에 따라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는 지극히 유동적이고 불안정한 존재였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만주국이 복합민족 국가 건설을 위해 내세웠던 민족협화 정책을 스스로 부정하면서까지 재만조선인을 우대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정치적 정황 혹은 당시 재만조선인의 심각한 정체성 혼란을 고려하면, 만주국기 재만조선인의 정치적 위상에 대한 재평가가 불가결하다고 하겠다.

이 연구는 1930년대 중반 이후 ‘재만조선인 5대 문제(사상, 개척, 금융, 취업)’의 핵심이었던 재만조선인의 교육문제를 교육정치사의 관점에서 검토하고, 종래 재만조선인, 이등국민론에 대한 또 다른 가설과 해석을 제시하고자 한다. 1937년 치외법권 철폐 이후 만주국이 추진한 재만조선인의 교육정책과 이에 따른 재만조선인의 대응 그리고 그 결과로서 1941년 선만 수뇌의 신경회담에 주목해서 만주국기 재만조선인의 정치적 위상과 그 변화를 볼 것이다. 결국, 윤희탁이 생활사 차원에서 재만조선인, 이등국민론의 논거를 전면 부정하면서 허상론을 제기했다면, 이 연구는 교육정치사 차원에서 이등국민론의 논거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도 또 다른 허상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만주국의 재만조선인 교육정책만이 아닌 이에 따른 재만조선인의 대응이 선만 양측의 식민통치에 미친 영향을 고려한 또 다른 사례의 발굴과 새로운 가설의 제시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조르조 아감벤(Giorgio Agamben)의 생명정치론(生命政治論)을 차용해서 재만조선인의 정치적 위상을 새롭게 평가해 보고자 한다.

II. 만주국의 ‘신학제’ 공포와 재만조선인 교육

1937년 11월 만주국은 치외법권 철폐를 계기로 만주사변 이전 중화민국 정부의 교육체계를 계승했던 구학제를 폐지했다. 이른바 만주국 독자의 신학제를 공포하고, 1938년 1월 1일부터 실시했다. 그 결과, 재만조선인에 대한 교육정

책도 종래 구학제의 방임주의 교육정책으로부터 신학제의 ‘만주국 국민화’ 교육으로 변질하고 말았다. 그러나 만주국의 신학제에 입각한 재만조선인 교육은 양질 저하로 이어지면서 재만조선인은 물론이고 현지조선인의 격한 반발을 초래했다.¹¹⁾ 이하에서는 재만조선인의 입장에서 신학제에 입각한 교육실태와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자.

1_ 신학제 실시와 재만조선인 교육의 실태

만주국은 1937년 5월 치외법권 철폐에 대응하는 문교정책의 일환으로 종래의 구학제(중화민국 학제)를 폐지하고, 1938년 1월 1일부터 신학제의 실시를 결정했다. 만주국의 학제개편과 신학제의 성립은 만주국 건국에 부합하는 이른바 “대담하고 혁신적인 교육방침, 만주국 제입법 가운데 백미(白眉)”¹²⁾로도 회자되었다. 실제로 당시까지 만주국의 교육체제는 만주사변 이전 민족교육 중심의 중화민국 교육체계를 거의 답습했고, 당시 일본의 만주국 지배정책과도 배치되는 방임주의 문교정책이었다.¹³⁾ 따라서 신학제의 목적은 “일만일덕일심

11) 1937년 10월 당시 신경조선인민회회장(新京朝鮮人民會會長) 이우근은 히로다 고키(廣田弘毅) 외무대신 앞으로 만주국의 치외법권 철폐에 따른 재만조선인 교육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만주국 초등학교령에 따라 학교명을 초등학교로 변경하고 수업 연한을 4년으로 단축하고, 학년을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12월 31일에 마치는 것으로 변경한다는 방침에 대해 우리로서는 하등의 의의가 없다. 그러나 그 교육방침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1) 학교명을 변경하는 것은 조선내 초등학교와 차별하는 것과 같아서 정신적인 타격을 준다. (2) 수업 연한을 단축하는 것은 교육 정도를 저하시킨다. (3) 학년을 달리해서 조선내 학교와의 연계를 결여하는 것은 재만조선인 아동을 조선과 일본 국내 중등학교 진학을 봉쇄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한다. 이는 재만조선인이 조선내 동포에 비해서 낙오자로 간주하는 방침으로 청천벽력과도 같은 것이다. 만일 이러한 교육방침이 사실로서 발표된다면, 재만조선인이 크게 낙망할 것이다. 교육방침 문제는 국책대행과 관련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문제일뿐만이 아니라 만주국 통치와 관련해서도 중대 문제”라는 것이었다[外務省, 1935, 「在滿朝鮮人學校教育關係雜件」 第2卷].

12) 塚瀬進, 1998, 『滿州國「民族協和」の實像』, 吉川弘文館, 77쪽.

13) 정안기, 2014, 「1930년대 在滿朝鮮人の教育政治史 연구」, 『만주연구』 제17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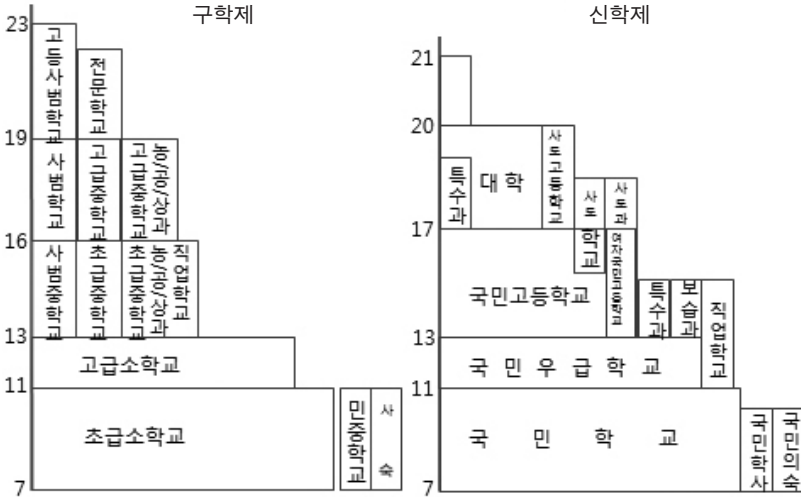
(日滿一德一心) 불가분의 관계 및 민족협화 정신을 체현해서 동방도덕(東方道徳) 특히 충효의 대의를 분명히 하는 국민정신의 함양과 덕성을 도야(陶冶)함과 아울러 국민생활의 안정에 필요한 실학(實學)에 입각한 충량(忠良)한 국민 양성을 목표¹⁴⁾로 했다. 신학제는 원칙적으로 사립학교의 설립과 민족교육을 부정하고 충성스런 만주국의 국민화 교육을 지향했다.¹⁵⁾

한편, 치외법권 철폐를 결정한 관동군사령부는 1936년 8월 ‘재만조선인 지도요강’을 발표하고 그 지도방침을 분명히 했다.¹⁶⁾ 그 요지는 만주국을 구성하는 일 민족으로 재만조선인을 간주해서 민족협화정책에 입각한 만주국 국민화를 지향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재만조선인의 교육체제도 <그림 1>과 같이 만주국의 신학제에 따라 종래 4년제 보통학교는 국민학교, 5년제 보통학교는 국민학교, 6년제 보통학교는 국민우급학교로 각각 재편되었고, 단일 학급으로 편성되었던 종래 각종 유형의 사립학교와 서당은 국민학사 혹은 국민의숙으로 개편되었다. 신학제는 ‘실용인재(實用人材)’의 양성을 위해 학제의 단축과 다양한 실업교육을 특징으로 했다. 따라서 신학제에 입각한 중등교육은 종래와 같이 상급학교 진학을 목적으로 하는 보통학교의 인문교육이 아니라 직업교육적 성격이 농후한 농상공(農商工) 인재 양성을 위한 분과 중학으로 재편되었다. 그 내용은 일본어의 국어화, 실업교육의 중시, 교육연한의 단축, 교육의 국가관리였다. 또한 학교 명칭도 국민고등학교로 개칭되었고, 학제도 종래의

14) 民生部教育司, 1940, 『滿洲帝國學事要覽』 제927호, 1~3쪽.

15) 결국, 만주국의 사립학교는 외국인이 경영하는 사립학교를 제외하고는 전부 폐쇄 혹은 만주국의 국공립학교로 흡수 및 재편되었다. 그 결과 재만조선인 학교도 만주국의 신학제가 적용되면서 재편이 불가피했고 1938년 6월 230개교에 달했던 재만조선인 사립학교와 외국인 경영학교는 1939년에 이르러 19개교(이 가운데 간도 16개교)를 제외하고 전부 폐교 혹은 만주국 국공립 학교로 편입되었다. 결국, 만주국의 신학제에 입각한 교육정책은 민족교육 말살정책이었고, 그래서 재만조선인 민족교육도 크게 후퇴하고 말았다.

16) 그 요지는 “재만조선인은 만주국의 중요 구성분자임을 스스로 자각해서 소질을 향상하고, 내용을 충실히 함과 아울러 만주국 국민으로서 의무를 이행하고 만주국 발전에 공헌해야 한다. 치외법권 철폐에 동반해서 만주국 주권하에 다른 민족과 협회 융합(協和融合)해서 균등한 조건에서 각 방면에 걸쳐 건실하게 발전하도록 지도한다”는 것이었다[關東軍司令部, 1936.8, 「在滿朝鮮人指導要綱」].



〈그림 1〉 만주국의 학제재편과 신학제

(자료: 滿洲國協會中央本部調査部編, 1943, 『國內に於ける鮮系在國民實態』.)

5~6년제에서 4년제로 단축되었다.

또한 만주국은 같은 재만조선인의 지도요령에서 ‘핵심 지도계급의 양성’을 위해 종래의 민회조직을 ‘만주제국의 협화회(協和會) 조직으로 통합해서 자정적(自淨的) 교화’를 추진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재만조선인 교육도 그 지도요령에 입각해서 만주국 국민화 교육을 지향했다. 실제로, 재만조선인 교육은 1937년 11월 만주국의 치외법권 철폐 및 부속지 행정권 이양에 관한 일만협정(日滿協定)이 체결되면서 최종적으로 만철 부속지 14개 보통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는 전부 만주국으로 이관한다는 ‘재만조선인자제교육행정권처리요강(在滿朝鮮人子弟教育行政權處理要綱)’을 결정했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았다.¹⁷⁾

- (1) 방침: 재만조선인의 자제(子弟) 교육(초등교육)은 반드시 일본인 본

17) 조선총독부와 만주국은 1937년 10월 15일부터 18일까지 조선총독부에서 ‘치외법권 폐지에 따른 조선인 관계의 행정사무시설과 경비처리에 관한 건’을 협의했다[滿洲國協會中央本部調査部編, 1943, 『國內に於ける鮮系在國民實態』, 104~109쪽].

질의 만주국 결성분자로 건국 취지에 일치하는 교육을 실시한다.

(2) 국기 및 국가: 일본인의 본질을 상실하지 않도록 최소한 4대 명절에는 국기 게양식을 거행하고, 국가를 합창해야 한다. 교육칙어를 봉독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반간의 별도로 정하는 방침에 따른다. (3) 경비: 현상(現狀)을 계승하고 1938년 1월 1일부터 만주국 신학제에 입각해서 필요한 준비를 한다. 단, 앞서 교육방침을 고려해서 교육의 실질을 현재의 교육상황 이하로 저하시키지 않도록 하는 한편, 교과서의 내용 및 교과서 편찬 등에 관해서 일본측과 협의한다. 경영 주체는 간도성의 함북도립 6개교의 경우, 현립(縣立)으로 전환하고, 나머지는 만주국 일반과 동일하게 한다. 그 외 지역에는 원칙상 학교조합을 설립해서 그 경영을 담당하게 하도록 하고, 학교조합을 설립할 수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현(縣), 가(街), 촌(村) 등 일반 행정단체가 경영하도록 한다. 단, 사립학교 경영은 점차 공립으로 전환·통합한다. 나아가 잡거(雜居)지대에는 특별한 시설을 하지 않고 만몽인(滿蒙人) 공학으로 한다. 경비는 현재의 수준 이하로 하락하지 않도록 경영 주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이와 관련한 만주국측과 조선총독의 보조금 또는 교부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그 때문에 재만조선인 교육의 경영주체, 감독, 경비, 교원, 시설 등은 전부 만주국 정부 관할로 재편되었고, 만철 부속지 14개 학교만이 일본대사관 교무부 소관으로 이관되었다.¹⁸⁾ 나아가, 일만 양측은 재만조선인의 교육비 부담과 관련해 별도로 '이양조선인학교경비부담구분(移讓朝鮮人學校經費負擔區分)의 건'에 합의했다. 만철부속지 14개 보통학교를 제외한 재만조선인 학생 수를 6만 3,868명, 연간 학생 1인당 교육비를 19원으로 산정했다. 소요 경비의 부담은 조선총독부 7원, 만주국 9원, 나머지 3원은 학교조합 혹은 학부모 수업료로 충당한다는 것이었다. 당시 만주국 일반학교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18원이었

18) 관련해서 박금혜는 “교육방침상 과거의 왕도교육이 사라지고 오히려 일본인 본질 하의 교육이 만주국 결성분자로서의 교육보다 더 부각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지적은 만주국 치외법권 철폐와 신학제 실시의 정치적 맥락을 크게 오해한 것으로 판단된다[박금혜, 2005, 「滿洲事變 후 日帝의 在滿朝鮮人教育政策 연구」, 『동방학지』 제130호, 258쪽].

다. 결국, 같은 협정에 따라 조선총독부는 우선 1938년분 재만조선인 아동의 교육비에 한정해서 44만 7,076원의 보조에 합의했다.¹⁹⁾

이상 1938년부터 전격 실시된 신학제에 입각한 재만조선인 교육은 1932년 만주국 건국 이래 방임주의를 특징으로 하는 ‘제국의 신민화’ 교육으로부터 만주국 직접관리의 ‘만주국의 국민화’ 교육으로 바뀌었다. 이는 만주국 건국에도 불구하고, 조선총독부의 지원과 감독에 따라 상대적 자율성의 민족 방임주의 교육체제로부터 신학제에 입각한 만주국 관할의 만주국 국민화 교육체제로의 전환이었다. 그 결과, 재만조선인의 교육은 민족교육과 함께 학교 운영의 자율성마저 상실하고 말았다. 결국, 재만조선인은 재만일본인과는 달리 만주국이 내세우는 민족협화정책에 따라 여타 민족과 동일하게 획일적인 만주국 국민화 교육을 강요당하게 되었다.

2. 재만조선인 교육의 실태와 추이

다음은 1938년 신학제에 입각한 재만조선인 교육의 실태다. <표 1>과 같이 재만조선인의 취학 아동 수는 1937년 6만 3,868명에서 1938년 10만 212명, 1939년 10만 6,794명, 1940년 13만 85명으로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 추이는 1936년에 비해 1941년에 이르러 학교 수는 2.2배, 학생 수는 6배로 증가했고, 취학률은 조선내의 33%를 크게 상회하는 78%를 기록했다.²⁰⁾ 또한 학생 1인당 교육비도 1937년 19원에서 1938년 23.7원 그리고 1940년 29.5원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만주국 혹은 조선총독부의 교육비 보조는 1937년 중일전쟁 이후 급격한 물가상승에 크게 못미치는 것이었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일층 가중시켰다. 실제로, 1940년 당시 재만조선인 아동 1인당 교육비 내역은 <표 2>와 같았다. 결국, 1937년 이래 조선인의 만주 이민자 증가와 함께 취학 아동도 급증하면서 1938년 이후 재만조선인의 교육 여건도 크게 악화되었음을 시사한다.

19) 倉島至, 1941. 10, 「滿洲國に於ける朝鮮人教育」, 『朝鮮』 제317호.

20) 滿洲國協和會中央本部調査部 編, 1943, 『國內に於ける鮮系在國民實態』, 36쪽.

〈표 1〉 만주국의 치외법권 철폐 이후 재만조선인 교육과 연차별 추이

(단위: 명, 원)

연차별	설립주체	학교 수	학급 수	교사 수	학생 수	학교당 학생 수	학급당 학생 수	학교경비			학교경비			
								경상비	임시비	소계	경상비	임시비	소계	
1938년 (6월)	공립	409	927	967	46,503	114	50	-	-	-	-	-	-	-
	조합	413	857	818	35,541	86	41	-	-	-	-	-	-	-
	사립	230	411	417	18,168	79	44	-	-	-	-	-	-	-
1939년 (2월)	소계/평균	1,032	2,195	2,202	100,212	95	46	1,089,063	521,941	1,611,004	18,45	5,21	23,66	-
	공립	366	1,097	1,147	56,288	154	61	85,530	-	-	15,11	-	-	-
	조합	440	1,019	1,054	44,932	102	44	1,322,494	-	-	29,44	-	-	-
1940년 (9월)	사립	19	101	138	5,574	293	55	143,697	-	-	25,78	-	-	-
	소계/평균	825	2,217	2,339	106,794	129	48	2,316,921	-	-	21,70	-	-	-
	공립	561	1,392	1,111	71,089	127	51	1,351,954	123,194	1,475,148	19,02	1,73	20,75	
1941년 (12월)	조합	537	1,306	1,206	54,140	101	41	1,414,575	871,952	2,286,527	26,13	16,11	42,24	
	사립	34	80	79	4,856	143	61	59,477	10,228	69,705	12,25	2,11	14,36	
	소계/평균	1,132	2,778	2,396	130,085	116	47	2,876,007	1,006,373	3,881,380	21,72	7,73	29,45	
1942년 (4월)	공립	591	1,625	1,635	76,557	130	47	2,474,526	1,044,513	3,519,039	32,32	13,64	45,96	
	조합	567	1,267	1,309	53,378	94	42	2,143,265	619,025	2,762,290	40,15	11,60	51,75	
	사립	50	110	115	6,400	128	56	113,081	33,014	146,095	17,69	5,16	22,85	
1942년 (4월)	소계/평균	1,208	3,002	3,059	136,335	113	45	4,730,872	1,696,552	6,427,424	34,70	12,45	47,15	
	공립	701	1,702	1,678	82,539	118	48	2,955,256	517,633	3,472,889	35,80	6,27	42,07	
	조합	594	1,395	1,353	59,213	100	42	2,244,460	1,022,902	3,267,362	37,90	17,27	55,17	
1943년 (4월)	사립	40	96	100	6,099	132	64	134,004	19,060	153,064	21,97	3,13	25,10	
	소계/평균	1,335	3,193	3,131	147,851	111	46	5,333,720	1,559,595	6,893,315	36,07	10,54	46,61	
	공립	788	1,956	2,090	99,283	126	51	3,583,747	290,673	3,874,420	132,73	5,08	137,81	
1943년 (4월)	조합	647	1,549	1,564	63,047	97	41	2,944,558	961,667	3,906,225	46,70	15,25	61,95	
	사립	44	102	101	5,954	135	58	155,193	19,478	174,671	26,05	3,27	29,32	
	소계/평균	1,479	3,607	3,755	168,284	113	46	6,683,498	1,271,818	7,955,316	39,72	7,56	47,28	

* 주: 일반 민계(滿系)학교 조선인 재학생은 1940년 145명, 1941년 1,816명, 1942년 2,399명, 1943년 4,209명이지만, 그의 실태는 불명.

* 자료: 滿洲帝國民生部教育司, 1943, 『滿洲帝國學事要覽』, 98~99쪽.

〈표 2〉 1940년 말 재만조선인 아동의 교육실태

(단위: 원)

구분	조합보통	공립보통	사립보통
학교 수	440	366	19
학급 수	1,019	1,097	101
직원 수	1,054	2,141	148
아동 수	44,922	56,288	5,374
총경비	1,322,694	850,531	145,697
아동 1인당	29	15	26

* 자료: 崔昌國, 1941. 5, 「在滿朝鮮人教育問題」, 『春秋』 제2권 제4호, 春秋社.

1938년 당시 하얼빈 시공서(市公署)에 따르면, 하얼빈 역내의 조선인 교육은 학교 보조금이 적어서 학교의 유지·경영이 곤란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교원 대우도 지극히 열악했다. 특히, 일본인 학교와 달리 조선인 교원에 대한 차별 대우는 재만조선인의 불만을 크게 증폭시켰다. 그 결과, 재만조선인 학교조합의 사무원 임명은 물론이고 교직원에 대한 봉급과 수당 지급도 수개월 체납되는 등 “참담한 곤경”²¹⁾의 상황이었다. 이처럼 열악한 재만조선인의 교육재정은 일본인 학교와의 격차 확대와 함께 졸업생 진로에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했다. 따라서 치외법권 철폐 이후 재만조선인 교육문제는 1940년 7월 개최된 협화회 전국연합협의회 주요 안건(제29호, 재만조선계 교육에 관한 건)이 되었다.²²⁾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학년의 문제다. 신학제는 학기의 시작과 종료가 1월 1일부터 12월 30일이었던 반면, 조선에서는 4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였다. 이는 재만조선인 졸업생의 조선지역 상급학교 진학을 저해하는 것이었다.

둘째, 취학 아동의 연령 문제다. 조선에서 취학 아동의 연령은 만 6세였던 반면, 만주국은 만 7세였다. 또한, 만주국의 학기 시작이 1월이었기 때문에 경

21) 田中隆一, 2007, 『滿洲國と日本の帝國支配』, 有志舎, 157쪽.

22) 崔昌國, 1941. 5, 「在滿朝鮮人教育問題」, 『春秋』 제2권 제4호, 春秋社.

우에 따라서는 아동의 취학 지연을 초래할 수도 있었다. 예를 들어 1935년 2월 생은 조선에서 1941년 취학이었으나, 만주국에서는 1943년에 이르러서야 취학이 가능했기 때문이었다.

셋째, 교과서 문제다. 교과서는 조선에서 유통되는 교재를 만주국에서 재발행해서 사용했다. 따라서 보조 교재의 부족은 물론이고, 만주국 특유의 기후와 풍토 등을 반영한 인문적인 내용도 상이했다. 더욱이 교재의 지질, 표지, 인쇄 등도 극히 불량하고 배급마저도 지체되었다.

넷째, 중등학교의 입학 시험문제다. 중등학교 진학 시험은 일반 양문으로 출제되었고, 그 답안 작성도 일반 양문 가운데 선택이었다. 같은 문제는 재만조선인 학교 졸업생의 조선 현지 중등학교 진학을 저해했다.

다섯째, 교사의 부족과 자질의 문제다. 재만조선인 학교의 교사 소질이 조선보다 크게 열등했다. 이는 교사의 유자격자가 부족해서 소학교 졸업자의 교원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더구나 교사의 수마저 턱없이 부족했고, 그 대우도 극히 열악했다.

여섯째, 학교의 재정문제다. 1937년 당시 재만조선인 학교의 교육비는 학생 1인당 19원이었고, 1939년 2월에 이르러 21원(조합학교 29원, 간도성 공립 32원, 기타 공립 29원)을 기록했다. 또한, 조선총독부의 재만조선인 학교 교육비 보조액은 1937년 교육행정권 이양 당시 1938년분에 한정된 44만 7,076원(7월 × 아동수 6만 3,863명)이었고, 그 이후에 대해서는 어떤 협약도 없었다. 따라서 1939~1940년도에 대해서는 1938년분 보조액을 매년 연장해서 적용하는 상황이었으며, 학부모회와 학교조합의 부담액도 더욱 가중되었다.

따라서 협화회 전국연합협의회는 만주국 교육 당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재만조선인 교육 개선안을 제출했다. 그 요지는 재만조선인 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조선의 소학교령과 규정을 본위로 해서 만주국 신학제의 적용을 요청했다.²³⁾

23) 협화회 전국연합협의회에 제출된 재만조선인 교육에 대한 안건은 1937년도 '재만조선인 교육문제 해결 촉진의 건', 1938년도 '교육 일원화에 관한 건', 1941년도 '재

3_ 만주국과 조선총독부의 반응과 대응

이상, 1938년 1월 만주국의 신학제에 입각한 재만조선인 교육은 급격한 하락 저하로 이어지면서 재만조선인은 물론이고 재조조선인 사회의 격한 반발을 초래했다. 이는 재만조선인의 교육이 재만일본인을 비롯해서 현지조선과 만철부 속지 유보학교에 비교해서 절대적인 양질 저하를 초래했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1938년 말 치외법권 철폐 이후 신학제에 입각한 재만조선인 교육에 대한 우려는 다음과 같았다.²⁴⁾

재만조선인 동포는 100만에 이르지만, 모두가 빈약하고 불충분한 초등 교육기관이며, 중등교육기관으로서의 간도, 봉천 양 지역 2~3에 불과하다. 전문교육 이상의 기관은 하나도 없다. 우리는 빈약한 경제력으로 중등교육 이상의 문제는 염두에 둘 수도 없겠지만, 최소한의 교육으로 초등교육이라도 제대로 받을 수 없다는 사정이 심히 유감이다. 초등교육에 대해서는 치외법권 철폐 당시 일만협정에 ‘조선인초등교육비처리요강(朝鮮人初等教育費處理要綱)’이란 것이 있었고, 이는 학교조합비로 아동 1인당 3원을 부담하고, 조선측 7원과 만주측 9원(간도는 18원)을 보조하기로 했다. 즉, 아동 1인당 19원의 경비로 초등교육을 운영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어떠한 표준으로 아동 1인당 19원으로 정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표준이 적절한 것은 아니다. 실제로, 조선에서도 학급당 평균 1,300~1,400원으로 이는 학급 아동을 70명이라 하더라도 1인당 평균 19원으로는 경영이 어려운데 조선과 같이 조선인민의 부락을 형성하지 못하고, 산재(散在) 혹은 점재(點在)하는 만주에서 학급당 70명을 바라다거나 또한, 가령 학급 당 70명이라 하더라도 물가가 높고, 동계(冬季)의 연료가 다량으로 소비되는 만주에서 조선의 평균비용으로 충당할 수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三尺童子)라도 알만한 일일 것이다.

만 선계 교육에 관한 건’, 1942년도 ‘선계 학교 교육 개선에 관한 건’, 1943년 ‘교육진흥 및 제도개선에 관한 건’이었다[滿洲國協會中央本部調査部 編, 1943, 『國內に於ける鮮系在國民實態』, 36쪽].

24) 牧丹江省公署洪永善, 1938. 11. 28, 「在滿朝鮮人の教育問題」, 『朝鮮通信』.

이상, 1938년 이후 재만교육인 교육문제의 핵심은 만주국 현지의 교육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열악한 학교 재정과 졸업생의 상급학교 진학 문제였다. 따라서 재만조선인은 각 지역의 협화회 지부를 통해서 만주국측에 대해 학교의 재정 확충과 함께 조선총독부에 대해서도 교육보조금 증액을 요청했다. 그러나 민족협회를 국시로 하는 만주국 정부는 재만조선인 아동에 한정한 교육비 증액에는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만주국은 협화회 전국연합협의회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찬성할 수 없다. 무리하다, 노력하겠다”²⁵⁾는 입장만을 반복했다.

또한, 재만조선인은 협화회 혹은 재만조선인 유력자를 경유해서 조선총독부 앞으로 재만조선인의 아동 수 증가에 따른 보조금 증액을 반복해서 요청했다. 그러나 당시 『만선일보』에 따르면, 1938년 말 조선총독부는 “이미 치외법권이 철폐된 지금에 이르러 치외법권 철폐 당시 아동 수에 대한 7원 보조도 이미 양자로 보낸 자식에 대해 지나치다고 우려하는 상황에서 양자로 보낸 이후 태어난 그 자손까지도 보조해 달라는 것은 득롱망축(得隴望蜀: 농나라를 얻고 나니 촉나라마저 얻고 싶다는 뜻으로, 인간의 욕심에 끝이 없음을 비유한 것)²⁶⁾이라는 입장이었다.

III. 재만조선인교육후원회의 활동과 성과

한편, 1938년 이후 재만조선인 사회는 아동교육의 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재만조선인교육후원회(在滿朝鮮人教育後援會)’를 결성해서 만주국과 조선총독부를 상대로 재만조선인 아동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청원 활동을 전개했다. 이

25) 崔昌國, 1941. 5, 「在滿朝鮮人教育問題」, 『春秋』 제2권 제4호, 春秋社.

26) 牧丹江省公署洪永善, 1938. 11. 28, 「在滿朝鮮人の教育問題」, 『朝鮮通信』.

하에서는 재만조선인교육후원회 활동과 성과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자.

1_ 재만조선인교육후원회의 활동

앞서 재만조선인의 교육여건 개선에 대해 협화회는 물론이고 재만조선인 유력 자층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만주국은 물론 조선총독부도 서로 그 책임을 전가하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따라서 1940년 8월 23일 재만조선인교육후원회는 재만조선인 교육문제의 개선을 목적으로 회장 김응두를 단장으로 대표단을 결성하고 경성에 파견했다. 그 목적은 조선에서 의무교육 실시 결정에 따른 재만조선인 교육격차의 확대와 교육의 양질 저하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재만조선인교육후원회는 재만조선인 교육기관의 일원화, 교육 내용의 충실, 교육비의 보조 증액을 요청했다. 그 가운데 교육비 보조 증액은 당시 학생 1인당 교육비 22원 93전을 만철 보유학교 학생 1인당 교육비 66원(참고로, 당시 만주국에서 재만일본인 아동 1인당 교육비 173원, 중국인 아동 12원) 수준으로 인상해 줄 것이었다.

또한, 재만조선인교육후원회는 조선총독부 앞으로 당시 만주국이 다른 민족과 교육비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을 고려해서 당시 조선총독부 보조금 66만 5,800원과는 별도로 206만 6,216원을 증액해서 학생 1인당 경비를 38원(학생 수 16만 명, 총독부 13원, 만주국 17원, 조합 8원) 수준으로 인상해 줄 것을 요청했다.²⁷⁾ 추가로 신경, 하얼빈, 길림, 통화, 목단강, 복안, 봉천, 간도, 안동지역의 9개 중등학교 설립자금 85만 원의 지원(지역주민 81만 원, 만주국 123만 원으로 합계 289만 원)을 요청했다. 당시 중등학교 설립 문제는 교육행정권 이관 협정 당시에는 논의되지 않았던 문제였지만, 이후 초등학교 졸업생 증가에 따른 상급학교 진학이 재만조선인 사회의 또 다른 교육문제였기 때문이었다.²⁸⁾ 재만조선인 중등학교 실패는 <표 3>과 같이 만주국 전체에 대해 학교 수

27) 『每日新報』, 1940. 8. 28.

28) 재만조선인 중등학교 설립과 관련해서는 1939년 10월 10일 만주국 중앙본부에서

〈표 3〉 1940년대 재만조선인 중등학교의 추이

(단위: 교, 명, %)

연차별	학교 수			학급 수			학생 수			교사 수		
	전국계	조선인	비율	전국계	조선인	비율	전국계	조선인	비율	전국계	조선인	비율
1940	267	15	5.0	1078	68	6.0	54,973	4,743	8.0	2,910	117	4.0
1941	282	18	6.0	1714	111	9.0	65,221	5,790	8.0	3,419	160	4.0
1942	289	22	7.0	1649	123	8.0	84,060	7,997	9.0	4,199	237	5.0
1943	301	25	8.0	1791	162	9.0	92,711	12,442	13.0	4,530	280	6.0

* 자료: 滿洲帝國民生部教育司, 1943, 『滿洲帝國學事要覽』.

5%, 학급 수 6%, 학생 수 8%, 교사 수 4%에 불과했다.

이러한 재만조선인교육후원회의 요청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반영한 것이었다. 조선총독부는 1937년 11월 5일 치외법권 철폐에 따른 재만조선인 교육행정권의 만주국 이관에 대신해서 이관 대상 재만조선인 학교에 대해 일정 부분의 교육비 분담을 협약했다. 당시 양측은 조선인 아동 1인당 연간 소요경비를 평균 19원으로 산정해서 그 가운데 조선총독부 7원, 만주국 9원, 학교조합 조합비 3원의 분담비율을 결정했고, 일반 공립학교 수업료는 학부형이 전액을 부담한다는 것이었다. 같은 협정은 1937년 12월 1일부터 1938년까지 1개년에 한정된 것이었고, 1939년 이후에 대해서는 그 어떤 논의도 없었다.²⁹⁾ 관련해서 당시 만주국 민생부교육사(民生部教育司)가 공포한 '이양조선인학교경비부담

민생부 개척총구, 선만척식, 총무성 그리고 조선인 대표 18명이 참석한 '조선인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의 개선'에 관한 논의가 있었고, 그 결과 조선인 대표 김응두와 황명희 그리고 재만일본인 대사관의 시모쥬[下條] 사무관을 경성에 파견해서 협화회 전국연합협의회에서 결의한 재만조선인 교육문제의 실상을 조선총독부에 전달하는 동시에 지원 교섭을 추진했다[『每日新報』, 1939. 10. 13].

29) 실제로 조선총독부는 1939년도분 재만조선인의 교육비 보조를 1939년 12월에 이르러 결정했다. 그 내역은 안동지역 보통학교조합 3개교를 비롯해서 13개 보유보통학교조합에 대한 19만 7원의 교육비 보조의 결정이었다. 그 가운데 1기분 6만 3,331원을 보조하고, 이후 2~3기로 나누어 12만 6,676원을 보조한다는 것이었다[『每日新報』, 1939. 12. 10].

구분(移讓朝鮮人學校經費負擔區分)'은 다음과 같았다.³⁰⁾

(1) 1937~1938년에 걸쳐 일본측은 이양 조선인 초등교육비로 아동 1인당 연 7원으로 산정해서 44만 7,076원(아동 수 6만 3,868명)을 부담한다. (2) 만주국측은 (1)의 경비로서 간도성(間島省) 내의 현재 함경북도 도립보통학교 아동에 대해 1인당 18원으로 7만 4,538원(4,141명), 기타 아동에 대해 9원으로 산정해서 53만 7,543원(5만 9,727명), 합계 61만 2,081원을 부담한다. (3) 1937~1938년 양 연도 조선인 학교조합은 아동 1인당 3원을 부담한다. 학교조합을 설치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2)항의 부담금을 수업료로 징수해서 충당한다. (4) 각 학교의 예상 할당액은 전항 각호에서 산정한 근거에도 불구하고, 현황에 기초해서 결정한다.

한편, 1940년 8월 31일 재만조선인교육후원회 대표단은 당시 만주국 명예 총영사와 경성방직 사장을 겸했던 김연수가 반도호텔에서 주최하는 '재만조선인교육문제간담회(在滿朝鮮人教育問題懇談會)'에 참가했다. 고원훈, 한규복, 김시권, 오극선, 최린, 한상룡,³¹⁾ 김사연, 김활란 등 현지 조선인 유력자들이 참가한 간담회에서 '재만조선인교육후원회'의 결성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현지조선에서 결성된 재만조선인교육후원회는 윤치호를 위원장으로 김연수, 고원훈, 오극선, 최린을 초대 위원으로 선임했다.³²⁾ 재만조선인교육후원회의 역할은 재만조선인의 교육문제 개선과 해소를 위해 조선총독부측과의 다양한 교섭과 자문을 담당하는 것이었다.

2_ 조선총독부의 대응과 입장 변화

현지조선에서 재만조선인후원회 활동의 결과, 조선총독부도 더 이상 재만조선

30) 滿洲帝國民生部教育司, 1941, 『鮮系國民教育概況』, 29~30쪽.

31) 韓翼教編, 1941, 『韓相龍君を語る』, 韓相龍氏還曆記念會.

32) 『每日新報』, 1940. 8. 31.

인의 교육문제를 수수방관할 수 없게 되었다. 실제로 1937년 중일전쟁 발발과 그 장기화에 따른 재만조선인을 비롯한 현지조선인의 전시동원과 협력이 절실한 와중에서 재만조선인 교육문제의 현재화는 현지조선의 식민통치를 저해하는 중대 정치적 사안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1938년 이후 재만조선인에 대한 조선총독부의 정책도 일정한 변화가 불가피했다. 실제로 당시 미나미총독은 1939년 말 국민정신총동원 임원총회에서 일만 양국간에 재만조선인의 권리 의무 관계의 조정과 법적 지위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³³⁾

한인, 몽골인, 만인은 만주국의 신민(臣民)이다. 일본인이 만주국의 관리가 되고, 주민이 되었다하더라도 이는 만주국의 신민이 아닌 만주국의 인민이다. 만주인, 몽골인, 한인 혹은 백계러시아인들은 일본제국의 신민이 아닌 만주국의 신민이다. 내선인(內鮮人)은 만주국의 신민이 아니다. 만주국에 근무 중사하고 생활하는 자는 만주국의 인민일 뿐이다. 따라서 내선일체(內鮮一體)의 근본 취지는 만주국에서도 확립되었다.

미나미총독의 견해는 재만조선인이 ‘만주국 국민’이 아닌 ‘만주국 인민’이며, 동시에 ‘일본제국의 신민’이라 규정함으로써 일만(日滿) 간에 조선인의 권리 의무 관계를 새롭게 조정해서 내선일체의 원칙이 만주국에서도 관철되었다는 입장이었다. 이는 1937년 치외법권 철폐 당시 재만조선인을 ‘만주국 국민’임을 강조했던 만주국의 민족정책과 크게 배치되는 것으로, 재만조선인을 중국인을 비롯한 여타 민족과 분리해서 그 정치적 위상을 재고해야 한다는 논이다. 관련해서 1937년 치외법권 철폐 당시 재만조선인을 ‘제국의 신민’이기에 앞서 실질적인 ‘만주국 국민’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강조했던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미나미총독의 입장은 1937년 중일전쟁의 발발과 충격을 반영한 제국차원의 황민화정책 그 다름이 아니었다.

결국, 미나미총독의 언설은 재만조선인의 교육문제가 조선과 만주를 포함

33) 國民精神總動員朝鮮聯盟, 1939. 7, 『總動員』 제1/2 합번호.

하는 식민통치의 구조연관으로 제국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요 정치적 사안이었음을 시사한다. 그래서 조선총독부 학무국장은 대표단을 안내해서 육군지원병 훈련소를 견학시키는 한편, 정무총감을 비롯한 각국 담당자와의 회합을 통해서 재만조선인 교육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배려를 약속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실제로 1940년 11월 조선총독부는 재만조선인의 교육문제 개선을 위한 실사작업의 일환으로 대규모 조사단을 파견했다. 조사단은 3주간에 걸쳐 동만주 소재 재만조선인 학교의 교육 실태를 파악해서 본격적으로 대응책을 모색하고자 했다.³⁴⁾

3_ 재만조선인 교육행정권의 환원론과 일만공동관리론

결국, 1937년 중일전쟁의 발발과 장기화는 재만조선인의 정치적 위상에 일정한 변화를 시사한다. 중일전쟁 발발 이후 국민의 90%를 차지하는 중국인의 민심 이탈과 재만조선인의 징병제 시행은 만주국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불가피하게 했다. 실제로, 중일전쟁의 발발과 함께 만주국의 ‘북지사변에 관한 당국의 선명(宣明)’을 비롯해서 관동국장의 고시, 만주제국 국무총리의 성명, 제국정부의 성명, 관동군사령관 겸 일본전권대사의 유고, 지나(支那) 주둔군의 성명, 조선총독의 훈시, 조선총독부의 유언비어 취체, 만철총재 훈유 등이 끊이지 않았다.

또한, 1937년 7월 19일 협화회 신경지부는 ‘총후(統後)에 끊어 오르는 반도인의 적성(赤誠)’이라는 주제로 ‘재신경조선인각단체시국간담회(在新京朝鮮人各團體時局懇談會)’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명예로운 일본국민의 일원인 우리 조선인은 황은(皇恩)에 대한 의무를 다할 수 있는 하늘이 내린 기회임을 자각하고 총후에 적성을 다하기 위해 노약자는 물론이고 평화의 사도(使徒)인 부녀도 모두 함께 국난 극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염원한다. 재경 조선

34) 『毎日新報』, 1940. 11. 27.

인 동포여! 일제히 꺾기하라”³⁵⁾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당시 간담회와 관련해서는 만주와 조선 각지로부터 지지성명이 잇달았고, 국방헌금과 애국헌금이 속속 담지했다. 또한, 현지조선에서도 내선융화의 만주국 확산과 함께 의용군을 조직하자는 청년들의 미담이 널리 유포되기도 했다.

한편, 1940년 초반 재만조선인 지식인층 일부에서 재만조선인의 교육행정권 환원론이 제기되었다. 그 내용은 만주국이 관장하는 재만조선인의 교육행정권을 조선총독부로 환원해야 한다는 논의였다. 그 배경에는 (1) 재만일본인 교육행정권의 만주국 이관 협의의 부결, (2) 조선에서 의무교육제와 지원병제의 실시, (3) 조선의 교육여건과의 현격한 질적 차이 때문이었다.³⁶⁾ 실제로, 1938년 식민지 조선에서 제3차 조선교육령 공포와 함께 의무교육제 도입은 내선차별을 철폐한다는 명분이었기 때문에 재만조선인의 교육문제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이었다.

그러나 재만조선인 교육행정권 환원론은 재만조선인 사회 내부로부터 일정한 반발에 직면했다. 1937년 중일전쟁 발발 이후 건국 정신의 완만화(緩慢化)와 희박화(稀薄化)에 따른 제2의 건국이 요청되는 정치경제적 상황에서 치외법권 철폐 정선에 역행할 수는 없기 때문에 현상유지와 함께 제도개선을 꾀하자는 반론이었다. 그래서 새롭게 대두한 것이 양측의 의견을 절충한 이른바 재만조선인 교육의 ‘일만공동관리론(日滿共同管理論)’이었다.³⁷⁾ 중앙(中央), 성(省), 현(縣) 정부 산하의 학교조합을 정비해서 학교경영을 담당하게 하고, 그 관리 감독은 일만 정부가 공동으로 담당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는 만주국의 전면적인 이해와 함께 선만 양측의 긴밀한 협의가 불가결한 사안이었다.

35) 全滿朝鮮人民會聯合會, 1937. 8, 『全滿朝鮮人民會聯合會會報』 제5권 제8호·제54호.

36) 南朝鮮總督談, 1938. 7, 「志願兵制度實施に就て」, 『朝鮮』 제275호.

37) 崔昌國, 1941. 5, 「在滿朝鮮人教育問題」, 『春秋』 제2권 제4호.

Ⅲ. 선만 수뇌의 신경회담과 문교의 선만일어

1941년 4월 미나미총독은 재만조선인 교육문제 해결을 위해 만주국 수도 신경을 방문해서 수뇌회담을 개최했다. 선만 수뇌의 신경회담은 징병제 실시를 비롯한 조선인의 적극적인 전시협력이 요청되는 상황에서 재만조선인의 교육문제가 중대한 정치적 사안이었기 때문이었다. 이하에서는 선만 수뇌의 신경회담과 재만조선인 교육문제에 대한 협의 내용 그리고 그 실태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자.

1_ 신경회담의 경위와 내용

미나미총독은 1941년 4월 조선총독 취임 이후 처음으로 만주국 수도 신경을 공식 방문했다. 미나미총독의 신경 방문은 1941년 4월 9일 경성을 출발해서 안동을 거쳐 10일 오후 신경에 도착해서 만주국의 수뇌부와 선만관계 현안을 논의한 후에 연길, 도문, 청진을 거쳐 4월 18일 귀경하는 일정이었다.³⁸⁾ 미나미총독의 신경 방문 목적은 1936년 10월 29일 도문회담에서 양측 수뇌가 합의했던 “선만일어 관계의 강화와 조장”³⁹⁾이었다. 실제로, 미나미총독은 4월 11일부터 장경혜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타게베[武部]총무장관 등 만주국 정부의 수뇌진과 선만관계의 주요 현안을 협의했다. 또한, 미나미총독은 4월 17일 당시 만주국의 실질적인 해계모니였던 우메즈 요시지로[梅津美治郎] 관동군사령관과 ‘신경회담’ 혹은 ‘제2차 선만협정(鮮滿協定)’을 논의했다.

신경회담의 주요 의제는 재만조선인의 교육문제, 개척민 문제, 압록강수력발전 문제 등이었지만, 역시 “무엇보다도 시급한 해결을 요하는 것은 재만조선

38) 『毎日新報』, 1940. 4. 19.

39) 『毎日新報』, 1941. 4. 23.

인 교육문제”⁴⁰⁾였다. 관련해서 미나미총독은 4월 12일부터 만주국 수도 신경을 비롯한 재만조선인의 여러 교육시설을 시찰하는 한편, 민생부교육사장(民生部教育司長)으로부터 재만조선인의 교육 현황을 보고받기도 했다. 나아가, 1941년 4월 22일 선만 양측은 ‘미나미·우메즈[南·梅津]회담’ 혹은 ‘신경회담’의 성과라 할 수 있는 6개 항목의 지도요강을 발표했다.⁴¹⁾ 그 요지는 ‘동아공영권의 근간으로 일만지(日滿支) 일체의 중추인 일만일덕일심(一滿一德一心)의 국시에 기초해서 선만일여 관계를 강화한다’는 것이었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았다.⁴²⁾

(1) 선만일여 정신은 제1차 도문회담 이래 선만 간의 국방, 행정, 경제, 산업, 교통, 무역 등 조장해 왔던 성적을 고려해서 금후 이를 일층 강화·조장한다. (2) 만주측은 내선일체의 조선통치 근본방침을 존중하고, 이에 전폭적인 협력과 동시에 조선측에서는 만주국의 일덕일심(一德一心)의 건국정신, 민족협화의 지도방침을 존중하고, 이에 전면적으로 협력한다. (3) 일본 국적의 재만조선인은 황국신민의 본질을 기초로 선량한 만주국 인민으로서의 교양을 함양한다. (4) 선만 간 안전 처리에 대해서는 선만일여 정신에 따라 문제마다 실제에 부응해서 협의·해결한다. (5) 선만 간 상호인식의 강화를 위해 유효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6) 선동적인 민족의식을 고조시켜 반도의 황민화를 방해하고, 만주국의 민족협화 지도를 파괴하고, 총후(統後)의 혼란을 기도하는 사상동향에 대해서는 엄중히 취제한다.

지도요강의 구체적인 실시 방침은 (1) 선만 간 안전의 현지 처리를 위해서 간담회와 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2)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인사교류를 촉진한다. (3) 선만 관공리 및 민간 유력자의 상호 현지시찰과 간담회를 개최해서 현지 실정에 대한 상호인식을 강화한다. (4) 매년 선만

40) 『每日新報』, 1941. 5. 20.

41) 朝鮮總督府, 1941. 5, 『朝鮮』 제312호.

42) 『每日新報』, 1941. 4. 23.

상호의 경제, 교육, 개척 등 각 부문에 걸쳐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긴밀한 연락을 도모한다. (5) 장래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항상 지체없이 상호 통보한다는 것이었다. 신경회담의 성과는 재만조선인 교육을 만주국의 민족협화정책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선총독부가 추진하는 내선일체와 연계하는 선만일여의 문교정책으로 전환한다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해서 당시 『조선공론』 사장 사토키치 모토키[里吉基樹]는 “이로써 오족화합(五族協和)의 만주국에서 조선인의 지위와 자격이 확실히 결정되었다. …… 이들 양자의 양해는 재만조선인을 충량한 만주국 인민으로 그 치정(治政)하에安居樂業할 수 있는 방책이 확연하게 결정되었다. 종래 막연했었던 재만조선인의 지위가 확립된 것은 획기적인 성과로 특필할 만한 것”⁴³⁾이라 신경회담의 성과와 의의를 높이 평가했다. 결국, 신경회담은 형식적으로 1936년 도문회담의 계승과 선만일여 슬로건에 입각한 선만관계의 긴밀화였지만, 역시 중요 의제는 양측이 현실적으로 당면한 재만조선인의 교육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이었다. 결국, 1941년 신경회담을 계기로 선만 양측은 재만조선인을 ‘만주국의 국민’이기에 앞서 ‘제국(황국)의 신민’임을 확인했다. 이는 『조선공론』 사장 사토키치의 지적과 같이 만주국에서 재만조선인의 위상이 크게 재고되었음을 시사한다.

2_ 조선총독부의 대응과 ‘문교의 선만일여’

조선총독부는 신경회담에서 논의한 재만조선인 교육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을 위해 1941년 5월 5일부터 조선총독부 학무국장을 단장으로 2개반의 교육시찰단을 결성해서 만주국에 파견했다.⁴⁴⁾ 교육시찰단 제1반은 도문, 연길, 목단강, 하얼빈 지역의 재만조선인 교육시설을 시찰해서 신경으로 이동했고, 제2반은 안동과 봉천 일대의 조선인 학교를 시찰한 뒤에 5월 15일 만주

43) 里吉基樹, 1941. 5, 「鮮滿一如の再認識」, 『朝鮮公論』 제338호.

44) 『毎日新報』, 1941. 5. 20.

국 수도 신경에서 제1반과 합류하는 일정이었다. 이후 시찰단은 만주국 국무원 방문과 함께 5월 16일 신경 소재 일만군인회관(日滿軍人會館)에서 만주국 문교부 실무자와 ‘선만교육연락회의(鮮滿教育連絡會議)’⁴⁵⁾ 설치를 비롯한 재만 조선인 교육정책의 확립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참석자의 면면은 조선측의 경우, 조선총독부 학무국장과 외사부장을 비롯한 8명이었고, 만주국측은 민생차장을 비롯한 만주국 정부관계자 5명, 관동군 관계자 2명 그리고 재만교육부, 주만일본대사관, 총무청, 개척총국, 협화회 관계자 등이었다. 간담회의 요지는 다음과 같았다.⁴⁶⁾

강덕(康德) 4년 치외법권이 철폐되자 조선인 교육기관 관리도 만주국으로 이관되었으며, 그 감독권을 만주국이 장악했고, 만주식 교육을 받게 되는 관계로 조선인측(朝鮮人側)에서는 ‘우리는 내선일체(內鮮一體)의 이상에 비추어 조선에 있는 학동들과 동일한 교육을 받아야 할 것인데 만주인과 동일한 교육 취급을 받게해서는 안되겠다’고 수차례에 걸쳐 선만 양 당국에 진정해 왔다. 따라서 만주국 당국에 이관 이후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속출하면서 선만 양 당국의 큰 ‘트리블’이었다. 따라서 금변 미나미[南], 우메즈[梅津]의 회담을 근간으로 지난 5월 16일 신경 일만구민회관에서 전후 두 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개최했다.

교육시찰단의 만주국 방문 결과, 1941년 5월 20일 선만 양측은 지난 신경 회담에서 합의한 지도요강 제3항(일본 국적을 갖는 재만조선인은 황국신민의 본질에 기초해서 선량한 만주국 인민으로 교양한다)에 기초해서 “일본 국적의 재만조선인은 일본 황국신민의 본질을 따라 선량한 만주국 인민으로 교양을 함양한다. 이를 위해 인성, 풍속, 습관의 차이를 달리는 전통을 급격히 변경하지 않고 점차 선도한다. 청소년 훈련학교의 생활 연성(鍊成)을 통해 가정 및

45) 『每日新報』, 1941. 5. 24.

46) 朝鮮總督府學務局視學官曹在鎬, 1941. 7. 1, 「在滿朝鮮人の今後教育, 在滿朝鮮人教育問題を爲한 視察團記」, 『三千里』 제13권 제7호.

사회에 침투하도록 한다”⁴⁷⁾는 요지에 입각해서 다음과 같은 ‘재만조선인 교육의 8대 방침’ 혹은 ‘선만일여의 문교정책’을 결정했다.⁴⁸⁾

- (1) 교육방침은 조선과 내지와 같이 황국신민의 연성(練成)에 주안(主眼)으로 두고, 만주국을 구성하는 인민으로 교양을 함양하게 한다.
- (2) 교과과정은 현재 이상으로 개편해서 황국신민의 연성에 치중한다.
- (3) 교과서는 조선의 초등학교교용을 사용한다. (4) 조선으로부터 다수의 교원을 파견한다. (5) 학교조합을 적극적으로 조직한다. (6) 교육경비를 조선총독부가 적극 보조한다. (7) 조선내 상급학교 진학을 원활하게 한다. (8) 매년 교육문제에 관한 선만간담회(鮮滿懇談會)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이상의 내용은 “만주국측이 종래 방임해 온 감이 없지도 않았던 조선의 교육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이에 따른 시설 확충을 꾀함과 동시에 조선측에서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의 약속”⁴⁹⁾이었다. 결국, 1939년 이래 협화회 전국연합협의회는 물론이고 조선인교육후원회가 제기했던 재만조선인 교육문제 대부분을 수용한 것이었다.

1941년 7월 21일 조선인교육후원회 회장 김응두가 재차 조선총독부를 방문해서 또 다른 재만조선인 교육문제의 개선을 진정했다. 그 요지는 재만조선인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경상비와 임시비 상당액을 증액 보조할 것과 사범학교 설립과 관련한 교원 양성에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⁵⁰⁾ 이어서 22일 만주국의 키다[木田] 교육사장은 조선총독부를 방문해서 재만조선인 교육문제의 최종 방침을 결정했다. 그 내용은 조선총독부의 보조금 증액, 선만 교원의 교류, 교원 양성의 지원, 교과서의 배급 지원, 국민학생의 조선내 전입학 허가, 중등학

47) 滿洲國協和會中央本部調査部編, 1943, 『國內に於ける鮮系在國民實態』.

48) 總督府學務局視學官曹在浩, 1941, 7, 「在滿朝鮮人の今後教育」, 『三千里』.

49) 『每日新報』, 1941, 5, 24.

50) 『每日新報』, 1941, 7, 22.

생의 조선지역 전문학교 입학, 조선총독부 시학관의 신경 상주였다.⁵¹⁾ 이러한 선만 협의에 기초해서 조선교육회는 1941년 11월 8일부터 16일에 걸쳐 4개조로 편성된 25명의 “만주국 교육시찰단”⁵²⁾을 재차 파견해서 만주국 각지의 재만 조선인 교육시설의 견학과 지역별 교육 실태 파악에 착수했다.

3_ 선만일어 문교정책의 결정과 내실

또한, 선만 양측은 1942년 3월 20일 만주국 건국 10주년을 기념하고자 “재만 조선인의 교육개선”⁵³⁾에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는 “징병제 실시를 앞두고 재만조선인 자제교육의 쇄신 개선에 대해서 금후(今後) 노력할 필요를 통감”⁵⁴⁾했기 때문이었다. 그 가운데 조선총독부는 선만 수뇌의 ‘신경회담’에 입각해서 1942년도에 98만 원에 달하는 재만조선인 초등 교육비 지원을 결정했다. 같은 지원자금은 재만조선인 초등교육 향상을 위한 교원 대우의 개선, 일본인 교원의 증원, 유자격 교원의 증원, 교원 자질의 개선, 시설 확충 및 정비의 명목이었다.⁵⁵⁾ 나아가, 조선총독부는 만주국 당국자 협의를 개회해서 1942년부터 재만조선인 학교에서 사용하는 60만 권의 교재 발송과 조선지역 중등학교

51) 小出直三郎, 1942, 9, 「滿洲國に於ける朝鮮人教育の十年」, 『朝鮮』 제328호.

52) 朝鮮總督府學務局內朝鮮教育會, 1942, 『滿洲國教育視察團報告』.

53) 伊藤泰吉, 1942, 9, 「滿洲に於ける朝鮮人の教育と開拓指導」, 『朝鮮』 제328호.

54) 伊藤泰吉, 1942, 9, 「滿洲に於ける朝鮮人の教育と開拓指導」, 『朝鮮』 제328호.

55) 만주국 조선인교육후원회 회장 김응두를 비롯한 3명이 1942년 5월 22일 재차 조선총독부를 방문해서 ‘실로 재만조선인의 교육비는 2배로 증가했다. 금후 내용의 개선, 교원 자질의 향상, 교과서 문제 등 일대 발전을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학부형들의 환희는 물론이고 재만반도인 전도에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어 이제까지 이 문제의 진정단이었던 학부형회는 금후 후원회로서 충분한 활동을 하게 되었다고 즐거워하고 있다. 조선에서도 징병제도가 실시되기에 이르러 재만조선인의 감격은 일층 더하게 되었다. 금후 황국신민으로서 부끄럽지 않고 만주국 신민으로서 충량한 소질을 함양하기 위해 전력을 다할 뿐이다’라는 감사를 표명했다. 나아가 1943년 1월 이후 김응두는 만주국이 추진하는 조선인 징병제 실시 준비를 위한 조선인보도부(朝鮮人輔導部)의 발족에 따라 그 위원으로도 활동했다[『每日申報』, 1942. 2, 18, 5, 23].

전입학 허가를 결정했다.⁵⁶⁾

또한, 1942년 1월 14일 만주국의 타게베총무장관이 조선총독부 학무국을 방문해서 재만조선인 교육문제의 또 다른 현안이었던 재만조선인 만주국 중등학교 졸업생의 조선지역 전문학교 입학문제를 논의했다. 앞서 검토했던 바와 같이 만주국 재만조선인교육후원회는 만주국 중등학교 졸업생의 조선지역 전문학교 입학에 적극 요청했었다. 그러나 만주국 소재 재만조선인 중등학교는 만철 연선의 동광(東光)학교를 제외하고는 전부 4년제였고, 그래서 그동안 조선과 만주국 중등학교의 수업 연한 차이 때문에 실현되지 못했다. 그러나 협의를 통해 ‘교육의 선만일여’의 연장으로 신경 유학생예비학교, 봉천 동광학교, 본계호(本溪湖) 공업실습소 3개교 졸업생 가운데 12명에 한정해서 1942년 현지 조선 전문학교 입학 허가를 결정했고, 이후 점차 입학생 수를 늘린다는 것이었다.⁵⁷⁾

당시 만주국에서 국민생활의 지도단체 역할을 담당했던 협화회는 1942년 1~10일까지 10일간 신경에서 협화회 전국연합협의회(각 민족협의회 의원 177명 가운데 일본인 61명, 만주인 92명, 몽골인 10명, 러시아인 1명, 조선인 13명)를 개최했다. 전국연합협의회에서는 국민생활 안정을 위한 13개 안건을 심의했다. 이 가운데 봉천성 협화회 지부는 재만조선인 관계 의안으로 ‘선계(鮮系) 교육기구 개선에 관한 건’⁵⁸⁾을 제출했다. 의안 제출의 이유는 재만조선인 교육이 치외법권 철폐 이후 경영 주체의 문제 때문이었다. 당시 재만조선인 학교의 경영 주체는 일본대사관의 재만교무부, 학교조합, 현으로 구분되었다. 이러한 경영 주체의 난립은 일본과 만주국 학제가 혼재하면서 학교 경영의 많은 혼란과 지장을 초래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봉천성 협화회 지부는 재만조선인 교육의 결함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자 ‘재만조선인 교육기관 경영 주체의 통일화’를 추진했다.

56) 『每日新報』, 1942. 3. 20.

57) 『每日新報』, 1942. 2. 4.

58) 『每日新報』, 1942. 9. 30.

마지막으로, 1941년 신경회담 이후 재만조선인 교육 실태는 <표 1>과 같았고, 그 실태를 1941년 12월과 1943년 4월 시점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 수는 약 3만 2,000명이 증가했던 반면, 학교당 학급 수와 학급당 학생 수에서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이러한 실태는 1941년 이전 재만조선인의 교육 열에도 불구하고 많은 아동이 취학할 수 없었지만, 1942년 이후 선만 양측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교육기회가 일정 정도 확대되었음을 시사한다.

둘째, 학생 수의 증가에 따라 학교 수는 200개소가 증가했던 반면, 학급 수는 600여 학급이 증가했다. 그 가운데 사립학교의 감소와는 달리 공립학교가 크게 증가했다. 이는 신규 학교 설립보다는 기존 학교의 학급 수를 확장해서 취학 아동의 증가를 꾀했음을 시사하는 한편, 재만조선인 교육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더욱 강화되었음을 시사한다.

셋째, 교육비의 재원과 지출이다. 학교경비의 재원은 경상비 증가와 달리 임시비가 오히려 감소했다. 이는 만주국의 교육재정이 여전히 여의치 않았음을 시사한다. 또한, 학생당 교육비는 조선총독부의 보조금 증액에도 불구하고 아동 수 증가에 따라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더구나, 1940년대 만주국의 급격한 물가상승을 고려하면, 재만조선인의 실질적인 교육 여건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음을 시사한다.⁵⁹⁾

이상으로 1941년 신경 수뇌회담에 따라 재만조선인 교육이 ‘선만공동관리’로 전환함과 아울러 선만 양측의 적극적인 대응에도 불구하고 “선계 교육문제는 특히 그 내용의 충실을 강조했지만, 오늘에 이르러서도 그 대부분이 미해결의 상황”⁶⁰⁾이었다. 1942년 이후 오히려 정치경제적 상황 변화를 배경으로 조선과 만주국 혹은 만주국 내부에서 민족별 초등교육 격차는 더욱 확대되었다. 그래서 조선총독부도 조선인의 전시동원과 협력 그리고 황민화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재만조선인 교육문제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개입이 불가피했다.

59) 조선과 만주국의 도매물가 증가율은 1941년 11월을 기준으로 1943년 말과 비교하면, 신경은 123%를 기록했다. 당시 만주국의 물가 상승 추이는 일본의 4배, 조선의 2배에 상당했다[東洋經濟新報社, 1945. 5. 15, 『大陸東洋經濟』 제34호, 9~10쪽].

60) 滿洲國協和會中央本部調査部編, 1943, 『國內に於ける鮮系在國民實態』, 36쪽.

VI. 맺음말

1930년대 후반 ‘재만조선인 5대 문제’의 핵심이었던 교육문제의 등장은 1937년 만주국의 치외법권 철폐를 직접적인 계기로 했다. 1938년 이후 만주국의 신학제에 입각한 재만조선인 교육의 양질 저하는 재만조선인의 반발과 민심 동요를 촉발하면서 선만 양측의 적극적인 대응을 불가피하게 했다. 그 때문에 1941년 4월 선만 양측은 재만조선인의 교육문제를 주요 의제로 하는 선만 수뇌의 ‘신경회담’을 개최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는 1937년 중일전쟁 발발 이후 재만조선인의 전시동원과 협력이 요청되는 정치적 상황에서 재만조선인의 일정한 정치적 교섭력 확대를 시사한다. 그 결과, 재만조선인 교육은 종래 일방적인 만주국 관할에서 ‘선만일여의 문교정책’에 입각한 ‘선만공동관리’로 전환했다. 이러한 재만조선인 교육정책과 변화는 그동안 만주국이 내세웠던 민족협화 이데올로기의 변질과 함께 만주국 신민이 아닌 제국(황국) 신민이라는 재만조선인의 지위 변동을 시사한다. 이하에서는 머리말과 관련한 이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등국민론과의 관련이다. 그동안 이등국민론은 담론 등장의 정치적 맥락에 대한 핵심적인 논의가 불분명한 가운데 같은 담론을 만주국기 전체에 걸쳐 통시적으로 적용해 왔다. 그러나 이등국민론은 만주국의 건국이념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민족 서열화 담론으로 만주국의 건국이념이었던 민족협화 이데올로기와는 결코 양립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1937년 만주국의 치외법권 철폐와 1938년 신학제에 입각한 재만조선인 교육은 명백한 민족차별로 이어지면서 재만조선인의 거센 반발을 초래했고, 이는 만주국은 물론이고 조선총독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불가피하게 했다. 실제로 이는 1937년 중일전쟁 발발과 함께 만주국 국민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중국인의 민심이반에 따른 재만조선인의 대일협력과 전시동원이 불가결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1941년 4월 선만 수뇌는 재만조선인의 교육문제를 주요 의제로 하는 ‘신경회담’을 개최했고, 그 결과, 재만조선인 교육은 1938년 이래 만주국의 일원적(一元的)인 관리

에서 '선만일여의 문교정책'에 입각한 '선만공동관리'로 바뀌었다. 이러한 재만조선인 교육정책의 변화는 그동안 이등국민론의 주요 논거였던 1940년 전후 미국배급 우대라는 정치적 정황과도 정합하는 실태다. 결국, 만주국은 1937년 중일전쟁의 발발과 그 장기화의 외증에서 재만조선인의 전시동원이 불가피했고, 그래서 재만조선인에 대한 정치적 재평가와 함께 이등국민론적 우대조치를 실시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이라 하겠다.

둘째, 이등국민 허상론과의 관련이다. 이등국민 허상론의 주장과 같이 이등국민론은 과연 더이상 이론의 여지가 없는 재만조선인 사회의 공동체 의식이 파생시킨 허상에 불과했는가 혹은 같은 허상론을 만주국기 전체에 걸쳐 통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다. 그러나 이등국민론은 중국인과 구별되는 재만조선인에 대한 상대적인 고임금과 미국배급 우대라는 구체적인 사실을 거론해 왔고, 이러한 기억의 파편은 동아시아 각지에서 산견된다. 따라서 이등국민론을 단지 상상의 공동체 의식이 파생시킨 허상 혹은 오염된 기억이라 단정하기 곤란하다. 그러나 만주국은 1940년 전후 민족협화의 건국이념을 훼손하면서까지도 재만조선인에 대한 정치적 재평가와 함께 이등국민임을 자각 혹은 착각하게 하는 우대정책을 실시했다. 이는 역시 1937년 중일전쟁 발발과 그 장기화가 만주국 국민의 약 90%를 차지하는 중국인의 민심이반과 중국 공산당의 침투공작에 따른 만주국군의 반란⁶¹⁾ 등 중국인에 대한 총체적인 정치적 불신을 초래하면서 민족협화 이데올로기의 파탄을 불가피하게 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만주국은 국시와 국체의 훼손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재만조선인을 회유해서 간도특설대(間島特設隊)와 징병제 등 전시동원을 추진하지 않으면 안되었다.⁶²⁾ 결국, 만주국은 중일전쟁 발발과 그 장기화 외증에서 황국신민이라는 미명하에 재만조선인을 대륙침략의 첨병으로 동원하고자 민족별 서열화 정책에 입각해서 이등국민을 관념케 하는 여러 회유책을 구사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는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1941년 4월 선만 수뇌의 '신경회담'에서

61) 田中隆一, 2009, 「『滿洲國』軍の反亂」, 『東洋文化研究』 제11호.

62) 『每日新報』, 1943, 2, 11; 김호순, 2014, 『간도특설대』, 서해문집.

종래의 재만조선인 교육정책을 수정해서 이등국민임을 착각하게 하는 ‘선만일여의 문교정책’ 혹은 ‘선만공동관리’로 전환했던 사실과도 정합하는 논점이다.

셋째, 만주국기 재만조선인의 정치적 위상과 그 함의다. 만주국은 1937년 치외법권 철폐에 따른 재만조선인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재만일본인과 달리 민족적 지위를 격하시켰다. 그러나 1940년에 이르러 만주국은 재만조선인을 암묵적이지만, 재만일본인에 버금가는 정치적 지위를 새롭게 부여했다. 이는 재만조선인의 지위가 일제의 대륙정책 혹은 만주국의 정황에 따라 규정되는 지극히 정치적이고 유동적인 존재였음을 시사한다. 또한, 이러한 실태는 그동안 만주국이 건국이념으로 강요해 왔던 민족협화 이데올로기의 변질을 시사한다. 민족협화는 종래의 “기계적 평등이 아니라 능력에 따른 차액적 평등”⁶³⁾이라는 민족협화 개념의 변질 혹은 재해석을 불가피하게 했다. 바꾸어 말하면, 종래 만주국 건국 이래 민족정책은 기계적인 평등을 전제로 했지만, 1930년대 후반 기계적인 민족평등의 유지가 불가능하게 되면서 민족별 능력 운운하는 민족협화 개념의 재해석이 불가피했음을 시사한다.⁶⁴⁾ 따라서 1930년대 전반까지 만주국의 입장에서 유망자(流亡者) 재만조선인은 만주국의 ‘부담스러운 존재’였는지 모르지만, 1930년대 후반에는 제국통치의 안정판 혹은 선만 협력을 추동하는 요긴한 정치적 빅카드였다. 이러한 재만조선인이 당면했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면, 재만조선인은 조르조가 주장하는 호모 사케르(Honmo Sacer)와도 유사한 정치적 존재였다.⁶⁵⁾ 재만조선인은 만주국은 물론이고 일본(조선)에서 버림받은 존재임과 동시에 일제의 대륙팽창과 새로운 제국질서를 추동하는 신성한 존재였다. 따라서 만주국기 재만조선인의 정체성 혼란과 정치적 지위는 재만조선인이 제국의 신민과 만주국의 신민(혹은 인민)의 경계에

63) 金澤理康, 1942, 「滿洲國籍法提言」, 『早稻田法學』 제21권.

64) 1940년에 이르러 만주국의 민족협화정책은 ‘평면적 융화관계가 아니고 지도적 혹은 선도적 민족, 일본인의 건국 이상 실현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타민족이 추종·노력하는 것’으로 새롭게 정의했다[滿洲帝國政府編, 1969, 『滿洲建國十年史』, 原書房, 21쪽].

65) 조르조 아감벤 저·박진우 옮김, 2008, 『호모 사케르-주권 권력과 별거벗은 생명』, 새물결.

서 동요·방황하는 호모 사케르와도 같은 지극히 예외적이면서도 지극히 불안정한 정치적 존재 그 다름이 아니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참고문헌

- 고지현, 2011, 「조르조 아감벤의 “호모 사케르” 읽기」, 『人文科學』 제93호.
- 김만선, 1949, 『압록강』, 동지사.
- 김미선, 2009, 「식민지시대 조선여성의 제국내 이주경험에 관한 연구」, 『여성과 역사』 제11집.
- 김재용, 2005, 「내선일체의 연장으로서 만주국 인식」, 『한국근대문학연구』 제6권 제1호.
- 김주용, 2008, 「만주지역 간도특설대의 설립과 활동」, 『한일관계사연구』 제31권.
- 박금해, 2005, 「滿洲事變 후 日帝의 在滿朝鮮人教育政策 연구」, 『동방학지』 제130호.
- 박금해, 2010, 「1900년대 초-1920년대 日帝의 在滿朝鮮人教育政策 연구」, 『사학연구』 제99호.
- 박주신, 2000, 『間島韓人の 民族教育運動史』, 아세아문화사.
- 박환무, 1998, 「伊藤博文의 ‘帝國’과 ‘臣民」」, 『아시아문화』 제14호.
- 서경식·김혜선 역, 2006, 『디아스포라 기행-추방당한 자의 시선』, 돌베개.
- 서광일, 1984, 「1910년대 북간도의 민족주의교육운동」, 『白山學報』 제29호.
- 시현, 2011, 『최남선 평전』, 한겨레출판.
- 신규섭, 2003, 「‘滿洲國’의 治外法權撤廢와 在滿 朝鮮人에 대한 認識」, 『대동문화연구』 제43권.
- 신규섭, 2003, 「재만조선인의 ‘滿洲國’관 및 ‘日本帝國’像」, 『한국민족운동사연구』 제36권.
- 신주백, 2002, 「만주국군 속의 조선인 장교와 한국군」, 『역사문제연구』 제9호.
- 야마무로 신이치·윤대석 옮김, 2009, 『키메라 만주국의 초상』, 소명출판.
- 염인호, 1994, 『조선의용군 연구-민족운동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대학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 윤휘탁, 2001, 「만주국의 2등 국(공)민, 그 허상과 실상」, 『역사학보』 제159권.
- 윤휘탁, 2013, 「만주국: 식민지적 상상이 잉태한 ‘복합민족국가」, 해안.
- 이명화, 1988, 「1920년대 만주지방에서의 민족교육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2집.
- 이인영, 1984, 『한국 만주 관계사의 연구』, 을유문화사.
- 임성모, 1993, 「만주국 협회회의 대민지배정책과 그 실태」, 『동양사학』 제42권.
- 임성모, 2009, 「만주농업이민 정책을 둘러싼 관동군·조선총독부의 대립과 그 귀결」, 『일본역사연구』 제29집.

- 임성모, 2009, 「중일전쟁 전야 만주국·조선 관계사의 소묘: '日滿一體'와 '鮮滿一如'의 갈등」, 『역사학보』 제201집.
- 장문석, 2010, 「고전 다시 읽기: 호모 사케르와 이탈리아 현대사」, 『西洋史論』 제104호.
- 장용경, 2005, 「'조선인'과 '국민'의 간극: 전시체제가 내선일체론의 성격과 조선지식인의 대응」, 『역사문제연구』 제15호.
- 전성곤, 2008, 『근대 조선의 아이덴티티와 최남선』, 제이앤씨.
- 정미량, 2007, 「일제 강점기 재만조선인의 교육과 그 체험」, 『한국교육사학』 제29권 제2호.
- 정안기, 2011, 「1936년 鮮滿 首腦의 「圖們會談」과 「鮮滿一如」」, 『만주연구』 제12집.
- 정안기, 2011, 「만주국기 조선인의 만주 이민과 鮮滿石植(주)」, 『동북아역사논총』 제31집.
- 정안기, 2014, 「1930년대 在滿朝鮮人の 教育政治史 연구」, 『만주연구』 제17집.
- 조건, 2009, 「일제의 간도성 '조선인특설부대' 창설과 재만조선인 동원(1938~1943)」, 『한국근현대사연구』 제49집.
- 조르조 아감벤 저·박진우 옮김, 2008, 『호모 사케르 - 주권과 벌거벗은 생명』, 새물결.
- 지수걸, 1994, 「1930년대 전반기 부르조와 민족주의자의 '민족경제 건설전략」, 『국사관논총』 제51권.
- 전경화, 1988, 「일제하 재만한국인 민족교육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최봉룡, 2005, 「기억과 해석의 의미: '만주국'과 조선족」, 『만주연구』 제2집.
- 한석정, 1997, 『만주국 건국의 재해석』, 동아대학교출판부.
- 한석정, 2001, 「만주국의 주권에 관한 연구」, 『한국민족운동사연구』 제28권.
- 한석정·노기식 편, 2008, 『만주, 동아시아 융합의 공간』, 소명출판.
- 홍종필, 1994, 「만주사변이전 재만조선인의 교육에 대하여」, 『명지사론』 제6호.
- 姜尙中 編, 2010, 『大日本・滿州帝國の遺産』, 講談社.
- 高碓達之介, 1953, 『滿洲の終焉』, 實業之日本社.
- 廣岡淨進, 2009, 「滿州國間島省の官僚構成 - 朝鮮總督府との關係を中心に」, 松田利彦·やまだあつし編, 『日本の朝鮮・台灣支配と植民地官僚』, 思文閣.
- 驅込武, 1996, 『植民地帝國日本の文化統合』, 岩波書店.
- 榎木瑞生, 1974, 「日本舊植民地における教育 - 滿洲および間島における朝鮮人教育」, 『名古屋大學教育學部紀要』 제21권.
- 金美花, 2007, 『中國東北農村社會と朝鮮人教育』, お茶の水書房.

- 金永哲, 2012, 『「滿州國期」における朝鮮人の滿州移民政策』, 昭和堂.
- 磯田一雄, 1993, 「皇民化教育と植民地の國史教科書」, 『岩波講座 近代日本と植民地』, 岩波書店.
- 大江志乃夫, 2005, 『岩波講座 近代日本と植民地: 膨張する帝國の人流』, 岩波書店.
- 嶋田道彌, 1935, 『滿洲教育史』, 文教社.
- 蘭信三, 1994, 『「滿州移民」の 歴史社會學』, 行路社.
- 蘭信三 編, 2011, 『帝國崩壊とひとつの再移動, 引揚げ送還, そして残留』, 勉誠出版.
- 鈴木敬夫, 1989, 『朝鮮植民地統治法の研究 - 治安法下の皇民化教育』, 北海道大學圖書刊行會.
- 滿洲移民研究會, 1972, 『日本帝國主義下の滿洲』, 御茶の水書房.
- 副島昭一, 1993, 「「滿洲國」統治と治外法權撤廢」, 『滿洲國の研究』, 京都大學人文科學研究所.
- 山口淑子・藤原作登, 1987, 『李香蘭・私の半生』, 新潮社.
- 山本有造, 2003, 「「滿洲國」の經濟史研究」, 名古屋大學出版會.
- 山室信一, 1993, 『キメラ: 滿洲國の肖像』, 中公新書.
- 安藤彦太郎, 1964, 「延邊紀行」, 『東洋文化』 第36號.
- 安藤彦太郎, 1966, 「東北紀行」, 『アジア經濟旬報』 第657~658號.
- 安富歩・深尾葉子, 2009, 「「滿州」の成立」, 名古屋大學出版會.
- 遠藤正敬, 2010, 「滿洲國における身分証明と「日本臣民」」, 『アジア研究』 第56卷 第3號.
- 遠藤正敬, 2011, 「滿洲國における朝鮮人の就籍問題」, 『アジア經濟』 第52卷 第10號.
- 尹健治, 1989, 「植民地日本人の精神構造」, 『思想』 4월호.
- 李海燕, 2009, 『戦後「滿洲」と朝鮮人社會』, お茶の水書房.
- 田中隆一, 1996, 「對立と統合の「鮮滿」關係 - 「內鮮一体」・五族協和」・「鮮滿一如」の諸相」, 『ヒストリア』 제152호.
- 田中隆一, 2007, 『滿洲國と日本の帝國支配』, 有志社.
- 田中隆一, 2009, 「「滿洲國」軍の反亂」, 『東洋文化研究』.
- 竹中憲一, 2000, 『「滿洲」における教育の基礎的研究(第5卷 朝鮮人教育)』, 柏書房.
- 淺田喬二, 1991, 『日本帝國主義の滿州支配』, 時潮社.
- 塚瀬進, 1998, 『滿洲國「民族協和」の實像』, 吉川弘文館.
- 許壽童, 2002, 「日本の在滿朝鮮人教育政策 1932~1937」, 『一橋研究』 第27권 제2호.

許壽童, 2010, 『近代中國東北教育の研究』, 明石書店.

荒武達朗, 2008, 『近代滿洲の開発と移民』, 汲古書院.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국문 초록]

1930년대 재만조선인, 이등국민론의
비판적 성찰
- 교육정치사의 관점과 사례를 중심으로 -

정안기

1937년 재만조선인의 교육행정권은 만주국의 치외법권 철폐의 결과, 종래 조선총독부로부터 만주국 정부 관할로 이관되었다. 1938년 이래 신학제에 입각한 재만조선인 교육은 재만일본인과의 명백한 민족차별과 양질 저하로 이어지면서 재만조선인 사회는 물론이고 현지조선인 사회의 거센 반발을 초래했다. 그 와중에서 1937년 중일전쟁 발발에 따른 중국인의 민심이반과 조선인의 전 시동원은 재만조선인의 교육문제에 대한 일본제국 차원의 대응을 불가피하게 했다. 그 결과, 1941년 4월 선만수뇌의 '신경회담'이 개최되었고, 재만조선인 교육행정권은 종래 일원적인 만주국 정부 관할로부터 '선만일여의 문교정책'에 입각한 선만공동관리로 전환했다. 결국, 1937년 이래 재만조선인 교육정책의 변화는 중일전쟁 발발을 계기로 재만조선인의 정치적 위상이 급변했음을 시사한다. 이 연구는 선만관계사 혹은 교육정치사의 관점에서 1937년 이래 재만조선인의 교육문제를 검토하고, 종래 '이등국민론(二等國民論)' 혹은 그 '허상론(虛像論)'과도 구별되는 또 다른 관점을 제시하고자 했다.

주제어

재만조선인 교육문제, 이등국민론, 치외법권 철폐, 선만수뇌 신경회담, 문교의 선만일여, 교육정치사

[ABSTRACT]

A Critical Introspection of the Argument of Second-Class Citizens toward Korean Residents in Manchuria in the 1930s: Focusing on Educational and Political History

Joung Anki

In 1937, the educational and administrative rights of Korean residents in Manchuria were transferred from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to Manchuria thanks to the abolition of extraterritoriality. As a result, from 1938 education for Korean residents in Manchuria based upon the theological system brought obvious racial discrimination and a lowering of the quality of education, which in turn caused severe resistance from Korean residents in Korea, as well as by Korean residents in Manchuria. With the outbreak of the Sino-Japanese War in 1937, Japan's aggressive response to the education-related matters of Korean-residents in Manchuria was inevitable in terms of the estrangement of public sentiment among Chinese people and the wartime mobilization of Koreans. The study found that a Korea-Manchuria meeting was held in Changchun in April 1941. In terms of education for Korean residents in Manchuria, a conventional one-way system was transformed into a joint Korea-Manchuria management system under the educational policy of "Korea and Manchuria are one and the same." The changes in educational policy for Korean residents meant that the political stance of Korean residents in Changchun had dramatically changed since the start of the Sino-Japanese War in 1937. This study attempted to investigate changes in the educational and

administrative rights of the Korean residents in Manchuria since the abolition of extraterritoriality in 1937 and trends among the Korean residents in Manchuria, and to pay attention to the Korea-Manchuria talks in 1941 from the new research perspectives of the history of Korea-Manchuria Relations and the history of educational politics. Then, it suggested another perspective which differs from the view of second-class citizens among Korean residents and the illusion of second-class citizens in Manchuria.

Keywords

Education-related matters of Korean residents in Manchuria, the argument of second-class citizens, abolishment of extraterritoriality, Korea-Manchuria talks in Changchun, Korea-Manchuria Connection as One Unity, educational and political history

한일 청구권협정 제2조의 형성 과정(1965. 3~6) 분석

- 개인청구권 문제를 중심으로 -

장박진 |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연구원

동북아역사재단

I. 머리말

수교 5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 오늘날까지 한일 관계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주된 과제가 각종 개인청구권 문제임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¹⁾ 주지하는바와 같이 한일 양국은 대일평화조약 4조에 근거한 재산 및 청구권 교섭(이하 교섭)을 14년 가까이 벌인 결과 1965년 6월 22일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 및 경제협력에 관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협정”(이하 협정)을 체결했다. 그중 오늘날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핵심이 주지의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을 확인한 제2조이다.

이로 인해 동 2조에 대한 비판적인 고찰은 현재까지 많이 축적되어왔다. 그러나 비록 법적으로는 최종협정만이 효력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2조에 대한

※ 투고: 2014년 10월 23일, 심사 완료: 2015년 4월 22일, 게재 확정: 2015년 5월 18일

1) 이 글에서 말하는 개인청구권이라고 함은 재산권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위안부 문제 등 개인에게 가해진 폭력적 피해에 근거한 대일청구권만을 뜻한다.

보다 심층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그것이 기초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양국의 인식, 교섭 내용 등에 관한 포괄적인 실증연구가 동반되어야 함은 따로 강조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협정 2조의 형성과정을 고찰의 주된 대상으로 삼은 선행연구는 필자가 확인할 수 있었던 한, 요시자와가 유일하다.²⁾ 그러나 요시자와의 글은 막상 조문 형성과정에 대한 고찰에 즈음하여서는 이하 논하는 4·3합의 이후의 움직임을 일부 일본 측 문서에만 의거하면서 4쪽 가량으로 짧막하게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 그 내용 역시, 재산권과 청구권을 구별하지 않는 점, 해결 범위를 대일8항목요구에 한정된 것으로 쉽게 이해하는 점, 외교보호권만이 해결되었다고 주장하는 등 보다 포괄적인 연구를 기반으로 할 경우 쉽사리 지지하기 어려운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 글은 이와 같이 이 문제에 관한 연구가 사실상 공백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상황을 배경으로 결국 21세기까지 한일 관계에 큰 걸림돌을 안겨주게 된 협정 2조 및 동 협정에 부속한 문서로서 개인청구권 해결 여부와 관련되는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에 대한 합의의사록”(이하 합의의사록) 제2항이 기초된 교섭 과정을 상세히 분석한다. 그것을 통해 개인청구권 문제가 현재까지 논란이 되게 된 교섭 과정의 실태를 밝히고 이들 문제의 해결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학술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분석에 앞서 이 글의 문제의식과 관련됨으로써 이하에서 주된 분석 대상으로 삼는 협정 2조와 합의의사록 제2항 〈제2조에 관하여〉 중의 관련 조문을 정리하자면 〈표 1〉과 같다.³⁾ 이하에서는 〈표 1〉에서 제시한 관련 조문들의 형성 과정과 그 교섭 과정에서 드러난 한일 양국의 문제 ‘해결’ 인식을 고찰하면서

2) 吉澤文壽, 2012, 「日韓請求權協定と戦後補償問題の現在: 第2條條文化過程の檢證を通じて」, 『平和研究: 體制移行期の人權回復と正義』 38號, 日本平和學會編, 41~56쪽.

3) 최종조문에 관해서는 정식 문안을 그대로 표기했으나 이하 협정으로 이어지는 각 초안에 관해서는 글자 수 제한 등, 집필의 편의를 고려하여 각 조문 중, 이 글의 문제의식에 중요한 부분만을 줄여 쓴다.

〈표 1〉 개인청구권 문제 해결과 관련된 협정 2조 및 합의의사록 제2항 중의 관련 조항

협정	합의의사록 제2항 (협정 2조에 관하여)
<p>제1항: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란시스코 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p> <p>제2항: 본조의 규정은 다음의 것(본 협정의 서명 일까지 각기 체약국이 취한 특별 조치의 대상이 된 것을 제외한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p> <p>(a) 일방체약국의 국민으로서 1947년 8월 15일부터 본 협정의 서명 일까지 사이에 타방 체약국에 거주한 일이 있는 사람의 재산, 권리 및 이익</p> <p>(b)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있어서의 통상의 접촉의 과정에 있어 취득되었고 또는 타방체약국의 관할 하에 들어오게 된 것</p> <p>제3항: 2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본 협정의 서명 일에 타방 체약국의 관할하에 있는 것에 대한 조치와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타방체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동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p>	<p>a) “재산, 권리 및 이익”이라 함은 법률상의 근거에 의거하여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종류의 실제적 권리를 만하는 것으로 양해되었다.</p> <p>c) “거주한”이라 함은 동조 2(a)에 기재한 기간 내의 어떠한 시점까지던 그 국가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양해되었다.</p> <p>e) 동 조 3에 의하여 취하여진 조치는 동 조 1에서 말하는 양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국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취하여진 각국의 국내 조치를 말하는 것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p> <p>g) 동 조 1에서 말하는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되는 양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국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에는 한일 회담에서 한국 측으로부터 제출된 “한국의 대일 청구요강(소위 8개 항목)”의 범위에 속하는 모든 청구가 포함되어 있고, 따라서 동 대일청구 요강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게 될 것을 확인하였다.</p>

개인청구권 문제 해결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사실관계를 살펴나간다.

II. 1965년 4월 3일 합의의 성립

교섭에서 개인청구권에 영향을 주는 직접적인 규정이 나타난 것은 제6차 한일 회담에서 이루어진 주지의 김종필-오히라[大平正芳] 합의에 따른 것이었다. 제공할 총액이나 조건 등에 대한 대략의 합의가 도출된 제2차 김-오히라 회담에서 양자는 비록 제공 명목에 관해서는 대답을 보였으나 동 자금 제공으로 인해 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에 관해서는 일치했다.⁴⁾ 이 합의에 근거해 한국은 협정 2조 제1항의 문안과 직결되는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이라는 표현을 일찍 제안했다. 김-오히라 합의 직후인 1962년 11월 22일 제16차 예비회의 석상에서 배의환 수석은 해결규정을 “한일 양국은 한일 양국 간의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음을 확인한다”고 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또 12월 21일의 제20회 예비교섭에서도 한국은 관련 요강을 제출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 종결에 따라 발생된 양국 또는 양국 국민 간의 청구권 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을 인정한다”⁵⁾고 적었다. 즉, 오늘날까지 개인청구권을 봉쇄하는 핵심 근거로서 제기되어온 조문은 회담 타결보다 훨씬 이전에 오히려 한국이 이미 제시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 후 교섭은 좀처럼 진전되지 않았다. 1963년에 접어들면서 한국에서는 민정 이관문제가 크게 대두되었으며, 그 과정에서는 합의 도출의 주역인 김종필 역시 국내정치의 역학 문제가 얽혀 사실상 ‘해외 도피’ 생활에 들어

4) 이러한 사실은 장박진, 2009, 『식민지관계 청산은 왜 이루어질 수 없었는가: 한일 회담이란 역설』, 논형, 449~450쪽.

5) 이러한 사실은 장박진, 2013, 「강제징용 한국인 피해 문제에 대한 대(고등)법원 판결의 문제점 검토: 외교사 연구의 입장에서」, 『일본공간』, 138~139쪽.

갔다. 이어 1964년에는 이른바 6·3사태로 이어지는 강력한 한일회담 반대 운동이 일어나, 교섭은 암초에 부딪혔다. 결국 교섭이 본격적으로 타결로 향하기 시작한 것은 제7차 한일회담 개시 후의 1965년 2월, 시이나[椎名悦三郎] 외상 방한에 따른 기본관계조약 가조인으로 인해 교섭 전반에 대한 동력을 얻은 후의 일이었다.

회담의 전면적인 타결에 대한 분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3월 23일 이동원 장관은 “역사적 과업을 하루 빨리 끝내는 데 있어서, 미해결 문제로 남아 있는 여러 문제들에 관하여 흥금을 털어놓고 의견교환을 하기 위하여”⁶⁾ 방일했다. 이동원 장관 방일에 따른 교섭을 맞이하면서 3월 16일 외무성은 재산 및 청구권 문제와 관련해 남은 교섭 과제를 정리하고 있다. 그러나 외무성이 남은 과제로서 정리한 것은 나포어선,⁷⁾ 한국 측 대일 선박 요구, 정부차관 2억 달러의 거치기간 및 대일무역적자 변제 기간, 그리고 민간 차관 금액을 3억 달러로 명시하는 문제들이었다.⁸⁾ 즉 외상 간 교섭을 내다보면서 외무성이 인식하고 있었던 교섭 과제는 한일 양국의 선박 요구 조정의 문제나 차관과 관련된 조건 문제들이었다.

외상 회담 개최에 앞서 3월 20일부터 먼저 실무자 교섭이 개최되었다. 이 가운데 22일에 열린 제2회 회합에서는 한일 양국의 기본적인 입장이 각각 상세히 제시되었다. 그중, 협정 2조와 관련된 양국 입장의 요지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⁹⁾

즉 외상 회담을 앞두고 한일 간에는 김-오히라 합의에 따라 해결되는 재

-
- 6) 「이동원 외무부장관의 도착 성명」, 『이동원 외무부장관 일본 방문, 1965』, 26쪽.
 7) 일본의 한국에 대한 선박 요구에는 나포어선과 더불어 한국전쟁 중에 연합군 최고 사령관(SCAP)명령으로 일본이 대여한 선박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는 사실상 이후 나포어선과 같이 처리되며 표면화되는 일은 없다.
 8) 「韓國外相訪日の際ないしその前に解決を要する重要問題處理方針について」, 日本外務省日韓會談公開文書, 문서번호 1987내, 8~11쪽. 일본외무성 한일회담 공개 문서는 이하 문서번호 부분만 표기함으로써 구별한다.
 9) 「청구권 문제에 관한 한국 측 입장」, 「청구권 문제에 관한 일본 측 입장」, 『제7차 한일회담, 청구권관계회의 보고 및 훈령, 1965. 전2권(V.1 1965. 3. 18~4. 3까지의 교섭)』, 19~21쪽, 24~27쪽에서 각각 정리했다.

〈표 2〉 3월 22일 실무자회의에서 제시된 협정 2조 해결규정과 관련된 한일 양국의 입장

	한국	일본
김-오히라 양해의 성격	한국이 일본에 대해 가진 이른바 일반청구권을 해결하기 위한 대강. 이에 따른 효과로서 평화조약 4조에 규정된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	한국의 경제발전을 위한 경제협력. 그 수반적인 효과로서 평화조약 4조 (a)에 규정된 한국 측의 청구권은 완전히 및 최종적으로 소멸된다는 것
해결 내용	일반청구권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므로 대일 선박, 문화재 청구권은 존속	한국 측 선박, 문화재에 대한 청구권은 소멸 일본 측의 대어 선박, 및 나포 어선에 대한 대한청구권은 존속

산 및 청구권 문제에 대한 양해에 차이가 있음이 드러났다. 한국은 동 합의에 따라 해결되는 범위가 선박, 문화재를 제외한 이른바 일반청구권 문제에만 한정된다는 입장을 취한 데 대하여 일본은 경제협력을 실시함에 따라 선박, 문화재 문제까지 모두 해결 범위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일본은 식민지 관계에서 연유하는 문제가 아닌 전후의 나포 및 대어 어선에 대한 일본 측 대한청구권은 남는다는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이들 차이는 어디까지나 선박, 문화재 문제가 해결 범위에 포함될 것인가의 여부 등을 둘러싼 대립에 불과했다. 다시 말해 이는 적어도 명시적으로는 해결되는 일반청구권 문제에 개인청구권 문제가 포함될 것인가를 둘러싼 대립이 아니었다.

그러나 개인청구권 문제와 관련해 한국이 김-오히라 합의로 일반청구권 문제가 해결된다고 주장한 것은 큰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이 해결된다고 주장한 일반청구권은 제1차 한일회담에서 한국이 제출한 대일8항목요구로 구성된 것이었다. 그러나 그 8항목 속에서 당초 〈한국법인 또는 한국 자연인 소유의 일본법인의 주식 또는 기타 증권을 법적으로 인정할 것〉으로서 제기한 제6항 요구를 한국은 6차 회담에서 〈한국인(자연인 및 법인)의 일본정부 또는 일본인(자연인 및 법인)에 대한 권리 행사에 관한 원칙〉으로 크게 변경했다. 이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포함되지 않는 문제에 관해서는 회담 타결 이후에도 각 해당 개인이 개별적으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이었다. 물론 이 요구 변경은 그 권리 행사가 가령 한일협정 타결 후에 되더라도 주식 등 일부 유가증권의 권리에만 한정되어 있었던 것을 보다 일반화하는 것을 뜻했다. 요구 변경에 즈음하여 한국은 일본에 대해 그 이유로서 남방개발 금고가 발행한 소각 군표를 소유한 싱가포르 고려인회의 존재, 월남 거주 교포(김태성)의 대일청구 사항, 손해보험 청구관계 등을 사례로 들 것을 주일대표 부에게 지시하고 있으므로¹⁰⁾ 당시 그 요구 변경이 직접 개인피해에 따른 청구권까지 염두에 두고 이루어졌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러나 변경된 제6항에 개인청구권이 포함될 것인가, 더 나아가 총액 제공으로 인해 문제를 해결하기로 한 김-오히라 합의에 개인 권리를 규정한 동 수정 제6항 요구가 포함될 것인가 등에 관해 한일 양국에서 명확히 합의를 본 사실도 없다. 실제 막판 교섭이 전망되던 1965년 1월 12일 대장성은 마무리 교섭에서는 청구권 문제를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시키기 위해 경제협력을 실시하므로 한국 측의 대일청구권을 전면적으로 소멸시킬 것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는 가운데 현재 한국은 일반청구권만이 해결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해 한국국민의 개별 권리 행사 포기에 관한 견해는 반드시 분명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다.¹¹⁾ 그럼에도 한국은 일단 일반청구권을 구성하는 제6항에 무엇이 포함될 것인가에 관한 명확한 합의를 도출하지 않고 김-오히라 합의로 인해 일반청구권 문제가 모두 해결된다는 입장만을 드러낸 것이었다.

실무자 회의에 이어 24일부터는 외상 간의 토의가 개시되었다. 동 외상회담에 앞서 24일 오전 이동원 장관은 사토[佐藤榮作] 수상을 예방하여 김-오히라 합의에 따른 자금 제공과 문화재, 선박 문제는 별개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¹²⁾ 그 방침은 24일 오후 열린 외상 간 공식 회담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그에 따라 22일의 실무자 회담에서 드러나고 있었던 양국 대립은 계속되었다.¹³⁾ 그 결과, 동 외상회담에서는 향후의 교섭은 김-오히라 합의를 둘러싼

10) 이 사실에 관해서는 장박진, 2013, 앞의 글, 138쪽 및 각주 28.

11) 「日韓會談における請求權問題の未解決点について」, 문서번호 1374, 6쪽.

12) “JAW-03560”, 『이동원 외무부장관 일본 방문, 1965』, 92~93쪽.

13) “JAW-03523”, 위의 문서, 89~90쪽, 「日韓外相會談第1回會合記録」 문서번호

‘올바른 해석’을 도출하기 위해 진행할 것이 아니라 차제에 이동원-시이나 외상 간에서 새로운 양해를 도출할 것으로 진행하는 것에 합의를 봤다.

이 합의에 따라 다음 25일 열린 제2회 외상회담에서 한국은 “청구권문제 해결에 관한 합의사항(안)”을 제출했다. 동 안에서 한국은 무상, 정부차관, 민간차관의 제공과 더불어 문화재에 ‘인도’, 그리고 선박에는 ‘무상 제공’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면서 그 명칭에 따른 실행으로 인해 양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했다.¹⁴⁾ 즉 한국은 문화재 및 선박 문제를 일반청구권 문제와 직결시키는 것을 피하면서도 김-오히라 합의에 따라 제공될 자금은 일반청구권 부분에만 한정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다음 26일 오전 열린 제3회 외상회담에서도 한국이 제출한 ‘합의사항’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일부 이루어졌다. 그 토의 과정에서 시이나 외상은 나포어선 등에 대한 일본의 대한선박청구권과 한국의 대일선박요구를 ‘완전히 상쇄하는 방식으로 해결하자’고 말했다.¹⁵⁾ 즉 일본은 평화선 선포의 합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한국이 절대로 수락하지 않을 것이 명백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선박청구권을 철회한다는 타협안을 공식으로 내놓았다. 그러나 일본의 대한선박요구 철회와 더불어 선박에 대한 추가 협력이 절실했던 한국으로서는 그 ‘완전한 상쇄 방식’에 합의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이동원-시이나 외상 간에서의 새로운 합의 도출에 큰 진전이 일어난 것은

729, 7~9쪽. 단 선박 문제에 관해 일본 문서 기록에서는 합석한 김동조 수석대표가 최종적으로는 정치적인 해결로서 일본에서 몇 만 톤의 선박을 제공받고 양국의 선박 청구권을 소멸시키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음을 내비쳤다고 되어 있으므로 사실상 동 회담에서 이미 타협안을 내놓고 있었다. 실제 해당 선박을 직접 반환받아서가 아니라 신 선박으로 문제를 해결시킨다는 이러한 한국 측 방침은 주일대사에게 전달되어 있었다[“WJA-03359”, 『제7차 한일회담, 청구권관계회의 보고 및 훈령, 1965. 전2권(V.1 1965. 3. 18~4. 3까지의 교섭)』, 16쪽].

14) “JAW-03535”, 『이동원 외무부장관 일본 방문, 1965』, 102~103쪽. 일본문서에는 동 제2회 외무장관 회담 회의록은 수록되어 있지 않다.

15) “JAW-03574, 제3회 외상회담 보고”, 위의 문서, 106쪽; 『日韓外相會談第1回會合記錄』, 문서번호 730, 4쪽.

같은 26일 늦은 밤부터 새벽 5시까지 개최된 제4회 외상 회담에서의 일이었다. 일본은 그 석상, 이것이 시이나 대신 개인에 의한 일시적인(tentative) 안이며 한국이 동의하지 않으면 즉시 백지로 되돌릴 것이며 한국이 응한다면 총리와 대장대신과 최종 조정애 들어간다는 전제하에서 “한일 간의 청구권 문제에 해결에 관해 시이나 대신과 이 장관 간에 의견의 일치를 본 내용(안)”을 제시했다.¹⁶⁾ 이 안에서는 여전히 대립을 계속하던 선박 문제에 대한 언급은 피해졌으나 문화재에 관해서는 국유문화재 일부를 한국이 제시한 ‘인도’로 규정함으로써 해결하는 방침이 제기되었다. 이 안과 관련해 무엇보다 주목되는 것은 청구권 해결 규정에 관해 “본 양해 성립 시에 있어서, 한일 양국 및 양국 국민 간의 재산 및 청구권 문제는 평화조약 4조에 규정된 것을 포함해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한다”(밑줄은 인용자)고 명시한 점이였다. 즉 22일의 실무자 간에서 교환된 요강에서는 아직 ‘평화조약 4조에 규정된 문제’로 한정되어 있었던 해결 범위가 ‘4조에 규정된 것을 포함해’로 확대된 것이였다.

25일자 한국이 제출한 “청구권 문제 해결에 관한 합의사항(안)”에서도 한국은 단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청구권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결 범위를 확대한 ‘4조를 포함해’라는 구절이 제4회 외상회담에서 제출된 일본 측 안에서 처음으로 사용된 것이 확인된다. 즉 협정 2조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일본 측이 동 ‘확대’ 규정안을 제시한 것이였다.

그러나 이는 당시 일본이 개인청구권까지 그 확대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음을 뜻하지 않는다. 시이나 안 자체에는 ‘확대’된 대상이 무엇인가를 가리키는 직접적인 규정은 없다. 그러나 이 시기, 양국의 기본적인 대립 사항이 김-오히라 합의에 선박, 문화재 문제가 들어갈 것인가를 둘러싼 문제였다는 점, 동 외상 회담에 합석한 우시로쿠[後宮虎郎] 아시아 국장이 동 시이나 안과 관련해 일본 측으로서 나포어선을 포기한다는 중대한

16) “JAW-03614”, 위의 한국문서, 112~113쪽; 「日韓外相會談第4回會合記錄」, 문서번호 731, 9~11쪽.

결정을 한 것이라는 보충 설명을 하고 있는 점, 또 동 안을 받은 이동원 장관이 민간차관 제공 금액을 5억 달러 이상으로 하며 그 중, 3,000만 달러를 선박협력으로 할 것을 명시해준다면 선박, 문화재 청구권을 주장하지 않을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는 점¹⁷⁾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한다면 그 '확대'된 대상이 직접적으로는 선박, 문화재를 염두에 둔 것이었음은 틀림없다.

결국 동 4회 외상회담에서도 민간차관 제공 금액을 얼마로 표기하는가의 문제, 또한 정부차관의 변제 유예기간 7년을 포함해 20년으로 할 것인가 27년으로 할 것인가를 둘러싼 대립 등이 남음에 따라 완전히 합의된 새로운 양해가 도출되는 일은 없었다. 그러나 시이나 안에서 제시된 타협 내용은 이하 4·3합의의 골자가 되었다. 즉 한일 간의 재산 및 청구권 문제 해결의 핵심이 된 이동원-시이나 외상 간 양해에서도 개인청구권 문제가 그에 포함되는가가 명시적으로 거론된 사실은 없다.

합의 대강이 성립됨에 따라 27일 밤부터 28일 새벽에 걸쳐 개최된 제6회 외상 회담에서는 여전히 대립점으로 남았던 관련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서 일본은 한국이 요구하던 선박협력으로서 가급적 유리한 조건으로 3,000만 달러를 제공할 것에 대신해서 한국은 명시할 민간차관 제공 금액을 '3억 달러' 이상으로 정할 것, 또한 정부차관 변제 기간 역시 거치 기간 7년을 포함해 20년(단, 쌍방의 합의로 연장은 가능)으로 할 것 등을 요구한 일본 안을 수락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¹⁸⁾ 이어 30일의 비공식 외상 회담에서는 앞서 약속되어 있었던 어업협력 9,000만 달러의 내역이나 그와 관

17) 「日韓外相會談第4回會合記錄」, 문서번호 731, 5~6쪽. 동 회의록에서는 이동원 장관이 선박의 제공 금액과 함께 문화재까지 청구하지 않는다고 발언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물론 선박 금액을 가지고 문화재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제시된 시이나 안에서는 동시에 문화협력의 일환으로 국유문화재를 약간 인도함으로써 문화재 문제를 해결시킨다고 되어 있어, 이 장관은 두 문제를 한꺼번에 언급한 것으로 추측된다. 한국 문서에는 동 제4회 외상회담에 관해서는 간략한 보고만이 수록되어 있어, 회의록 자체는 없다.

18) 「JAW-03626」, 『이동원 외무부장관 일본 방문, 1965』, 118쪽; 「日韓外相會談第6回會合記錄」, 문서번호 732, 1~4쪽. 단 한국문서는 회담 요약 보고이며 선박에 관한 합의 조건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다.

〈표 3〉 4·3합의 중의 해결 규정과 관련된 제5항과 합의의사록의 내용

4·3합의 제5항	합의의사록(불공표)
<p>관계협정의 성립 시에 존재하는 한일 양국 및 양 국민의 재산과 양국 및 양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평화조약 4조에 규정된 것을 포함해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한다.</p> <p>단 한일 양국 및 양 국민의 재산권과 양국 및 양 국민 간의 채권채무관계이며 종전 후 통상의 거래, 계약 등으로 생긴 관계에 의거한 것은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p>	<p>1)제5항에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되는 재산과 청구권에 관한 문제에는 한일회담에서 제출된 ‘대일 청구요강’(이른바 8항목)의 범위에 속하는 모든 청구권이 포함되어 있으며 따라서 관계협정의 발효에 의하여 동 대일청구요강에 관해서는 여하한 주장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 확인된다.</p> <p>2)제5항에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되는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에는 현재까지 대한민국에 의한 일본어선의 나포에서 생긴 모든 청구권이 포함되고 있으며 관계협정의 발효에 의하여 이들 모든 청구권은 이미 대한민국정부에 대해 주장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는 것이 확인된다.</p>

* 표의 밑줄은 저자가 강조를 위해 가필

련된 제공 조건, 그리고 선박 3,000만 달러에 대한 금리 등의 추가 협상이 이루어지고 최종적인 보완 작업이 진행되었다. 그 내역은 어업협력 9,000만 달러 중에 영세어민을 위한 지원을 4,000만 달러로 하고 그 적용금리는 5%, 남은 5,000만 달러에 대해서는 금리 5.75%, 그리고 선박협력 3,000만 달러의 금리는 5.5% 정도로 할 것 등이었다.¹⁹⁾ 이들 합의된 내역을 토대로 31일 개최된 김동주 수석대표 및 우시바 심의관 사이에서 문안에 관한 최종 조율이 이루어지고²⁰⁾ 드디어 “한일 간의 청구권 문제 해결 및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사항”이 만들어졌다. 1965년 4월 3일자로 양국 사이에서 정식으로 가조인된 이

19) 「非公式外相會談記錄」, 문서번호 734, 1~2쪽. 한국문서에는 동 회담 기록은 없다.

20) “JAW-03711”, 『제7차 한일회담, 청구권관계회의의 보고 및 훈령, 1965. 전2권(V.1 1965. 3. 18~4. 3까지의 교섭)』, 46~48쪽.

른바 4·3합의였다. 그 합의는 제5항으로서 해결 규정을 두었으나 내용은 <표 3>과 같다.²¹⁾

즉 4·3합의는 해결 규정과 관련해 먼저 제1항에서 선박, 문화재 문제가 확대, 포함된 것을 암시하는 표현으로서 ‘평화조약 4조에 규정된 것을 포함해’라는 규정을 정식으로 채용했다.²²⁾ 그러나 4·3합의 역시 평화조약 4조 문제 이외에 확대되는 그 범위에 관해 명확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 이에 따라 조문상 그 확대, 포함된 범위에 교섭에서 직접 제기되지 않았던 개인청구권 문제 등이 들어갈 것인가에 관한 명확한 확인이 불가능해졌다.²³⁾

그러나 해결 여부와 관련해 선박, 문화재 이외의 문제가 전혀 고려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다. 동 4·3합의 시에는 당시 불공표로 지정된 합의의사록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4·3합의에 포함될 범위에 관한 규정을 두기 위한 것이었다. 합의의사록은 두 가지 조항으로 구성되었으나 그 두 번째는 나 포어선에 대한 청구권 포기에 관한 약속 조항이었다. 이 글의 문제의식과 관련해 특히 주목되는 것은 합의의사록 첫째 조항이다.

그 첫째 조항은 4·3합의에 따라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되는 재산과 청구권에 관한 문제에는 한일회담에서 제출된 ‘대일청구요강’(이른바 8항목)의 범위에 속하는 모든 청구권이 포함되어 있으며 따라서 관계협정의 발효에 의하여 동 대일청구요강에 관해서는 여하한 주장도 할 수 없게 된

-
- 21) 자료적으로 4·3합의 중의 해결규정에 관한 협상 과정은 분명하지 않으나 한국 측 문서에서는 29일까지 동 해결규정 문제는 ‘미합의’로 규정되어 있으므로(“JAW-03627”, 앞의 문서, 41쪽) 동 문안에 대한 합의는 30일 또는 31일의 교섭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추측된다.
 - 22) 실제 의무부는 이로 인해 선박과 문화재 청구권이 소멸된다는 일본 측 입장과 기타 해석상의 차이가 해소된다는 인식을 국무총리 등에게 보고하고 있다[“JAW-03716”, 위의 문서, 53쪽].
 - 23) 실제 이와 관련해 김동조 대표는 이 합의 규정과 관련해 “한일 간의 청구권이 전반적으로 소멸되고 해결된다는 일반적인 원칙에 합의”(밑줄은 인용자)한 것이라고 본국에 보고하면서 해결되는 문제의 범위에 명확한 경계(境界)가 없음을 시사하고 있다[“JAW-03723”, 위의 문서, 58쪽]. 또 얼마만큼 신중한 검토를 거쳐 쓴 표현인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동 보고에서 김 대표가 한국 측의 청구권이 ‘소멸’된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는 점에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다는 것이 확인된다'고 규정했다.

즉 해결 범위를 명시하기 위해 따로 작성된 합의의사록이 선박, 문화재 이외의 일반청구권 문제와 관련해 그 해결 범위로 명기한 것은 일단 8항목뿐이었다. 이에 따라 8항목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사항에 관해서는 해결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여지가 생길 수 있다. 적어도 이 시기 한일 간에 오간 교섭 내용을 생각해도 개인청구권에 관한 사항까지 8항목에 들어간다는 인식이 명시적으로 공유되어 있었던 흔적은 없다. 그러나 한편 그 규정은 해결되는 '재산 및 청구권 문제에는' 8항목이 포함된다고만 규정했을 뿐, 해결되는 일반청구권 문제가 8항목이라고 직접 명시함으로써 해결 대상이 8항목에만 한정된다고 규정한 것도 아니었다. 또 가령 8항목에 한정된다고 하더라도 한국이 6차 회담에서 그 변경을 요구한 제6항에는 개인청구권 문제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양해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 이 점들을 고려할 때, 개인청구권이 해결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었다고 해석하는 것 역시 쉽지는 않다.

더구나 이와 관련해 주의해야하는 것은 4·3합의 제5항의 둘째 규정의 존재이다. 동 5항은 반대로 해결 범위에 속하지 않는 권리를 명시적으로 규정했으나 그 기본적인 사고방식은 전후 새롭게 발생한 권리를 해결 범위에서 제외한다는 것이었다. 물론 이 제외는 한일 간의 과거 처리 문제가 종전 이전의 한일 '일체화'에서 발생한 숙제를 처리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성격으로부터 도출되는 자연스러운 귀결이었다. 따라서 이하 핵심으로 대두되는 그 '일체화'의 종료 시기를 어느 시점으로 잡는가에 관해서는 이견이 있어도 그 사고방식에서는 '일체화'에 따라 발생한 각종 개인청구권이 이 제외 대상에 들어갈 여지는 애초 없었다.

시점의 문제와 더불어 또 하나 주의해야하는 것은 제외 항목과 관련해 4·3 합의는 '재산' 및 '채권채무관계'로 명기하고 '청구권'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이는 평화조약 4조에 따라 과거 처리 문제가 '재산'과 더불어 '청구권'으로 규정되어온 것과 비교해 특징적이었다. 이 '청구권'은 재산이나 채권에 기초한 '청구권'에만 한정되지 않는 보다 일반화된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이 타당한 권리였다. 실제 평화조약 14조는 일본과 교전관계에 있었던 연합국

에 관해서도 그 국민의 권리로서는 '배상'이 아니라 '청구권'이라는 개념을 쓰고 있다. 그럼에도 전후 생긴 권리로서 그 제외 대상으로 지정된 것은 '재산' 및 '채권채무'만이었으며 '청구권'은 조심스레 피해졌다. 이는 식민지 통치에 따른 '일체화'로부터 한국이 해방됨에 따라 한일 간의 접촉이 '통상의 거래'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게 된 이상, 전후 처리처럼 국가 간에서 처리해야하는 문제에 개인 청구권 같은 것이 들어갈 일은 없다고 판단한 귀결이라고 풀이된다. 다시 말해 '청구권'은 통상의 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것 이외의 특수한 정치적인 관계에서 연유하는 권리를 포함하는 권리였다. 따라서 종전 시점 문제와 더불어 개인에게 가해진 직접적인 피해에 따른 개인청구권 문제는 애당초부터 그 성격상도 해결 범위에서 제외될 대상이 아니었다. 후술하지만 이후 제외 대상으로 지정되는 재일한국인에 관해서도 그 해결 범위에서 제외되는 권리에 관해서는 '재산권'에만 한정된 것은 이와 일맥상통하는 결과로 보인다.

결국 4·3합의와 그에 이르는 교섭 과정에서는 개인청구권 문제가 동 해결 범위에 포함될 것인가를 둘러싸고 양국 간에서 명확한 양해에 도달하고 있었던 사실은 없다. 그러나 시점 문제와 더불어 '청구권'이라는 권리 자체가 애초 제외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배제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개인청구권의 포함 여부를 생각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부정하기 어렵다.

Ⅲ. 최종협정의 성립

1_ 조문 기초 교섭에 대한 준비

4·3합의가 성립함에 따라 남은 주된 교섭 과제는 협정 조문의 기초 작업으로 옮겨갔다. 이를 위한 교섭 개시를 앞두고 이규성 공사는 4월 16일 일본 측과 사전 조율에 나섰다. 그 자리에서 외무성은 청구권 해결 문제와 관련해 특히 개인청구권에 관한 문제라고 직접 언급하면서 이들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 발언에 대해 이규성 공사는 이동원 시이나 외상 간 합의로 인해 개인관계의 청구권은 소멸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따라서 앞으로의 문제는 양국이 국내에서 어떻게 소멸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뿐이며 한국에는 향후의 교섭에 관한 별반의 준비가 없다고만 답하고 있다.²⁴⁾ 물론 이 언급은 교섭에서 직접 거론되지 않았던 개인청구권 문제까지 ‘소멸’되었다고 직접 인정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해결 범위가 분명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그것을 의식도 하지 않은 채, 적어도 국가 간의 문제로서는 개인청구권 문제가 모두 ‘소멸’되었다고 피력한 그 언급은 오늘날 개인청구권 문제를 생각하는 데 무거운 의미를 지녔다. 또한 동 문제에 관해 별반의 준비가 없다고 한 발언은 해결 범위에 들어갈 개인청구권의 내용에 관해 당시 한국정부가 별반 신경을 쓰고 있지 않았음을 드러냈다. 이러한 인식은 그 이후의 교섭 과정에서 큰 변화는 없었다.

한편 일본정부는 개인청구권 문제와 관련해서도 내부 준비에 착수하고 있었다. 대장성 재산국관리과는 4월 13일 외무성에 대한 요망사항으로서 “대일 청구요강 8항목에 형식적으로 포함된 모든 대일청구권이 소멸되도록 협정의 표현을 정확히 할 것”, 그리고 “대일 청구권 소멸의 시점은 가능한 1952년 4월

24) JAW-04315, 『제7차 한일회담, 청구권관계회의 보고 및 훈령, 1965. 전2권(V,2 1965. 4. 3. 가서명 이후의 청구권 및 경제협력위원회, 1965.4~6)』, 13~14쪽.

28일자, 최소한도 1945년 9월 23일자로 할 것”들을 제기하고 있다.²⁵⁾ 대장성의 요망을 봐도 알 수 있듯이 4·3합의 후, 일본정부가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 역시, 적어도 직접적으로는 8항목에 속한 문제들의 해결을 협정 조문을 통해 확정시키는 과제였다. 또한 대장성이 해결 범위의 시기를 당초 평화조약 발효 시점으로 할 것을 구상하고 있었던 점도 주목된다. 이하 확인하는바와 같이 이 범위는 결국 한일협정 서명일로 연장됨으로써 해결 범위는 대폭 확대된다.

대장성의 요망이 나오자 4월 17일, 19일, 그리고 20일 외무성은 잇따라 청구권 문제 해결을 위한 향후의 방침을 수립했다. 그러나 연거푸 짜여진 그들 내용에 큰 차이는 없다. 협정 2조로 귀결되는 내용과 관련해 17일의 처리 방침에서는 인적범위로 재일한국인을 제외할 것, 시간적 범위로 협정 서명일을 기준으로 할 것, 단 그 기간 내에서도 ‘통상’의 민간의 접촉이 재개된 후에 발생한 것은 제외할 것, 등의 방침이 굳어졌다.²⁶⁾ 즉 외무성은 재일한국인 이외의 본국 거주 한국인은 모두 해결 범위에 포함할 것, 그리고 시점에 관해서도 비록 전후 새로운 통상의 접촉에 따라 발행한 것은 제외하면서도 식민지 관계에서 연유한 것이라면 1965년 6월 22일 시점에서 존재한 모든 문제를 포함하는 방침을 굳힌 것이었다. 대장성 요망보다 오히려 포괄적인 해결 범위를 정한 셈이었다.

다음 19일자 방침에서는 인적범위에서 제외할 재일한국인과 관련해 ‘중전 이전으로부터 일본에 거주하는 재일한국인’으로 보다 시점을 명시했다. 또한 시간적 범위와 관련해 제외할 통상의 거래에 관해서도 ‘중전 후의 통상의 사법적 법률관계에서 생긴 것’이라고 보다 구체화했다. 또한 19일 방침에서는 위에서 제외한 것 이외에, 협정으로 해결되는 권리와 관련해 ‘처리 소멸시킬 것’이라는 보다 강한 표현이 사용되어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²⁷⁾ 즉 한때 외무성

25) 「要望事項」, 문서번호 1313내, 27~29쪽. 동 문서에 의하면 대장성이 제안한 1945년 ‘9월 23일’이란 날은 1945년 칙령 제576호 등에 따라 대외경제거래를 법률적으로 금지한 날이다.

26) 「處理方針」, 문서번호 1314-1, 2~4쪽.

27) 「財産及び請求權問題解決協定の基本方針(案)」, 문서번호 1314-1내, 2~3쪽.

내부에서도 협정으로 인해 한국인의 재산 및 청구권 권리를 '소멸'시킨다는 인식이 존재했다. 그러나 이 방침은 이후 명확히 철회된다. 이어 20일자 방침에서는 재일한국인의 범위에 관해 '중전'이라는 모호한 표기를 '1945년 9월 2일'로 명시하는 등의 추가 수정이 이루어졌다.²⁸⁾ 물론 그 날은 대미항복문서 조인 날이었다. 이와 같이 이 시기 정해진 방침에서 해결 범위에서 제외될 대상이나 그 범위가 점점 구체화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일본정부 내부의 조정 과정에서도 개인청구권 문제가 직접 검토 대상이 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상황은 교섭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4월 20일에 열린 제7차 한일회담 청구권 및 경제협력위원회 제1회 회의에서 먼저 한국은 4·3합의 제5항에 따라 모든 청구권이 해결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이 문제에 관해서는 향후 각국의 국내 문제로 처리할 문제라고 밝혔다. 앞서 본 이규성 공사의 견해가 그대로 위원회에서 피력된 셈이었다. 이에 대해 일본은 문제에 파고들면 들수록 어려운 문제라고 느낀다고 하면서 특히 청구권 문제가 국민의 권리득실의 문제이므로 완전히 지을 필요가 있으며, 명확히 해두지 않으면 훗날 분규가 생긴다는 신중한 인식을 밝혔다. 그러나 신중한 인식을 드러낸 일본 역시 그 자리에서 구체적인 사례로 든 것은 협정의 효력이 미치는 지역 문제, 한국 정부의 조선총독부 계승 여하에서 영향을 받는 문제,²⁹⁾ 재일한국인의 취급과 그 범위, 그리고 중전 후의 채권-채무관계의 취급 문제 등이었다.³⁰⁾ 즉 4·3합의 후의 교섭에서도 신중한 인식을 애초 결여하고 있었던 한국은 물론, 그나마 민감한 문제임을 인식한 일본조차 폭력적인 피해에 따른 개인청구권 문제

28) 「日韓財産及び請求權問題解決協定の基本方針(案)」, 문서번호 1314-1내, 2쪽.

29) 주일대표부는 동 교섭 보고로서 한국 정부의 총독부 계승 여하에서 영향을 받는 문제로서는 간이생명보험, 우편저금, 주식 등이라고 보고하고 있으므로 청구권이 아니라 사실상 재산권에 속하는 항목들이라고 풀이된다[「JAW-04382」, 『제7차 한일회담, 청구권관계회의의 보고 및 훈령, 1965. 전2권(V.2 1965. 4. 3. 가서명 이후의 청구권 및 경제협력위원회, 1965. 4~6)』, 19쪽].

30) “제7차 한일회담 청구권 및 경제협력 위원회 제1차 회의 회의록”, 위의 문서, 21~27쪽; 「第7次日韓全面會談請求權及び經濟協力委員會第1回會合」, 문서번호 79, 1~6쪽.

가 그 후 한일관계를 구속하는 심각한 분쟁거리가 된다는 위기의식을 드러낸 흔적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러한 안이한 생각의 결과, 이 시기 한국정부 내부에서 일부 진행되어 있었던 교섭 지침은 경제협력 실시 문제 쪽에 쏠려 있었다. 실제 부총리 주최 하에서 20일부터 23일까지 이루어진 검토의 결과 만들어진 한국정부의 대일 교섭 지침 속에서도 해결 문제와 관련해서는 단지 “양국 간의 청구권 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는 취지로 교섭할 것”으로만 지시된 것뿐이다. 이는 경제협력 실시에 관해서는 그나마 세목에 관한 교환공문 초안 자체가 직접 만들어진 자세와 지극히 대조적이었다.³¹⁾

한편 일본정부 내부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된 검토가 이어지고 있었다. 4월 20일까지의 내부방침에 따라 외무성은 드디어 4월 24일 구체적으로 협정 초안을 기초했다. 이 초안에서는 협정 2조에 해당하는 조문과 관련해서는 일단 재산권 문제를 제2조로, 이어 청구권 문제를 제3조로, 그리고 해결규정 문제를 제4조로 나누고 규정했다.³²⁾ 구체적인 초안 작성에 따라 일본은 재산권 문제를 규정한 2조와 관련해 비록 1945년 9월 2일 이후 통상의 거래에서 발생한 것을 제외하면서도 해결되는 ‘재산’ 문제에 관해서는 ‘재산, 권리 및 이익’이라고 보다 일반화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는 베르사유조약에서 비롯되고 대일평화조약에서도 사용된 표현상의 관습에 맞춘 것에 불과하며 어디까지나 재산권에 해당하는 문제를 보다 엄격히 하는 의미를 지닌 것에 불과했다.³³⁾ 따라서 이

31) “외아복 722, 대일교섭 지침” 앞의 한국문서, 59~61쪽. 경제협력 실시에 관한 세목 초안은 동 63~74쪽. 경제협력에 관한 동 초안 이전에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청구권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안)” 전문에 관한 초안도 만들어지고 있으나 이 부분 역시 단지 ‘청구권 문제의 해결’에만 약간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동 전문 초안은 동 62쪽.

32) 「日本國と大韓民國との間の財産及び請求權に關する問題の解決のための協定(案)」, 문서번호 1314-1내.

33) 실제 이 점은 본론 이하 언급하는 5·1 초안과 관련해 5월 4일에 열린 관계부처 회의에서 대장성이 ‘재산 권리 및 이익’이라는 표현은 베르사유조약 이후의 표현방법으로서 실제적인 권리는 모두 포함시키기 위한 표현이라고 설명하고 있다[「無題」, 문서번호 1314-2내, 2쪽].

표현 변경은 해결 범위를 새롭게 확대하기 위한 것 등의 취지와는 상관없다. 또한 이들에 대한 처리의 내용도 협정서명일을 기준으로 ‘압류하고, 유치하고, 청산하고 기타 여하한 방법으로 처분하는 권리를 보유한다’고 규정했다. 즉 단지 ‘해결’로 표현하지 않고 그 해결이 가능해지는 방법까지 보다 천명한 것이었다.

한편 3조에 규정된 청구권 문제에 관해서는 1945년 9월 2일 이후 통상의 거래에서 발생한 것을 제외한다는 같은 조건을 달면서도 ‘협정 서명 시로 거슬러 올라가 포기한다’고 규정했다. 즉 조문 기초 작업을 시작한 당초 일본은 청구권 문제의 ‘해결’이 국가가 그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이루어진다는 형식을 취했다. 재산권과 같이 ‘압류하고, 유치하고, 청산하고 기타 여하한 방법으로 처분하는 권리’ 같은 구체적인 처리 방법을 규정하는 것을 피한 이유는 재산권과 구별된 ‘청구권’ 권리의 성격에 기인했다. 즉 청구권이 “법률상의 근거에 의거하여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종류의 실제적 권리” 이외의 요구 근거에 기초해 제기할 수 있는 권리(이하 실체가 없는 권리)인 만큼,³⁴⁾ 그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 방식을 명기하는 것이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³⁵⁾ 그리고 이 4·24 초안은 이상의 결과로 동 4조에서 재산 및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고 규정했다.³⁶⁾

4·24 초안과 관련해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은 외무성이 20일의 방침까지 남

34) 한일청구권 협정에 부속되며 각종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따로 작성된 합의의사록 제2항에서는 재산은 “법률상의 근거에 의거하여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종류의 실제적 권리”라고 명시되었으나 그 이외의 청구권에 관해서는 직접적인 정리가 없다. 그러나 재산과 구별된 청구권은 당연히 재산에 근거한 것 이외의 권리로 된다.

35) 실제 이러한 생각은 1990년대 위안부 문제가 국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조약국의 답변으로서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야나이[柳井俊二] 조약국장은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청구권은 실제적인 권리가 아닌 것으로 협정 당시 국내법에서 특히 처리하는 문제가 없었으며 따라서 국내법을 제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답변하고 있다 [日本國會會議錄, 1991, 12, 13, 參議院豫算委員會 3호, 8쪽].

36) 이 초안에서는 4·3합의에서 이루어진 “평화조약 4조를 포함해”라는 규정이 사용되어 있지 않으나 이는 이미 선박, 문화재 문제 해결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져 있었던 것을 배경으로 굳이 그 표현에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상황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 하고 추측해본다.

아 있었던 ‘처리 소멸’이라는 방침을 명확히 철회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였다. 20일의 방침에서 이미 그 옆에 라인이 그어져, 검토 대상이 되었었다고 보여 지는 ‘소멸’ 개념은 20일자 기본방침안을 손으로 교정한 27일자 수정판에서 선으로 지워졌다.³⁷⁾ 이와 관련해 같은 27일 작성된 협정 초안 제2조의 위에는 ‘소멸’과 관련해 ‘국내보상도 나온다고 보인다’고 손으로 쓴 기술도 보이므로³⁸⁾ ‘소멸’ 규정이 의도적으로 배제된 것은 확실하다. 말할 필요도 없이 ‘소멸’은 국가가 애초 개인의 권리를 소멸시킬 수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었다. 끝까지 유지된 ‘해결’ 규정 등과 달리 권리 ‘소멸’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식이 철회된 것은 이와 같은 문제를 피하기 위한 조치였음이 틀림 없을 것이다.

28일, 외무성은 관계 부처에 협정 초안을 제시했다.³⁹⁾ 그 4·28 초안에서는 24일자 초안에서 나누어 표현되어 있었던 재산 및 청구권 관련 규정이 같은 제2조 제1항, 제2항으로 규정되었다. 그에 따라 문안도 일부 수정되었다. 그 속에서, 주목되는 점은 제2항 포기하는 청구권과 관련해 “제1항에서 말하는 재산, 권리 및 이익 이외의 여하한(いかなる) 청구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점이다. 즉 해결되는 ‘청구권’이 재산을 일반화시킨 ‘재산, 권리 및 이익’ 이외의 것에 근거한 모든 요구 권리임이 천명된 셈이었다. 물론 이 역시 한국인 개인의 피해에 근거한 청구권까지 직접 명시한 것은 아니다. 또 이 초안은 어디까지나 일본정부 내의 관계 부처에 제시된 초안에 불과하며 한국과 공식으로 합의된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초안의 존재로 인해 법적으로 개인청구권이 포함되었다고 생각해야 하는 이유는 없다. 그러나 비록 직접 명기된 것은 아니었

37) 「日韓財産及び請求權問題解決協定の基本方針(案)(1965. 4. 27)」, 문서번호 1314-1내, 3쪽. 동 문서는 원래 20일자의 원안을 27일자로 손으로 변경하고 있는 문서다.

38) 「財産及び請求權に関する問題の解決並びに經濟協力に関する日本國と大韓民國との間の協定(案)(1965. 4. 27)」, 문서번호 1314-1내, 6쪽.

39) 「財産及び請求權に関する問題の解決並びに經濟協力に関する日本國と大韓民國との間の協定(案)(1965. 4. 28)」, 문서번호 1314-1내, 각 성에 제시되었다는 사실은 동 초안 1쪽에 손으로 직접 표기되어 있다.

으나 외부성이 ‘청구권’이라는 개념의 사용과 관련해 그것이 재산권 이외에 실체가 없는 모든 권리를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4·28 초안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제1항에서 말하는 재산, 권리 및 이익 이외의 여하한 청구권”이라는 부분을 “제1항에서 말하는 재산, 권리 및 이익에 대한 청구권 이외의 여하한 청구권” 등 일부 표현의 정정이 이루어졌으나 이 구상 자체는 5월 1일자로 작성된 초안에 그대로 유지되었다.⁴⁰⁾ 주목되는 것은 이 5·1 초안을 둘러싸고 일본정부 관계 부처에서 논의된 토의 내용이었다.

5·1 초안 제2조는 제1항에서 “재산, 권리 및 이익에 대한 모든 청구권을 협정 서명 시에 포기하고 또 그들 재산 권리 및 이익을 서명 시에 압류, 유치, 청산하고 기타 여하한 방법으로 처분하는 권리를 보유한다”고 규정한 후, 다음 제2항에서 “제1항에서 말하는 재산, 권리 및 이익에 대한 청구권 이외의 여하한 청구권도 협정 서명 시에 포기한다”고 되어 있었다. 이와 관련해 5월 1일의 관계부처 회의석상, 조약과는 ‘소멸’ 방식은 실제 소멸시킬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 또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포기’로 했으나 그 대상은 외교보호권을 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이 5·1 초안은 비록 개인의 재산 및 청구권이라도 그것을 포기하는 주체는 ‘체약국’으로만 표현하고 있으며 직접 개인이 포기할 것을 규정한 것은 아니었다.

이와 관련해 한층 더 주목되는 것은 다음 제2항에 관해 조약과가 포기하는 대상이 제1항에서 말하는 것 이외의 것이라고 하면서 그것이 ‘불법행위배상’에 관한 청구권을 포함하기 위한 것이라는 답변을 내놓고 있는 점이다. 즉 재산권 이외의 청구권에는 개인에게 가해진 폭력행위 등으로 인한 불법 행위에 따른 피해 보상 요구가 포함된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었다. 그러나 유의해야 하는 점은 토의 과정에서 나온 이 ‘불법행위배상’이라는 대상은 한국인 개인에게 가해진 피해보상 요구를 직접 의도한 것이 아니었다고 보여지는 점이다. 실제 조

40) 「財産及び請求權に關する問題の解決並びに經濟協力に關する日本國と大韓民國との間の協定(案)(1965. 5. 1)」, 문서번호 1314-2내.

약과장은 그 설명과 관련해 포기되는 ‘청구권’의 사례로 나포어선을 들었다.⁴¹⁾ 즉 국가가 외교보호권을 포기한다는 개인청구권과 관련해 직접 그 대상으로서 인식된 것은 오히려 한국정부에 의해 ‘불법’으로 나포된 일본 어민의 청구권 권리였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그 조약과의 설명은 청구권에는 한국정부의 불법행위에 따른 일본어민의 청구권만이 포함되며 일본정부의 불법행위에 따른 한국인 개인의 청구권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일본정부가 한국인 개인의 청구권 문제를 제외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동 5·1 초안은 4일 다시 관계 부처에서 논의되었다. 그 논의 과정에서는 ‘포기’라는 규정이 문제시되었다. 벽두 초안이 해결 방식을 ‘포기’로 하고 있는데 대하여 그것으로는 실제적 권리인 ‘재산, 권리 및 이익’에는 실제 대응(touch)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나왔다. 이와 관련해 포기해도 재판소가 사인(私人)의 권리를 인정할 가능성이 꽤 있으며, 그럴 경우는 조약이 가벼워진다는 견해가 나왔다. 즉 일본정부 내부에서는 적어도 재산권과 같이 실제적인 가치가 있는 것에 관해서는 그것을 국가가 ‘포기’해도 그에 대한 개인의 권리문제가 여전히 남아, 장래 소송 등을 통한 한일 간의 분쟁거리가 될 수 있음이 인식되어 있었다. 이러한 의견들에 대해 조약과장은 아직 지우는 방법이 분명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이 표현했다고만 말했다.⁴²⁾ ‘소멸’은 물론이지만 ‘포기’라는 방식 역시 개인의 권리문제를 실제 ‘해결’하는 데 반드시 합당한 방법이 아니었던 것이다.

이러한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추측되지만 5월 6일자로 작성된 초안 제2조의 재산권을 규정한 제1항에서는 ‘포기’라는 개념이 사라져, ‘재산, 권리 및 이익을 압류하고 유치하고 청산하고 기타 여하한 방법으로 처분하는 권리를 보유한다’고만 표현되었다. 그러나 이 초안에서도 제1항과 별도로 청구권 문제를

41) 이상 5월 1일자의 회의 내용은 「日韓財産及び請求權問題解決協定について」, 문서번호 1314-2내, 5~6쪽에서 정리했다.

42) 이상 5월 4일자의 회의 내용은 「無題」, 문서번호 1314-2내, 2; 7~8쪽에서 정리했다.

규정한 제2항에서는 그대로 ‘포기’ 규정이 남았다.⁴³⁾ 자료적으로 그 이유는 분명하지 않지만, 동 제2항이 말하는 청구권은 실체가 없는 권리인 만큼 그것을 ‘압류하고 유치하고 청산하고 기타 여하한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이 애초 없다는 것에 따른 귀결이었다고 생각해 무방할 것이다.

한편 이 무렵, 일본정부 내부에서는 5·6 초안 등의 포기 방식과 크게 다른 협정안도 구상되기 시작했다. 다음 날 7일, ‘마츠나가 안’이라는 손으로 기입된 글자가 보이므로 당시 조약과 마츠나가[松永信雄] 과장이 ‘시안’으로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초안은 제2조 제1항에서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다고 간주하는 것에 합의한다”고 규정했다.⁴⁴⁾ 이는 최종협정 제2조의 표기에 보다 가까운 조문 형식이었다. 명확한 자료적인 근거는 없으나 이와 같은 규정 형식의 초안이 별도로 만들어진 것은 제1항에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 규정을 두는 형식을 한국이 채용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재산에 관해서는 ‘포기’를 지우면서도 청구권에는 그것을 남기는 등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한 의도였다고 풀이된다. 또한 이 초안과 관련해서는 4·3합의 시에 불공표로 되어 있었던 대일8항목요구의 해결을 합의의사록에서 명시해서, 확인하는 구상이 나타났다.⁴⁵⁾ 이 역시 최종협정으로 이어진 조문 형식이었다.

이후 기초된 초안들은 기본적으로 5월 6일자 초안 형식과 이 5월 7일자 마츠나가 시안의 형식에 따라 병행해서 기초되었다. 그 가운데 5월 17일에 다시 마츠나가 조약과장이 작성한 시안에서는 제2조에 관한 교환공문이 첨부되며 그 가운데 한국정부가 아무런 주장도 하지 못하는 사항들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예시되었다.⁴⁶⁾ 이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막판 교섭에서 협정 기초 작업의

43) 「第二條(1965. 5. 6)」, 문서번호 1314-2내, 1쪽.

44) 「第二條(1965. 5. 7)」, 문서번호 1314-2내, 1쪽.

45) 위의 초안, 2쪽. 단 4·3합의시는 ‘해결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규정되어 있었는데 반해 일단 동 마츠나가 시안에서는 짤막한 표현으로 ‘소멸’로만 표현되어 있는 점은 차이가 있다.

46) 위의 초안 및 「第二條に關する交換公文の内容」, 문서번호 1314-2내.

성사를 결정한 제2조 제3항 문제와도 직결되는 조문이었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는 일단 이와 관련해 ‘아무런 주장도 하지 못하는’ 구체적인 대상은 구총독부 관계 등의 채권(저금, 보험 등) 및 지방단체의 채권, 한국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장소를 보유하고 있었던 주체의 채권(예금, 대부금 등), 한국에 본점 등을 보유하고 있었던 법인 재산, 1945년 9월 2일자로 한국에 거주한 개인이 가지는 채권(저금, 보험, 공탁 및 미불금 등)이었다. 물론 이들은 모두 재산권에 기초한 것이며 개인청구권을 명시한 것은 아니다.

2_ 5월 31일 일본 초안의 제시

17일에 마츠나가 시안을 작성한 이후에도 초안은 매일 반복적으로 수정되었다. 이들 가운데 주목할 만한 변화가 일어난 것은 5월 24일자 초안이었다. 이 5·24 초안은 한국에게 실제로 제시할 것을 의식면서 작성된 초안이었다.⁴⁷⁾

이 5·24 초안 제2조 제1항은 재산권과 관련해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협정 서명일에 있는 것에 대해 이미 취한 조치 또는 향후 취할 수 있는 조치의 효력을 승인”하도록 규정했다. 즉 이미 취한 조치에 더해 ‘향후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한 승인까지 추가함으로써 장래에 걸친 일본정부의 재량 범위를 확장할 것을 노렸다. 이 변경의 의도와 관련해 외무성은 관계 부처 간 회의에서 이전의 초안에서 단지 처분하는 권리를 보유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던 것을 ‘조치의 효력을 승인한다’고 한 것은 전자가 평화조약 14조 연합국의 배상 규정과 관련된 것이므로 한일 간 관련 규정인 평화조약 4조 (b)항의 표현에 준하도록 한 것, 또한 향후 취할 수 있는 조치까지 승인하도록 한 것은 일본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기를 넓히면서도 그에 한국이 의의를 제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⁴⁸⁾ 즉 한일 청구권 교섭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

47) 「第二條(1965. 5. 24)」, 문서번호 1314-2내, 동 초안이 한국에 실제 제시할 것을 생각하면서 작성되었다는 사실은 동 제2조에 관한 관계부처 회의 중의 조약과장의 발언으로 알 수 있다. 「第二條に關する各省會議」, 문서번호 1314-2내, 2쪽.

48) 「第二條に關する各省會議」, 문서번호 1314-2내, 2~4쪽에서 정리했다.

냈던 재한일본인 재산 처분과 관련해 한국이 일본에게 그 효력을 승인할 것을 요구한 평화조약 4조 (b)항에 맞춤으로써 한국이 그것을 거절할 것을 어렵게 함으로써 일본이 취할 조치에 관한 재량권까지 확보하도록 꾸민 조문 변경이었다.

한편 5·24일 초안에서는 재산권 이외의 청구권 문제에 관해서는 그다지 큰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다. 청구권 문제는 제3항에서 규정되었다. 그러나 그 내용은 “협정 서명일 이전에 생긴 사유에 기초한 모든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규정했다. 즉 그 이전의 규정에서 “제1항에서 말하는 재산, 권리, 이익 이외의 어떠한 청구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다 간소하게 ‘모든 청구권’으로 표현한 것뿐이었다. 물론 이 수정은 해결 방안으로 외교보호권만을 포기한다는 취지를 뒤집은 것은 아니었다. 실제 24일자 초안에 대한 토의가 진행된 같은 부처 간 회의에서 외무성은 이 표현은 일본이 연합국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한 평화조약 19조에 준한 것이며 그에는 국민 간의 것을 처리하는 데 충분한 것인 가라는 비판이 있으나 정부가 일관되게 동 19조가 외교보호권의 포기라고 설명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규정했다고 밝히고 있다.⁴⁹⁾

재산권에 관해서는 큰 변화가 일어난 5·24 초안에서도 청구권에 관한 문제 해결 방안이 여전히 ‘포기’에 머무른 것은 앞서 언급한바와 같은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즉 재산권과 달리 청구권이 실체가 없는 권리인 이상, 개인청구권에 관해 정부가 구체적으로 그 권리를 상실시키는 효력을 인정하도록 요구하는 ‘조치’를 미리 취할 수 있는 여지가 애초 없다는 점, 또한 한국과의 합의 도출을 위해서도 청구권 문제 처리에 관해 선례로 의거하기 쉬운 대일평화조약의 조문 규정을 따르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해 과오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국가에 의한 외교보호권 포기에만 그치는 이상, 개인청구권 자체는 남길 수밖에 없었다. 실제 동 회의 석상에서, 개인청구권은 여전히 남을 것인가라고 물은 수산청의 질문에 대해 외무성은 적어도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답하면서 국제법상 개인의 권리를 없앨 수는

49) 앞의 문서, 4~5쪽.

없다는 인식을 드러냈다.⁵⁰⁾ 이 논의 과정에서도 직접 거론된 대상은 나포어선 문제였다. 그러나 국제법상 국가는 개인의 청구권을 없앨 수 없다고 드러낸 외무성의 인식은 당연히 한국인 개인의 청구권에도 적용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만약에 최종협정이 이 시점에서 만들어졌던 청구권의 ‘포기’ 표현으로 끝났다면 이러한 일본 정부의 견해에 따라 한국인 개인의 청구권 자체는 협정 성립 후에도 남는다는 것이 조문에 대한 해석으로 확정되었을 것이다.⁵¹⁾

이어, 27일, 28일에도 협정 제2조 초안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그들에는 약간의 문안 수정 등이 있었을 뿐, 24일자 초안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아울러 이 무렵, 최종협정 제2조로 인해 해결되는 범위를 별도로 정하는 교환공문 초안 역시 만들어졌다. 결과적으로 최종협정에서는 동 별도 규정은 교환공문 형식이 아니라 4·3합의 이후 일부 작성되던 합의의사록에 규정되었다. 그러나 그 29일자의 일본 측 서간으로 만들어진 교환공문 제1항에서는 협정 2조에서 해결되는 문제와 관련해 “한일회담에서 한국 측으로부터 제출된 ‘한국의 대일 청구요강’(이른바 8항목)의 범위에 속하는 모든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청구권에 관해 여하한 주장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에 합의한다”고 규정했다.⁵²⁾ 즉 이 교환공문 초안에서는 원래 재산과 구별되는 ‘청구권’이 병행해서 규정됨에 따라 해결되는 청구권 역시 8항목 내에 속하는 권리에 한정된다는 의미가 강해졌다.

이런 타인지, 이어 작성된 31일자의 교환공문 일본 측 서간 안에서는 동 8항목 표기의 다음에 괄호를 달아, “그 후의 수정 및 보충을 포함한다”고 수정되었다.⁵³⁾ 이로 인해 앞서 언급한 6차 회담에서 한국정부가 제6항을 수정하고 개인의 권리 행사를 일반화하려 한 조항의 변경 요구가 명확히 포함되게 되었다.

50) 앞의 문서, 7쪽.

51) 실제 동 24일자 초안에 대한 각성의 입장을 봐도 개인청구권이 남는다는 것에 대해 외무성 이외의 다른 부처가 이의를 제기하고 있었던 흔적 역시 없다[「五月二十四日案に對する各省の反響」, 문서번호 1314-2내].

52) 「日本側書簡(案)」(1965. 5. 29), 문서번호 1314-2내, 1쪽.

53) 「財産及び請求權に關する問題の解決並びに經濟協力に關する日本國と大韓民國との間の協定第二條に關する交換公文(案)(日本側書簡)」, 문서번호 1314-2내, 1쪽.

〈표 4〉 일본이 제시한 5월 31일자 협정 초안 중, 해결 규정과 관련된 조문의 요지

전문 제3항	양국 및 양국 국민의 재산과 양국 및 양국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모든 문제를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희망하여 …….
2조	<p>제1항: 재산, 권리 및 이익이며 이 협정 서명일에 이미 취한 또는 향후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의 효력을 승인하고 또 같은 날 이전에 생긴 사유에 기초한 모든 청구권을 포기한다.</p> <p>제2항: 단, 제1항 규정은 다음의 것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단, 이 협정의 서명일까지 체결국이 취한 특별조치의 대상으로 된 것은 제외된다). a) 1945년 9월 2일 이전부터 이 협정 서명일까지 계속해서 타방의 체결국에 거주하는 자의 재산, 권리 및 이익. b) 무역 재개 후의 통상의 접촉의 결과로써 재산, 권리 및 이익에 해당 하는 것으로 된 것.</p>
2조에 관한 교환공문	제1항: 협정 2조의 규정에 의해 한일회담에서 한국 측으로부터 1952년 2월 21일에 제출된 ‘한국의 대일청구요강’(그 후의 수정 및 보충을 포함 함)의 범위에 속하는 모든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청구권에 관해서는 여 하한 주장도 할 수 없게 된다.

물론 이에 따라 한일회담에서 직접 제기되지 않았던 개인의 권리 행사 문제가 해결 범위에 들어간다는 해석을 강화하는 의미가 더해졌다.

5월 31일 개최된 청구권 및 경제협력위원회 제7회 회합에서 같은 날 작성된 제2조에 관한 교환공문도 포함해 청구권 관련 협정이 처음으로 한국에게 직접 제시되었다. 그중, 해결 규정과 관련된 본 협정의 전문, 제2조 및 교환공문의 요지를 정리하면 〈표 4〉와 같다.⁵⁴⁾

〈표 4〉에서 볼 수 있는바와 같이 31일에 제시된 초안에서는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이라는 규정은 협정 전문에 두어지는 형식이 취해졌다. 또 24일자 초안까지 다른 항에서 규정되던 재산과 청구권 문제가 제2조 제1항에서 같이 합쳐져 규정되었다. 이에 따라 조문은 약간 수정되었다. 그러나 재산에 대해서는 ‘조치의 효력을 승인’하는 것을 요구한 데 반해 청구권에는 여전히

54) 5월 31일자로는 본 협정 및 제2조에 관한 교환공문 이외에도 협정 관련 부속 문서 전 7개가 편성되었다. 이들 문서는 모두 문서번호 79의 자료군에 수록되어 있다.

‘포기’로 되어 있는 점에서 질적 차이가 생긴 것은 아니다. 다만 실제 한국에 제시된 31일의 초안부터는 해결되는 범위에서 제외되는 대상과 관련해 4·3합의 시에는 없었던 재일한국인 문제가 직접 규정되었다. 이는 같은 한국인이지만 전후에도 일본에서 거주하게 된 사람들의 권리를 없애는 것에 따른 문제점을 고려한 결과였다. 그러나 해결되는 범위에서 제외되는 재일한국인의 권리 역시 재산권에만 한정되고 청구권은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4·3합의 시 이미 규정되어 있었던 전후 발생한 통상의 거래에 기초한 재산 문제에 관해서도 그 시간적 기점은 1945년 9월 2일부터 ‘무역 재개 후’로 변경되었다. 이는 물론 항복 문서 조인 후도 식민지 관계에서 연유하는 사람들의 재산권에 변동이 일어났으나 9월 2일로 정할 경우 그것이 전후 처리의 범주에 속하는 문제임에도 그 후 무역재개일까지 생긴 것은 해결 범위에서 제외될 것을 막기 위한 확대 조치였다.

제출한 협정 제2조 제1항 “향후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의 효력을 승인”한다는 규정과 관련해 일본은 한국에 대해 “일본에서의 한국의 재산, 청구권에 대해서는 향후 조치할 필요가 있다. 이 조치 속에는 개인이 자기의 권리에 기초해 상대국 정부 또는 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청구에서 거부하는 것도 포함된다”는 인식을 드러냈다.⁵⁵⁾ 그러나 이 승인 규정은 31일자 초안에서도 ‘재산, 권리 및 이익’, 즉 평화조약 4조가 규정한 권리 중, 재산 부분에만 달리고 있을 뿐, 청구권에 관해서는 24일자 초안과 같이 단지 ‘포기’로만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비록 회의에서 향후 조치할 대상과 관련해 ‘재산’과 더불어 ‘청구권’에게도 언급한 사실이 있어도, 조문상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개인 청구권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하는 필요는 없다. 그러나 재산권 부분에 관해서는 물론, 청구권에 관해서도 소송을 제기할 권리까지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의도를 한국에게 전달한 기록이 있음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55) 「第7次日韓全面會談請求權及び經濟協力委員會第1回會合」, 문서번호 79내, 5 쪽. 한국 문서에는 동 7회 위원회에 관해서는 간략한 보고문서만이 수록되어 있어, 자세한 회의록이 없는 관계상, 이러한 일본 측 발언 기록은 찾을 수 없다. 동 보고 문서는 다음 각주에서 언급하는 김동조 수석의 청훈 문서를 뜻한다.

동 초안이 제시되자 김동조 수석대표는 이동원 장관에 대해 특히 해결 규정과 관련되는 협정 제2조의 법적 문제에 관한 정부 입장을 지시할 것을 청혼했다.⁵⁶⁾ 그러나 그 청혼에서는 소송 등을 통해 개인청구권을 제기하는 권리까지 원칙적으로 각하할 수도 있다는 일본 측 발언 자체는 보고되지 않음에 따라 한국정부의 훈령 속에서도 일본 측 발언을 문제시하는 일은 없었다. 청혼에 대해 외무부가 직접 내린 훈령은 재산 및 청구권 문제가 원래 양국의 분리에 따라 발생한 것임에 비추어, 해결 범위에 포함되는 기준 날짜를 종전 후로 할 것, ‘향후 취할 수 있는 일본정부의 조치’의 내용이나 협정 발효로 인해 재일한국인들이 받게 될 영향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것들뿐이었다.⁵⁷⁾

5월 31일까지 ‘청구권 및 경제협력위원회’로서 진행되던 교섭은 협정 2조를 핵심으로 하는 청구권 문제 해결 문제와 기타 경제협력에 관한 실무적 토의를 분리해서 진행하게 됨에 따라 분과회가 설치되었다. 재산 및 청구권 해결 문제를 토의하기 위해 따로 개최된 6월 2일의 제7차 한일회담 청구권 및 경제협력위원회 법적문제소위원회(일본 측 호칭은 ‘청구권분과회’) 제1회 회합에서 일본은 동 31일자 협정 2조 초안 ‘향후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의 효력’에 관해 다시 이하와 같이 발언하고 있다.⁵⁸⁾

모든 조치에는 재산권, 채권 등을 소멸시키는 조치뿐만 아니라 상대국 국민이 청구를 들고 나오더라도 이것을 각하하는 조치 등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한다.

즉 조문상 직접적으로는 재산 부분에만 달린 “향후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

56) “JAW-05563”, 『제7차 한일회담, 청구권관계회의의 보고 및 훈령, 1965. 전2권(V.2 1965. 4. 3. 가서명 이후의 청구권 및 경제협력위원회, 1965. 4~6)』, 184쪽.

57) “무제”, 『제7차 한·일 회담(1964. 12. 3~1965. 6. 22) 청구권 관계 회의보고 및 훈령, 1965. 전3권(V.3 미해결문제 토의 및 조문화 작업)』, 243~244쪽.

58) 동 발언도 포함해 제1회 회의의 이하 토의 내용은 「第7次 日韓全面會談請求權及 經濟協力委員會請求權分科會第1回會合」, 문서번호 81, 2~13쪽에서 인용 및 정리했다. 한국 문서에서는 회의 내용에 관한 간략한 보고문서만이 삽입되어 있어, 이와 같은 구체적인 발언 기록 등은 확인할 수 없다[“JAW-06052, 청구권 및 경제협력위원회 법적문제 소위원회 회의보고(제1회)”, 위의 문서, 253~254쪽].

의 효력을 승인” 규정과 관련해 일본은 그 효력에는 재산, 채권 같은 문제뿐만 아니라 실체가 없는 권리인 개인청구권까지 각하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는 견해를 다시 천명했다. 물론 이 발언만으로 한국인 개인의 청구권이 정식으로 해결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 협정 체결 후 일본정부는 협정 발효 전날인 12월 17일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 및 경제협력에 관한 일본국과 대한민국 간의 협정 2조의 실시에 따른 대한민국 등의 재산권에 대한 조치에 관한 법률’(법률 144호)을 공포하여 한국인의 재산권을 소멸시켰다. 그러나 애초 실체가 없는 권리인 청구권에 관해서는 그러한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다. 또 같은 날에 제출된 31일자 제2조에 관한 교환공문에서도 협정 2조로 해결되는 범위와 관련해서는 단지 8항목 요구로 되어 있을 뿐이다. 따라서 비록 수정, 보충 부분도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변경된 제6항 요구에 반드시 개인청구권 요구가 포함된다고 합의를 이룬 것도 아닌 이상, 이 교환공문의 표현만으로 일본 측 의도가 협정상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동 6월 2일자의 제1회 법적문제소위원회에서 한국은 본국 훈령대로 일본이 밝힌 ‘모든 조치’에 대해 그것을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일본은 조치들을 통해 해결하는 것에 포함될 것이 많을 것이 예상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나열하지 못하기 때문에 평화조약의 선례에 따라 대상을 시점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국은 그에 대해 8항목 이외에 어떠한 것이 조치의 대상으로 될지 불확정이면 국회 대책상 우려된다고 말하고, 또 이와 같은 포괄적인 규정이면 딱한 경우도 생길 수 있으므로 해결 대상은 8항목으로 한정할 것을 요구했다. 즉 일단 한국은 일본에게 해결될 범위가 명확히 8항목의 범위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전달하기는 했다.

그러나 문제는 8항목에 속하는 범위 자체가 반드시 명확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도 있었다. 실제 동 석상에서 일본이 모든 조치와 관련해 한국이 8항목의 정확한 범위를 명시해준다면 대상 범위 여부를 결정한다고 반론했으나, 그 후 한국 역시 그 정확한 범위를 제시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 6월초 무렵까지의 한일 직접 교섭에서도 해결될 범위와 관련해 그 범위가 8항목의 범위에만 그칠 것인가, 또한 동 8항목에만 그친다고 하더라도 그 8항목에 무엇이 들어갈

것인가에 관한 이중의 문제점을 여전히 안게 되었다.

3_ 한국 초안의 제시와 최종 합의의 성립

법적문제소위원회를 통해 밝혀진 일본 측 견해에 대해 한국은 그 내용의 검토 결과를 6월 7일자로 정리했다.⁵⁹⁾ 그 가운데 해결 범위와 관련해 한국정부가 정리한 입장은 다음과 같다. 즉 대일청구권이라 함은 종전 후의 양국 분리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종전 이전에 이미 그 권리가 발생하고 있었으나 종전으로 인해 그 권리 행사가 중단된 각종의 청구권을 말한다. 따라서 해결 대상은 종전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의 것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4·3합의에서 '관계협정의 성립 시에 존재하는 재산과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평화조약 4조에 규정된 것을 포함해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의미는 한일회담 청구권위원회에서 다루어져 온 한국의 대일재산 및 청구권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다. 가령 일본 초안대로라면 해결 범위에 제외 규정을 따르겠다고 하더라도 전후 입국자로 통상의 무역 거래를 통해 얻은 것 이외의 것 등이 해결 범위에 들어가게 되므로 서명일을 기준으로 하는 일본 측 방안에는 찬성하지 못한다. 4·3합의 중의 합의의사록에서 해결 규정과 관련해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되는 재산과 청구권에 관한 문제에는 한일 회담에서 제출된 '대일청구요강'(이른바 8항목)의 범위에 속하는 모든 청구권이 포함된다'는 구절의 의미는 종전 이전의 대일청구권을 종합하여 제출한 8항목 내의 청구권과 동 8항목에 빠져 있을지도 모르는 종전 전 청구권을 예상하여 그와 같이 규정한 것이다. 또 일본 초안에서는 기왕의 조치는 물론, 향후의 조치의 효력까지 승인하게 되어 있어, 이는 자국 국민의 재산 및 청구권을 상대 측에 백지로 위임하려는 위험한 것이므로 기왕의 조치 및 향후의 조치에 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

즉 일본 초안에 대해 한국정부가 드러낸 우려는 해결 범위에 들어갈 여부

59) “‘청구권 해결’에 관한 일 측 협정안에 관한 검토”, 앞의 한국문서, 261~270쪽.

를 결정하는 날짜를 일본 초안처럼 협정 서명일로 하는 것, 한국인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기왕 및 향후의 조치를 충분히 파악하지 않은 채, 그것을 조문으로 수락하는 것뿐이었다. 이들과 대조적으로 해결 범위에 관한 해석을 보다 천명하기 위해 이루어진 4·3합의 중의 합의의사록 문안과 관련해 한국정부는 중대한 견해를 드러냈다. 즉 해결 범위를 가리는 기준일을 종전으로 할 것에 신경을 쓴 한국정부는 그로 인해 종전 이전의 것이라면 직접 일본에 대해 제출한 대일 8항목 이외에도 혹시 8항목에 '빠져 있을지도 모르는 청구권을 예상하고 규정'했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쉽게 말해 동 합의의사록에 명시된 해결 조항과 관련해 한국정부는 종전 이전에 발생한 것이라면 8항목에 속한 것 이외의 것까지 다 포함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한국정부의 인식에 따르면 위안부 문제와 같이 8항목에 빠져있을지도 모르는 대일청구권조차 그것이 종전 이전에 발생한 청구권이라는 이유로 다 포함되는 결과가 된다.

물론 한국정부 역시 이와 같은 개인청구권을 직접 의식했을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또한 이러한 인식은 적어도 협정 같은 공식 문서를 통해 일본에게 직접 제시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막판 교섭에 임했던 시기까지 해결 범위와 관련해 한국정부의 머리 안에 있었던 것은 시점의 문제뿐이었으며 그 권리가 발생하는 피해 내용 등에 따라 비록 종전 이전의 것이라도 해결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대상이 존재한다는 등의 인식이 아니었음을 틀림없다.

이상의 검토를 마친 한국은 6월 10일 처음으로 일본에게 협정 2조 초안을 제출하고 있다. 그 핵심 내용은 <표 5>와 같다.⁶⁰⁾

결과적으로 이 한국 초안은 앞서 5월 31일자로 일본이 제출하던 초안과 비교해 최종협정의 구성의 기반이 되었다. 즉 제1항에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 규정을 두고 제2항에서는 그 해결 범위에서 벗어나는 제외 대상이 규정되는 형식이 취해졌다. 이 6·10 한국 초안은 5월 31일까지의 일본 초안들

60) “한국 측 제1차 안”, 『제7차 한일회담, 청구권관계회의의 보고 및 훈령, 1965. 전2권 (V, 2 1965. 4. 3. 가서명 이후의 청구권 및 경제협력위원회, 1965. 4~6)』, 391~392 쪽; 「第二條(案)(40.6.10韓國代表部より送付越しのもの)」, 문서번호 1314내, 1~2쪽.

〈표 5〉 6월 10일에 한국이 제출한 초안 중의 해결 규정과 관련된 조항 요지

제1항	이 협정 체결에 의하여 이 협정 서명일에 존재하는 양국 및 그 국민 간의 재산 및 청구권 문제는 평화조약 4조에서 규정된 것을 포함해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다.
제2항	단, 제1항은 이하의 것에 대해 영향을 주지 않는다. a) 1945년 8월 15일 이전으로부터 이 협정 서명일까지 계속 일본에 거주하는 자의 재산 및 청구권(단, 협정 서명일까지 전후 처리를 위해 특별히 취한 조치의 대상이 된 것은 제외) b) 양국 및 그 국민 간의 재산 및 채권채무관계이며 1945년 8월 15일 이후 통상의 접촉에서 생긴 것

에서 실체를 가진 재산과 그 이외에 근거한 청구권을 일단 구별하고 재산에 관해서는 그에 대한 조치의 효력을 승인하는 것으로, 또 청구권에 관해서는 단지 포기하는 것으로 해결시키는 구별을 없애고 일괄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하도록 규정했다. 제1항은 협정 서명일이라는 시점을 명시했으나 이는 물론 협정 서명일까지 이어져온 재산 및 청구권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지, 해결 범위에 들어가는 대상 자체를 협정 서명일까지 확장하려는 일본 초안을 수락한 것은 아니었다. 한국이 이렇게 조문을 변경한 것은 6월 7일자 검토에서 나타나 있었던 '국민의 재산 및 청구권을 상대 측에 백지로 위임하려는 위험한 것'이라는 위구심을 반영하고 일본 초안 제1항에 있는 '이미 취한 조치 및 향후 취할 수 있는 조치'라는 문안을 대체하기 위한 대안의 의미를 지닌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 문안 변경에 따라 재산이 아닌 청구권에 관해서는 비록 같은 '해결'이라 하더라도 국가가 단지 외교보호권만을 포기한다는 의미가 직접 나타나 있었던 일본 초안과 비교해 그 해결의 의미가 한층 더 애매해졌다. 즉 조문상 청구권 자체가 원천 소멸된 것인지, 또는 외교보호권만이 포기된 것인지,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된 혼란의 기원이 되었다. 또 동 6월 10일자 초안 제2항에서 한국은 재일한국인이건, 전후 새롭게 생긴 것이건, 제외 대상을 가리는 기준일

을 1945년 8월 15일로 명시했다.⁶¹⁾ 이 역시 6월 7일자 의 검토에서 나타났듯이 해결 범위를 종전 전까지로 한정하려는 입장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봐도 틀림없다.

또 6·10자 한국 초안은 제외하는 재일한국인의 권리에 관해 ‘재산’에만 한정하지 않고 ‘청구권’도 명시했다. 확인했다시피 5월 31일자로 일본이 제시한 초안에서도 해결 범위에서 제외되는 재일한국인의 권리는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 사실상 평화조약 4조가 말하는 재산 부분에만 한정되어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는 한국은 일단 재일한국인의 권리와 관련해서도 명확히 ‘청구권’도 해결 범위에서 제외하려 했다. 그러나 한국정부가 이 ‘추가’에 별 무게를 두고 있었을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실제 이하 보는 막판 ‘합숙교섭’에서도 이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된 흔적은 없으며 오히려 일본 측과 재산으로 간주하는 데 쉽사리 합의했다. 이 시점에서 한국정부가 청구권을 일단 ‘추가’한 것은 교섭 자체가 줄곧 재산 및 청구권으로서 진행되어왔다는 정도의 인식에 따른 결과로 봐도 별 문제는 없어 보인다. 결국 이러한 안이한 인식 탓에 그나마 해결 범위에서 제외된 재일한국인에 관해서도 개인에게 가해진 폭력피해 등의 ‘청구권’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되어버렸다.

교섭은 협정 기초를 위해 6월 11일부터 호텔 뉴오파니에서 막판 ‘합숙교섭’으로 진행되었다. 그에 맞게 일본은 11일자로 동 6·10자 한국 초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정리하고 있다. 그러나 그 평가는 부정적인 것이었다. 주된 비판 대상은 한국 초안대로 단지 재산 및 청구권이 해결되었다고만 규정한다면 그것은 법률적으로는 그 범위가 지극히 애매하다, 재산이나 청구권에 대해 어떤 처리가 이루어졌는지 등이 명확하지 않다, 제2항 a)에만 규정된 ‘단 협정 서명일까지 전후 처리를 위해 특별히 취한 조치의 대상이 된 것은 제외’라는 구절은 제2항 전체에 적용시키지 않으면 제2항 b)와 관련해, 8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61) 5·31 일본 초안에서는 a)항의 재일한국인의 문제, b)항의 전후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생긴 것의 시발점을 1945년 9월 2일자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비교해도 종전 날을 앞당긴 것으로 뜻했다.

범주라도 8월 15일 이후에 발생한 것은 제외된다는 것 등이었다.⁶²⁾

즉 일본은 한국이 일본 초안 제1항을 대체하는 의미에서 제시한 6·10 한국 초안 제1항에 있는 '재산 및 청구권이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로 하는 규정만으로는 범위가 모호한 것뿐만 아니라 어떠한 처리가 이루어졌는가가 명확하지 않음에 따라 문제를 종결시키는 데 법적 조문으로서는 충분하지 않다고 확실히 인식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 5·31 일본 초안 제1항이 재산과 관련해 제시한 '이미 취한 조치 및 향후 취할 수 있는 조치의 효력을 승인'이라는 규정은 여하한 조치도 가능해지도록 함으로써 재산 부분의 문제를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시킬 수 있는 '법적 해결 방안'이었던 것이다. 마찬가지로 일본에게는 청구권 문제를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시키는 방안은 외교 보호권의 포기에 따른 것이었다. 또한 '범위'에 관해서도 한국 초안에서는 제2항에서 8월 15일로 명시함으로써 가령 8항목에 속하는 것이라도 8·15 이후 생긴 것은 해결 범위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생겼다. 이에 대해 5·31 일본 초안은 협정 서명일을 기준으로 그때까지 존재하는 재산, 권리 및 이익 그리고 청구권 모두를 대상으로 함으로써 전후 처리의 성격을 지닌 것이라면 사실상 포괄적으로 해결시킬 수 있는 방안이었다.

이러한 대립을 안은 채 진행된 호텔 뉴오타니 교섭에 관해서는 그것이 합숙형 교섭으로 진행된 탓인지, 한일 양국 모두 회의 기록을 남기지 않고 있다. 그러나 동 뉴오타니 교섭 마지막 날인 14일에 진행된 교섭에서는 6·10자 한국 초안에 대해 일본이 그 초안이 4·3합 요강만을 기술한 정치적인 문서에 불과하며 그대로 조문화할 수 없다고 하면서 14일 다시 초안을 제출했다.⁶³⁾ 그러나

62) 「財産及び請求權に關する問題の解決並びに經濟協力に關する日本國と大韓民國との間の協定第二條に關する韓國案(1965. 6. 10案)について」, 문서번호 1314-3 내. 앞서 인용한 초안 등에서도 나오는 표현이나 여기에서도 나오는 '특별 조치'라고 함은 합의의사록 b)항에서도 규정된 전쟁 종결에 따른 전후 처리를 위해 취한 조치를 뜻한다.

63) 이와 같은 일본 측 발언기록은 "JAW-06311", 『제7차 한·일 회담(1964. 12. 3~1965. 6. 22) 청구권 관계 회의보고 및 훈령, 1965. 전3권(V.3 미해결문제 토의 및 조문화 작업)』, 280쪽. 또 제출받은 6·14 일본 초안 자체는 「第二條(案)(1965.

일본 측 14일자 초안은 여전히 협정 서명일을 기준으로 상대 측 재산, 권리 및 이익에 관해서는 '여하한 조치도 취하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만이 명시되어 있으며 또한 제외 대상과 관련해서도 재일한국인과 관련해서는 1945년 9월 2일 이후의 거주자 및 전후 생긴 권리에 관해서도 1947년 8월 15일로 되어 있었다. 비록 일부 표현은 달라졌으나 사실상 5월 31일자 초안과 같은 수준의 내용이었다.⁶⁴⁾

이러한 11일부터 14일까지의 한일 교섭을 돌이켜보면서 그 교섭에 참여한 일본 측 관계자는 한국이 시종일관 말하고 있었던 것은 일본 안은 숲으로 도망친 개를 죽이기 위해 숲 전체를 태워버리자는 생각이다, 그렇지 않고 개를 끌어내고 그것을 죽이면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었으며 그에 관한 싸움을 많이 했다고 회고하고 있다.⁶⁵⁾ 이 회고의 요지는 다음과 같이 해석해도 틀림없다. 즉 한국은 6·10 초안에서 제시한바와 같이 해결 범위를 1945년 8월 15일로 한정함에 따라 그 성격상 과거 처리의 문제임에도 전후 생김에 따라 해결 범위에서 벗어나는 것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검토하면서 그것을 해결 대상에 넣도록 주장한 데 대하여 일본은 지정한 제외 대상 이외는 각 항목마다 조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협정 서명일을 기준으로 일괄 '죽이는' 방안을 채택하도록 주장하고 있었다고 풀이된다.

최종 교섭은 힐튼호텔로 자리를 옮겨가면서 계속되었다. 뉴오타니 교섭과 마찬가지로 합숙형으로 진행된 동 힐튼교섭에 관한 회의 기록 역시 없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일본 측 교섭 당사자는 동 힐튼 교섭 시, 한국이 주장하는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 조항을 먼저 제1항에 두고 '죽이는 방법'은 제3항으로 가져가자는 이야기를 한국 측과 나누었다는 증언을 남기고 있다.⁶⁶⁾

6. 14)], 같은 문서, 278~279쪽.

64) 실제 동 초안을 받은 한국은 일본 측 제1차 안과 같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위의 발언기록 문서, 280쪽.

65) 「日韓國交正常化交渉の記録 總說: 條文作成交渉と日韓條約緒協定の調印」, 문서번호 1316내, 13-458~459쪽.

66) 「日韓國交正常化交渉の記録 總說: 條文作成交渉と日韓條約緒協定の調印」, 문서번호 1316내, 13-459쪽.

바로 제2조 제3항은 ‘개를 죽이는 방법’, 즉 제2항까지만 규정하고 또 해결 범위의 기점을 1945년 8월 15일로 정하고 있었던 한국 측 6·10자 초안의 경우 생길 수 있는 제외 대상과 관련해 그 항목들을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일괄 ‘죽이는 방법’으로서 부가된 조문이었다.

6월 17일 한국은 비록 제2항 제외 대상의 시간적 기점을 1945년 8월 15일로 하는 것에 관해서는 고집하는 입장을 보였으나 제3항 규정을 두는 것에 관해서는 그것을 수락했다. 실제 17일의 한국 초안은 6월 10일자 초안대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 규정을 제1항으로, 그리고 제외 조항을 제2항으로 둔 다음에 제3항을 신설하고 “제2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면서 일방의 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이익이며 이 협정의 서명일에 타방의 체약국에 있는 것으로 특별조치의 대상으로 된 것에 대한 조치 및 일방의 체약국 및 그 국민의 타방의 체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이며 같은 날 이전에 생긴 사유에 근거한 것에 관해서는 여하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했다.⁶⁷⁾

이 안이 제출되자 일본 측 교섭 담당자는 “우리 측의 개 죽이기의 사고방식이 제3항에 나와 있으므로 이것으로 되었다고 생각했다”고 증언하고 있다.⁶⁸⁾ 바로 최종 교섭에서는 이 제3항이 교섭 성사를 결정지은 핵심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로써 한때 자국민의 권리를 백지로 위임하려는 것과 같다고 반대하던 ‘조치’와 관련해 비록 직접 그 효력을 승인하다는 규정은 피해였으나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그를 대체했다. 아울러 한국은 실체가 없는 권리임에 따라 원천적으로 그것을 소멸시키지 못하는 개인청구권 문제에 관해서도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시키는 길을 열어주었다. 다시 말해 제3항은 국가가 원천적으로 지울

67) “JAW-06420, 『제7차 한일회담, 청구권관계회의의 보고 및 훈령, 1965. 전2권(V, 2 1965. 4, 3 가서명 이후의 청구권 및 경제협력위원회, 1965. 4~6)』, 399~400쪽; 「第二條(案)(40. 6. 17韓國側より提示のあったもの)」, 문서번호 1314-3내.

68) 「日韓國交正常化交渉の記録 總說: 條文作成交渉と日韓條約緒協定の調印」, 문서번호 1316내, 13-459쪽.

수 없음에 따라 국가 간에서는 해결하기 힘든 개인청구권 문제에 관한 어려움을 아무런 주장도 하지 못하도록 묶음으로써 돌파하기 위한 법적 보완책이었던 것이다.

한국의 제3항 규정 수락에 따라 남은 주된 교섭 과제는 제2항에서 규정되는 제외 사항의 범위를 시기적으로 정하는 문제였다. 17일의 한국 초안에서도 해결 범위에서 제외되는 재일한국인 및 전후 통상의 접촉에 따라 새롭게 생긴 것에 관한 기준 날짜는 모두 1945년 8월 15일이었다. 이에 대해 일본은 김-오히라 합의 이후, 한일 간의 청구권 문제 해결의 양해는 한국의 분리에 따른 전후 처리의 성격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단절된 관계가 다시 회복하고 통상의 접촉이 시작된 이후의 것만이 영향을 받지 않아야하고, 종전 후라도 일본을 떠난 한국인들의 재산 등은 전후 처리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최종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⁶⁹⁾ 즉 일본은 1945년 8월 15일 이후의 것을 모두 제외 대상으로 할 경우는 '전후 처리'의 문제인 귀환자 관련 문제까지 제외될 것을 경계한 것이었다.

19일 저녁부터 20일 아침 3시에 걸쳐 진행된 최종 교섭에서 한국은 전후 100만 명 가량의 일본 체류 한국인이 귀국한 것을 감안해 제2항 a)에서 규정되는 재일한국인의 기점을 1947년 8월 15일부터 1년 이상 거주자로 하는 것을 수락했다.⁷⁰⁾ 대신 그것을 전제로 제2항 b)에서 규정되는 전후 통상의 접촉에 따라 생긴 것에 관해서는 한국 초안대로 1945년 8월 15일로 하는 것을 일본이 수락했다.⁷¹⁾

기점 문제와 더불어,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17일 한국이 마지막으로 제기한 초안에서 제외 대상인 재일한국인의 권리 및 전후 통상의 접촉에서 생긴 것

69) 「財産及び請求權問題解決條項(第二條)について」, 문서번호 1314-3내.

70) “JAW-06490, 『제7차 한일회담, 청구권관계회의 보고 및 훈령, 1965. 전2권(V,2 1965. 4. 3 가서명 이후의 청구권 및 경제협력위원회, 1965. 4~6)』, 463~464쪽.

71) 단 전후 통상의 접촉에 의한 예외 시점이 1945년 8월 15일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후 한반도에 귀환한 자의 전후 생긴 권리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일본이 크게 양보한 것은 아닌 점에 주의가 필요하다.

과 관련해서는 일단 재산과 더불어 청구권이 여전히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동 19일 밤부터의 교섭에서 한국은 협정 2조에서는 ‘청구권’에는 언급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는 ‘청구권’은 외교법권적인 정부 청구권으로 해석하며 개인의 청구권은 재산, 권리 및 이익에 포함된다는 일본 측 해석에 합의한 결과였다.⁷²⁾ 즉 한국에게는 ‘청구권’은 적어도 개인에 관해서는 ‘재산권’과 별 차이가 없는 권리에 불과했던 것이다. 이 인식에 따라 한국은 기점 문제와 달리 대일요구 권리가 발생하는 피해 내용의 문제에 주목하는 일은 끝내 없었다.

기타 제2조에 관한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따로 작성된 합의의사록에서는 ‘재산’ 표현을 일본 측 요구대로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 일반화할 것, 또 협정 3조에서 규정된 ‘조치’에 관해서는 재산, 권리 및 이익, 또 청구권에 관한 문제 해결을 위해 취해진 국내조치로 정의할 것, 그리고 해결의 범위를 명기하는 핵심 조항에 관해서도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청구권에 관한 문제에는 한국의 대일청구요강(소위 8항목)의 범위에 속하는 모든 청구가 포함”되었다고만 규정하고 해결 범위가 8항목에만 한정되는 일도 없었다.⁷³⁾ 물론 합의의사록에서 기초된 이러한 관련 조문들은 기본적으로 앞선 교섭에서 나와 있었던 것을 정리한 것뿐이며 개인청구권과 관련해 새로운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었다.

6월 22일 협정은 정식으로 조인되었다. 그러나 결국 최종협정의 조문과 더

72) “JAW-06490”, 『제7차 한일회담, 청구권관계회의의 보고 및 훈령, 1965. 전2권(V,2 1965. 4, 3 가서명 이후의 청구권 및 경제협력위원회, 1965. 4~6)』, 464쪽. 동 문서는 인쇄 상태가 좋지 않아, ‘외교법권적’이라는 표현은 반드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나 문헌에 나오는 이 ‘외교법적 권리’라는 표현이 국가의 외교보호권을 뜻하는 것으로 생각해 무방할 것이다.

73) 해결 범위에서 제외되는 항목과 관련해서는 한국이 타결 막판에 전후 일본으로부터 귀환한 한국인이 일본 내에서 가진 부동산에 관해서는 고려할 것을 당부했다. 이는 실제 합의의사사록 1항에서 일단 반영되었다. 그러나 이는 동 부동산의 권리를 해결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을 정한 것이 아니라 동 부동산에 대해서는 법률로 인한 직접적인 ‘소멸’ 방식을 취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의 권리를 염두에 두면서 ‘보관자 귀속 방식’을 취하는 것을 뜻한 것에 불과한 점에 주의가 필요하다.

불어 그로 이어지는 기초 과정에서도 개인청구권 해결 여부를 명확히 가리는 교섭이 이루어진 사실은 없었다. 이렇게 하여 개인청구권 해결 여부에 관한 논란은 그 피해의 기억에 시달린 각 개인이 목소리를 냄으로써 비로소 인식하게 되었으며 결국 21세기가 된 오늘날까지 양국관계를 구속하는 분쟁거리로 비화한 것이었다.

VI. 맺음말

이상, 협정 성립의 직접적인 교섭 과정이었던 1965년 3월의 이동원 장관 방일 전후부터 6월의 조인까지의 교섭 과정을 상세히 분석했다. 이 결과 막판 교섭 과정에서도 개인청구권이 해결 범위에 들어갈 것인가를 둘러싸고 한일 간에 명시적인 교섭이 진행된 사실이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개인청구권 문제 해결 여부에 영향을 줄만한 중요한 사항들이 없었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먼저 협정 기초의 기본적인 틀을 정한 4·3합의 시, 비록 직접적으로 개인청구권 문제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었으나 그 범위를 명확히 정의도 하지 않은 채, ‘평화조약 4조에 규정된 것을 포함해’로 그 해결범위가 확대되었다. 아울러 제의 대상을 ‘전후’에 새롭게 발생한 ‘채권채무 문제’로만 한정함으로써 ‘전전’에 발생하던 개인청구권 문제는 시기 및 그 성격상 해결 범위에서 제외되는 종류의 문제가 아니라는 틀이 잡혔다. 실제 한국정부 내부에서도 4·3합의의 의미와 관련해 동 합의는 종전 이전의 것이라면 8항목에 빠져 있는지도 모르는 것까지 포함된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었다.

4·3합의 후 조문 기초 작업이 개시되는 가운데 일본이 개인청구권 문제를 거론하자, 한국은 그 범위 문제를 인식도 하지 않은 채, 4·3합의로 한일 간에서는 모든 문제가 끝났다는 안이한 인식을 피력했다. 그러나 청구권 문제가 국

민의 권리 특실의 문제이므로 명확히 해두지 않으면 훗날 분규가 생긴다는 것을 인식한 일본 역시 한국인 개인청구권 문제를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협정 기초로의 내부 준비 과정에서는 ‘불법행위 배상’에 관한 청구권을 포함한다는 인식도 드러났으나 이 역시 직접적으로는 한국에 의한 일본 어선 나포 문제였다.

조문 기초 작업 당초 일본은 개인청구권이 실체가 없는 개인권리의 문제임을 의식해 그 해결 방법으로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규정을 둘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었다. 비록 관련 교섭에서 일본은 “상대국 국민이 청구를 들고 나오더라도 이것을 각하하는 조치 등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한다”는 발언도 했으나 기본적으로 국가는 국제법상 개인의 권리를 없앨 수 없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었다. 따라서 일본 초안이 그대로 채용되었다면 조문상, 개인청구권 문제 해결의 실태는 외교보호권만의 포기로 확정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 측 조문도 작용해, 결국 최종협정에서는 주지의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로 됨에 따라 그 해결의 실태로 외교보호권만을 포기했다는 조문상의 의미가 후퇴되었다.

교섭 막판, 일본이 해결 범위를 결정하는 데 구체적인 항목 조정이 아니라 포괄적인 해결을 실현하려 한 데 대하여 일단 한국은 그 범위를 8항목에만 한정하도록 반론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결국 해결 범위인 동 8항목에 무엇이 들어가는가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또한 과거사 처리의 성격을 띤 것이라면 일괄 모두 처리 범위에 넣을 것을 생각하던 일본이 그러기 위해서도 협정 서명일을 기준으로 존재하는 것을 일괄 대상으로 하자고 요구한 데 대하여 한국은 원래 협정의 취지가 한일일체화 시대의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전 날을 기준으로 할 것을 주장해, 대립했다. 그러나 절충의 결과, 1945년 8월 15일 이후의 통상의 접촉을 통해 생긴 새로운 채권-채무 문제는 제외되었으나 반대로 과거사 처리의 성격을 띤 것이라면 협정 서명일 이전에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해 여하한 주장도 할 수 없게 되었다. 그 결과 교섭에서는 단 한번도 명시적으로 고려되지 않았던 개인청구권 문제가 그것이 과거사 처리의 성격을 띤 것이며 서명일 이전에 발생한 문제이기에 바로 여하한 주장도 할 수

없는 대상으로 해석되는 여지가 강화되어버렸다.⁷⁴⁾

이렇게 하여 각 개인에게 가해진 피해에 기초한 개인청구권 문제는 그것을 해결시켰다고 하는 막판 제2조 기초 교섭에서도 단 한 번도 명시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은 채, 사실상 해결 범위에 들어가게 된 것이었다.



74) 외교사 연구가 아니라 최종 협정의 내용에 기초한 법학적 검토를 통해 위안부 문제 등도 협정의 대상범위에 들어간다는 입장을 일찍 밝힌 글로서는 정인섭, 1994, 「1965년 韓日 請求權協定 對象範圍에 관한 연구」, 『省谷論叢』 제25집 상권, 517~519쪽이 있다.

참고문헌

한일회담 한국공식문서

- 『속개 제6차 한일회담, 청구권위원회회의록 및 경제협력문제, 1964』.
 『이동원 외무부장관 일본 방문, 1965』.
 『제7차 한일회담, 청구권관계회의 보고 및 훈령, 1965, 전2권(V.1 1965. 3. 18~4. 3까지의 교섭)』.
 『제7차 한일회담, 청구권관계회의 보고 및 훈령, 1965, 전2권(V.2 1965. 4. 3. 가서명 이후의 청구권 및 경제협력위원회, 1965, 4~6)』.
 『제7차 한·일 회담(1964. 12. 3~1965. 6. 22) 청구권 관계 회의보고 및 훈령, 1965, 전3권(V.3 미해결문제 토의 및 조문화 작업)』.

기타

- 장박진, 2009, 『식민지관계 청산은 왜 이루어질 수 없었는가: 한일회담이란 역설』, 논형.
 장박진, 2013, 「강제징용 한국인 피해 문제에 대한 대(고등)법원 판결의 문제점 검토: 외교사 연구의 입장에서」, 『일본공간』 제14집.
 정인섭, 1994, 「1965년 韓日 請求權協定 對象範圍에 관한 연구」, 『省谷論叢』 제25집 상권.

한일회담 일본공식문서

- 「第7次日韓全面會談請求權及び經濟協力委員會第1回會合」, 文書番號 79.
 「財産及び請求權に關する問題の解決並びに經濟協力に關する日本國と大韓民國との間の協定(案)(1965. 5. 31)」, 文書番號 79내.
 「財産及び請求權に關する問題の解決並びに經濟協力に關する日本國と大韓民國との間の協定第 二條に關する交換公文(案)(1965. 5. 31)(日本側書簡)」, 文書番號 79내.
 「第7次日韓全面會談請求權及び經濟協力委員會請求權分科會第1回會合」, 文書番號 81.
 「日韓外相會談第1回會合記錄」, 文書番號 729.
 「日韓外相會談第1回會合記錄」, 文書番號 730.
 「日韓外相會談第4回會合記錄」, 文書番號 731.

- 「日韓外相會談第6回會合記錄」, 文書番號 732.
- 「非公式外相會談記錄」, 文書番號 734.
- 「要望事項」, 文書番號 1313내.
- 「日本國と大韓民國との間の財産及び請求權に関する問題の解決のための協定(案)」,
文書番號 1314-1내.
- 「日韓財産及び請求權問題解決協定の基本方針(案)」, 文書番號 1314-1내.
- 「財産及び請求權問題解決協定の基本方針(案)」, 文書番號 1314-1내.
- 「財産及び請求權に関する問題の解決並びに經濟協力に関する日本國と大韓民國と
の間の協定(案)(1965. 4. 27.)」, 文書番號 1314-1내.
- 「財産及び請求權に関する問題の解決並びに經濟協力に関する日本國と大韓民國と
の間の協定(案)(1965. 4. 28.)」, 文書番號 1314-1내.
- 「財産及び請求權に関する問題の解決並びに經濟協力に関する日本國と大韓民國と
の間の協定(案)(1965. 5. 1.)」, 文書番號 1314-1내.
- 「第二條及び第三條の代案」, 文書番號 1314-1내.
- 「處理方針」, 文書番號 1314-1.
- 「五月二十四日案に對する各省の反響」, 文書番號 1314-2내.
- 「日本側書簡(案)」, 文書番號 1314-2내.
- 「日韓財産及び請求權問題解決協定について」, 文書番號 1314-2내.
- 「第二條(1965. 5. 6.)」, 文書番號 1314-2내.
- 「第二條(1965. 5. 7.)」, 文書番號 1314-2내.
- 「第二條(1965. 5. 24.)」, 文書番號 1314-2내.
- 「第二條に関する各省會議」, 文書番號 1314-2내.
- 「第二條に関する交換公文の内容」, 文書番號 1314-2내.
- 「財産及び請求權問題解決條項(第二條)について」, 文書番號 1314-3내.
- 「財産及び請求權に関する問題の解決並びに經濟協力に関する日本國と大韓民國と
の間の協定第二條に関する韓國案(1965. 6. 10. 案)について」, 文書番號 1314-3내.
- 「第二條(案)(40. 6. 10韓國代表部より送付越しのもの)」, 文書番號 1314-3내.
- 「第二條(1965. 6. 14. 試案A)」, 文書番號 1314-3내.
- 「第二條(1965. 6. 14. 試案B)」, 文書番號 1314-3내.
- 「第二條(1965. 6. 14. 試案C)」, 文書番號 1314-3내.
- 「第二條(1965. 6. 14. 試案D)」, 文書番號 1314-3내.

「第二條(案)(40. 6. 17韓國側より提示のあったもの)」, 文書番號 1314-3내.

「日韓國交正常化交渉の記録 總説: 條文作成交渉と日韓條約緒協定の調印」, 文書番號 1316내.

「日韓會談における請求權問題の未解決点について」, 文書番號 1374.

「確認事項(案)」, 文書番號 1381내.

「韓國外相訪日の際ないしその前に解決を要する重要問題處理方針について」, 文書番號 1987내.

기타

日本國會會議錄, 1991. 12. 13, 參議院豫算委員會 3호.

吉澤文壽, 2012, 「日韓請求權協定と戦後補償問題の現在: 第2條條文化過程の檢證を通じて」, 『平和研究: 體制移行期の人權回復と正義』38號, 日本平和學會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국문 초록]

한일 청구권협정 제2조의
형성 과정(1965. 3~6) 분석
- 개인청구권 문제를 중심으로 -

장박진

수교 5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 오늘날까지 한일 관계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주된 과제가 한국인 개인이 겪은 폭력적 피해에 따른 각종 개인청구권 문제이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한일 양국은 대일평화조약 4조에 근거한 재산 및 청구권 교섭을 14년 가까이 벌인 결과 1965년 6월 22일 이른바 '청구권협정'을 체결했다. 그중 오늘날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핵심이 주지의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을 확인한 제2조이다.

이 글은 바로 개인청구권 문제 해결 여부의 열쇠가 된 동 2조의 기초 과정에 대한 외교사적 분석을 진행한다. 그것을 통해 개인청구권 문제가 현재까지 논란이 되게 된 교섭 과정의 실태를 밝히고 이들 문제의 해결 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학술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막판 교섭 과정에서도 개인청구권이 해결 범위에 들어갈 것인가를 둘러싸고 한일 간에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던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협정 기초의 기본적인 틀을 정한 4·3합의 시, 그 범위를 명확히 정의도 하지 않은 채, '평화조약 4조에 규정된 것을 포함해'로 그 해결범위가 확대되었다는 점, 제외 대상을 '전후'에 새롭게 발생한 '채권채무 문제'로만 한정함으로써 '전전'에 발생한 개인청구권 문제는 그 시기 및 성격상 해결 범위에서 제외되는 종류에서 벗어났다는 점, 4·3합의 후의 조문 기초 과정에서 일본이 개인청구권 문제의 존재를 거론하자, 한국은 4·3합의로 한일 간에서는 모든 문제가 끝

났다는 안이한 인식을 피력했다는 점, 조문 기초 작업을 시작한 당초 일본은 개인청구권이 실체가 없는 개인권리의 문제임을 의식해 그 해결 방법으로는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규정을 들 것을 기본으로 했으나 한국 측 조문도 작용해, 결국 최종협정에서는 주지의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로 됨에 따라 외교보호권만을 포기했다는 조문상의 의미가 후퇴되었다는 점, 해결 범위인 동 8항목에 무엇이 들어가는가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 또한 해결 범위와 관련된 최종 절충의 결과, 1945년 8월 15일 이후 통상의 접촉을 통해 생긴 새로운 채권-채무 문제는 제외되었으나 반대로 과거사 처리의 성격을 띤 것이라면 협정 서명일 이전에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해 여하한 주장도 할 수 없다는 것에 합의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각종 개인청구권 문제 역시 해결 대상에 들어간다는 해석을 강하게 지닐 수밖에 없음을 밝힌다.

동북아역사재단

주제어

한일회담, 보상 문제, 협정 2조, 협정2조에 대한 합의의사록, 1965년 3월부터 6월까지 조문 기초 과정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BSTRACT]

An Analysis of the Drafting Process(March 1965 ~ June 1965) of Article 2 of the Agreement on Claims: Focusing on the Compensation Problem for Korean People

Chang Bakjin

Although nearly 50 years have passed since South Korea-Japan diplomatic normalization, the compensation problem for Korean people is the one of the main factors that contributes to the worsening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It is well known that South Korea and Japan concluded “the Agreement on the solution of property and claims problem, and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Japan” and “the Agreed minutes annexed to the Second article of the Agreement” in 1965 as the result of negotiations that lasted 14 years. In the Agreement, the second article is the core regarding whether the compensation issue regarding Korean people was resolved “totally and finally” by the agreement.

This is why many people have referred to the second article for discussing whether the compensation problem was settled or not. However, there are few studies which have focused in detail on the drafting process of the second article, although that process is very important for judging the meaning of the final Agreement precisely.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present academic grounds for judging whether the problem of compensation of Korean people was settled “totally and finally” by the Agreement. For that, this study examines how and why the second article was drafted in the final

negotiations from March 1965 to June 1965, analyzing both South Korea's and Japan's official diplomatic documents regarding the normalization talks.

This study clarifies that there is no fact that South Korea and Japan negotiated the compensation problem and agreed clearly on whether the problem should be resolved. Regarding several points, it is difficult to state that the compensation problem was not contained in the scope of the settlement by the Agreement. In other words, this study argues that the negotiation of the compensation problem was paradoxical in the sense that the problem was formally “resolved” despite the issue not having been practically discussed in the drafting negotiations.



Keywords

Korea-Japan normalization talks, compensation problem, the second article of the Agreement, Agreed minutes annexed to the second article of the Agreement, the drafting negotiations from March 1965 to June 1965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서평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일본서기』 연구의 새로운 도약 - 연민수 외, 『역주 일본서기』 1~3권 (동북아역사재단, 2013) -

이재석 | 한성대학교 역사문화학부 교수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일본서기(日本書紀, 니혼쇼키)』는 720년에 간행된 일본 최초의 정사(正史)다. 덴무천황[天武天皇]의 명으로 도네리친왕[舍人親王] 등이 중심이 되어 편찬에 착수한 것으로 보이며 일본 신화의 시대(時代)부터 시작하여 1대 신무천황(神武天皇)(기원전 660년 건국)~40대 지토천황[持統天皇]의 시대(697년 8월)까지를 다루고 있다. 순한문의 편년체(編年體)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30권과 계도(系圖) 1권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계도는 현재 전해지지 않는다.

『일본서기』보다 앞서 712년에 『고사기(古事記, 고지키)』가 완성되었지만, 『고사기』는 제목 그대로 단지 ‘옛날 일(古事)’을 모아놓은 기록물 정도의 서적으로서, 엄밀한 의미의 형식적 서술 체제를 갖춘 사서(史書)라고는 하기 어렵다. 이에 비해 『일본서기』는 그 제목에서부터 일본에 관한 기록물이라는 의미가 바로 전달된다. 『일본서기』의 완성 사실을 전하고 있는 『속일본기(續日本紀, 쇼쿠니혼키)』의 해당 기사에는 “一品 舍人親王이 칙을 받들어 日本紀를 편찬했다”고¹⁾ 나온다. 『일본서기』는 『일본기(日本紀)』라고도 했다. 어느 것이 정

식 명칭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그 어느 쪽이든 간에 일본의 역사라는 점을 표방하고 있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자국의 역사서에 자국의 국명을 넣는 것이 뭐가 이상한가라고 반문할 수도 있지만, 필자는 바로 여기에 『일본서기』가 지닌 독특한 의미가 숨어 있다고 생각한다.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해 보자. 첫째는 이것이 단순히 내부용에만 국한된 용도가 아니었다는 점이다. 내부용이라면 예컨대 그냥 『국사(國史)』라고 하면 그만일 것이다. 또한 『고사기』의 경우가 내부용의 좋은 사례다. ‘고사(古事)’가 어느 나라의 ‘고사’인지는 드러나지 않지만, 당시 일본인들은 모두 이것이 자국의 ‘고사’임을 당연한 듯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렇게 보면 국명이 그대로 드러나는 『일본서기』에서 우리는 이것이 단순한 내부용에 그치는 것만이 아님을 감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서기』는 상대적으로 외부세계(주변국)를 또한 강하게 의식한 소산물이었다.

두 번째는 정사(正史) 편찬의 원조인 중국의 경우 국명이 반영된 정사는 대개 전(前) 왕조의 역사였는데 반해²⁾ 일본의 경우에는 전 왕조라는 것이 있을 수 없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왕조 교체가 빈번했던 동아시아의 일반적 양상과는 달리, 일본에서는 왕조 교체가 없었으며 따라서 국명이 반영된 정사라고 하더라도 중국 등의 경우와는 그 의미가 다르다는 것이다. 즉 중국의 정사는 대개 후속 왕조가 전 왕조의 역사를 정리하면서 자신의 정통성을 주장하고 합리화시키려는 의도가 강했다고 한다면, 일본의 경우는 이전 왕조의 역사가 아니라 현재 일본 열도를 다스리고 있는 일본이라는 왕조 국가의 내력을 스스로가 정리하고 또한 그 지배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정사에서 왕조 자체에 대한 비판은 성립될 수가 없었다. 먼 과거 천상(天上)의 세계에서 지상의 세계로 강림한 천손(天孫)의 자손이 일본을 건국하고 천황이 되어 대대로 통치해가는 왕조가 일본이며 그 왕조의 통치가 지

1) 『續日本紀』 養老 4년 5월 癸酉條.

2) 중국의 정사 편찬에 대해서는 楊聯陞, 「正史纂修的構造」; 関斗基 편·이개석 역, 1985, 『中國의 歷史認識』 上, 창작과비평사; 淺見直一郎, 1992, 「中國의 正史編纂」, 『京都橘女子大學研究紀要』 19 참조.

금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왕조 자체를 비판하고 부정하는 것은 지배층 스스로가 통치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천손에 의한 일본 열도 통치는 하나의 절대적 기준이며 이것은 중국이나 우리의 역사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때때로 천명(天命)에 의해 수시로 교체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다. 천황가의 일본 통치는 천상의 세계에서 이미 약속을 받고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감히 인간의 자손들이나 잡신의 자손들이 왈가불가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것이 일본 국가가 주장하는 야마토[大和] 왕조 통치의 정통성이자 정당성이다. 이러한 주장이 가장 극명하게 표출되어 나타나 있는 곳이 제일 먼저 편찬된 정사였으며 그것이 바로 『일본서기』였다.

『일본서기』는 하나의 국가로서의 통일을 달성한 야마토 왕조가 자신의 일본 열도 통치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스스로 주장하기 위해 먼 신들의 세계 및 일본 열도의 탄생에 대한 기술에서부터 시작해 7세기 말 고대 국가가 태동하는 시기까지를 대상으로 하여 8세기 초 국가적 사업으로 정리한 사서였던 것이다. 다시 말해 『일본서기』는 하나의 왕조로서의 성립 과정을 위에서 언급한 국가적 통치 이념에 입각해 정리하고자 한 것이었다.³⁾

일본의 정사는 『일본서기』를 필두로 『속일본기』·『일본후기(日本後紀, 니혼고키)』·『속일본후기(續日本後紀, 쇼쿠니혼고키)』·『일본문덕천황실록(日本文德天皇實錄, 니혼몬토쿠덴노지츠로쿠)』·『일본삼대실록(日本三代實錄, 니혼산다이츠로쿠)』 등으로 계승되었다. 『일본서기』 이후의 정사는 각각 8, 9세기의 역사를 정리하고 있지만, 이들 정사를 관통하는 기본적인 성격은 사실 『일본서기』에 규제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본서기』 이후의 사서는 예컨대 『속일본기』의 서명(書名)이 단적으로 보여주듯이 『일본기』를 잇는다는 것에 일차적인 속성이 있다고 한다면, 『일본서기』는 이러한 일본 역사의 시원(始原)을 처음으로 규정한 사서였다. 전술한 것처럼 ‘일본’이라는 국가의 유래와 형성 및 성격, 그리고 일본국 통치자인 천황가의 존엄성에 대한 근원

3) 『일본서기』의 이러한 성격에 대해서는 이재석, 2013, 「『續日本紀』의 시대와 그 역사서술의 諸相」, 『소통과 인문학』 17에서도 언급한 바 있다.

등에 관한 일체의 것은 모두 『일본서기』에서 규정해 놓았기 때문이다. 『일본서기』 이후의 정사가 이러한 『일본서기』의 규정성을 벗어나 별개의 언설을 전개한 적은 없다.

II

최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동북아역사 자료총서의 하나로 『역주 일본서기』(동북아역사재단, 2013)를 간행했다. 필진도 연민수(동북아역사재단), 김은숙(한국교원대학교), 이근우(부경대학교), 정효운(동의대학교), 나행주(대진대학교), 서보경(고려대학교 동아시아문화교류연구소), 박재용(충남역사문화연구원) 등으로 우리나라에서 『일본서기』에 대해 가장 조예가 깊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무엇보다도 이 『역주 일본서기』의 간행이 반가운 것은 그 동안 우리 학계에서는 아직 『일본서기』 전체에 대한 역주본이 없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전3권으로 구성된 『역주 일본서기』는 『일본서기』가 총 30권으로 구성되었음을 반영해 각 권마다 10권씩 할당해 분량을 고루 나누었다. 본문의 해석과 역주를 각 권별로 먼저 제시한 후 후미에 원문을 배치하는 방식으로 각 권이 구성되어 있다. 각 권별로 본문과 원문이 세트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데 편리함이 있다. 또한 전체적으로 문장의 통일성도 담보되어 있으며 가독성에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 다만 일본의 인명과 지명 등에 대한 표기에서 우선 한자 발음을 먼저 드러내고 일본식 발음은 괄호 안에 부기하는 방식을 따랐기 때문에 읽으면서도 생소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았다.

먼저 『역주 일본서기』 1권에서는 <권 제1 신대(神代) 상>부터 시작해 <권 제10 응신천황(應神天皇)>까지를 수록했다. 그리고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일본서기』 자체에 대한 약 70쪽에 이르는 상세한 <해제>를 마련했는데, 이 <해제>를 읽어 가다보면 자연스럽게 『일본서기』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배가될

수 있어 매우 유용하다. 그리고 책의 말미에는 한국과 일본의 많은 <참고문헌>을 부기해 소개하고 있다.

<해제>는 <Ⅰ. 『일본서기』의 편찬과정>, <Ⅱ. 『일본서기』 인용 자료>, <Ⅲ. 일본의 『일본서기』 연구사> 등 전체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Ⅰ. 『일본서기』의 편찬과정>에서는 ‘『일본서기』의 명칭’, ‘제기와 구사’, ‘천황기와 국기’의 문제, ‘구분론’, ‘편수론’, ‘최종단계의 윤색’, ‘출전론’, ‘씨족 전승’의 문제, 『삼국사기(三國史記)』와의 관계 등에 관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동안 주로 일본 학계에서 축적되어 온 『일본서기』 자체에 대한 방대한 연구 성과가 비교적 알기 쉽게 우리들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지면 관계상 그 내용을 일일이 소개할 수는 없지만, 『일본서기』 편찬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 데는 별 무리가 없는 구성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구분론’과 ‘편수론’은 『일본서기』 상의 한자음과 용자(用字), 사용 역법의 차이 등을 소재로 한 과학적인 분석 기법을 따른 『일본서기』 자체의 세분화를 시도하고 있어 매우 흥미롭다.

<Ⅱ. 『일본서기』 인용 자료>에서는 『일본서기』의 편찬에 이용된 각종 자료군을 소개하고 있다. 주지하듯이 『일본서기』는 제기(帝紀), 구사(舊辭), 제가(諸家)의 전승기록, 개인의 수기(手記), 사원의 연기(緣起), 『백제기(百濟記)』·『백제신찬(百濟新撰)』·『백제본기(百濟本記)』 등의 백제 사료, 『삼국지 위서(魏書)』·『진서(晉書)』 등의 중국 사서(史書)와 같은 다양한 자료를 기초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망명가야인들의 기록물 내지 가야 측 원자료의 존재 가능성을 개진하고 있는 점은 흥미롭다.

『일본서기』는 특히 한반도 관계 기사의 왜곡이 자주 부각되는 사서로 유명하다. 『일본서기』에 한반도 관계 기사가 왜곡 내지 윤색되는 과정을 알기 위해 『일본서기』 편찬에 사용된 원자료가 편찬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굴절되어 갔는가를 생각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특히 상기 백제계 사료는 그러한 방법론의 성공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Ⅲ. 일본의 『일본서기』 연구사>에서는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연구사를 알기 쉽고 평이한 문장으로 소개하고 있다. 이 부분을 읽으면 그동안

일본에서는 『일본서기』가 간행된 이후 어떠한 관심이 모아져 왔는가를 시대적 흐름과 함께 잘 이해할 수 있다.

〈권 제1 신대 상〉부터 〈권 제10 응신천황〉에 이르는 본문에서는 각 천황기마다 도입부에 해당 천황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곁들여서 이해를 돕고 있다. 또한 각 천황기마다 매우 세세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역주와 기본적인 용어 설명을 가미하고 있는 점은 가히 압권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필자들이 들인 공을 새삼 느끼게 하는 부분이다.

한편 『역주 일본서기』 2권에서는 〈권 제11 인덕천황(仁德天皇)〉에서 〈권 제20 민달천황(敏達天皇)〉 까지 총 10권을 다루고 있다. 대상은 5세기 중반에서 6세기 후반에 걸친 시기다. 이 『역주 일본서기』 2권에서는 말미에 전체 세 부분으로 구성된 〈부록〉을 수록하고 있는데 역주본을 읽을 때 유용하게 도움을 받거나 참고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록 1〉에서는 주로 연표와 도표를 수록하고 있다. ‘『일본서기』에 기재된 사건 연표’, ‘천황 화풍(和風)시호 및 재위기간’, ‘천황릉 위치 비정표’, ‘일본 고대산성 현황표’, ‘고대 일본 관위 및 위계제 변천표’, ‘『일본서기』와 『삼국사기』 백제왕력 비교표’, ‘고대 한반도와 왜의 교류표’, ‘『일본서기』 도래계 씨족 출자표) 등 총 10개의 표가 제시되어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일본서기』에 기재된 사건 연표’와 ‘고대 한반도와 왜의 교류표’는 『일본서기』 상의 전체적인 사건의 흐름 및 한일간 교류의 양상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며 ‘『일본서기』 도래계 씨족 출자표’도 매우 유용한 자료다.

〈부록 2〉에서는 계보와 지도를 다루고 있다. ‘『일본서기』 천황 계보’를 위시해 타케우치 노스쿠네[武内宿禰] 후예씨족, 갈성씨(葛城氏), 소아씨(蘇我氏) 등 유력씨족의 계보, 그리고 일본 주요 지역의 유적 분포, 가야 관련 위치도 등 유용한 자료들이 많다. 『일본서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기나이[畿内] 지역 예컨대 아스카[飛鳥] 등지에 대한 상세도가 없는 점은 아쉽게 느껴진다. 일반 독자에게는 늘 생소하게만 느껴질 수 있는 일본의 지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부록 3〉에서는 각종 금석문 및 문헌 자료를 수록하고 있다. 금석문 자료는

예컨대 칠지도(七支刀)와 이나리아마[稻荷山] 고분 출토 철검 명문 등 주요 사료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대상을 ‘일본 고대 금석문’으로 한정을 하다 보니 예컨대 광개토태왕 비문과 같은 매우 중요한 금석문 자료가 여기에 소개될 자리가 없음을 약간 아쉽다. 또 한가지 아쉬운 점은 현재 수십만 점에 달하는 목간 자료에 대한 소개가 누락된 부분이다. 목간 자료 중에서도 연구사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자료들 일부라도 소개하고 약간의 설명을 가미하면 『일본서기』 기사의 현장성이 좀 더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문헌 자료에서는 ‘일본 내 한반도 관련 문헌’을 소개하고 각 문헌에 대한 기초적인 설명을 곁들여 놓았다. 여기서는 한반도와 관련한 문헌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역주 일본서기』 3권에서는 <권 제21 용명천황(用明天皇)>에서 <권 제30 지통천황(持統天皇)> 까지 총 10권을 다루고 있다. 시기적으로는 6세기 말~7세기 말에 걸쳐 있는데 이 권에는 앞의 1, 2권처럼 특별한 <부록> 내지 참고 자료가 첨부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III

주지하듯이 『일본서기』는 일본 고대사를 이해하고 연구하는데 가장 일차적인 문헌 사료다. 그런데 전술한 바와 같이 『일본서기』는 일본 국가와 천황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 지극히 일본 중심적인 고대 천황제 이데올로기는 일본 열도의 외부에 존재하는 한반도까지 일본의 외연부로서 확장시켰다. 이른바 일본 내지의 연장으로서 한반도를 설정한 것이다. 흔히 우리는 그것을 소위 ‘번국사관(蕃國史觀)’이라고 부른다. 한반도 제국(諸國)을 자신의 복속국으로 설정하고 그 유래도 신공황후의 소위 ‘삼한정벌(三韓征伐)’과 같은 그럴듯한 전승으로 포장해 자신의 우월성을 과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점

에서 『일본서기』는 일본 고대사뿐만 아니라 한국 고대사와 고대 한일관계사의 영역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점에 관해서는 『역주 일본서기』 1권의 〈서문〉에서 이미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

우리가 『일본서기』에 대해 제대로 연구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은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 또 그런 이유 때문에 사실 『역주 일본서기』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은 『일본서기』 속의 한국 관계 기사에 대한 역주 부분인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역주 일본서기』 속의 한국 관계 기사 역주를 보면 특정 어느 관점에 입각하여 해석하려는 태도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미 많은 연구 성과와 함께 다양한 견해가 개진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한 입장을 견지한다는 것이 어려울 지도 모른다. 예컨대 신공황후 섭정 46년조에 보이는 탁순국의 위치에 대해 “창원, 칠원, 대구, 의령 등으로 비정되고 있다”⁴⁾ 한 것은 현 시점에서는 바람직한 기술 태도라고 생각한다. 예시한 탁순의 경우 그 위치를 알려주는 사료가 각각 낙동강 방면과 남해안 방면을 시사하는 사료가 존재하기 때문에 어느 한 곳으로 특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특정 견해를 지지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견해를 제시만 해두는 것이 오히려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이번에 간행된 『역주 일본서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첫째는 전술한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일본서기』 전체에 대한 역주본이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그것도 학술적으로 의미가 있는 여러 〈해제〉와 역주가 가미되면서 완성된 것이어서 더욱 그러하다.

둘째는 가장 최신의 연구 성과를 반영한 『일본서기』 역주본이라는 점이다. 〈해제〉에 소개된 일본학계의 근년의 저술을 보아도 나름의 의미를 지니는 『일본서기』 저술이 『일본고전문학전집 일본서기(日本古典文學全集 日本書紀, 전 3책)』(1994~1998, 小學館)이라고 보면 지금 이 역주본의 최신성이 드러난다고 하겠다.

4) 동북아역사재단, 2013, 『역주 일본서기』 1, 494~495쪽 참조.

셋째는 한국 연구자의 관점이 처음으로 반영된 『일본서기』가 나왔다는 점이다. 과거 일본사에 대한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 종종 들었던 이야기가 일본의 관점이 아닌 우리 나름의 관점에서 일본사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당시는 한국인의 연구이므로 당연히 한국인의 관점이 투영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낙관적으로 생각했지만, 일본 현지에서 일본 학계의 높은 연구수준을 접하면서 이를 뛰어넘어 우리의 관점을 제시한다는 것이 그리 쉽게는 보이지 않았다. 지금은 그로부터 많은 시간이 흘렀고 또 우리 학계의 연구도 많이 축적된 것이 사실이다. 특히 한일관계사 방면의 연구 축적은 눈부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것은 이 역주본의 간행을 계기로 향후 일본 고대사 및 한일관계사 연구에 질적인 비약을 기약할 수 있는 새로운 토대가 하나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특히 자라나는 학문 후속 세대에게 우리말로 된 『일본서기』 역주본을 읽게 할 수 있다는 점은 향후의 학문적 역량의 축적을 위해서도 매우 필요한 일이다. 또한 앞으로 학부 수업에서도 이 역주본을 활용하면 다양한 방식의 수업이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이 역주본이 주는 즐거움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이상과 같이 필자는 이번 역주본의 간행의 의의는 결코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만 서평에서 아무런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오히려 이상할 것 같다. 필자의 직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약간의 트집을 한 두 가지 정도는 잡고 마쳐야 할 것 같다. 『역주 일본서기』는 개인의 연구 저술이 아니라 사료에 대한 역주 작업이 핵심인 영역이기에, 논문이나 저서에 대한 평을 하듯이 어떠한 논점을 지적하기는 어렵다.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아쉬운 점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은데, 거칠게 한번 읽어본 소감이라 생각하고 받아 주었으면 한다.

첫째는 한국의 『일본서기』 연구에 대한 소개와 설명이 없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역주 일본서기』 1권의 <참고문헌>에는 많은 한국의 연구 성과들을 소개하면서도 정작 연구사의 정리에서는 일본 학계의 것만을 소개하고 한국의 연구를 언급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물론 한국의 『일본서기』 연구가

일본에 비해 일천하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 학계에서도 연구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면 오히려 그것도 하나의 흐름에서 소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일본서기』에 대한 본격적인 역주본은 아니지만, 『일본서기』의 번역본으로서 전용신의 『완역 일본서기(完譯 日本書紀)』(1989, 일지사)가 있다. 비록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것 또한 우리 학계 역사의 한 부분이였다.

또한 한국의 『일본서기』 연구는 주로 한일관계사 연구의 일환에서 시작된 것이었다. 소위 임나일본부 논쟁은 『일본서기』에 대한 관심을 끌어오기에 충분한 소재였다. 이러한 연구는 나름의 연구사의 흐름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둘째는 본문의 각 천황기에 대한 표제 부분에서 일본풍[和風] 시호와 중국 풍[漢風] 시호를 병기하는 형태(예컨대 신무천황기의 원문의 경우 “神日本磐余彦尊 神武天皇”으로 병기되어 있으며 번역문의 경우도 기본적으로 동일한 형식이다)로 제시한 것은 『일본서기』 원문에 대한 오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이 역주본의 원문을 『일본고전문학대계 일본서기(日本古典文學大系 日本書紀)』(1965·1967, 岩波書店) 上·下권에 따랐기 때문이며 또한 양자의 구별에 대해서는 “원래 역대 천황의 한풍 시호는 『일본서기』에는 없었으나 후대에 추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⁵⁾ 각주에서 나름 설명하고 있으나, 『일본서기』를 처음 접하는 사람은 이 역주본을 보며 원래 『일본서기』의 원문에 양자가 같이 나오는 것처럼 받아들이기 십상일 것이다.

5) 동북아역사재단, 2013, 『역주 일본서기』 1, 261쪽 참조.

IV

주지하는 것처럼 신공황후의 소위 ‘삼한정벌’ 전승은 그 자체 역사적 사실은 아니다. 그러나 필자는 이 전승을 생각할 때마다 ‘기록’이 갖는 가공스러운 위력을 새삼 느끼게 된다. 역사적 사실이 아닌 이야기가 『일본서기』에 채록됨으로써 후세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고 또 이 전승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마치 역사적 사실인 양 일본인에게 막연한 우월감과 멸시감을 심어주는 기제로 작용하게 되어 16세기의 임진왜란, 19세기의 정한론의 사상적 배경이 되었다는 것은 실로 가공할 소생력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한반도에 대한 식민 통치는 일본인의 굴절된 대한관(對韓觀)을 고착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기능한 것 또한 이 전승이었다. 그래서 때로는 생각해본다. 만약 『일본서기』에 신공황후의 ‘삼한정벌’ 전승이라는 허황된 이야기가 실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일본서기』는 일본 고대사뿐만 아니라 고대 한일관계 나아가 한국 고대사에서 유용하다. ‘일본 속에 남은 백제’라는 문구를 접할 때마다 한국사의 외연부로서 일본 열도의 중요성을 매번 실감하게 된다. 이 책의 간행을 통하여 앞으로 일본 고대사 및 한일관계사, 한국 고대사 연구가 얼마나 더 풍성해 질 것인가는 전적으로 우리들의 노력에 달려있다. 이 책에 들인 집필진들의 수고로움이 헛되지 않도록, 이 책을 발판으로 더욱 연구가 활발해지고 철저하고 엄정한 사료 비판을 통해 왜곡된 한국 고대사 인식을 바로잡고 또한 일본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기를 바랄 뿐이다.

이 역주본은 〈서문〉에서 “이 역주본의 출간은 『일본서기』 연구의 종착점이 아니라 출발점이다. 금후 올바른 일본 고대사, 고대 한일관계사, 나아가 동아시아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에 하나의 디딤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라는 소망을 피력하고 있다. 필자도 100% 동감한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논총 규정 및 규칙

- 연구윤리위원회 구성·운영 규칙
- 편집위원회 규정
- 논총 간행 및 논문 심사 규정
- 논문 심사 내규
- 투고 방법 및 원고 작성 요령



(연구윤리위원회 구성·운영 규칙)

제정 2007. 9. 21. 규칙 제19호

개정 2010. 5. 28. 규칙 제43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를 제안, 수행하거나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등 연구의 진실성을 침해하는 다음의 행위를 말한다.
 - 1) '위조'라 함은 자료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 2) '변조'라 함은 연구와 관련된 자료, 과정 및 연구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진실에 부합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및 연구결과 등을 적절한 인용 표시 없이 연구에 사용하거나 자신이 이미 발표한 연구결과를 적절한 인용 표시 없이 부당하게 발표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연구부적절행위'(이하 '부적절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기타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당해 주장이나 증언에 반하는 사실을 간과한 자는 제보자로 간주하지 않는다.
4.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위원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5. ‘예비조사’라 함은 본 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보된 사실에 대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예비적인 사실 확인 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6.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재단 소속의 연구자와 재단을 통하여 연구비를 지원 받은 자 및 재단 학술지에 원고를 게재한 자 등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3. 예비·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예비조사위원회, 조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5.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6. 조사결과의 처리, 후속조치 및 재심의를 처리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1. 위원회는 사무총장, 독도연구소장, 역사연구실장, 법률자문관(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사무총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논총편집위원장이 수행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당연직 이외의 위원은 재단 부연구위원 이상의 연구직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연구직 직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 자를 간사로 한다.
5.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5조(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4.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6조(제보 및 증거보전)

1. 제보자는 위원장에게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위원회는 제보에 대한 증거보전을 위하여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상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검증시효)

1.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2. 5년 이전의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라 하더라도 재단의 운영상의 장애를 초래하거나, 재단의 위상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이를 조사할 수 있다.

제8조(예비조사위원회)

1. 위원회는 제6조 제1항에 의한 제보를 접수한 경우 예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3인 이내의 위원으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2. 예비조사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3.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 1) 제보내용이 부정행위와 부적절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 3) 제보일이 시효 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4.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 3)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9조(본조사 착수 및 기간)

1. 본조사는 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조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2.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 착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3.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연장 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위원회의 구성)

1. 조사위원회는 5인 내지 7인의 조사위원으로 구성하며 당해 연구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3인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2. 조사위원으로 전문성과 객관성을 가진 외부 인사를 2인 이상 위촉함을 원칙으로 한다.
3.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조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제11조(기피·제척·회피)

1.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 또는 조사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2. 당해 안전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안전의 심의·의결 및 조사에 관여할 수 없다.
3.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위원 및 조사위원은 위원회에 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
4. 기피 또는 회피 신청에 대한 결정에 기피신청된 위원이나 회피신청한 위원은 참여할 수 없다.

제12조(조사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1.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피조사자 및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조사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상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조사위원회는 조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조사대상 연구와 연구자에게 상당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13조(진술 기회의 보장) 조사위원회는 혐의 사실에 대해 피조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4조(결과보고서의 제출)

1. 조사위원회는 조사 완료 후 10일 이내에 조사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조사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 4) 관련 증거 및 증인
 -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주장 내용과 그에 대한 판단 및 처리결과
 - 6) 조사위원 명단

제15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1. 위원회는 재단 소속 연구자의 행위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에 해당한다는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승인한 때에는 이사장에게 징계 및 상당한 제재조치를 건의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재단을 통하여 연구비를 지원 받은 자의 행위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에 해당한다는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승인한 때에는 이사장에게 상당한 제재조치를 건의하고 소속 기관장에게 조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과 다른 제보를 하거나 연구윤리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 이사장에게 징계 또는 상당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16조(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피조사자 및 제보자에게 통지한다.

제17조(재심의)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전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비밀유지의 의무 등)

1. 위원회와 조사위원회는 제보자를 보호하고 피조사자의 명예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 등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되 상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3. 위원, 조사위원,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이사장 및 관계 임직원은 심의·의결·조사 기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직을 그만둔 후에도 같다.

제19조(경비)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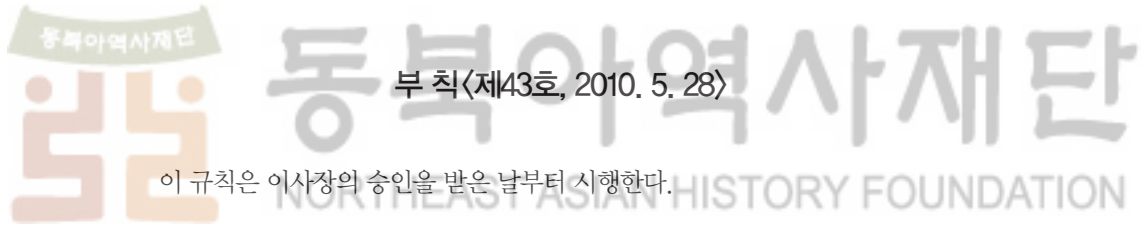
제20조(운영지침)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한다.

부 칙<제19호, 2007. 9. 21>

이 규칙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43호, 2010. 5. 28>

이 규칙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편집위원회 규정)

1. 편집위원회는 동북아역사 관련 고대·중세·근현대 연구 영역의 전문연구자로 구성하고,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2.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동북아역사재단(이하 재단)의 역사연구실장이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이사장이 지명할 수 있다. 편집위원장은 재단소속 편집위원 중에서 실무를 총괄할 편집이사를 임명한다.
 3. 편집위원의 유고 시 편집위원회는 차기 호 논문 심사가 있기 전에 새로운 편집위원을 선정한다.
 4.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 1) 『동북아역사논총』(이하 논총)의 편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 2) 논총에 게재하기 위한 일체의 논문류에 대한 심사
 - 3) 논총 게재 기획논문, 자료소개, 서평, 설립 등에 대한 기획과 심사
 - 4) 기타 논총 관련 사업에 대한 기획과 심의
 5.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논총의 편집과 간행을 총괄한다.
 6. 재단 소속 편집위원은 논총의 편집과 간행에 따른 실무를 담당한다.
 7. 편집위원회는 논총 발간 전에 개최하고, 편집위원회의 진행절차는 편집 및 토의사항을 중심으로 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편집이사는 편집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참고자료 및 보고사항을 사전에 준비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 ※ 이 편집위원회 규정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편집위원회 규정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개최된 동북아역사논총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되었고, 2013년 8월 30일, 2015년 2월 23일 편집위원회에서 재개정되었음.

(논총 간행 및 논문 심사 규정)

1. 논총에는 다음과 관련된 특집, 논문, 설립, 자료소개, 서평 등의 글을 게재한다.
 - 1) 한국사(문화) 및 동아시아사(문화)와 관련된 문제
 - 2) 독도 및 영토 관련 문제
 - 3) 본 재단의 목적에 부합하는 논문
2. 논총은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매년 4회 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원고를 다음과 같은 과정과 내용으로 심사한다.
 - 1)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모든 원고를 논문 제목, 형식요건, 원고분량의 적절성, 재단 목적에 대한 부합성 등을 기준으로 1차 심사하고, 참석 편집위원 과반수 통과 판정을 얻어 2차 심사에 회부한다.
 - 2) 편집위원회는 투고원고 중 논문류의 경우 편당 학계 전문가 3인의 심사자를 선정하여 2차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2차 심사 때에는 공정성을 위해 필자명을 반드시 지운 뒤 심사한다.
 - 3)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된 논문을 편집위원회의 정해진 양식에 따라 ‘수정 없이 게재(A)’,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재심사(C)’, ‘게재 불가(D)’의 네 등급으로 판정한 후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중 B·C등급의 경우 수정사항이, D등급의 경우에는 게재 불가 이유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 4) 편집위원회는 심사 통과 논문 편수가 논총의 일반적인 분량을 초과할 경우 편집위원회의 기획과 심사 성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 게재 순위를 정한다.
4.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과 심사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일체를 대외비로 한다. 이외 투고자는 게재가 결정된 논문이라 할지라도 심사위원의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5.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투고자에게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보한다. 논문은 아래와 같은 항목에 의하여 심사한다.

- 1) 논문 제목의 적절성
- 2) 형식요건 및 체제의 정연성
- 3) 논리성 및 독창성
- 4) 학술적 가치
- 5) 인용자료의 적절성
- 6) 분량의 적절성
- 7) 요약문의 적절성

6. 편집위원회는 논총에 투고된 일체의 원고에 대해 심사 종료 후 돌려주지 않는다.

※ 이 심사규정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심사규정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음.

(논문 심사 내규)

1.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다음의 네 가지로 처리한다.

- 1) 게재 가 : 3인 모두 A로 판정하는 경우 예 : (A, A, A)
- 2) 수정 후 게재 : 3인 모두 B 이상으로 판정한 경우 / 2인이 A로, 나머지 1인이 C로 판정한 경우
예) (A, A, B) (A, B, B) (B, B, B) (A, A, C)
- 3) 수정 후 재심사 : 2인이 A와 B 이하로 판정하고 나머지 1인이 C로 판정한 경우 / 1인이 A나 B로 판정하고 2인이 C로 판정한 경우
예) (A, B, C) (B, B, C) (A, C, C) (B, C, C)
- 4) 심사위원 교체 재심사 : 2인이 B 이상으로 판정하였는데 1인이 D로 판정한 경우, D 판정 1건에 대해서만 심사위원을 교체하여 재심사함
예) (A, A, D) (A, B, D) (B, B, D)
- 5) 게재 불가 : 2인 이상이 C나 D로 판정한 경우(A, C, C와 B, C, C는 제외) / 1인이 D로 판정하였는데 A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예) (A, C, D) (A, D, D) (B, C, D) (C, C, C) (C, C, D) (D, D, D)

2. 편집위원회는 논문 편수가 논총의 수록 분량을 초과하거나 또는 편집위원회의 기획 상의 우선순위 등의 사정에 따라 심사 통과 원고 가운데 일부를 필자의 양해 하에 차기 호 또는 차차기 호에 실을 수 있다. 이 가운데 단순히 논총 수록 분량 초과만이 원인일 때에는 심사 성적 순위로 해당 호 게재를 결정한다.

3. 심사 결과 통보는 심사위원이나 과정을 대외비로 한 상태에서 심사 결과와 수정 제의 및 게재 불가 사유를 통보한다.

※ 이 심사 내규는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심사 내규를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고, 2011년 10월 7일 편집위원회에서 재개정되었음.

[투고 방법 및 원고 작성 요령]

1. 동북아역사논총(이하 논총으로 약함)은 전문적인 학술지로서 논문, 설립, 서평, 자료소개 등이 게재된다. 투고하고자 하는 원고는 논총 발간 전 투고신청서와 함께 동북아역사논총 편집위원회 앞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원고는 반드시 컴퓨터 파일로 작성하여야 한다. 원고 제출방식은 본문의 경우 동북아역사논총 대표메일(nonchong@nahf.or.kr)로, 그림과 사진의 경우 심사용 각 3부를 동북아역사논총 편집위원회 앞으로 보내야 한다. 또한 최종 원고 제출 시 사진은 해상도 300dpi 이상으로 하여 별도 제출한다.
3. 원고분량은 200자 원고지 150장 내외를 기준으로 하되 충분한 논지 전개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70장가량 초과할 수 있다. 그림과 사진의 수량은 논지 전개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한다.
4. 원고는 제목, 필자(소속기관, 직위), 머리말, 본문, 맺음말, 국문초록, 국문주제어, 영문초록, 영문 주제어, 참고문헌(필요 시)의 순서로 구성한다.
5. 논문의 목차와 소제목은 머리말로부터 순서에 따라 I>1>1)>(1)로 번호 매김을 한다.
6. 본문은 까다로운 고유명사 또는 의미상의 혼동이 예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글로 작성하되, 한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맨 처음만 한글(한자)로 병기하고 이후부터는 한글로만 표기한다.
7. 인용문은 본문의 문장 가운데에 삽입되는 경우 “ ” 표시로 묶고, 인용문이 길어 문단을 나눌 경우에는 “ ” 표시 없이 글자크기를 작게 하여 서술하고 괄호 안에 출전을 밝힌다.
8. 각주에서 현대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필자”, “연도”, “논문”, “서책(출판사)”,

“쪽수”의 순서로 한다. 앞서 인용한 문헌을 재인용할 때에는 바로 위의 문헌을 인용할 경우에는 “필자”, “연도”, “위의 글(책)”, “쪽수”의 순서로, 바로 위 이전의 문헌을 인용할 경우에는 “필자”, “연도”, “앞의 글(책)”, “쪽수”의 순서로 인용한다.

예) 동북인, 2006, 「동북아사와 동북문화에 대하여」, 『동북아역사논총』 1호, 1~10쪽.

동북인, 2006, 위(앞)의 글(책), 1~10쪽.

9. 각주에서 고중세 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작자(필요 시)”, “서책”, “편목”, “인용대문”의 순서로 한다. 이중 고중세 문헌은 필요할 경우 판본명이나 영인본명을 밝힐 수 있고, 인용대문 중 전략, 중략, 후략 등은 “……”로 표기한다.

예) 東北人, 『東北集』(東北文化社景印本). “東北有高士, 東北公賢齋鶴擁, 是人也”.

10. 서양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책명은 이탤릭체, 논문은 큰따옴표로 표기하고 다음과 같은 순서와 방식으로 인용한다.

예) V. G. Childe, 1932, “Chronology of prehistoric Europe : a review,” *Antiquity* 6, pp. 206~212.

※ 이 투고 요령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투고 요령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으며, 2015년 2월 23일 편집위원회에서 개정되었음.

● 편집위원장

연민수 동북아역사재단 역사연구실장

● 편집이사

박선미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 편집위원

김문자 상명대학교 역사콘텐츠학과 교수

김은숙 교원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김정현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남상호 경기대학교 사학과 교수

안병직 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 교수

이종국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이중수 단국대학교 사학과 교수

이현혜 한림대학교 사학과 교수

임상선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전호태 울산대학교 역사문화학과 교수

정병삼 숙명여자대학교 역사문화학과 교수

정재윤 공주대학교 사학과 교수

정혜중 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 교수

최영호 영산대학교 일본비즈니스학과 교수

허동현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



동북아역사재단

前 北方史論叢

동북아역사논총 48호(2015. 6)

초판 1쇄 인쇄 2015년 6월 23일

초판 1쇄 발행 2015년 6월 30일

펴낸이 김학준

펴낸곳 동북아역사재단

등록 제312-2004-050호(2004년 10월 18일)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임광빌딩

전화 02-2012-6065

팩스 02-2012-6189

ISSN 1975-7840

비매품

이 책의 출판권 및 저작권은 동북아역사재단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어떤 형태나 어떤 방법으로도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